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민호 예산분석관
박승호 예산분석관
이석원 예산분석관

지원 | 김병규 예산분석관보
김정선 행정실무관
홍지훈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1

II. 주요 사업 분석 / 17

〈일반회계〉

- 1. 경제공급망센터의 기능 중복 및 운영비 출연 부적절 17
- 2.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의 계획 구체화 필요 등 20
- 3. 첨단기술 보험료 지원사업의 중복 해소 및 수요 근거 보완 필요 26
- 4. 경제외교 연계 통상전략형 패키지 지원 사업의 계획 구체화 필요 등 34

〈공공자금관리기금〉

- 5. 국고채 시장 여건을 고려한 국고채 발행·상환 관리의 효율화 필요 38
 - 5-1.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국고채 발행의 연계 운용 필요 39
 - 5-2. 국고채 만기 집중에 대응한 조기상환교환 계획 재검토 필요 44
- 6.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상환의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49

〈미래대응기금〉

- 7.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자원구조·국회 통제·운용체계 보완 필요 53

CONTENTS

7-1. 국부펀드 재원구조의 적정성 검토 필요	55
7-2. 기존 정책펀드·정책금융과의 역할 중복 우려	63
7-3.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등 통제장치 마련 필요	68
7-4.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72
8.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의 미래대응기금 이관 및 적용환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76
9.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의 목적 명확화 및 편성계정·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	81
〈공익신고장려기금〉	
10.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소의 재산정 필요	86
〈국유재산관리기금〉	
11.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험자산 확대 시 자금수지·위험관리체계 점검 필요	91
〈대외경제협력기금〉	
12. 예산조정을 고려한 차관사업(ODA)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95
〈외국환평형기금〉	
13. 외국환평형기금 분석	102
13-1.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 필요	103
13-2. 원화표시 외평채의 이자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110
〈전략수출금융기금〉	
14. 전략수출금융기금 주요 쟁점 분석	114
14-1.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근거법률 미비 및 재원 조달·운용구조 개선 필요	116
14-2. 기타민간이자수입 내 수수료 수입 편성 부적절	123
14-3.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사업구성 및 투자기준 구체화 필요	125

[기획예산처]

I. 예산안 개요 / 131

1. 현 황	13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9

II. 주요 사업 분석 / 145

〈일반회계〉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사업의 증액 소요 과다 등	145
2.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분석	153
2-1. 개요	153
2-2.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및 자원 측면 분석	161
2-3. 인증체계 구축 지원 관련 분석	165
2-4. 한국탄소센터 운영 및 고품질 크레딧 구매 관련 분석	171
3.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의 적정 예산규모 검토 필요	175
4.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사업의 문제점	180

〈미래대응기금〉

5.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타당성 분석	184
5-1. 미래대응기금 개요	184
5-2. 대규모 일시적 세수의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	193
5-3.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절차 준수 여부 검토	197
5-4.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 검토	203
5-5. 종합의견	210

CONTENTS

6. 미래대응기금 재정운용계획 분석	214
6-1. 미래대응기금 자원 분석	214
6-2. 미래대응기금 계정운용 분석	223
6-3.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총괄 분석	228
7. 미래대응기금 운용시 보완 필요사항 분석	239
7-1. 재정수지·국가채무 간 괴리 요인 제시 필요	239
7-2. 세계잉여금 등의 채무상환 기능 보완 필요	242
7-3.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기금 적립·인출에 대한 국회 통제 확보 필요	246
7-4. 2026년 초과세수 적립 여부·규모 및 처리 방식 검토 필요	253
7-5. 기금운용계획 변경·이월 통제 보완 필요	258
7-6.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축소 및 교부금 산정방식 전환의 영향 제시 필요	262
7-7. 다부처 기금 편성에 따른 예·결산 심사체계 보완 필요	267
7-8. 미래대응기금으로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편성 문제	276
8.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사업 분석	284
8-1. 청년계정	284
8-2. 성장동력계정	294
8-3. 지방계정	305
8-4. 교육·인재계정	310
〈공익신고장려기금〉	
9. 공익신고장려기금 분석	315
9-1.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의 타당성 검토	315
9-2. 피해자간접구제 계정 신설 재검토 필요	321
9-3. 공익신고장려기금 개별 사업 분석	323
〈복권기금〉	
10.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성과평가체계 정비 필요	32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분석 335
 - 11-1. 맞춤형컨설팅 사업 민자 종합지원센터 신설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337
 - 11-2.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추진 필요 등 342

[국가데이터체]

I. 예산안 개요 / 355

- 1. 현 황 35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5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59

II. 주요 사업 분석 / 360

〈일반회계〉

- 1. AI 활용하는 지표 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 검토 필요 360
- 2.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64

[국세청]

I. 예산안 개요 / 373

- 1. 현 황 37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7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75

II. 주요 사업 분석 / 377

〈일반회계〉

- 1. 기준시가 고시 사업의 조속한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 377
- 2.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 382
- 3. 체납관리단 업무 수행체계 및 유형분류 체계 보완 필요 388
- 4. 국세청 신고포상금 계획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399
 - 4-1.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수요를 고려한 계획액 검토 필요 401
 - 4-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예상 건수의 산정근거 구체화 필요 406

[관세청]

I. 예산안 개요 / 411

- 1. 현 황 41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1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14

II. 주요 사업 분석 / 415

〈일반회계〉

- 1. 시범도입 장비의 성과관리 및 확대 도입 기준 마련 필요 415
- 2.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해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 효율적 추진 필요 418
- 3. 지급체계 개편 초기 운영실적을 고려한 밀수 신고포상금 적정소요 산정 필요 ... 422
- 4.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의 일정 변경에 따른 공정관리 강화 필요 ... 428
- 5. 사전기획 결과를 반영한 신규 R&D 예산 산출근거 구체화 필요 431

[조달청]

I. 예산안 개요 / 439

- 1. 현 황 43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44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44

II. 주요 사업 분석 / 445

〈조달특별회계〉

- 1. 자본금 심사 외부용역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445
- 2. 혁신장터 계약가격 정보 제공체계 개선 필요 450
- 3.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455
- 4. Scale-up형 R&D 과제 선정 시 현장 개선수요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 460
- 5. 타소비촉 사업의 계약·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규모 조정 필요 465



재정경제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및 3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3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79조 7,342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68조 638억원(40.8%)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7년도 총수입은 각 회계·기금별로 일반회계 576조 3,18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821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조 1,114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4,226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 재정경제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68,815,364	388,398,103	408,461,388	576,318,134	167,856,746	41.1
- 일반회계	368,815,364 ²⁾	388,398,103	408,461,388	576,318,134	167,856,746	41.1
기 금	3,029,568	3,207,445	3,208,945	3,416,035	207,090	6.5
- 공공자금관리기금	541,704	784,917	786,417	882,094	95,677	12.2
- 국유재산관리기금	1,998,554	2,034,925	2,034,925	2,111,387	76,462	3.8
- 대외경제협력기금	489,310	387,603	387,603	422,554	34,951	9.0
합 계	371,844,932	391,605,548	411,670,333	579,734,169	168,063,836	40.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2) 2025년 일반회계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작성성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9조 7,223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5조 2,112억원(15.1%)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7년도 총지출은 일반회계 1조 6,2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 395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1,977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8,650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 재정경제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924,421	1,723,385	1,724,843	1,620,035	△104,808	△6.1
- 일반회계	1,924,421 ²⁾	1,723,385	1,724,843	1,620,035	△104,808	△6.1
기 금	29,781,985	32,579,624	32,786,224	38,102,257	5,316,033	16.2
- 공공자금관리기금	26,774,464	29,275,047	29,481,647	35,039,547	5,557,900	18.9
- 국유재산관리기금	1,067,486	1,329,564	1,329,564	1,197,679	△131,885	△9.9
- 대외경제협력기금	1,940,035	1,975,013	1,975,013	1,865,031	△109,982	△5.6
합 계	31,706,406	34,303,009	34,511,067	39,722,292	5,211,225	15.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2) 2025년 일반회계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676조 3,835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62조 7,769억원(31.7%) 증가하였다.

[2027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2,698,246 ²⁾	496,816,485	513,606,620	676,383,516	162,776,896	31.7
합 계	482,698,246	496,816,485	513,606,620	676,383,516	162,776,896	31.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 2025년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32조 2,025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3조 6,261억원(12.7%) 증가하였다.

[2027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0,848,220 ²⁾	28,616,172	28,576,415	32,202,538	3,626,123	12.7
합 계	30,848,220	28,616,172	28,576,415	32,202,538	3,626,123	12.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 2025년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24조 4,795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44조 7,631억원(9.5%) 감소하였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10조 1,059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4조 4,391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조 576억원, 외국환평형기금 106조 4,865억원, 전략수출금융기금 1조 3,903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333,812,184	328,483,724	328,060,489	310,105,936	△17,954,553	△5.5
국유재산관리기금	3,408,321	3,668,457	3,668,457	4,439,133	770,676	21.0
대외경제협력기금	2,277,146	2,378,966	2,378,966	2,057,556	△321,410	△13.5
외국환평형기금	112,134,565	135,134,651	135,134,651	106,486,542	△28,648,109	△21.2
전략수출금융기금	-	-	-	1,390,311	1,390,311	순증
합 계	451,632,216	469,665,798	469,242,563	424,479,478	△44,763,085	△9.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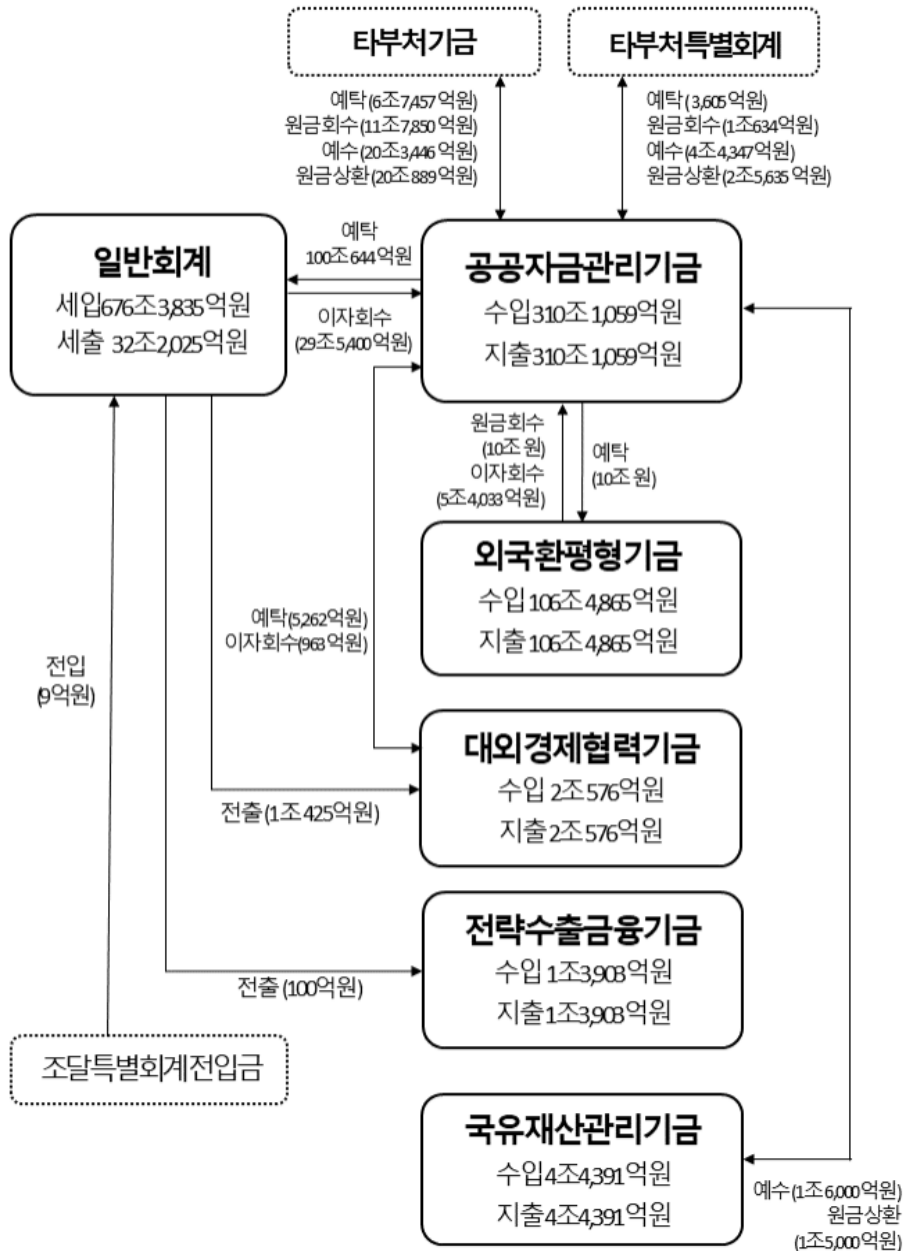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7년 재정경제부 소관 회계·기금 간 주요 재원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425억원,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100억원을 전출하며 조달특별회계로부터 9억원을 전입받는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 100조 644억원, 외국환평형기금에 10조 원, 타부처 특별회계와 기금에 각각 3,605억원, 6조 7,457억원을 예탁하고 타부처 특별회계와 기금으로부터 각각 4조 4,347억원, 20조 3,446억원을 예수한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부처 특별회계와 기금에 각각 2조 5,635억원, 20조 889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조 634억원, 11조 7,85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조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 6,000억원을 예탁하고 1조 5,000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5,262억원을 예수한다.

[재정경제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027년도 재정경제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①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사업의 예산안이 대폭 감액되었고(2026년 1조 638억원→2027년 811억원), ② 한국은행의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중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입으로 수납하는 한국은행 잉여금 사업의 예산안은 크게 증액(2026년 7조 2,691억원→2027년 10조 8,810억원)되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①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출자하는 대미투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9,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②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에서 전년 추경 대비 272억원이 증액된 1,372억원이 편성되었고, ③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발행한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한 예산안 40조 4,196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고채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동시에 일반회계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2027년 만기상환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임에도 조기상환·교환 규모는 감소하였으므로,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 방안과 함께 만기구조 분산을 위한 조기상환·교환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경우,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α 로 제시되었으나 2027년도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재원은 약 1조원 수준에 그치므로, 실제 투자재원의 산정근거와 기존 정책펀드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의 경우, 그간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온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최근 환율 수준을 고려하여 중동 관련 금융지원 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경우, 근거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과 미래대응기금의 수출입은행 출자를 경유한 출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기금 수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의 경우, 법률상 확정되지 않은 지급률과 고발 건수를 기준으로 2027년도 소요를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지급기준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44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4,946억 7,000만원이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신규사업은 12개이며, 이 중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 출연 사업은 전략 수출 금융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초기 재원을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정부 부처 관련 청사 등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사업 20개이다. 신설기금인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대출지원 등 사업으로 총 12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2개)	한-OECD 구조개혁 전략회의	300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2,200
	수출 플러스 지원단 운영	528
	AI 및 클라우드 기반 수출·수주 지원사업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화)	450
	전략수출금융기금 출연	10,000
	전략경제협력지원단 운영	2,423
	디지털화폐 활용을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선 구축(정보화)	318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	500
	국가자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보화)	223
	경제외교 연계 통상전략형 패키지 사업	1,900
	국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746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민생경제국)	35
국유재산관리기금 (20개)	헌법재판소 청사시설 취득	72
	감사원 감사교육원 생활관 별동 증축	891
	행정안전부 정부과천청사 사유지 점유관련 부지 매입	147
	국민권익위원회 기타시설 취득	508
	런던 공공청사 복합개발	77,578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헬스심사센터 신축	204
	질병관리청 본청 청사 별동신축	200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검역소 청사 리모델링	107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청사 별관 재건축	491
	경찰청 서울청 제7기동단 신축	317
	경찰청 경기남부청 제9기동대 신축	128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천안 청사 생활관 별관 신축	1,088
	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재건축	200
	성동경찰서 복합개발	441
	제주통합청사신축	20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복합개발 신축	551
	광명세무서 복합개발 신축	294
	성남세관 복합개발 신축	164
	국토지리정보원 복합개발 신축	100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노후청사 복합개발	50
전략수출금융기금 (12개)	차입금이자상환	12,675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전출	4,598
	통화금융기관예치(수출금융지원계정)	1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수출금융지원계정)	940,887
	인건비(수출금융지원계정)	453
	경상운영비(수출금융지원계정)	200
	기타민간융자지출	400,000
	보증대위변제	1,8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산업생태계지원계정)	6,337
	인건비(산업생태계지원계정)	226
	경상운영비(산업생태계지원계정)	100
	투자조합출자사업	22,935
합 계		1,494,670

자료: 재정경제부(타사업 통폐합·분리에 따른 신규사업 제외)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²⁾을 살펴보면 국고채 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등이 있다.

①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국고채 이자상환 소요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반영되었으며, ②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예상 운용수익 누적액 및 차년도 예상 차입소요 등을 감안하여 반영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은 당초 약정액 수준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나, 26년도 예산이 당초 약정액 대비 크게 감액 반영됨에 따라 증액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④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경제공급망센터의 신설을 위해 증액되었다.

[재정경제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개)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1,773	1,773	2,693	920	51.9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366	366	716	350	95.6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74	74	106	32	43.2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628	628	890	262	41.7
	일시차입금이자상환	110,000	110,000	137,200	27,200	24.7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492	492	2,500	2,008	408.1
	공급망안전화위원회 지원	104	104	423	319	306.7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200,855	200,855	222,360	21,505	10.7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14,143	14,143	50,660	36,517	258.2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국고실)	92	92	154	62	67.4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 재정경제부)	4,782	4,782	6,244	1,462	30.6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기획조정실, 재정경제부)	1,573	1,573	2,058	485	30.8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 재정경제부)	600	600	813	213	35.5
공공자금 관리기금 (3개)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포함)	34,315,479	34,422,079	40,419,598	5,997,519	17.4
	기타경비(총괄계정)	45	45	68	23	51.1
	위탁수수료 (개인투자용국채발행)	4,146	4,146	8,153	4,007	96.6

2) 전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내부거래, 보전지출 제외)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유재산 관리기금 (76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시설 취득	298	298	3,426	3,128	1,04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	1,290	1,290	10,961	9,671	74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8	248	331	83	33.5
	중앙선거정보센터 신축					
	국회 헌정회관 신축	2,664	2,664	9,255	6,591	247.4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11,102	14,482	24,964	10,482	72.4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100	100	351	251	251.0
	대법원전주지법남원지원신축	110	110	387	277	251.8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385	385	9,807	9,422	2,447.3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22,183	18,789	30,954	12,165	64.7
	대법원 창원가정법원 신축	2,410	2,424	8,404	5,980	246.7
	행정안전부 대전지방 합동청사 신축	2,267	2,388	7,436	5,048	211.4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2,178	2,178	2,856	678	31.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	1,908	1,908	3,357	1,449	7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934	934	1,847	913	97.8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리모델링	15,416	14,676	30,950	16,274	110.9
	법무부 검찰청 기타시설 취득	1,075	1,075	11,144	10,069	936.7
	법무부 전주교도소 신축	342	362	10,548	10,186	2,813.8
	법무부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1	1	140	139	13,900.0
	법무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36,587	20,896	53,964	33,068	158.3
	법무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1	1	14,301	14,300	14,300.0
	법무부전주지검남원지청신축	1	1	306	305	30,500.0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	2,367	767	5,576	4,809	627.0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4,280	4,280	25,384	21,104	493.1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증축	1	1	567	566	56,600.0
	법무부 전주 로파크 신축	263	263	346	83	31.6
	법무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 신축	100	-	3,793	3,793	순증
	법무부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전 신축	1	1	629	628	62,800.0
	법무부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신축	100	100	390	290	290.0
	법무부 무주외국인출입국 지원센터 신축	598	598	7,988	7,390	1,235.8
	법무부 태백교정시설 신축	2,500	2,641	10,077	7,436	281.6
	법무부 대검찰청 별관 증축	1	1	701	700	70,000.0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2,742	2,742	8,818	6,076	221.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국립대전현충원 청사 리모델링	156	156	2,747	2,591	1,660.9
	국세청 김해세무서 청사 재건축	3	3	6	3	100.0
	국세청 북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37	37	1,755	1,718	4,643.2
	국세청 북산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10	10	31	21	210.0
	인천세관 청사 신축	2,551	2,551	22,868	20,317	796.4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1	1	237	236	23,600.0
	경찰청 종합교육훈련센터 신축	210	210	420	210	100.0
	경찰청 별관동 증축	622	622	2,377	1,755	282.2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	6,461	6,461	20,980	14,519	224.7
	경찰청 해화경찰서 신축	5,196	2,196	9,144	6,948	316.4
	경찰청 제주 동부경찰서 재건축	1	97	2,418	2,321	2,392.8
	경찰청 충남청 수사동 증축	74	83	257	174	209.6
	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 신축	354	354	799	445	125.7
	경찰청 경남 남해경찰서 신축	80	80	554	474	592.5
	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346	346	565	219	63.3
	서울 동작경찰서 재건축	74	74	170	96	129.7
	경찰청 경기남부 부천원미 경찰서 신축	11	11	382	371	3,372.7
	경찰청 경북청 기동대· 수사부서 통합청사 신축	293	293	2,683	2,390	815.7
	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신축	446	446	2,176	1,730	387.9
	경찰청 대구청 제1기동대 신축	186	191	292	101	52.9
	경찰청 강원 화천경찰서 신축	165	165	244	79	47.9
	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1	1	29	28	2,800.0
	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신축	113	113	820	707	625.7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축	1,400	1,975	3,511	1,536	77.8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91	91	1,467	1,376	1,512.1
	경찰청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4,096	796	9,507	8,711	1,094.3
	경찰청 수사지원 수사교육동 증축	4,617	4,758	10,863	6,105	128.3
	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4,670	4,874	7,809	2,935	60.2
	경찰청 서울양천경찰서 신축	1	-	896	896	순증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	125	125	3,340	3,215	2,572.0
	해양경찰청 경찰서 청사 취득	1,055	1,055	7,413	6,358	602.7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5,967	5,967	10,767	4,800	80.4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 경찰청 입차시설 대체 신축	7,081	7,081	12,612	5,531	78.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정보서비스센터 신축	1,825	1,825	2,737	912	50.0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4,784	4,784	12,774	7,990	167.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재건축	424	424	787	363	85.6
	용인통합청사 신축	1,746	1,746	6,168	4,422	253.3
	창원통합청사 신축	1,304	1,304	8,386	7,082	543.1
	안양세관통합청사 신축	361	361	482	121	33.5
	천안세관 복합개발 신축	589	589	2,175	1,586	269.3
	부산통합관사 신축	692	692	2,488	1,796	259.5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105	105	933	828	788.6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105	105	658	553	526.7
	부천통합청사 신축	100	100	1,573	1,473	1,473.0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105	105	933	828	788.6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105	105	658	553	526.7
	부천통합청사 신축	100	100	1,573	1,473	1,473.0
대외경제 협력기금 (3개)	아프리카차관(용자)(ODA)	622,965	622,965	692,741	69,776	11.2
	중동-CIS차관(용자)(ODA)	163,411	163,411	242,066	78,655	48.1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6,026	6,026	8,236	2,210	36.7
외국환 평형기금 (1개)	국공채 이자상환	1,101,995	1,101,995	1,531,801	429,806	39.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센터의 기능 중복 및 운영비 출연 부적절

가. 현 황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사업¹⁾은 공급망 위협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위협정보 조기 입수·공유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20억 8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1,434	492	492	2,500	2,008	408.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99	152	152	100	△52	△34.2
공급망 안정화 발전 방안 연구 등	436	340	340	-	△340	순감 ¹⁾
경제공급망센터 구축 및 운영	-	-	-	2,400	2,400	순증

주: 1) '공급망 안정화 발전 방안 연구 등' 내역사업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이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급망 안정화 발전방안 연구 등' 사업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의 증액 소요는 '경제공급망센터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24억원)에서 발생하였다.

나. 분석의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 경제공급망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센터의 운영경비까지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7년 동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억 800만원 증액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24억원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 경제공급망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당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사업에서 공급망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성격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공급망센터 출연금 24억원 중 13억 8,000만원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기능개선, 2억원은 공급망 통계자료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8억 2,000만원은 센터 공통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통운영비 중 5억 3,000만원은 상용 소프트웨어·국가용 암호자재 등 시스템 운영·보안 관련 자산취득비이고, 2억 9,000만원은 임차료·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이다. 특히 임차료·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은 정보화시스템 구축·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라기보다 별도 조직의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경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상시적인 조직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경제공급망센터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 편성 세부내역]

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및 기능개선 : - → 1,380백만원(순증)

-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위탁 1식*1,200백만원=1,200백만원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식*80백만원=80백만원
- EWS 고도화 연구 1식*100백만원=100백만원

② 공급망 통계 구축 : - → 200백만원(순증)

- * 공급망 통계 데이터 구입 1식*200백만원=200백만원

③ 공통운영비 : - → 820백만원(순증)

-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14백만원*10개월=140백만원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1식*130백만원=130백만원
- 국가용 암호자재 도입 1식*400백만원=400백만원
- 기타운영비 15백만원*10개월=150백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재정경제부는 센터 정규직 인력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으로 채용하고 그 인건비는 연구원 기관 인건비로 별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동 사업과 연구원 출연금에 나뉘어 편성되므로, 동 사업만으로는 센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별도의 경제공급망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통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이미 2023년 6월부터 KOTRA 내에 공급망센터가 설치되어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공급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KOTRA 센터가 소재·부품·장비 품목 중심이어서 관리 범위가 다르다는 입장이나, 공급망 정보의 수집·분석과 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기능은 중첩된다. 그럼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 별도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조직이나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과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센터 출연금에 포함된 13억 8,000만원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기능개선비와 기존 사업에 별도로 편성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원 간 기능과 비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센터가 다시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집행체계의 적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재정경제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센터를 중간에 두는 방식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2026년 11월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3월 정식 개통과 동시에 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나, 2026년 7월 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0.8%에 그치고 있고 별도의 성과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시 조직을 신설하고 지속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향후 중장기 재정소요 및 성과관리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2029년부터 동 사업에 매년 10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바, 이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가. 현 황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¹⁾은 폐파출소 등 활용도가 낮은 국유건물을 지역 대학생들의 현장 교육모델로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사업기획·설계·시공 등 실무경험을 쌓고 유휴 건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	-	-	500	500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재원으로 수행 중인 ‘나라On’ 사업과 대상 및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별도의 일반회계 사업 신설 타당성과 두 사업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7년도 신규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위탁하여 유휴 국유건물 6개소의 석면해체와 기획·설계·시공 등에 사용하는 구조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캠코로 명시되어 있고 예산 전액이 위탁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재정경제부의 일반회계 사업이지만 실제 집행은 캠코가 담당한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234-305

[2027년도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500\text{백만원} = 6\text{개소(유허 국유건물)} \times 83\text{백만원(석면해체 등 비용(30백만원)} \\ + \text{기획·설계·시공 등 비용(53백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캠프코는 이미 나라On 사업을 통해 유허 국유건물의 개보수를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왔다. 건물의 안전성·기능 회복을 위한 시설 보수·정비(석면 조사·해체 및 방수공사 등)가 그 대상이며, 2026년 8월 말까지 22개소에 총 7억 300만원(개소당 평균 약 3,200만원)이 투입되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을 활용하는 주체가 부담해 왔다.

[동 사업과 나라on 사업의 비교]

구분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나라on
사업대상	유허 국유재산	유허 국유재산
시행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원	일반회계 5억원	캠프코 자체재원
개소당 지원	8,300만원(개보수+인테리어) - 시설 보수와 인테리어 작업을 캠프코와 지역대학 건축학과가 합동 시행	평균 3,200만원(개보수) - 건물 안전성·기능 회복을 위한 시설 보수 정비(석면 조사·해체 및 방수 공사 등)로 캠프코 지원 ※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실적·계획	6개소(2027년)	22개소('26.8월말 누적)
대부로	국고 납입	국고 납입

자료: 재정경제부

두 사업은 사업대상(유허 국유건물), 시행주체(캠프코) 및 대부로 수입의 처리방식(국고 납입)이 동일하며, 차이점은 인테리어 비용 지원 여부와 지역 대학의 참여 여부에 있다. 동 사업의 개소당 사업비 8,300만원은 석면해체 등 3,000만원과 기획·설계·시공 5,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석면해체 등은 캠프코가 나라On 사업에서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온 개보수와 대상이 같고, 금액도 나라On의 개소당 평균 투입액(약 3,2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6개소 기준 1억 8,000

만원은 기존에 관리기관(캠코)이 부담하던 비용이 일반회계로 대체되는 셈이고, 나머지 3억 1,800만원은 종전에 활용 주체가 부담하던 인테리어 비용이 재정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는 동 사업이 일반적인 국유재산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지역 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기획·설계·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교육 사업이라는 점, 나라On 사업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활용수요를 조사하여 사업대상을 정하는 데 비해 동 사업은 대학이 직접 지역주민의 활용수요를 조사하여 사업기획에 반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라On 사업도 캠코가 운영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장을 조성하는 구조인 만큼, 캠코의 기존 개보수 사업에 대학과의 협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의 목적(현장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 없이 별도의 일반회계 사업을 신설할 경우, 실질적인 차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기존에 관리기관과 활용 주체가 각각 부담하던 비용만 재정으로 이전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유허·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와 개보수 이후 발생하는 대부료 수입의 귀속 회계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을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캠코의 자체 개보수 사업이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활용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일반회계 지원의 범위를 이들 사업과 구분되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체적인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정립하고, 선정 단계에서 개보수 이후의 활용계획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폐파출소 등 유허 국유건물을 지역 대학생들이 기획·설계·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교육과 연계하여 청년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허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7년도 사업대상을 보면 6개소 모두 캠코가 관리하는 폐파출소이며, 연면적은 124㎡에서 234㎡까지 분포하고, 준공연도는 1980년에서 1998년 사이이다. 2025년 8월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폐파출소는 전국 234개소로,

동 사업은 이들 재산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캠프코는 동일한 유형의 재산을 대상으로 나라On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어떤 재산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어떤 재산은 동 사업으로 추진하는지에 관한 구분기준과 두 사업의 연도별 대상 규모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캠프코가 자체재원으로 수행하였을 사업이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2027년도 사업 대상 폐파출소 현황]

연번	지역	건물소재지	연면적	준공연도	리모델링시 예상 활용 용도
1	서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31-2	130㎡	1980	지역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교육·돌봄 등 시설 활용 예정
2	서울	서울 노원구 공릉동 441-121	186㎡	1988	
3	경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0-3	137㎡	1990	
4	영남권	대구 동구 신천동 174-1	234㎡	1989	
5	호남권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89-31	210㎡	1998	
6	충청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리 148-3	124㎡	1990	

자료: 재정경제부

개별 사업대상의 선정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업계획은 활용 제약사항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국유재산을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건물의 규모와 노후도, 석면 등 철거가 필요한 시설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대학의 참여 가능성, 청년 대상 교육수요, 개보수 이후의 활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대상 6개소가 ‘연내 대부 또는 행정재산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체 사업대상의 선정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보수 이후의 활용계획 역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대상 6개소의 활용계획은 모두 ‘지역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교육·돌봄 등 시설 활용 예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개소별 용도와 운영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 리모델링의 필요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나라On 사업은 2026년 8월 말까지 조성된 22개소 모두 시니어클럽·자활센터·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 등 운영기관과 사업목적이 정해진 상태에서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캠프코가 지원하지 않는 인테리어 비용은 활용 주체가 부담하는 구

조로 운영되었다. 유휴 국유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상태의 개선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수요와 운영기관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대상 선정 시점에 향후 용도와 운영기관, 필요한 공사 범위 및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캠코 나라On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호 점	개소 시기	지역	사업장 명칭	운영기관 및 사업목적	투입 예산*
1	23.09	부산 사상구	할매손김밥	시니어클럽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21
2	24.11	부산 사하구	명량카레전문점	시니어클럽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28
3	24.11	충북 청주시	우암담빛루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체험공간	25
4	24.12	전북 김제시	역전참쌀과배기	시니어클럽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25
5	24.12	경남 양산시	뫼든On 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및 발달장애인 지원	19
6	25.04	부산 남구	바이탈필(필라테스)	사회적기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31
7	25.04	부산 사상구	청춘어묵우동	시니어클럽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31
8	25.09	전북 전주시	볼로카페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25
9	25.09	전북 임실군	알파 임실점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35
10	25.10	전북 군산시	카페보네346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32
11	25.09	충북 청주시	살로메레코드하우스	사회적기업 및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	27
12	25.09	강원 태백시	포그니빨래방	시니어클럽 및 어르신일자리 창출	61
13	25.11	전북 익산시	다운스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32
14	26.03	인천 남동구	마음지구대	지자체 및 지역 복지인프라 확충	22
15	25.12	전북 남원시	청년제과점 동파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29
16	25.12	경남 창원시	수호대식당	사회적협동조합 및 지역일자리 창출	37
17	25.12	경기도 수원시	울천마을 복합센터	지자체 및 지역 복지인프라 확충	34
18	25.12	세종 조치원읍	카페내일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44
19	25.12	서울 관악구	큰따옴표	사회적기업 및 고령가구 소통공간 조성	40
20	26.04	서울 서대문구	충정문화지대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19
21	26.07	광주 광산구	월곡함께마루	지자체 및 이주민 교류공간 조성	56
22	26.08	전북 남원시	매머드익스프레스	자활센터 및 자활일자리 창출	30

주: *투입 예산은 나라On 사업장 조성 개보수공사 비용(석면조사·해체 및 방수공사 등)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6개소에 개소당 8,3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 건물의 연면적은 최소 124㎡에서 최대 234㎡로 약 1.9배의 차이가 있어 ㎡당 사업비는 약 35만원에서 67만원까지 편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건물별 상태와 공사 범위를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대학생의 참여와 관련하여 법령상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체계 및 책임관계, 참여 대학 선정 방안 등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참여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실습 목적 참여 활동과 법령상 자격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설계·공사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법」상 일정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석면해체·제거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2027년도 대상 6개소 중 2개소(연면적 234㎡, 210㎡)는 기준인 200㎡를 초과하여 시공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현황조사, 이용수요 파악, 공간활용 아이디어 제시 등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되, 법정 설계 및 전문공사는 관련 자격·등록을 갖춘 전문가와 업체가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이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시공상 하자 발생 시 책임관계와 안전관리체계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노후 폐파출소의 개보수 과정에서 석면해체나 전기·설비공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의 현장 참여에 필요한 안전교육·보험 등의 조치와 사고 발생 시 대학·캠코·시공업체 등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소당 8,300만원의 산출내역에는 안전교육이나 보험 관련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도 대상 6개소의 사업계획에는 참여 대학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학의 참여가 동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대학 선정 시기와 방식,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사업¹⁾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	-	-	2,200	2,200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AI, 양자, 바이오,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차세대 전략산업의 제품·서비스가 실증 및 상용화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 책임 등으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보험사 컨소시엄이 기업별 위험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으로, 2027년 예산안에 일반용역비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첨단기술 보험료 지원사업 구조(안)]

- ☐ **(지원대상)** AI, 양자, 바이오,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반도체, 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제품·서비스
- * 대상산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심사 결과, ①시제품 생산단계~상용화 초기 단계에 해당하면서, ②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서비스
- ☐ **(지원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갱신)
- * 시장 성숙, 데이터 축적으로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3년 이전에도 지원 종료
- ☐ **(지원범위)** 보험료의 최대 80%(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 ☐ **(보장내용)** 제3자 배상책임 + 시제품 자체 물적손해
- ☐ **(보장한도)** 기업-보험사간 협의 하에 결정
- * 실증특례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 사망(1.5억), 부상(3천만), 후유장애(1.5억), 대물 1건당 10억원
- ☐ **(사업 운영주체)** 기술보증기금 + 보험사 컨소시엄(공모)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전문성 및 기술기업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기보가 기업 신청 접수, 기술평가 등 실시
- (보험사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험사 컨소시엄이 선정된 대상 기업에 맞춤형 보험을 설계·제공
- ☐ **(데이터 관리)** 보험개발원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기업의 사고 데이터 축적, 충분한 데이터 축적시 이를 활용한 보험료율을 보험사에 제공

〈기존 보험상품과의 비교〉

	첨단제품·서비스 보험	규제실증특례 보험	실외이동로봇 보험
대상	첨단기술 적용된 모든 제품·서비스	규제실증특례 한정	실외이동로봇 한정
단계	실증 + 상용화	실증	상용화
보장내용	제3자 배상책임 + 시제품 자체 물적손해	제3자 배상책임	제3자 배상책임
보장한도	기업-보험사간 협의	상한 有 * 대인 사망(1.5억), 부상(3천만), 후유장애(1.5억), 대물 1건당 10억원	상한 有 * 사망 및 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 대물 10억원
재정지원	보험료의 최대 80%	보험료의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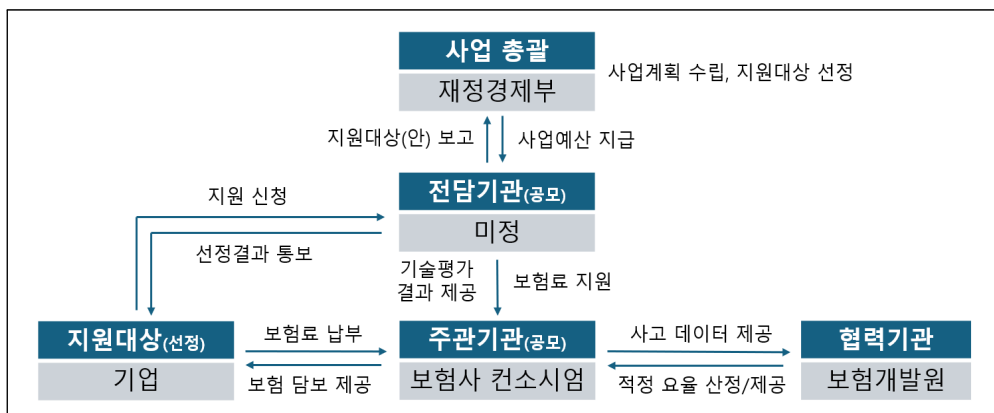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나. 분석의견

첫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보험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재정경제부가 별도의 보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AI·양자·바이오·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차세대 전략기술 제품·서비스의 실증 및 초기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제품의 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첨단기술 제품은 사고위험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부족하여 보험상품의 설계와 보험료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곧바로 재정경제부가 별도의 보험지원 사업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재정경제부

동 사업의 세부 기능을 보면 보험상품의 설계·운영은 보험회사가 담당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고자료의 축적은 보험개발원이 담당하며, 지원기업의 기술평가와 지원대상 선정은 공모로 선정하는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이다.²⁾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관으로서 기술평가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존

2) 당초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재정경제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전담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첫째에는 기술보증기금에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 변경 이후에도 재정경제부가 직접적인 집행체계를 보유하기보다는 기존 소관부처의 기관과 민간 보험회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 만큼, 재정경제부가 별도 사업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전략기술 분야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과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집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도 시범사업 이후 필요시 소관부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기존 중소기업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부처의 사업을 활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예산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에 운영 중인 정책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과의 대상·목적상 중복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기업의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조·판매 제품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9개 광역지자체, 납입 보험료의 20~30% 환급).³⁾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70%를 지원받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해 보험료가 지원되는 보험은 시제품 제작 이후 실증 및 초기 상용화 단계의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정에서 활용되는 책임보험과도 정책 대상이 유사하다. 또한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등 제품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도 정책 목적의 일부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첨단기술’이라는 대상의 특수성만으로 기존 보험제도와 별개의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으로 일반 손해보험 대비 20~28% 낮은 보험료로 생산물의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하며,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납입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사 목적의 정책보험 비교]

구분	규제실증특례 보험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실외이동로봇 보험
소관부처	규제특례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운영), 지자체(보험료 지원)	산업통상부
대상	규제실증특례 한정	중소기업 제조·판매 제품	실외이동로봇 한정
단계	실증	상용화(제조·유통·판매)	상용화
보장내용	제3자 배상책임	제3자 신체·재산 손해 (생산물배상책임)	제3자 배상책임
보장한도	상한 有 * 대인 사망(1.5억), 부상(3천만), 후유장해(1.5억, 대물 12만당 10억원)	가입 조건별 선택 (확인 필요)	상한 有 * 사망 및 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 대물 10억원
재정지원	보험료의 70%	9개 광역지자체 보험료 20~30% 환급	-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더욱이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보험료의 80%, 중견기업에 70%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기존 제도에서도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기업이 여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중복 지원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의 범위, 지원대상 기업 및 보험상품의 차이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규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보험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별도의 시장실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목적은 초기 상용화 단계의 첨단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고위험 정보가 부족하여 보험회사가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신규 사업을 별도로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의 규제실증특례 책임보험이나 제품·제조물 관련 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기 상용화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 기존 정책보험의 대상에 전략기술 제품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을 통해 사고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향후 보험료 산정에 활용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

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보험료 지원 자체인지, 아니면 초기 시장에서 부족한 사고 위험 데이터를 축적하여 민간 보험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후자가 핵심이라면 기존 보험사업에서 축적되는 사고자료와 연계하거나 별도의 데이터 축적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실증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인지, 기존 PL보험으로는 첨단기술 제품의 특수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인지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기능 중복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규제실증특례 보험과 실외이동로봇 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보장한도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규제실증특례 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이처럼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가입이 의무인 실외이동로봇 보험에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동 사업의 첨단제품·서비스 보험은 가입 의무나 보장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보험임에도 비교 대상인 규제실증특례 보험(70%)보다 높은 최대 8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제품 자체의 물적손해는 제3자 보호라는 책임 보험의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 과정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정지원 대상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구체적인 수요조사와 보험상품 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규모와 예산을 산정한 만큼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예산 산출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7년에 기술평가 400개 기업, 보험료 지원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사업계획만으로는 400개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수요와 이 중 200개 기업이 실제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원대상 산업과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 참여 보험회사 등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도 향후 부처 간 협의와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므로, 실제 사업 착수 전에 어느 정도의 수요와 보험가입 규모가 발생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기술보증기금이 첨단기술 제품 기업 54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454개 기업(84%)이 보험료 일부 지원 시 가입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하나, 동 설문은 예산안 편성 이후 실시된 것이고 가입 의향이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한 제품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하되, 사고자료 축적으로 보험료가 적정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3년 이전에도 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첨단기술 제품의 사고는 발생빈도가 낮으면서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제품별로 최대 3년간 축적되는 보험가입 자료만으로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산정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보험가입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지원 종료 이후 기업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면서도 계속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충분한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민간 보험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업의 단계적 지원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료 지원 예산은 기업당 보험료 1,000만원×200개 기업×지원율 80%로 16억원이 산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술평가 4억원(100만원×400개 기업)과 위험공유기금 도입방안 연구 2억원을 합하여 총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80%, 중견기업은 70%를 지원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보험료 지원액 산정에서는 200개 기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80%를 적용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예상 비중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한 보험상품과 지원대상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개 기업 및 400개 기술평가라는 물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전 수요조사와 유사사업의 가입실적 등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수요 산출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술평가 4억원(100만원×400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설명자료상 산출이므로, 공모로 선정하는 전담기관 방식에 맞게 단가와 물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은 위험공유기금 도입방안 연구 2억원을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하였으나, 보험료 지원 16억원과 기술평가 4억원은 모두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은 기업이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고, 기술평가는 공모로 선정하는 전담기관에 지원대상 선정 업무를 위탁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보험료 지원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결정·정산·반환 등의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동 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민간이전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을 용역비로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근거 법령을 마련한 후 사업의 실질에 맞게 보험료 지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기술평가는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비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제외교 연계 통상전략형 패키지 지원 사업¹⁾은 정상외교 및 부총리급 경험 채널과 연계하여 통상·공급망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시장조사·마케팅·법률·표준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경제외교 연계 통상전략형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제외교 연계 통상전략형 패키지 지원	-	-	1,900	1,900	순증
경협·통상환경 전략분석·조사	-	-	200	200	순증
경제외교 연계 패키지 지원	-	-	1,500	1,500	순증
글로벌 통상 법률 자문	-	-	200	200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경협·통상환경 전략분석·조사와 경제외교 연계 패키지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민간경상보조(320-01)로, 글로벌 통상 법률 자문은 재정경제부가 일반용역비(210-14)로 직접 수행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상 국가는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 및 협정 등 성과 사례가 많고 우리 기업의 후속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동남아(베트남·인도네시아), 서남아(인도), 중남미(브라질), 중앙아(몽골)가 검토되고 있다. 선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규제·표준·수출금융 등을 결합한 융합 마케팅 지원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231-311

[2027년도 사업 추진일정(안)]

단 계	시 기	내 용
①	1~2월	대상국 및 과제 선정
②	2~3월	국가별 경험환경 진단 및 추진방안 수립
③	4~10월	융합 마케팅 지원 행사 등 본사업 수행
④	11~12월	평가 및 결과 환류

주: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수행기관인 KOTRA와 협의 중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그간 정상외교 계기 MOU가 형식적 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후속 이행은 소관 부처별 추진 의지에 따라 편차가 있었더라,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동 사업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사업과 전략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정상외교 MOU는 대부분 분야별 소관 부처가 체결 주체라는 점에서 부처 간 이행 편차를 점검·조정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업 취지는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행환경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는 국가·권역별 경험과제의 이행환경을 사전에 진단·분석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일정(안)에 따르면 대상국은 예산 확정 이후인 2027년 1~2월에 선정되고 경험환경 진단과 추진방안 수립은 2~3월에 이루어지므로,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MOU의 이행을 위해 무엇을 지원할지가 예산안 편성 시점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사업의 핵심인 패키지 지원 15억원은 진단 이전에 5개 권역에 평균 3억원씩 동일하게 배분되어 있는바, 진단 결과 도출된 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산출근거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산출근거는 ‘5개 전략 권역’을 기준으로 하나 현재 검토 중인 후보는 4개 권역 5개국이며, 국가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었다. 재정경제부는 KOTRA의 과거 정상순방 행사 개최 및 정책자문 관련 사업 등을 참고하여 책정하였다는 입장이나 해당 사업의 집행단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가당 연 1회 이상 행사를 개최하는 계획을 고려하면 행사 1회당 3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셈이어서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²⁾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이행환경 사전진단을 통해 대상국, 대상 MOU, 세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소요를 차등 산정하는 한편 MOU 이행률, 후속사업 발굴·연계 건수 등 사업 기능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대상국 선정기준, 세부 지원항목별 산출내역, 성과지표(안) 등을 바탕으로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경제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재정경제부(EDCF 포함) ODA 예산은 2조 2,916억원으로 전체 ODA의 42.1%를 차지한다.³⁾ 또한 협력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동 사업이 수행하려는 이행환경 진단과 후속사업 발굴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EDCF 사업진행컨설팅 중 사업준비컨설팅은 초기 사업발굴을 위한 기술협력, 정책자문, 역량강화, 유망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액은 194억 3,600만원이며, KSP 역시 협력국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해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현재 16개국에 운영 중인 EDCF 현지사무소가 동 사업의 후보국 5개국 중 4개국에 설치되어 있다.

[동 사업 후보국의 EDCF 현지사무소 설치 현황]

권역	후보국	EDCF 현지사무소(파견인력)
동남아	베트남	○ (3명)
동남아	인도네시아	○ (2명)
서남아	인도	○ (2명)
중앙아	몽골	○ (1명)
중남미	브라질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을 바탕으로 작성

2) 재정경제부는 실제 배정·지출 금액은 사업내용, 과업별 난이도,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개발도상국과의 MOU 후속 이행은 인프라 등 개발협력사업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EDCF 차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행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환경 사전진단 단계에서 EDCF 현지사무소와 KSP 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전진단 소요를 절감해야 한다. 또한 발굴된 후속 사업 중 개발협력 성격의 과제는 EDCF 사업준비컨설팅이나 차관사업으로 연계하고 동 사업은 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에 집중하는 등 부처 내 사업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다만 ODA 재원을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과 연계할 때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 비구속화 권고 등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EDCF 현지 거점이 없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브라질 등은 연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대상국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 시장 여건을 고려한 국고채 발행·상환 관리의 효율화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고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총괄계정, 융자계정, 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된다.¹⁾ 공자기금(총괄계정)²⁾은 국고채 발행 또는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재원을 필요로 하는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222조 8,461억원을 조달하고, 이를 주요 재원으로 일반회계에 100조 644억원을 예탁하며, 기존 국고채의 만기상환 등을 위한 원금상환에 126조 5,691억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정부는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을 적립(전출)하고, 그 가운데 12조 5,000억원을 일반회계에 다시 전출함으로써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의 축소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7년도 일반회계-미래대응기금 간 전입·전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계획안(B)	계획안 편성 취지
일반회계 → 미래대응기금	158,472,040	2027년도 예상 추가세수의 미래대응기금 적립
미래대응기금 → 일반회계	12,500,000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 여유재원 일부를 전출하여 일반회계 적자분 보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융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등의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차관계정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

2) 이하의 공자기금은 공자기금(총괄계정)을 의미한다.

5-1.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국고채 발행의 연계 운용 필요

가. 현 황

국공채 발행수입¹⁾은 공자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개인투자용 국채 포함) 발행 수입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2조 8,060억원 감액된 222조 8,461억원이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예탁²⁾은 일반회계의 세입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4조 9,677억원 감액된 100조 64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발행 및 일반회계 예탁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공채 발행수입	227,645,238	225,652,149	225,652,149	222,846,128	△2,806,021	△1.2
일반회계 예탁	113,657,000	108,304,108	105,032,111	100,064,447	△4,967,664	△4.7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내국세 등 정부의 세입은 매년 변화하나, 그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세수오차의 문제를 넘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과 국고채 발행을 통해 세입과 세출의 시기·규모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추가세수, 초과세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안정화(총괄계정) 및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4대 사업계정) 기능을 모두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81-811

2)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8520-851

기존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외에 대규모 추가세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총괄계정) 신설을 전제로 편성된 2027년도 예산안은 재원 운용 체계가 매우 복잡해진 상황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므로, 본 분석은 정부안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제로 한다.

나. 분석의견

추가세수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약 100조원의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동시에 일반회계가 유사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구조는 최근 국고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의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적자국채 발행량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회계가 재원 부족분만큼 공자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의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 전년 추경 대비 4조 227억원 증액된 29조 5,4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일반회계의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8,636,671	25,558,448	25,517,233	29,539,964	4,022,731	15.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비록 이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상환분으로서 내부거래이므로 총지출에는 계상되지 아니하나, 내국세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사업성 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공자기금도 일반회계 예탁을 위한 국고

채 발행을 전제하므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계획안에 따른 여유재원 운용 규모는 총괄계정을 포함하여 104조 3,614억원³⁾에 달하는데, 이는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규모
총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000,000
총괄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5,861,383
지방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00,000
교육·인재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00,000
합계		104,361,38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리하면, 2027년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으로부터 100조 644억원을 예수하며, 공자기금은 그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같은 해 미래대응기금은 103조 3,614억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정부 전체로 보면 국고채 금리로 차입한 자금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그보다 낮은 수익률로 예치할 경우, 그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회계·미래대응기금·공자기금 간 자금흐름(2027년)]

(단위: 조원)

흐름	금액	성격
① 일반회계 → 미래대응기금	158.5	추가세수 적립(전출)
② 미래대응기금 → 일반회계	12.5	재전출
③ 미래대응기금 → 비통화금융기관	103.4	국고 밖 예치
④ 미래대응기금 → 공자기금	1.0	예탁
⑤ 공자기금 → 일반회계	100.1	예탁(국고채 발행으로 조달)
⑥ 일반회계 → 공자기금	29.5	예수금에 대한 이자

자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미래대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1조원 포함

또한 국고채 조달비용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25년 2.66%에서 2026년 1~9월 평균 3.76%로 1.10%p 높아졌고, 월별로는 6월(4.02%)에 4%를 넘어선 뒤 9월에는 4.2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률은 2025년 267%에서 2026년 1~9월 246%로 21%p 낮아져 시장의 소화 여력도 약해지고 있다. 특히 9월에는 조달금리가 전월(4.10%) 대비 0.15%p 오르고 응찰률은 243%로 전월(251%) 대비 8%p 하락하여, 금리 상승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최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응찰률]

(단위: %)

구분	2025	2026.1~9	2026.1	2026.3	2026.6	2026.8	2026.9
평균조달금리	2.66	3.76	3.18	3.50	4.02	4.10	4.25
평균응찰률	267	246	259	230	243	251	243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2026.10.)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인 약 3.8%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즉, 최근 국고채 조달금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운용수익률이 예상되는데, 재정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⁴⁾

물론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를 곧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여유재원 및 미래투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 효과로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고채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⁵⁾, 미국·한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조원을 상회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일부를 일반회계에 추가로 전출하거나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현재 계획보다 확대함으로써, 공자기금의 신규 국고채 발행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국고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비용은 다른 기금에 비해 낮은 편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미래대응기금 계획안은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아 정부의 목표수익률이 예산상 확인되지 않는다.

5) 2026년 9월 21일 국고채 10년물의 유통금리는 4.457%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육박하였다.

[주요 기금의 공자기금 예탁비율(2027년 계획안)]

(단위: 억원, %)

기 금	여유자금 운용	공자기금 예탁	예탁비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122	8,000	98.5
국유재산관리기금	16,415	16,000	97.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0,303	50,500	71.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9,019	40,000	58.0
미래대응기금	1,043,614	10,000	1.0

자료: 각 기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여유재원을 국고채 발행 축소에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일반회계 전출 확대와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반회계 전출 확대는 적자국채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방안이나 기금 재원이 소진되는 한계가 있고, 공자기금 예탁 확대는 기금의 자산으로 남아 필요할 때 회수할 수 있어 재정안정화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다.

[여유재원의 국고채 발행 축소 연계 방안 비교]

구 분	일반회계 전출 확대	공자기금 예탁 확대
국고채 발행	전출액만큼 적자국채 감소	예수금이 조달재원을 대체하여 발행 감소
일반회계 이자부담	감소	변동 없음(공자기금 차입 유지)
기금 재원	소진	유지(회수 가능)
순비용(역마진)	해소	해소(이자가 정부 내부에서 이전)
유의점	세수결손 대비 완충 재원 축소	대규모 회수 시 재조달 필요 → 예탁 만기·회수시기 조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를 들어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외한 기금 여유재원 중 30조원을 전출 또는 예탁하여 국고채 발행을 줄이면, 편성금리 4.1%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2,30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 중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여 국고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 국고채 만기 집중에 대응한 조기상환·교환 계획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국고채 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이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9조 3,260억원 증액된 126조 5,691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원금상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고채 원금상환	114,491,448	116,217,993	117,243,133	126,569,149	9,326,016	8.0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고채 원금상환은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를 상환하는 만기상환과 만기 도래 전에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조기상환(바이백) 및 신규 발행 국고채와 기 발행 국고채를 맞바꾸는 교환으로 구성된다.¹⁾

조기상환(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인 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 발행(차환발행)한 자금으로 실시되며,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다. 두 번째는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만큼 국고채 잔액이 감소하므로 ‘국고채 순상환’이라고도 한다.

국고채 교환이란 정부가 신규 발행한 국고채를 기발행 국고채와 맞바꾸는 제도로 만기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 발행된 지표물 국고채의 물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재정경제부, 「국채백서 2025」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7년도 원금상환 규모는 만기상환 110.7조원과 조기상환·교환 15.9조원으로 구성된다. 전년 대비 만기상환은 20.2조원 늘어나는 반면, 조기상환·교환은 10.9조원 줄어든다.

[2027년도 국고채 원금상환 구성]

(단위: 조원, %)

구분		2026 당초	2026 수정(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원금상환		116.3	117.3	126.6	9.3	7.9
	만기상환	90.5	90.5	110.7	20.2	22.3
	조기상환·교환	25.8	26.8	15.9	△10.9	△40.7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27년 국고채 만기상환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이고 특정 월과 단기물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만기 분산 수단인 조기상환·교환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만큼, 조기상환·교환 규모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상 만기구조 분산 방침에 부합하도록 조기상환·교환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 만기상환액은 2017~2022년 35조~56조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86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7년에는 110조 7,00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사이 2배 이상이 되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50조~2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만기 물량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2027년에는 2022년 발행 5년물, 2024년 발행 3년물, 2025년 발행 2년물의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한다.

이러한 만기 물량은 분기 말월(3·6·9·12월)에 만기가 설정되는 구조 내에서도 특정 월에 크게 몰려 있다. 2027년 만기상환액 중 3월 만기분이 34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7년 월평균 국고채 발행 규모(18조 6,000억원)의 약 1.9배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9월 만기분이 8조원(48.2%), 3월 만기분이 6조 7,000억원(24.1%) 증가하여 특정 월의 차환 부담이 더욱 커졌다.

[2026~2027년 월별 국고채 만기상환액]

(단위: 조원, %)

구 분	3월	6월	9월	12월	계
2026년	27.8	21.0	16.6	25.2	90.6
2027년(계획)	34.5	25.2	24.6	26.4	110.7
증감률	24.1	20.0	48.2	4.8	22.2
2027년 비중	31.2	22.8	22.2	23.8	10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물별로 보면 단기물 비중이 높다. 2027년 만기상환액 중 2·3·5년물이 82조 6,000억원으로 74.5%를 차지하고, 특히 2025년에 발행된 2년물 27조 6,000억원은 2025년 말 2년물 발행잔액(35조 9,000억원)의 76.9%에 해당하며, 이 물량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고채 발행이 2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늘어난 단기물 발행이 2년 만에 차환 부담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연물별 국고채 만기상환액]

(단위: 조원, %)

연 물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계
발행연도	2025	2024	2022	2017	2007	
만기상환액	27.6	28.6	26.4	23.0	5.2	110.8
비중	24.9	25.8	23.8	20.8	4.7	100.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기상환은 만기 도래 전의 국고채를 미리 매입하여 특정 연도나 특정 월에 몰린 만기를 분산하는 수단이므로, 만기 물량이 커질수록 그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기상환·교환 규모는 2017년 이후 연 14조~29조원 범위에 머물러 만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만기상환액 대비 조기상환·교환 비율은 2019년 61.6%에서 2025년 21.2%로 낮아졌다. 2027년에는 조기상환·교환 규모가 전년(2026년 수정계획) 26조 8,000억원에서 15조 9,000억원으로 40.7% 감소하여 이 비율은 14.4%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7~2027년 국고채 만기상환 및 조기상환·교환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만기상환(A)	51.7	47.9	35.4	45.1	45.4	56.2	86.0	85.7	94.0	90.5	110.7
조기상환· 교환(B)	19.3	29.3	21.8	14.1	18.2	18.6	19.3	22.8	19.9	26.8	15.9
· 바이백	17.6	27.1	20.2	12.0	14.9	15.2	15.7	17.0	15.4	-	-
· 교환	1.7	2.2	1.6	2.1	3.3	3.4	3.6	5.8	4.5	-	-
B/A	37.3	61.2	61.6	31.3	40.1	33.1	22.4	26.6	21.2	29.6	14.4

주: 2017~2025년은 실적, 2026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 2027년은 계획안 기준이며 2026·2027년은 바이백과 교환을 구분하지 않은 합산액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2027년 조기상환·교환 15조 9,000억원에는 교환이 포함되어 있다. 교환은 신규 발행과 기존물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현금 상환을 수반하지 않는데, 최근 교환 규모(2024년 5조 8,000억원, 2025년 4조 5,000억원)를 감안하면 2027년의 순수 바이백은 10조~11조원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기인 2020년(12조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상환이 이처럼 축소된 것은 만기구조 관리보다 국고채 총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순증, 만기상환, 조기상환·교환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만기상환은 기발행 국고채에 따라, 순증은 재정적자 규모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기적으로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하기 쉬운 항목은 조기상환·교환이다.

2027년에는 전년 대비 만기상환이 20조 2,000억원 늘었으나 순증이 12조 1,000억원, 조기상환·교환이 10조 9,000억원 줄어 총발행은 2조 9,000억원 감소하였는데, 만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조기상환·교환 축소가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 구성의 변화]

(단위: 조원)

구 분	2026 수정(A)	2027 계획안(B)	증감(B-A)
국고채 발행	225.7	222.8	△2.9
· 순증	108.4	96.3	△12.1
· 만기상환	90.5	110.7	20.2
· 조기상환·교환	26.8	15.9	△10.9

주: 단수 차이로 구성항목의 합계와 국고채 발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는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이 국고채 관리방향으로 제시한 ‘적정 조기상환을 통한 만기구조 분산’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만기가 가장 크게 물리는 해에 조기상환을 40% 넘게 줄이면 줄인 만큼의 물량을 당해 연도 시장금리로 차환해야 한다.

국고채 월별 평균조달금리가 2026년 6월에 4%를 넘어선 뒤 9월 4.25%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만기물 중 2·3·5년물(82조 6,000억원)만 편성금리 4.1%로 차환 되더라도 발행 당시 가중평균금리와의 차이(약 1.1%p)로 연간 약 9,000억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월처럼 월평균 발행 규모를 크게 웃도는 만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사전 조달에 따른 보유비용이 늘어나고 재정증권·한국은행 일시차입 수요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조기상환·교환 15조 9,000억원의 산정근거와 대상 종목의 만기연도를 제시하고, 바이백과 교환을 구분한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하는 한편, 3월 등 만기 집중 월에 대한 대응계획과 2026년 발행분을 반영한 2028년 이후 만기 도래 일정을 함께 마련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상 만기구조 분산 방침이 연도별 조기상환 계획으로 구체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공채 발행수입¹⁾은 공자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개인투자용 국채 포함) 발행 수입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2조 8,060억원 감액된 22조 8,461억원이 편성되었다.

국공채 원금상환²⁾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이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9조 3,260억원 증액된 126조 5,691억원이 편성되었다.

국고채이자상환³⁾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5조 9,975억원 증액된 40조 4,196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공채 발행수입	227,645,238	225,652,149	225,652,149	222,846,128	△2,806,021	△1.2
국고채 원금상환	114,491,448	116,217,993	117,243,133	126,569,149	9,326,016	8.0
국고채 이자상환	30,273,698	34,315,479	34,422,079	40,419,598	5,997,519	17.4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위 3개 사업은 국고채 발행 수입과 원리금 상환액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고채 외에 ‘개인투자용 국채’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를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장기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81-811

2)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9862-981

3)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80

일반 국민들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여, 2024년 6월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발행되었으나, 장기물에 대한 수요 부족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년물이 추가로 발행되기 시작했고, 2026년 4월부터는 3년물(이표채, 복리채)도 신설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2억원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물, 5년물,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나. 분석의견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발행수입과 원금·이자 상환이 일반 국고채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성과와 비용을 예·결산서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수입은 일반 국고채 발행수입 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 상환 역시 일반 국고채의 상환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 이후 점차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7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매입한도 확대, 연물의 다양화, 가산금리 인상,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

입 허용 등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음에도, 실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실적이나 이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등은 예·결산 서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2026년부터 높은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으며,⁴⁾ 그 비용 역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추이]

(단위: %)

발행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2026.01	3.245	0.300	3.545	3.410	1.000	4.410	3.365	1.250	4.615
2026.02	3.385	0.200	3.585	3.520	1.000	4.520	3.565	1.100	4.665
2026.03	3.390	0.200	3.590	3.710	1.000	4.710	3.580	1.280	4.860
2026.04	3.735	0.100	3.835	3.695	1.050	4.745	3.840	1.100	4.940
2026.05	3.530	0.300	3.830	3.715	1.050	4.765	3.610	1.300	4.910
2026.06	3.940	0.100	4.040	4.295	0.500	4.795	4.145	0.800	4.945
2026.07	4.045	0.050	4.095	4.115	0.600	4.715	4.300	0.650	4.950
2026.08	4.165	0.050	4.215	4.255	0.500	4.755	4.530	0.400	4.930
2026.09	4.085	0.100	4.185	4.415	0.350	4.765	4.570	0.350	4.920
2026.10	4.275	0.050	4.325	4.510	0.280	4.790	4.520	0.430	4.950

주: 1. 2025년 12월에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2. 2026년 4월부터 3년물(가산금리 X) 발행을 시작하였으나, 분석의 편의상 제외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처럼 별도의 정책 목적과 재정부담이 수반됨에도 일반 국고채 발행 및 상환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어 제도 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사업의 실적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비중이 연간 국고채 발행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고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개인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목적을 갖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다만, 표면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정부는 2025년 말 발표했던 가산금리 1%p 이상 부여 방안을 2026년 6월 이후 사실상 철회하였다.

당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실익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4월부터 3년물에 대해서는 이표채 방식을 도입하였고, 중도환매 규모도 2026년 기준 매월 약 300~500억원대에 달한다는 점 역시 별도 세부사업 편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 운용에 소요되는 위탁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도 2027년부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월별·상품별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추이]

(단위: 억원)

연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합계
2026.01	-	200	137	337
2026.02	-	221	115	336
2026.03	-	205	87	292
2026.04	85	234	57	376
2026.05	109	185	56	350
2026.06	158	209	53	420
2026.07	202	148	43	393
2026.08	149	164	53	366
2026.09	246	219	55	520
2026.10	236	166	47	449
합계	1,185	1,951	703	3,839

주: 1. 2024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

2.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므로 5년물은 2026년 4월부터 중도환매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따라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과 실적, 중도환매 규모, 제도개선의 필요성, 가산금리 수준의 적절성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평가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이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7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배경은 세 가지이다.

첫째,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을 계기로 해외 국부펀드·연기금의 공동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받아낼 ‘신뢰가능한 투자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 속에서 전략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 국부펀드로서 ①외국에서, ②외화로, ③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성장둔화로 부(富)의 축적기에서 정체기로 이행하면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 수입·자산의 일부를 재정지출 대신 투자로 축적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역할을 ①전략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앵커 투자자로서 글로벌 자본 유치의 마중물, ②회수 압력을 받지 않는 장기 인내자본 공급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③수입을 지분 형태로 전 국민이 소유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을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세대간 공정성 확보, ④전략기술의 해외유출과 적대적 M&A 방어 등 경제안보 및 외환·자산시장 안전판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국부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운영과 투자의 개시가 가능하고 그간 국부펀드로서 축적한 KIC의 네트워크 및 위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국부펀드 출범을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발의된 2건의 개정안¹⁾이 2026년 10월 기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연내 의결되더라도 전략투자계정은 2027년 1분기 이후에나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의안번호 제2221706호(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1855호(오기형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설립목적에 국부의 관리·축적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기존 위탁자산 운용업무를 위탁계정으로 구분하는 한편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문
목적·계정	설립목적에 국부의 관리·축적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추가,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 구분	안 제1조·제2조·제31조의2
전략산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핵심기술, 사회기반시설, 경제안보품목, 금융업 및 이와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 등	안 제2조제3호
운용방식	기업·집합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대출·보증 등 신용공여, 운용업무 위탁	안 제31조의3
재원	정부 현금·현물출자, 출연금, 물납재산, 차입금, 채권 발행자금, 기부금, 운용수익 (단, 오기형의원안은 채권 발행 규정 없음)	안 제31조의4
지배구조	이사 7인 이내, 운영위원 15인 이내(민간위원 9인),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투자이사추천위원회 신설	안 제10조·제15조·제16조·제18조의2
적용 특례	자본금 정관 위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출자법인 공공기관운영법 미적용, 운용 계약의 계약절차 미적용, 특별법상 정부지분 간주	안 제5조·제38조·제38조의2
시행	공포 후 3개월(자본금, 현물출자 특례 등은 공포 즉시)	부칙 제1조

자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1. 국부펀드 재원구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재정경제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¹⁾ 사업에 5,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한국투자공사(KIC)에 출자하여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 16조원을 국부펀드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배당수입을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일반회계 세입 중 정부출자수입²⁾이 전년대비 3,923억원 감액된 1조 578억원이 편성되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감액된 출자수입 중 약 3,775억원이 국부펀드로의 공공기관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 감소분이다.

[2027년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재원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	500,000	500,000	순증
정부출자수입	1,450,094	1,057,801	△392,293	△27.1

주: 정부출자수입 감액분 3,923억원 중 3,775억원이 국부펀드 이관분으로 예정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의 현금·현물출자와 출연금, 현물출자된 물납재산 외에 차입금,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기부금 및 운용수익 등을 규정하고 있다.³⁾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5-340

2) 코드: 일반회계 52-521

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자(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정부의 출연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으로 수납한 재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
4.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분석의견

첫째,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의 규모는 이보다 크게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α 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6조원 이상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의 현물출자, 약 4조원은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2027년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5,000억원의 현금출자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 지분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국부펀드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영권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므로, 16조원이라는 현물출자 규모 자체만으로 국부펀드의 향후 현금성 투자재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부펀드 초기자본금 마련 방안]

② [초기자본금] 20조원 + α 규모

❶ (공공기관 주식) 정부보유 공공기관 주식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약 16조원 이상 출자

※ 국부펀드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아닌 배당을 목적으로 지분 보유

❷ (물납주식)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출자

❸ (추가재원) 초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 등 지속 검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7.31.),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오히려 실제 투자재원 측면에서는 국부펀드가 현물출자받은 공공기관 지분에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수입의 규모가 중요하다. 해당 지분은 매각을 통한 원금 회수보

5.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현금, 증권 및 그 밖의 재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다는 배당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며, 개정안도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⁴⁾ 이에 국부펀드가 실제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은 현금출자 5,000억원에 더하여 현물출자받은 공공기관 지분의 배당수입⁵⁾과 물납주식의 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이라는 자본금 규모 보다는 실제로 어느 기관의 지분을 얼마만큼 출자받는지, 해당 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국부펀드의 초기 투자여력을 판단하는데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납주식 역시 약 4조원이 초기 자본금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가 즉시 투자재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물납주식의 경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의 매각대금이 현금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물납주식의 평가액보다는 연도별 매각 가능 규모와 예상 매각대금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소액지분 등은 시장에서의 처분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명목상 자본금과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7년도 국부펀드의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을 현금출자와 공공기관 배당금 등을 포함한 약 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조원 수준의 재원이 어떠한 공공기관 지분의 배당수입과 물납주식 매각대금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지, 그리고 각 재원의 예상 규모와 산정기준이 무엇인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분의 구체적인 출자대상과 출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향후 배당수입 역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조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 규모와 실제 투자에 활용 가능한 현금성 재원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③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5) 다만, 배당수입은 국부펀드 출범과 지분 이전, 배당 기준일 등을 고려하면 2028년도부터 국부펀드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초기 재원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0조원+ α ’라는 자본금 규모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별 현물출자 대상 주식 및 지분을, 해당 지분에서 예상되는 연도별 배당수입, 물납주식의 매각계획 및 예상 매각대금, 현금출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투자 가능한 재원의 규모와 투자계획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부펀드의 장기 투자를 위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과 출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차입과 채권 발행을 재원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수입·자산을 투자로 축적하여 미래세대와 공유한다는 국부펀드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및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현금출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정부가 보유한 국가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매년 반복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기는 어렵고, 현금출자 역시 2027년 5,000억원 이후의 추가 출자 규모와 재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도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부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는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재정수요와 경쟁하게 되며, 재정여건이 악화된 시기에는 필요한 투자재원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공사가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금과 채권 발행자금을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⁶⁾ 그런데 정부는 국부펀드의 도입 배경으로 정부 수입·자산의 일부를 재정지출 대신 투자로 축적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겠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차입으로 지분을 취득하면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할 뿐 국가의 순자산은 늘어

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② 공사는 제31조의3에 따른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지 않으며, 운용수익률이 조달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만 국부가 증가한다. 반대로 수익률이 조달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 손실과 원리금 상환 부담은 미래세대에 이전되므로, 미래세대를 위한 축적이라는 도입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해외 국부펀드도 대체로 원자재 수출대금, 외환보유액, 재정흑자 등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과 같은 저축형 국부펀드는 원칙적으로 차입을 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PIF), 싱가포르 테마섹 등 일부 전략형 국부펀드가 채권을 발행하기는 하나, 이들은 대규모 보유자산과 안정적인 배당·자원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략투자계정의 2027년 현금성 투자재원이 약 1조원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처분이 제한된 공공기관 주식이므로, 차입금의 상환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정안은 차입·채권 발행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발행 한도나 부채비율 등 총량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개별 발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만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보증 없는 차입은 국회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다. 투자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여 출자하는 것이 조달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도 공사가 직접 차입하도록 하는 경우, 그 부채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통계와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차입 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전략투자계정의 부채 증가는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공사 전체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출자, 공공기관 지분의 배당수입, 투자수익 및 자산 매각대금 등 재원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추가 출자의 필요성·규모·재원 및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과 출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과 채권 발행은 허용하지 않고 일시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단기차입만 한도를 정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차입을 허용하더라도 발행 한도 또는 부채비율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차입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달금리를 고려한 목표수익률과 상환재원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부펀드는 기부금도 재원으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나 기부금 접수 절차의 투명성, 재원으로서의 실효성 및 대가성 편익 제공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현금, 증권 등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기부자에 대해서는 ‘Wall of Honor’ 현액,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부펀드 재원 마련 계획]

① [재원] 정부 출자 100% + 기부금 + 운용수익 등

- ① (기본 재원) 정부로부터의 출자 및 출연금
- ② (기부금)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현금, 증권 등도 재원으로 활용
 - 기부자에 대해서는 ‘Wall of Honor’ 현액, 출입국 우대, 국립공원 및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 등 지원 검토
- ③ (운용수익 등) 현물출자 받은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및 물납증권 매각대금,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7.31.),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다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7)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8) 역시 자발적 기탁도 법령 근거 없이는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에 개정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⁹⁾ 그러나 개정안은 기탁의 접수만 허용할 뿐 같은 조 제1항의 모집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도입방안과 같이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제시하며 기부를 권유하는 방식이 모집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법은 국가가 출자한 법인이 자발적 기탁을 예외적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접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탁 금품의 접수 기준과 심의·공개 절차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접수 절차와 별개로, 민간 기부금을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부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시적인 민간 기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기부금이 국부펀드의 장기적인 투자재원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와 함께, 국가가 조성·운용하는 국부펀드에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이 국부펀드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부자에 대한 대가성 지원을 검토할 경우 명예적 예우와 행정서비스상 편익을 구분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명예적 예우와 함께 출입국, 국립공원 및 공영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부자 명단 등재나 감사패와 같은 명예적 예우는 기부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겠으나, 특정 기부자에게 출입국이나 공공시설 이용 등 행정서비스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및 공공서비스의 이용원칙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편익이 기부금의 대가로 인식될 경우 국부펀드에 대한 기부가 사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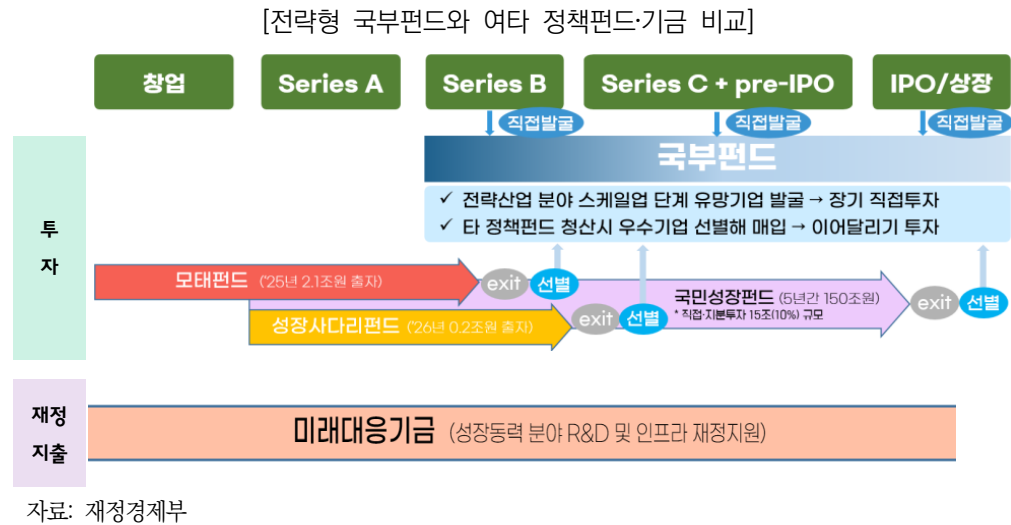
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⑦ 공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상 특정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으므로, 제공 가능한 혜택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부자 우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출입국·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익을 제공하려면 각 소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7-2. 기존 정책펀드·정책금융과의 역할 중복 우려

가. 현 황

정부는 기존의 정책펀드·기금은 해외전용이거나 만기·청산이 존재하므로, 국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내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전략형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정책펀드와 투자대상 및 투자방식이 중복될 수 있어 기존 펀드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펀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통합·조정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방산·에너지·우주 등 전략산업과 해외 공급망 기업 등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7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전략산업 및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투자대상 측면에

서 중복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개정안은 전략산업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분야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경제안보품목, 금융업, 이들 분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까지 포괄하도록 정의하고 있어,¹⁾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기존 정책펀드와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략형 국부펀드 투자대상]

① [투자대상] 국내 전략산업 + 기간산업 + 해외공급망 등

- ① (전략산업) 투자기간이 길더라도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
 - *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포괄적으로 규정
- ② (기간산업)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 분야 인프라 +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 추진
- ③ (해외공급망) 국내 밸류체인 보완을 위한 해외 공급망기업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
- ④ (기타) 국부 창출·축적이 가능한 다양한 자산운용방안 검토·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7.31.),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3.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분야
- 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을 건설·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속한 분야
- 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 및 위기품목이 속한 분야
- 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금융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속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포함된 분야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
- 차.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1조원(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7년 정부 출자 규모가 1조 3,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인공지능·딥테크·스케일업·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등 개별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운용되고 있어, 전략형 국부펀드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분야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 분야가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있다.

투자단계 측면에서도 역할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 이후 후속투자, 이른바 ‘이어달리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정책펀드가 초기·성장단계에서 투자한 기업에 전략형 국부펀드가 후속투자를 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투자대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일 기업에 여러 정책펀드가 단계별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책목적과 투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정책펀드와 달리 한국투자공사 내에 별도의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지분투자와 해외 공동투자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로 기업에 대한 출자·투자뿐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와 대출·채무보증 등 신용공여까지 허용하고 있다.²⁾

이는 ‘대출·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라는 도입방안의 설명과 다르며, 펀드 출자는 모태펀드 등의 간접투자 방식과, 신용공여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기능과 각각 겹친다. 더욱이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펀드 역시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간접투자와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투자규모를

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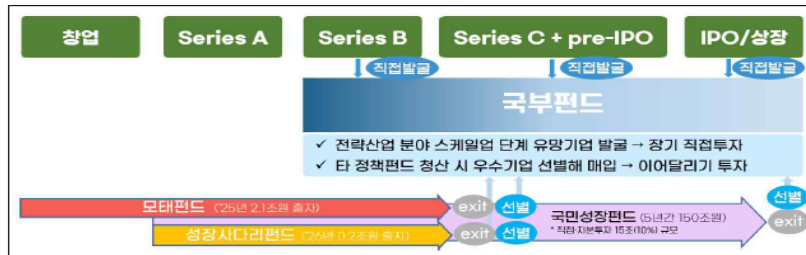
1. 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자·투자
3. 자산의 매매 및 임대
4.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5. ~ 10. (생략)

확대하거나 투자기간을 장기화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국부펀드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부펀드만의 차별화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략형 국부펀드의 정책지원 연계방안]

③ [정책지원 등과 연계] 상호보완 + 투자효율 극대화

- ❶ (공동투자) 국내 정책펀드, 글로벌 투자자본 등과 공동투자도 추진
 - (정책펀드)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들과 협업 투자 + 펀드 청산시 우수기업 선별하여 이어달리기 투자 추진
 - (글로벌자본)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과 공동투자



- ❷ (정책금융)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협업 지원 병행
- ❸ (인증·우대) 국부펀드 투자기업 등에 대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우수기업 인증제도나 우대혜택 부여도 검토
 - * (예) R&D 가점, 정책대출, 기술특례 상장,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등
- ❹ (공급망확보 등)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업 등 통해 국내 전략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협업하여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등도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6.7.31.),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따라서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투자대상·투자단계·투자방식 등을 기존 정책펀드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 등과의 공동투자 및 후속투자 과정에서 각 펀드의 역할과 투자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전략투자계정의 운용방식을 도입방안에서 제시한 직접 지분투자 중심으로 한정하고, 펀드 출자와 신용공여의 허용 범위는 기존 정책펀드·정책금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정책펀드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의 국부펀드를 통해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존 펀드 간 기능조정이나 통합을 통해 정책금융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래는 정부가 제시한 국부펀드와 기타 정책펀드 등과의 차이이다.

[전략형 국부펀드 및 정책펀드·기금 간 비교표]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한미전략투자기금	KIC	
				가정위탁계정	가정전략투자계정
존속기한	30년(연장 가능)	20년	20년	없음	없음
목적	창업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발전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한미전략투자MOU」 이행 및 양국간 협력강화	정부와 한국은행 외환의 효율적 운용	미래 위한 국부축적,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법적근거	벤처투자법	한국산업은행법	한미전략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조직	한국벤처투자	정부펀드추진단+민간사무국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투자공사(KIC)
재원	정부(재정) + 회수재원	산은채(75조) + 민간(75조)	위탁자산(정부+한은), 기금채, 공사출연금 등	정부+한은 * 정부한은 보유 외환보유고	정부 출자 * 정부 100% 출자·출연
투자규모	17.4조원 ('26.2월)	150조원('26~'30) * 200조원으로 확대 계획	대미투자 \$2,000억 조선협력투자 \$1,500억	346.3조원 ('25末)	-
투자대상	창업중소벤처기업 19개 계정 (청년, 소부장, 문화, 관광, 스포츠, 특허, 과기, 보건, 환경, 해양, 국토혁신 등)	전략산업기업, 전후방기업, 관련 인프라 12개 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 항공우주 추가 계획	대미투자 프로젝트 美 전략산업 (반도체, 우편물,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 등) 美 조선업	해외 채권, 주식 (일부 대체투자)	전략산업기업 (성장단계 이후), 기간산업, 해외공급망 등 ① 전략산업 (국부펀드 12개 산업 + 항공·우주·원전·양자 등) ② 기간산업 (금융인프라 등) ③ 경제안보 산업 (해외공급망 등)
운용방식	간접투자 (자펀드 운용)	직접투자(10%) 간접투자(23.3%) 인프라투자(33.3%), 대출(33.3%)	투자 보증, 대출 등	직접투자(약 70%), 간접투자(약 30%)	직접투자 중심
직접투자 기준	-	전략 투자 (정책성 > 수익성)	-	포트폴리오 투자 (안정적 수익 증대)	전략 투자 (정책성 < 수익성)
투자결정	출자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투심위 설치)	사업관리위+운영위 → 한미협의 → 국회보고	위탁투자위원회 (5억\$ ↑ 대체투자는 운영위)	전략투자위원회 (산하에 투자자문위 + 리스크관리위 설치)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불가 (LP는 GP 업무집행 관여 불가)	의결권 불행사 원칙 (자금회수 지장 등 예외시에만 행사 가능)	-	전문기관에 위임	의결권 행사
회수재원 활용	재투자	[민간투자] 민간귀속 [첨단산업] 첨단산업 국고귀속	기금 귀속	재투자	국고 귀속(정부배당 등) + 재투자

자료: 재정경제부

7-3.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등 통제장치 마련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에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현물출자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약 16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¹⁾에 근거하여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안과 달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현물출자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정부의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법 시행 전이라도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1조원으로 정해진 공사의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법상 정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법인에 대해서는 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이들 규정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²⁾

나. 분석의견

전략형 국부펀드에 대한 현물출자 계획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관한 입법부의 감독 기능 및 행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출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8조제11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된 재산은 출자한 날부터 전략투자계정의 자산으로 본다.

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입법부에서 그 출자의 필요성, 출자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검토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국회는 결산보고서 제출 이후에 현물출자 규모·방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물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특정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현금출자와 자본확충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출자와는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물출자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어 그 규모의 측면에서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각각 2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조원을 현물출자하였고, 2025년에도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현물출자하였다. 만약 정부안에 따라 국부펀드에 16조원 이상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 규모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예정이다.

[2021~2025년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출자대상기관	현물출자내역	
		출자재산	출자가액
2021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주식	6,500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철도운영자산	1,80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건물 4개동)	403
202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민자시설(건물 3개동)	425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공사 주식	5,000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5,650
2023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4,35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공항시설)	288
	주식회사에스알	도로공사 주식	3,590
2024	한국산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한국수출입은행	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공사 주식	40,000
2025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공사 주식	5,650

자료: 연도별 결산 부속서류(현물출자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현물출자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근거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정부 보유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관의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국유재산의 구성만 변동될 뿐 현금의 수입·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국부펀드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계획은 출자 대상이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던 자산이면서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 지분이 이전되면 그 배당은 국부펀드 재원으로 귀속되어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에서 사라지게 된다. 즉, 일회성 감소가 아니라 자산이 이전된 이후 매년 반복되는 항구적 감소이며, 적자재정하에서는 그만큼 국채 발행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물출자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현행법은 공사의 자본금을 1조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어 이를 넘는 정부 출자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였으나, 개정안은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추가 출자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현물출자 특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운영위원회 확대와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가 갖추어지기 전에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이 공사로 이전될 수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현물출자의 대상·규모·평가방법에 관한 기준이나 국회 보고·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³⁾

첫째, 현물출자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입법부가 적정 수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60조는 ①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②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출자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신설되면, 이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대하여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에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물출자의 지원기준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

3) 국회예산정책처(2024.6),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더라도 특정 기관에만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다른 기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출자를 받은 기관과 다른 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동의 절차의 신설을 통하여 국회 차원에서 현물출자 대상의 선정과 기준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물출자는 사안에 따라 현금출자의 필요성과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출자 기준의 명확화는 나아가 현금출자의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매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처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현물출자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유재산의 처분과 달리 사전에 현물출자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26. 8.)에서도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및 국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등이 포함되었을 뿐,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사전동의 절차가 신설되면 현물출자 계획 등 관련 정보가 국회 회의와 심의를 통하여 공개되고 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재정정보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4.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투자공사(KIC)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외국환평형기금)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 2025년 말 기준 총운용자산은 2,320억달러(약 333조원)이며, 최근 10년(2016~2025년) 연환산 수익률은 7.07%이다. 자산 구성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이 78.1%,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헤지펀드 등 대체자산이 21.9%이다.

정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에서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KIC 안에 전략투자계정을 두기로 하였다. 정부는 기존 KIC를 외환보유액 운용 목적의 “저축형” 국부펀드로 보고, 외국에서·외화로·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전략투자계정은 이 세 가지 제약을 모두 벗어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존 KIC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 비교]

구분	기존 KIC(위탁계정)	전략투자계정
투자지역	해외	국내 전략산업 중심 (해외 공급망기업 포함)
통화	외화	원화
투자방식	재무적투자자, 전통자산 중심	직접 지분투자
경영참여	해당없음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 행사 원칙(SI)
운용기간	위탁기간	만기·청산시점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개정안은 전략투자계정 운용을 위하여 공사의 이사 정원과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정수를 늘리고, 투자 관련 임원·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개정안의 투자 관련 임원·위원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정원	이사 5인 이내 운영위원 12인 이내(민간위원 6인)	이사 7인 이내 운영위원 15인 이내(민간위원 9인)
투자담당 이사 자격	일정 규모 이상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 업무 10년 이상	(위탁계정) 현행과 같음 (전략투자계정) 투자업무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 근무경력 합산 10년 이상
투자담당 이사 선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 심사·계약 조건 협의 후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
민간위원 자격	금융·투자 분야 연구, 투자업무 또는 금융·투자 감사업무 10년 이상	전략산업 분야 연구·근무·감사 경력을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
민간위원 추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위원 1인 추가

자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9.3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전략투자계정이 요구하는 국내 직접투자와 경영참여 역량은 KIC가 축적해 온 해외 재무적 투자 역량과 성격이 달라, 출자에 앞서 전문성 보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KIC의 운용자산은 해외 상장 주식·채권이 대부분이며, 대체자산도 해외 운용사 펀드 출자나 공동투자 위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략투자계정은 국내 비상장 기업을 직접 발굴·실사하고, 투자 후에는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KIC가 외국에서·외화로·재무적 투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략투자계정 설치의 배경으로 들었으나, 이는 곧 KIC가 그간 운용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영역에 해당한다.

참고로, 감사원은 2015년 감사에서 KIC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원자재 분야에 직접투자하여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어, 운용 경험이 없는 분야의 직접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역량 차이를 보완하기보다 투자 관련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행법은 투자담당 이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 등에

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에 대해 이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되도록 하고 있어,¹⁾ 문언상 투자업무 경력이 없더라도 전략산업 분야 근무경력만으로 자격을 갖추 수 있다.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투자업무 또는 전략산업 분야 경력으로 확대되고,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추가된다. 이는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를 보강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이사가 전략산업 분야 근무경력만 갖고 있을 경우 투자 전문성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만큼, 투자담당이사 추천시 투자와 전략산업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C 내부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정부가 함께 제시한 방화벽 설계와도 충돌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의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기존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 사이에 엄격한 방화벽을 두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화벽이 엄격할수록 기존 인력·리서치·운용시스템을 전략투자계정에 활용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신설 조직과 다르지 않게 되고, 반대로 인력과 정보를 공유하면 방화벽의 실효성이 약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KIC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부펀드로서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글로벌 네트워크·평판 등을 축적해왔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KIC 내 전략형 국부펀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사전산 등 공통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기관 신설에 비해 효율적으로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략투자계정의 투자 및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임원·직원 등은 별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충원함으로써, 각 계정간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KIC가 보유한 경험·네트워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략투자계정은 상당 부분 새로운 인력이나 외부 운용사를 통해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계획과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 KIC는 공

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공사의 위탁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공사의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공기관으로서 정원·총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어, 민간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는 국내 직접투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불분명하다. 개정안은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도록 하여 투자담당 이사의 보상 수준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투자를 수행할 실무 인력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다. KIC는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SMA)을 통해 전략산업 간접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²⁾ 전략투자계정도 외부위탁에 의존하게 된다면 직접 지분투자 와 경영참여를 원칙으로 한 설계 취지와 맞지 않게 된다. 개정안 역시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의 범위나 한도는 정하지 않았고, 자산운용을 위한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³⁾ 감사원이 2015년 감사에서 KIC의 위탁운용사 부당 선정 사례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위탁운용사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KIC 운영비는 위탁수수료로 충당되므로, 공통비 배분 기준이 없으면 외국환평형기금이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전략투자계정의 초기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공통비의 배분 기준은 정하지 않았고, 법 시행 전 조직·인력 및 회계체계 구축 등 준비행위(부칙 제2조)에 드는 비용을 어느 계정이 부담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전략투자계정의 조직·정원과 보수체계, 기존 인력의 활용 범위, 외부위탁 비중과 그 기준, 국내 기업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이해충돌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시하고,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에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업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략투자계정 운영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존 위탁계정과 공통비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수수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 및 KIC의 내부 규정 제·개정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2026년 7월 국회 업무보고 참고

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②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⑪ 공사가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자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현 황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¹⁾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5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300,000	-	-	150,000	150,000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한 자본 확충 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편성되어 온 사업이므로, 이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1976년 이후 일반회계에서 계속 편성되어 왔으며,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수출입은행이 BIS 자기 자본비율 자체 목표(13%)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의 매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가 이루어져 왔다. 2025년에도 본예산 1,000억원과 제1회 추경 증액분 2,000억원을 합한 3,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액 집행되었다. 즉, 동 사업은 특정 시기나 목적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5-310

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을 상시적으로 보강하는 일반적 출자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 1,5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성장 동력계정으로 이관하였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동 계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략산업을 비롯한 수출입·해외투자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입은행 본연의 기능이다. 이는 2027년도에 새로 부여된 기능이 아니므로, 출자 목적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원의 편성 위치만 옮겨야 할 이 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출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으로 편입되어 대출·보증 등 전체 여신의 손실을 흡수하는 데 쓰일 뿐, 전략산업 지원 용도로 따로 구분되어 관 리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전략산업을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관이 가능하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도 모두 이관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 간 사업 구분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2027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 산출 내역]

○ 일반출자금(460-01) : 150,000백만원

가. (중동 관련) 75,000백만원

- 공급목표 약 6.1조원* × 수은 평균 대출·보증 손실률 3.7% × 정부분담 1/3
* 약 40억달러 × 1,490원/달러(기준환율)

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25,000백만원

- 12조원 공급에 따른 정부 손실 분담분 中 '25년 추경 출자 초과분
- 정부 손실 분담률은 50%에서 1/3로 하향 조정

다. (전략수출금융기금(수출금융지원계정) 보증 프로그램 운영) 50,000백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계획안에 따른 세부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① 중동 재건 관련 금융 지원 750억원, ②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확대 지원 250억원, ③ 전략수출금융기금 보증 프로그램 운영 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은 2025년 미국발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적·경기대응적 지원이

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정의 설치 목적과 연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중동 재건 관련 출자의 경우에도 미래대응 및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보증 프로그램 운영 소요 500억원은 수출입은행을 거쳐 별도 기금에 출연되는 재원이어서,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이라는 동 사업의 본래 목적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실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는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동 사업의 적정 편성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의 중동 관련 금융지원 소요는 기준환율 1,490원/달러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나, 최근 환율 수준과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적용환율이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도 출자 소요 1,500억원 중 750억원을 중동 재건 관련 금융지원 소요로 편성하였다. 산출방식은 공급목표 약 40억달러를 기준환율 1,490원으로 환산한 금액(약 6.1조원)에 수출입은행의 평균 대출·보증 손실률(3.7%)과 정부 분담비율(1/3)을 곱한 것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2026년 상반기 한때 1,560원 부근까지 상승하였다가 7월부터 빠르게 하락하여, 8월 19일 1,397.7원, 9월 9일에는 1,336.1원에 마감하였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최근 환율은 정부가 적용한 기준환율보다 15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물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환율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최근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1,490원/달러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2024~2026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예컨대 최근 외환시장 전문가 설문에서 제시된 2027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의 중심값인 1,350원/달러를 적용할 경우, 중동 관련 출자 소요는 약 68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약 70억원 감소하며, 전망 분포의 하단과 상단(1,300~1,400원/달러)을 적용하더라도 약 654억~705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약 45억~96억원 적다.²⁾ 최근 증가 수준인 1,336원/달러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672억원으로 산정되어 약 78억원의 조정 여지가 있다.³⁾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이 원화인 반면 여신 등 자산의 상당 부분이 외화로 구성되어 있어,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정부가 2025년 추경 당시 수출입은행의 높은 외화자산 비중을 추가 출자의 근거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2) 한국경제신문이 2026년 9월 외환시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2027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00~1,350원 8명, 1,350~1,400원 8명, 1,200원대 4명, 1,400~1,450원 1명으로 응답자의 4분의 3이 1,300~1,400원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정부 기준환율(1,490원/달러) 이상을 전망한 응답은 없었다(한국경제, 2026.9.16.). 증권사 전망도 NH투자증권 2026년 4분기 평균 1,380원, 신영증권 2027년 1,300원 안팎 등으로 기준환율을 하회한다(파이낸셜뉴스, 2026.9.7.).

3) 정부 편성액 750억원을 기준환율(1,490원/달러) 대비 적용환율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 산출내역의 '약 40억불 × 1,490원/달러 = 약 6.1조원'은 실제로는 약 5.96조원으로, 6.1조원에 해당하는 공급목표는 약 41억달러이다.

환율 하락은 동일한 BIS비율 유지에 필요한 자본확충 소요를 줄이는 요인으로서 출자 규모 재검토 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도 외환시장 여건과 향후 추세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정부는 “환율 변동에 맞춰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책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환율 여건과 향후 전망을 반영하여 중등 관련 금융지원 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4) 2027년도 예산안의 예산편성 기준환율은 1,490원/달러로 설정된 바, 다른 외화편성 사업의 경우에도 환율 수준을 고려하여 원화 환산 금액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의 목적 명확화 및 편성계정·지원방식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¹⁾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수당(500억원) 및 충인건비 인센티브(500억원)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	-	100,000	100,000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방안은 정책환경 변화, 기관 신설과 외연 중심의 팽창, 기관 간 연계 부족 등을 배경으로 들고,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유형별 주요 내용]

유형	감축기관 수	주요 내용
전략적 구조개혁	15	발전 5사 통합((가칭)한국발전), 4개 항만공사 통합((가칭)한국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통합, 석탄공사 청산, 코레일·SR 통합, LH 기능 분리, 전시·관람기관 부처 단위 통합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	정원 100명 이상 기관 중 유사기관 통합(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등), 해외사무소 일원화(K-마루)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	모회사-자회사 수직 통합, 정원 100명 미만 자회사 간 수평 통합(금융 공공기관 시설관리 자회사 등),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 통합
계	109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2026.9.3.)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432-300

추진방안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승계 보장(임원 제외), 통폐합 전후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보수체계 운영, 한시 정액 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 복리후생 검토, 경영평가 인센티브의 편람 반영을 제시하였다. 동 사업의 특별수당은 ‘한시 정액 수당’에, 총인건비 인센티브는 통폐합 기관 간 보수격차 해소를 위한 ‘보수체계 운영’에 각각 해당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계획]

- ◇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 검토
 - (고용)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은 고용승계를 보장
 - (보수)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 운영
 - (복리후생) 기관별 복지수준과 기능개혁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한시 정액 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 검토
 - (경영평가)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2026.9.3.)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통폐합에 따른 직원 처우 보전인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인지 목적이 불분명하고 어느 경우에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편성과 정합성이 낮으므로,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편성 계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밝힌 지원 취지는 통폐합에 따른 직원 처우 보전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대상기관 직원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이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동 사업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주도성장’ 프로그램 중 ‘지역성장지원’ 단위사업에 편성되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지원 및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과 같은 단위사업에 묶여 있다.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으로 보더라도 보전하려는 손실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추진방안은 이미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처우가 저하

되지 않는 보수체계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두 내역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 특별수당은 손실 보전이라기보다 통합 수용에 대한 일회성 위로·유인에 가깝고, 총인건비 인센티브는 통합기관 내 보수를 높은 쪽으로 맞추는 통합비용으로서 매년 지속되는 성격이다. 어느 쪽이든 기능개혁의 목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민만족도 향상,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에 지역균형발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상 기관도 소재지와 무관하게 선정되었으므로 지방계정에 편성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이라면 지원 대상은 통합으로 본사나 근무지가 지방으로 옮겨지는 직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은 통폐합 대상 186개 기관 전체이며, 이전 여부와 관계없는 수도권 소재 기관이나 흡수통합의 존속 기관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지원은 지방계정의 지방이전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동 사업의 목적이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인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폐합 처우 보전이라면 공공기관 관리 업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지방이전 보상이라면 지원 대상을 이전 직원으로 한정하고 기존 지방이전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의 대상·기간·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이 먼저 편성되었으므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 어렵다.

동 사업의 계획안에 따르면, 특별수당과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각각 500억원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특별수당의 소요재원과 지급단가, 지급방식을 앞으로 주무부처와 개별기관 간 협의 및 노조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총인건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대상기관 대부분이 재정경제부의 총인건비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관계로, 2026년 10월 말에나 인센티브안과 소요 재원 규모가 정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예산의 집행 시기도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즉, 재정경제부는 2027년 지급 대상을 ‘2026~2027년에 기능개혁 이행을 완료한 기관’으로 제시하였으나, 기능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개별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10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① 2027년 이행완료 예정 기관·인원과 지급 요건, ② 특별수당의 단가 및 지급 기간, ③ 총인건비 인센티브의 배분 기준(보수격차 산정 방법), ④ 2028년 이후 연도별 소요와 재원 부담 주체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기존 총인건비 관리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는 재정경제부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관리하는 재정경제부가 별도의 국고보조를 통해 특정 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체계 밖에서 인건비를 증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수격차 해소는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등 기존 관리체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기능개혁 대상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개, 명, %)

유형	기관 수	정원	비중(정원)
공기업	10	63,087	49.0
준정부기관	11	11,262	8.7
기타공공기관	89	30,974	24.1
지정유보기관	73	23,177	18.0
지정제외기관	3	216	0.2
계	186	128,716	100.0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대상 정원의 49.0%는 요금 및 사업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공기업 인력이며, 18.0%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유보기관 인력이다. 자체수입 기관의 통합비용은 통합에 따른 효율화 이익과 함께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지정유보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지원 근거로 삼기 어렵다.

아울러 동 사업은 기능개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및 조직 개편 시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향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시마다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중 보상의 소지도 있으므로, 국고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¹⁾은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시 몰수금·과징금 등 국고 귀속액 등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민간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3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	-	-	31,300	31,300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지난 2026년 5월 발표한 정부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참고로, 현행 물가안정법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²⁾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제보와 함께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과 대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010-354

2) 의안번호 제2221276호(오기형의원 대표발의)

[물가안정법 개정안 중 신고포상금 관련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과징금 대상	최고가격 초과 거래	최고가격 초과 거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안 제7조의2①)
과징금 수준	실제 거래가격 - 최고가격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의 2배 이내 -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40억원 이하
신고포상금	없음	- 신고·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지급기준·대상·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7조의3)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현행 유지
시행·적용		-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과징금: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 포상금: 시행 이후 신고·제보부터(부칙 제1조~제3조)

자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76호)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제 과징금 부과액과 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027년도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편성액을 실제 지급소요에 맞게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시행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의 적발실적을 기초로 2027년도 포상금 소요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187건 중 고발된 2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건당 40억원의 과징금에 30%의 포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26건에 총 313억원(제도 홍보비 1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산출근거]

□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 (2027요구) 31,200백만원, 신규

- (요구) 매점매석행위 등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시 몰수금·과징금 등 국고 귀속액 등의 일정 비율을 상한없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신규사업
*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5.21일) 발표 및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산출) 26회 x 1,200백만원
 - 지급회수: 26회
*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26.4.14~ '26.7.14) 위반 적발건수 187회 중 고발 26회
 - 지급액: 4,000백만원(과징금) x 30%(포상금지급률)

□ 운영비 : (2027요구) 100백만원, 신규

- (요구) 포상금 지급 업무를 위한 홍보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 (산출) 포상금제도 홍보비 10회 x 10백만원

자료: 기획예산처

그러나 개정안은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40억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사건에 법정 상한액을 적용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정안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대상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적용한 30%의 지급률과 별도의 지급한도 없는 산정방식은 법률상 확정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지급률과 지급한도 등을 반영하여 소요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발된 26건을 포상금 지급건수로 산정하였으나, 고발은 형사절차를 위한 조치이고 포상금은 신고·제보와 함께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 26건이 민간의 신고·제보에 따라 적발된 것인지, 신고자가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 포상금 지급대상 건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도에 313억원을 집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가능 규모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신고포상금은 시행 이후 이루어진 신고·제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2026년 말에 공포되는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2027년 중반 이후가 될 수 있으며, 2026년에 발생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포상금 지급까지는 매점매석금지 품목 지정, 위반행위 발생 및 신고·조사,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과징금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거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징수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몰수금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313억원의 포상금이 해당 연도에 모두 지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7년도에는 제도 시행시기와 실제 지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이 가능한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시행 이후 지급실적과 신고건수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소요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신고장려기금 자체도 2027년도에 상당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인 만큼, 실제 지급소요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기금 내 유휴재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금지 등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연간 예상 지급건수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포상금 제도와의 중복지급 방지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점매석 행위가 다른 법률 위반행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의 신고포상금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과 지급대상이 중복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는 이러한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법률 심사 또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동일한 신고·증거자료에 대하여 여러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기준과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도 홍보를 위해 1억원의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으나, 법률 시행 및 대통령령 제정 이전에는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홍보비의 집행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제도의 도입 이후 신고건수, 신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액, 포상금 지급액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 2011년 3월 제26조의2¹⁾의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2012년 설치되었으며,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과거 부처별 추진에 따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기금의 연중 운용평잔은 2조 2,227억 5,100만원으로, 이 중 단기자산이 2,423억 2,900만원(10.9%), 중장기자산이 1조 9,804억 2,200만원(89.1%)이다. 기금의 자산운용은 대부분 연기금투자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최근 자산운용 성과는 양호한 수준이다. 2025년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은 11.13%로 기준수익률을 0.71%p 상회하였고,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실현수익률 10.06%로 기준수익률 9.18%보다 0.88%p 높은 수준이다.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자산운용 성과는 전체적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주요 현황]

구분	주요 내용
2025년 자산운용수익률	11.13%
2026.8월말 기준 운용수익률	기준 9.18%, 실현 10.06%
2025년 운용평잔	2조 2,228억원
단기/중·장기 자산 비중	단기 2,423억원(10.9%) / 중·장기 1조 9,804억원(89.1%)
2026년 위험자산 비중	28.9%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및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러한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보다 적극화할 계획이다.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르면, 최근 국유재산 매각체계 개편 등으로 기금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업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편성 규모도 2022년 1조 372억원에서 2026년 1조 2,96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을 고도화하여 기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이 일부 사업성기금²⁾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³⁾ 아울러 연기금투자자를 활용하여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대체투자 등 신규 운용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현장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개선계획]

구분	현행	개선방향
운용방향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자산운용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추진
운용상품	기존 운용상품 중심	대체투자 등 신규상품 도입
정책연계	수익성 중심의 자금운용	국가전략산업 장기 모험자본 공급 병행
자산운용위원회	내·외부위원 5명(내부 2, 외부 3)	7명(내부 2, 외부 5)으로 확대
외부위원 구성	교수 중심	금융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변화
운용기준	기존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운용	신규상품 도입 등을 반영하여 IPS 정비

자료: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이 28.9%로 주택도시기금 32.7%, 국민체육진흥기금 33.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36.0%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함

3) 「국유재산관리기금,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확대…2030년까지 40% 이상, 연합인포맥스

나. 분석의견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험자산 투자 확대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향후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중장기 운용 가능자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위험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현행 위험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험자산 적정 투자비중은 다른 사업성기금과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기금 자체의 수입·지출구조와 향후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청사 신축·부동산 취득 및 개발 등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자금지출의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자금수지에 계절성이 있고 일별·주별 자금 유출입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최근 10년간 계획 대비 순지출 부족에 따른 자금잉여 오차가 연평균 298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대기성 자금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자금수지 관련 기금운용평가 결과]

구분	기금운용평가 주요 지적	검토 필요사항
자금수지 변동성	자금수지에 비교적 뚜렷한 계절성이 있으며, 일별·주별 자금 유출입의 불확실성이 큼	단기자금 및 현금성자금 규모의 적정 관리
사업대기성 자금 추정	현금성자금 필요량 산정을 위해 사업대기성 자금 규모의 정확한 추정이 중요	사업비 집행시기 등을 반영한 자금수요 추계 정확성 제고
계획·실적 오차	최근 10년간 계획 대비 실제 순지출이 연평균 298억원 적게 발생하여 자금잉여가 발생	자금수지 전망 오차 축소 및 적정 유동성 규모 재점검

자료: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향후 사업비 지출계획과 과거 자금수지 오차 등을 반영하여 단기간 내 사용할 자금과 중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자산 투자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자산 확대에 맞추어 현행 위험관리 기준의 설정근거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일정 기간 내 원금 등 기준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Shortfall 기준⁴⁾을 활용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1년 원금기준 Shortfall 한도를 4.5%에서 9.0%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평가는 위험허용 수준을 확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서도 VaR 한도소진율⁵⁾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위기 단계를 각각 70%, 100%, 130%로 설정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는 각 기준의 설정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시장급락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험관리 기준 관련 기금운용평가 결과]

구분	현행 기준	기금운용평가 주요 지적	검토 필요사항
Shortfall 위험한도	1년 원금기준 한도를 4.5%에서 9.0%로 확대	위험허용 수준을 확대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기금의 자금수지·손실 감내능력을 반영하여 한도 설정근거 구체화
VaR 단계별 관리	한도소진율 70%, 100%, 130%를 각각 주의·경계·위기로 설정	각 단계의 수치 설정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과거 위험발생 수준 등을 토대로 단계별 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극단적 시장위험	VaR 중심 시장위험 관리	VaR만으로는 시장급락 등 비정상적 상황의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음	스트레스 시나리오 등을 활용한 꼬리위험 분석 병행

자료: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기금운용평가에서 위험허용한도와 시장위험 관리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정경제부는 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위험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함께 재검점할 필요가 있다.

4) 일정 기간 내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허용한도, “1년 원금기준 Shortfall 한도가 9%”라면, 1년 후 수익률이 0%를 밑돌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확률을 최대 9%까지 허용한다는 의미

5) 기금이 허용한 시장위험 한도 중 현재 얼마만큼을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예를 들어 기금이 시장변동으로 감수할 수 있는 손실위험 한도를 100억원으로 정해 두었는데, 현재 VaR로 측정한 위험이 80억원이라면 VaR 한도소진율은 80%임

가. 현 황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사업¹⁾²⁾은 지역으로 구분된 4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으로 구성되는 단위사업이다. 2027년도 대개도국차관사업의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581억 4,200만원 감액된 1조 5,69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대개도국차관사업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개도국차관	1,472,928	1,627,534	1,627,534	1,569,392	△58,142	△3.6
아시아차관(융자)(ODA)	592,671	823,517	823,517	615,965	△207,552	△25.2
아프리카차관(융자)(ODA)	694,087	622,965	622,965	692,741	69,776	11.2
중동-CIS차관(융자)(ODA)	157,064	163,411	163,411	242,066	78,655	48.1
중남미차관(융자)(ODA)	29,106	17,641	17,641	18,620	979	5.5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장기간 저리의 양허성 차관 방식의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으로, 1986년 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동 사업을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3,935달러 이하인 국가가 보건·인프라·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유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

2) 동 기금은 2025년까지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도 대개도국차관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2026년부터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사업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2027년도 총사업 규모, 사업 수가 축소되고 신규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아시아차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아프리카 등의 차관 사업은 확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신규사업 관리방안,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전략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차관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원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계획안은 2026년 당초 계획액 대비 3.6% 감소한 1조 5,693억 9,200만원으로 계획된 가운데 아시아차관은 25.2%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CIS, 중남미차관은 각각 11.2%, 48.1%,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개도국차관 사업 내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2~2025년 연평균 60.4%를 차지했던 아시아차관 사업의 비중은 2026년 50.6%, 2027년 39.2%로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아프리카차관의 비중은 2022~2025년 연평균 28.1%에서 2026년 38.3%, 2027년 44.1%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동-CIS차관도 동기간 평균 8.2%에서 2027년 15.4%로 상승하였다.

[2022~2027년 대개도국차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대개도국 차관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 차관	중동-CIS 차관	중남미 차관
'22년	당초(A)	1,086,061	639,379	319,980	79,531	47,171
	비중	100	58.9	29.5	7.3	4.3
	계획현액(B)	830,688	464,159	308,175	21,348	37,006
	집행액(C)	819,590	464,154	304,946	21,260	29,230
	집행률	(C/A)	75.5	72.6	95.3	26.7
		(C/B)	98.7	100.0	99.0	99.6

구 분		대개도국 차관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 차관	중동-CIS 차관	중남미 차관
'23년	당초(A)	1,178,620	705,400	304,852	131,972	36,396
	비중	100	59.8	25.9	11.2	3.1
	계획현액(B)	759,851	500,307	234,680	10,946	13,918
	집행액(C)	668,419	456,839	188,685	9,631	13,264
	집행률	(C/A)	56.7	64.8	61.9	7.3
		(C/B)	88.0	91.3	80.4	88.0
'24년	당초(A)	1,423,118	849,890	416,981	112,383	43,864
	비중	100	59.7	29.3	7.9	3.1
	계획현액(B)	1,303,542	717,780	416,981	133,575	35,206
	집행액(C)	1,167,878	631,608	405,278	107,143	23,849
	집행률	(C/A)	82.1	74.3	97.2	95.3
		(C/B)	89.6	88.0	97.2	80.2
'25년	당초(A)	1,374,735	870,189	380,458	85,999	38,089
	비중	100	63.3	27.7	6.3	2.8
	계획현액(B)	1,623,449	728,689	704,172	160,499	30,089
	집행액(C)	1,472,928	592,671	694,087	157,064	29,106
	집행률	(C/A)	107.1	68.1	182.4	182.6
		(C/B)	90.7	81.3	98.6	97.9
'26년	당초(A)	1,627,534	823,517	622,965	163,411	17,641
	비중	100	50.6	38.3	10.0	1.1
	계획현액(B)	1,627,534	823,517	622,965	163,411	17,641
	집행액(C) (8월말 기준)	760,388	271,625	348,266	124,505	15,992
'27년	당초(A)	1,569,392	615,965	692,741	242,066	18,620
	비중	100	39.2	44.1	15.4	1.2
	증가율(전년대비)	△3.6	△25.2	11.2	48.1	5.5

주: 2027년 증가율은 2026년 당초 계획 대비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함께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지역별 수원국 및 사업 수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 2025년 대개도국차관 사업을 추진한 국가는 12개국이었으나 2026년과 2027년 10개국으로 축소되었고 사업 수도 2025년 123개에서 2026년 89개로, 2027년에는 76개로 축소되었다. 아프리카는 사업추진 국가 수가 2025년과

2026년 13개국에서 2027년에는 14개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아프리카 사업 수는 2025년 69개, 2026년 46개, 2027년 50개로 계획된 상황이다. 2027년 중동-CIS와 중남미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2026년과 동일한 각각 3개국, 4개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수는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대개도국차관 사업 추진 국가 및 사업 수 추이_계획 기준]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2024년	국가 수	12개국	11개국	3개국	5개국
	사업 수	110개사업	64개사업	20개사업	15개사업
2025년	국가 수	12개국	13개국	4개국	5개국
	사업 수	123개사업	69개사업	21개사업	14개사업
2026년	국가 수	10개국	13개국	3개국	4개국
	사업 수	89개사업	46개사업	17개사업	11개사업
2027	국가 수	10개국	14개국	3개국	4개국
	사업 수	76개사업	50개사업	13개사업	5개사업

자료: 재정경제부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수원국 및 사업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 2025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2개국에서 2026년 인도, 파푸아뉴기니가 수원국에서 제외되며 10개국에서 8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7년은 2026년과 동일한 10개국에서 76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에서는 2025년 세네갈, 케냐 등 13개국에서 6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6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제외되고 모로코가 추가되며 13개국에서 4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7년에는 남수단을 추가해 14개 국가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CIS의 경우 2025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요르단, 우크라이나 4개국 18개 사업을,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제외되며 3개국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요르단이 제외되고 예멘이 추가되어 3개국 1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남미는 2025년 니카라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등 5개국에서 차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6년 엘살바도르가 제외되었고 2027년에는 2026년과 동일한 4개 국가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개도국차관사업 추진 국가 및 사업 수 상세 내역_계획 기준]

(단위: 개,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국가명	사업		국가명	사업		국가명	사업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아시아 차관	베트남	21	1,193	베트남	13	727	베트남	11	827
	캄보디아	22	2,802	캄보디아	17	1,516	캄보디아	14	980
	방글라데시	17	126	방글라데시	10	271	방글라데시	8	252
	인도네시아	10	935	인도네시아	4	125	인도네시아	6	76
	필리핀	15	1,098	필리핀	9	3,327	필리핀	7	1,471
	미얀마	7	66	미얀마	6	137	미얀마	6	79
	라오스	6	739	라오스	7	358	라오스	7	933
	몽골	7	334	몽골	6	1,075	몽골	6	1,182
	파키스탄	7	1,030	파키스탄	7	629	파키스탄	7	293
	스리랑카	6	255	스리랑카	6	37	스리랑카	4	65
	인도	1	34						
	파푸아뉴기니	1	1						
	12개국	120	8,612	10개국	85	8,202	10개국	76	6,160
아프 리카 차관	세네갈	4	70	세네갈	2	196	세네갈	5	210
	케냐	7	96	케냐	3	399	케냐	3	477
	모잠비크	2	89	모잠비크	2	84	모잠비크	2	0.2
	코트디부아르	4	30	코트디부아르	1	65	코트디부아르	1	125
	르완다	9	388	르완다	5	165	르완다	6	487
	이집트	4	1,836	이집트	4	676	이집트	4	693
	앙골라	3	106	앙골라	2	412	앙골라	2	327
	가나	9	188	가나	1	70	가나	4	9
	탄자니아	11	459	탄자니아	11	545	탄자니아	11	1,033
	에티오피아	10	377	에티오피아	8	796	에티오피아	8	1,211
	튀니지	1	52	튀니지	1	41	튀니지	1	172
	우간다	1	0.4	우간다	1	9	우간다	1	3
	콩고민주공화국	1	6	모로코	1	2,704	모로코	1	2,181
							남수단	1	0.1
	13개국	66	3,697	13개국	42	6,162	14개국	50	6,927
중동- CIS 차관	우즈베키스탄	12	717	우즈베키스탄	11	1,599	우즈베키스탄	11	2,375
	키르기스스탄	2	2	키르기스스탄	1	9	키르기스스탄	1	46
	요르단	2	5	요르단	1	8	예멘	1	0.1
	우크라이나	2	68						
	4개국	18	792	3개국	13	1,616	3개국	13	2,421
중남미 차관	니카라과	5	63	니카라과	2	5	니카라과	1	0.1
	볼리비아	2	82	볼리비아	2	47	볼리비아	2	120
	에콰도르	2	146	에콰도르	2	98	에콰도르	1	67
	온두라스	1	4	온두라스	1	1	온두라스	1	0.1
	엘살바도르	1	30						
	5개국	11	325	4개국	7	151	4개국	5	186

주: 미정사업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2025년 아시아 21개, 아프리카 11개, 중동-CIS 3개, 중남미 1개, 총 36개에서 2026년 아시아 1건, 아프리카 1건 총 2건으로 감소하였고 2027년에는 아프리카 1건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2027년 추진될 신규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탄자니아의 'AI·디지털 기술 교육기관(DTI) 건립사업' 1건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2024년의 경우에도 아시아 14개, 아프리카 10개, 중동-CIS 5개, 중남미 1개로 총 30개의 신규사업이 추진되었다.

EDCF 차관사업은 일반적인 단년도 재정사업과 달리 사업발굴, 수원국과의 협의, 타당성조사, 사업심사, 차관 승인 및 계약, 집행 등의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시 현재 집행 중인 계속사업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추진할 신규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발굴·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중요하다. 그러나 2025년 36개에 달했던 신규사업이 2026년 2개, 2027년 1개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개도국차관 신규사업 추진 국가 및 사업 수 추이_계획 기준]

(단위: 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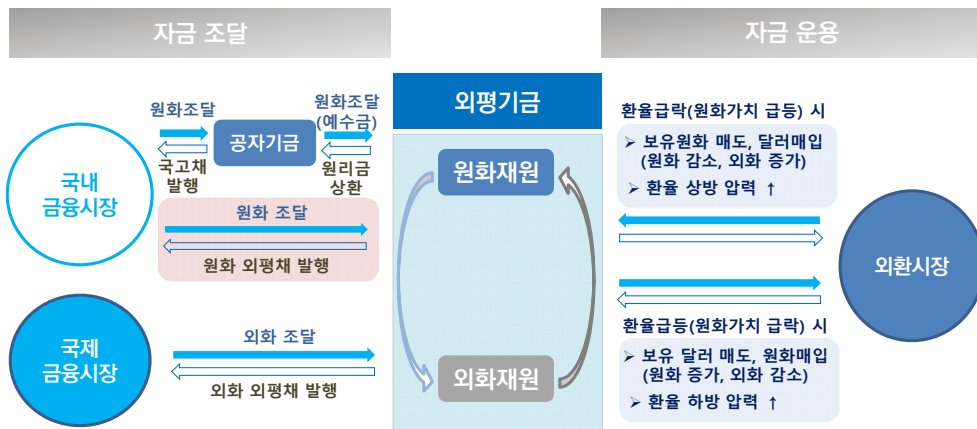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2024년	국가 수	5	6	2	1
	사업 수	14	10	5	1
	계획액	142,672	117,875	1,991	10,882
2025년	국가 수	6	7	2	1
	사업 수	21	11	3	1
	계획액	119,986	25,726	6,884	1,461
2026년	국가 수	1	1	-	-
	사업 수	1	1	-	-
	계획액	4,580	4,114	-	-
2027	국가 수	-	1	-	-
	사업 수	-	1	-	-
	계획액	-	2,994	-	-

자료: 재정경제부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사업설계와 운영, 정책적 방향성과 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간 자원배분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업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신규사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축소, 자원배분 변화가 장기적 전략 및 정책적 방향성,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시 정책적 일관성 및 사업의 연속성·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아시아와 사업 규모가 확대된 아프리카 등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수행하는 한편 필요 시 사업 지원 및 추진체계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환율의 변동성 완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공자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동 기금은 2025년부터 공자기금 예수 외에 외평기금의 자체적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026년과 동일한 13.7조원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 개요(2027년 기준)]



주: 외평기금은 2025년 이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도 원화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기금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여 환율 하락을 유도하며, 이와 반대로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절상) 시에는 보유한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여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한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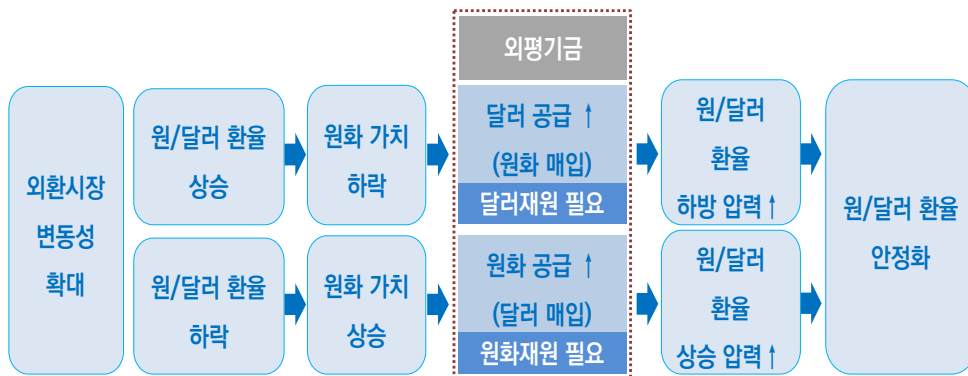
13-1.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 필요

동 기금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3~2024년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세수결손 대응,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축소 이후 2026~2027년 차환발행만 계획하며 원화 보유재원 규모가 축소되었고 최근 대미 전략적 투자 가시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외화 대응여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바, 외환시장의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대응여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고물가·고금리, 주식 및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대내외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할 때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2026년 1~7월 중 1,500원 내외의 고환율을 유지하였으나 9월 들어 1,33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란 전쟁의 방향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 등 주요국 기준금리 기조 변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환율의 하방압력뿐 아니라 상방압력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이에 원화 및 외화재원 확보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달러(원화)를 공급하고 원화(달러)를 매입하는 형태의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외평기금의 달러(원화)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 상승/하락시 외평기금 시장개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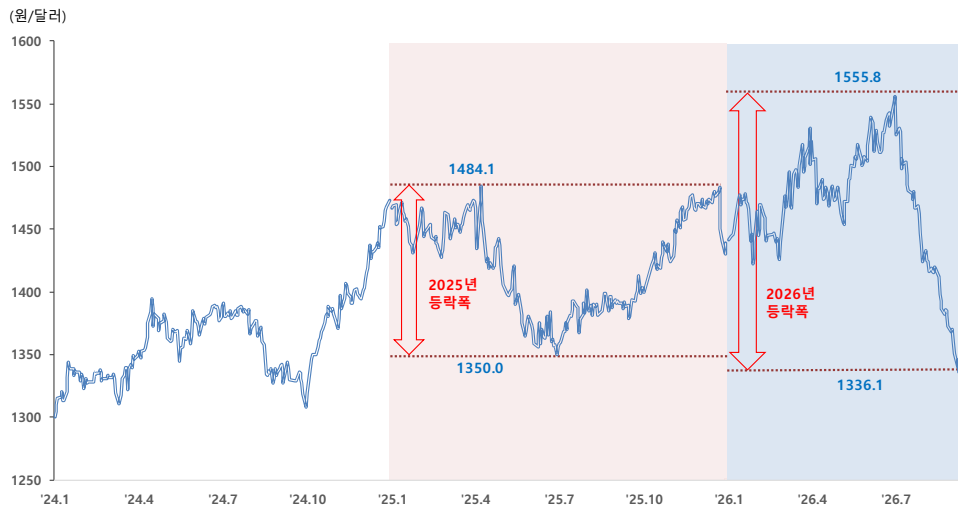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6년 들어와 외환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성 및 조정 속도, 물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금융시장 내 자금 유출입 확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불확실성 등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4월 1,430~1,48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6월말 1,350원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7월초 1,555.8원을 나타냈다.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9월 9일 기준 1,336.1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중 일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134.1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9월 9일 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219.7원으로 확대되었다.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3분기, 4분기 환율 변동성은 0.35~0.37% 수준이었으나 2026년 1분기~2분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며 0.52~0.60%를 나타냈다.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기간중 일평균, 원, %)

	2025년				2026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변동폭	5.3	8.6	4.9	5.4	8.8	7.8	6.6	7.6	8.0
변동률	0.36	0.61	0.35	0.37	0.60	0.52	0.45	0.50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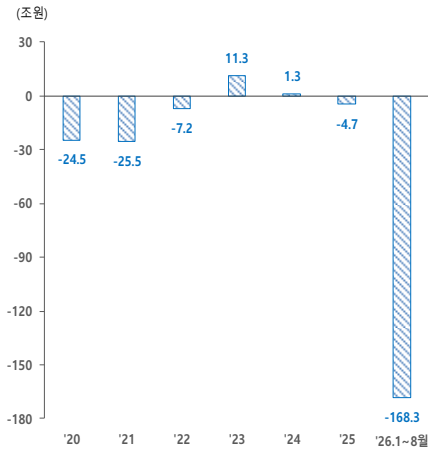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또한 최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하며 등락폭을 확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26년 7월까지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원/달러 환율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5년은 1,231억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6년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1~7월 기준 2025년 연간 경상수지 대비 1,100억 달러가 증가한 2,3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근 미·이란 무력충돌 등을 포함한 대외불확실성 확대는 안전자산 선호를 높여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며,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이탈, 국외 주식투자 확대 등도 환율의 상방요인이다. 외국인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KOSPI 시장에서 11.3조원, 1.3조원을 순매수하였으나 2025년 4.7조원을 순매도하였고 2026년 1~8월 중에만 2025년 순매도액의 35배를 상회하는 168.3조원을 순매도한 상황이다. 2025년 중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순매수액은 1,403억 달러로 2024년 670억 달러 대비 733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2026년 1~7월 중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순매수액도 57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6년 6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시행과 함께 연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점은 환율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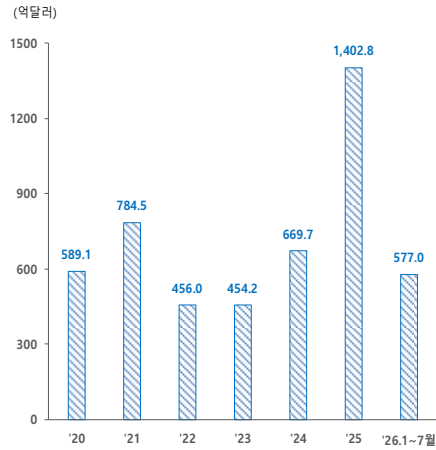
이에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의 하방 압력뿐 아니라 상방 압력에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 KOSPI 시장 순매입 추이]



자료: Fnguide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방압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의 원화 가용 재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¹⁾, 기금의 보유외환 매매분을 제외하고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 증가요인은 공자기금 예수 및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과 세수결손에 따른 예수금 축소 등이 있다.²⁾

동 기금의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원화재원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의 경우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를 5조 5,000억원 감축하고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14조 4,0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다. 또한 2024년의 경우 악화된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43조 5,000억원을 당초 계획 대비 조기상환하였으며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규모를 4조원 감축하여 2023~2024년 2년 동안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이 67.4조원 감소하였다.³⁾

1) 환율의 변동성 등을 고려시 기금의 외화재원과 원화재원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 금융시장 여건, 재정경제부가 기금의 원화 및 외화 재원 규모를 미공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화재원을 제외하고 원화재원 변화를 분석하였다.

2)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외평채 이자상환 역시 외평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논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상환 부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에 2년 연속 활용한 것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의지·역량이 변화하였다는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2025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20조원 한도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1회, 제2회 추경을 거치며 한도가 축소되어 13.7조원을 발행하였다. 또한 공자기금 예수(37.6조원),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32.9조원)을 고려할 경우 2025년 원화재원은 18.4조원 증가하였다. 2026년에는 공자기금 예수(34.1조원),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33.8조원) 고려시 0.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규모 5.2조원을 고려할 경우에는 원화재원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에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13.7조원 만기도래분에 대한 차환발행에 국한되며 공자기금 예수로 인한 증가분도 없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202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2023~2027년 5년간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48.7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검토한 2025~2027년의 원화재원 증가액 최대 18.7조원은 2023~2024년의 원화재원 감소액 67.4조원의 27.7%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주요 변동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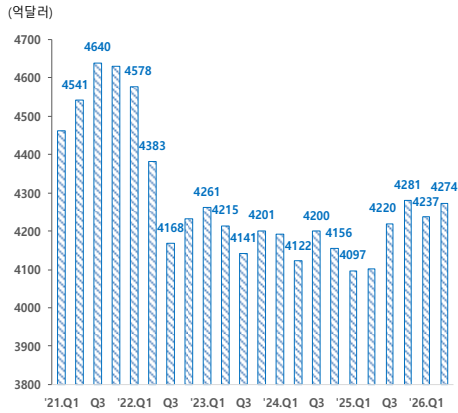
구분	변동	주요내용	비고
2023	△19.9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규모 감축 5.5조원 (당초계획 55.3조원 → 수납 49.8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14.4조원 (당초계획 49.8조원 → 상환 64.2조원)	-
2024	△47.5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규모 감축 4.0조원 (당초계획 56.6조원 → 수납 52.6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 43.5조원 (증기계획 51.1조원 → 상환 94.6조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액 18조원 전액 미발행
2025	18.4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37.6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32.9조원 ③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최대) 13.7조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액 변경 (20조원 → 13.7조원)
2026 (계획)	0.3조원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34.1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33.8조원	- 원화표시 외평채 13.7조원 차환발행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2조원 고려시 변동액 △4.9조원

구분	변동	주요내용	비고
2027 (계획안)	0.0	①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10.0조원 ②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 10.0조원	- 원화표시 외평채 13.7조원 차환발행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5.4조원 고려시 변동액 △5.4조원
합계	△48.7조원	-	
※ 2023~2027년 중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변동은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외환 대응여력을 살펴보면, 외환보유액은 2021년 3분기 4,6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 1분기에는 2021년 3분기 대비 543억 달러 감소한 4,09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5년말 4,28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26년 2분기 4,274억 달러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외국 증권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외환보유액은 2025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 4,2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4,423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안정화조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중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11.7억 달러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4년의 2배를 상회하는 △279.7억 달러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특히 2025년 4분기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1년 순매도액의 80.3%인 22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1,5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외환시장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13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3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를 통한 시장안정화 조치 규모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외환당국의 순거래액]

(단위: 억달러)

	2024년	2025년			2026
	연간	연간	3/4	4/4	1/4
순거래	△111.7	△279.7	△17.5	△224.7	△136.3

주: 시장안정화를 위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자료: 한국은행

정리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내외불확실성, 글로벌 금융 및 물가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외환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시장대응을 위한 원화 및 외화의 가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2. 원화표시 외평채의 이자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공채수입¹⁾은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7년 계획안 기준 동 기금의 국공채수입 계획액은 25조 5,850억원으로 2026년 계획액 20조 5,650억원 대비 5조 200억원이 증가하였다. 2027년 계획액 중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액은 13조 6,650억원으로 202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기도래분의 차환발행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외화 표시 외평채는 80억 달러 규모로 2026년 50억 달러 대비 30억 달러 증액되었다.

[2027년도 외평기금 국고채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공채수입	18,389,422	20,565,000	20,565,000	25,585,000	5,020,000	24.4
원화표시 외평채	13,665,000	13,665,000	13,665,000	13,665,000	-	-
외화표시 외평채	4,724,422	6,900,000	6,900,000	11,920,000	5,020,000	72.8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나. 분석의견

외평기금이 2025년부터 재발행²⁾하고 있는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은 국채임에도 발행금리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6년 들어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과 통화안정증권 1년물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바, 동 기금은 2027년 13.7조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를 1년물로만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평균만기가 13.7년 수준인 국고채 대비 만기가 짧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의 조달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통화안정증권³⁾을 91일물 등 일물 외에 2년물, 3년물뿐 아니라 원화표시 외평채와 만기가 동일한 1년물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화표시 외평채와 동일 연물인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의 비교를 통해 조달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원화표시 외평채와 같이 국채로 분류되는 국고채의 경우 1년물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및 2026년 1~8월까지 원화표시 외평채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1년물은 월 1회씩 총 20회 발행되었다.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조달금리를 비교해 보면, 12월 동일한 조달금리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1~11월 중 매월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발행금리가 원화표시 외평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되었다.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금리차이는 0.5~15.5bp로 나타났으며 2025년 연평균으로는 통화안정증권 1년물 조달금리가 원화표시 외평채 대비 3bp 낮게 발행되었다.

2026년 1~8월 중에도 원화표시 외평채 조달금리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5년 대비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조달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8월 중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조달금리 차이는 5~37bp까지 확대되었으며 1~8

2) 재정경제부는 2003년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2025년 재개하였으며 2025년 13.7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였다.

3)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량 증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한국은행,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2023.).

월 중 평균 조달금리 차이는 15.2bp로 2025년 평균 2.8bp 대비 5.4배 이상 확대되었다. 2026년 및 2027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물량 13.7조원에 대해 조달금리 차이 15.2bp는 연간 209억원의 이자비용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2025년 및 2026년 1~8월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1년물) 발행 현황 비교]
(단위: 억원, %)

구 분	원화표시 외평채			통화안정증권(1년물)			발행금리 차이 (A-B)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A)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B)	
2025.1.	8,000	8,000	2.750	8,000	8,000	2.640	0.110
2025.2.	8,000	8,000	2.690	5,000	4,100	2.630	0.060
2025.3.	12,000	12,000	2.690	5,000	5,000	2.600	0.090
2025.4.	16,000	16,200	2.460	5,000	5,000	2.420	0.040
2025.5.	18,000	18,200	2.375	5,000	5,000	2.370	0.005
2025.6.	17,000	17,000	2.415	5,000	3,200	2.290	0.125
2025.7.	12,000	12,250	2.360	6,000	6,200	2.280	0.080
2025.8.	10,000	10,000	2.340	7,000	4,800	2.250	0.090
2025.9.	10,000	12,000	2.300	7,000	4,400	2.270	0.030
2025.10.	10,000	10,000	2.495	7,000	5,000	2.340	0.155
2025.11.	8,000	9,000	2.550	7,000	6,400	2.540	0.010
2025.12.	3,500	4,000	2.580	5,000	4,400	2.580	0.000
2025년 합계	132,500	136,650	2.474	46,000	41,300	2.448	0.028
2026.1.	13,000	13,000	2.760	5,000	4,200	2.550	0.210
2026.2.	12,000	13,200	2.750	5,000	5,000	2.700	0.050
2026.3.	12,500	12,500	2.940	5,000	4,000	2.700	0.240
2026.4.	8,000	8,000	3.010	5,000	5,000	2.900	0.110
2026.5.	11,000	12,000	3.270	5,000	3,100	2.900	0.370
2026.6.	10,000	11,000	3.370	5,000	2,900	3.100	0.270
2026.7.	10,000	10,000	3.420	7,000	7,000	3.370	0.050
2026.8.	10,000	11,000	3.600	7,000	4,100	3.350	0.250
2026년 합계	86,500	90,700	3.121	44,000	35,300	2.969	0.152

주: 2026년은 1~8월 발행 실적 정리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한국은행 공지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간 금리차이는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가 2003년 이후 처음 발행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 채권 투자자에게 시장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 등이 조달 금리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다소 많은 발행량 및 시장 신뢰를 위한 발행예정액 전액 낙찰 경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도 원화표시 외평채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수요가 주로 증권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인지도가 제고되며 원화표시 외평채의 수요가 외국인 뿐 아니라 은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가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채권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국채로 동년물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비 발행금리가 낮거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 2026년 들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과 금리 차이가 확대 양상을 보인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원화표시 외평채 도입 배경인 공자기금 예수 기준(국고 10년물) 대비 금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외평기금 비용절감 효과는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재정경제부는 외평기금의 원화 자원 조달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발행 실적을 살펴보면,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의 금리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목적인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재정경제부는 2027년 13.7조원이 계획되어 있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시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 시장조성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시장의 수요 및 발행여건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7년부터 대규모·장기 등 전략수출 프로젝트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안¹⁾에 따르면, 동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에 설치되며,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성된다. 수출금융지원계정은 대출 및 보증 등을 통해 전략적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수출 기업 및 관련 산업생태계에 대한 출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27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 수입·지출 계획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계획안(B)
수입		1,390,311
	기타민간이자수입	9,618
	기타경상이전수입	86,495
	면허료 및 수수료	69,600
	기타민간차입금	1,210,000
	전입금	14,598
지출		1,390,311
	차입금이자상환	12,675
	산업생태계지원계정전출	4,598
	여유자금운용	947,324
	기타민간융자지출	400,000
	보증대위변제	1,800
	투자조합출자사업	22,935
	기금운영비	979

주: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이하에서 정부안은 2027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계획안 및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예의 원안)을 의미한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 규모는 1조 3,903억원으로 재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외화표시 국가보증채권) 1조 2,100억원 및 수출입은행 출연금 500억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기금 지출은 여유자금운용 9,473억원 및 민간용 자지출 4,000억원 등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될 계획이다.

14-1.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근거법률 미비 및 자원 조달·운용구조 개선 필요

가. 현 황

전략수출금융기금 자원은 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정부보증)과 민간 기업의 법정부담금, 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채권이 1조 2,100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동 기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출연보다는 향후 상환을 전제로 한 차입을 통해 대규모 금융지원 재원을 조성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2027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 자원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수출금융지원계정 소계	-	1,360,713	1,360,713	순증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9,618	9,618	순증
법정부담금(59-593)		11,495	11,495	순증
민간출연금(59-594)		50,000	50,000	순증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69,600	69,600	순증
기타민간차입금(82-824)		1,210,000	1,210,000	순증
일반회계전입금(91-911)		10,000	10,000	순증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소계		29,598	29,598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5,000	25,000	순증
계정간전입금(91-915)		4,598	4,598	순증

주: 총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수출금융지원계정 법정부담금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며,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정부납부기술료 중 동 기금에의 귀속분으로서, 해당 법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자원 규모도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나. 분석의견

첫째,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전략수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및 「국가재정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동 기금운용계획안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심사 경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신설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발의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총 3건¹⁾이며, 이 외에도 「국가재정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부과 근거 신설을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련 법안 발의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심사 경과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6289 2217336 2220460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운용 전반	소위 계류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5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설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7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리·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3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징수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기금 신설의 근거 법률안인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²⁾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금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납부기술료는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 의안번호 제2216289호(한정애의원안), 제2217336호(안도걸의원안), 제2220460호(박수영의원안)

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2.),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아울러 검토보고서는 ①지원대상 수출분야·기업을 현행 정책금융 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할 필요, ②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의 필요, ③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에 따른 통상분쟁 우려 및 적정 요율 설정의 필요, ④자금지원 시 심의 생략 요건을 법률·시행령에 명시할 필요 등을 함께 지적한 점³⁾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대한 정부 재원이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에서 이원적으로 조달되고 있어, 재원별 역할과 출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재원의 대부분을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나, 정부안에 따르면 채권 발행은 3분기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이전에 기금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500억원을 출연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전략수출금융기금 출연 사업을 통해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2027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 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미래대응 기금	한국수출입은행출자(금융시장안정화) (전략수출금융기금 보증프로그램 운영)	-	150,000 (50,000)	150,000 (50,000)	순증
일반회계	전략수출금융기금 출연	-	10,000	10,000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수출입은행이 출연하는 500억원은 수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내 ‘한국수출입은행출자(금융시장안정화)’ 세부사업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1,500억원 중 일부를 활용⁴⁾하는 것이다.

3) 이 외에도, 산업통상부는 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적절한 운용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기금의 용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기업의 이익 환류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미래대응기금 ‘한국수출입은행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의 1,500억원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전략수출금융기금(수출금융지원계정) 보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00억원이 명시되어 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 산출 내역]

- 일반출자금(460-01) : 150,000백만원
 - 가. (중동 관련) 75,000백만원
 - 공급목표 약 6.1조원* × 수은 평균 대출·보증 손실률 3.7% × 정부분담 1/3
 - * 약 40억불 × 1,490원/달러(기준환율)
 - 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25,000백만원
 - 12조원 공급에 따른 정부 손실 부담분 中 '25년 추경 출자 초과분
 - 정부 손실 부담률은 50%에서 1/3로 하향 조정
- 다. (전략수출금융기금(수출금융지원계정) 보증 프로그램 운영) 50,000백만원**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하면, 총 600억원의 재원을 기금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직접 출연하고, 5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후 이를 다시 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출연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수은을 거쳐 전략수출금융기금에 투입되는 우회적 구조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원은 정책금융의 대출·보증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각각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도 기금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9억 8,000만원(인건비 6억 8,000만원, 경상운영비 3억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동 기금은 보증료 수입만 69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도 충당이 가능한 규모이다.

따라서 일반회계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운영비를 초과하여 기금의 재원 확충에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원 공급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목적상의 구분을 인정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거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으로서는 출자 500억원과 출연 500억원이 같은 회계연도에 상계되어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에서 수출입은행은 자금이 경유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금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구분하여 필요

한 규모만 정부가 출연하고, 동일한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서로 다른 재정수단을 병행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셋째,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실제 사업수요보다 선행하여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대규모 여유자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운용수익이 수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수입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금융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의 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8,100억원(발행액의 66.9%)은 2028년 금융지원에 활용될 재원까지 2027년에 선조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여유자금 운용액은 9,473억원으로 기금 전체 규모의 68.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선조달은 향후 대규모 금융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선제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권을 발행하면 기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조달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게 된다. 더욱이 2027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차입에 따른 조달비용⁶⁾은 반영하면서도 여유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6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금리 3.853%를 준용하여 이자상환액 계상기간과 동일한 3개월을 적용하면, 여유자금 9,473억원의 운용수익은 약 91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여유자금 해당분의 조달비용 99억원($9,473\text{억원} \times 4.19\% \times 3/12$)과 비교하면 차액은 8억원 수준으로 예상조달금리(4.19%)와 예탁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역마진 자체는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회계 출연금인 100억원에 준하는 수준의 운용수익이 수입에 계상되지 않았다.

5)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자체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미래대응기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에서 중복 편성하는 문제를 기금 설립 이전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대응기금이 여러 정책사업의 재정적 우회통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예산 투입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6) 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126억 7,500만원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행 계획안과 같이 운용수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금의 실제 수입·지출 및 재정상태가 계획안에 적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 발행이 연중 이루어지지 않고 2028년분까지 선조달한 재원이 2028년 중에도 상당 기간 예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따라 기금채권의 발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여유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상 운용수익을 기금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7년에 발행할 기금채권 1조 2,100억원은 근거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법률 제정 및 국회 보증동의 이후 이를 관리계획에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의 기금채권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⁷⁾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제1호⁸⁾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한미전략투자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제시되어 있을 뿐,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6~'30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보증채무	27.7	60.0	91.8	124.7	157.3
(GDP 대비 ¹⁾ , %)	(1.0)	(1.9)	(2.8)	(3.7)	(4.4)
- 한국장학재단채권	11.6	12.4	13.0	13.7	14.3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9.7	15.7	17.9	20.3	22.8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6.4	21.5	40.1	59.4	78.5
- 한미전략투자채권 ²⁾	-	10.4	20.8	31.3	41.7
		(70억달러)	(140억달러)	(210억달러)	(280억달러)

주 1)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2) 발행액을 달러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 환율(1USD = 1,490원) 적용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7) 국가보증채무는 불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 가능하다.

8)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시점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채권 1조 2,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현행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국회가 동 채권 발행이 국가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2028년 이후의 기금채권 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국가보증채무의 증가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동 기금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작성 시점에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제정되어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직 보증잔액이 없고 2027년부터 발행될 예정인 단계에서도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신규 보증채무를 발행 이전이라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도 법률 제정 및 보증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 기금채권은 ① 법률 제정 및 국회 보증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증채무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적시에 반영하고, ②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채권 발행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전망의 변동 규모와 2028년 이후 기금채권의 중기 발행계획을 정부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2. 기타민간이자수입 내 수수료 수입 편성 부적절

가. 현 황

전략수출금융기금 수출금융지원계정의 기타민간이자수입¹⁾은 용자지출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96억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계획안 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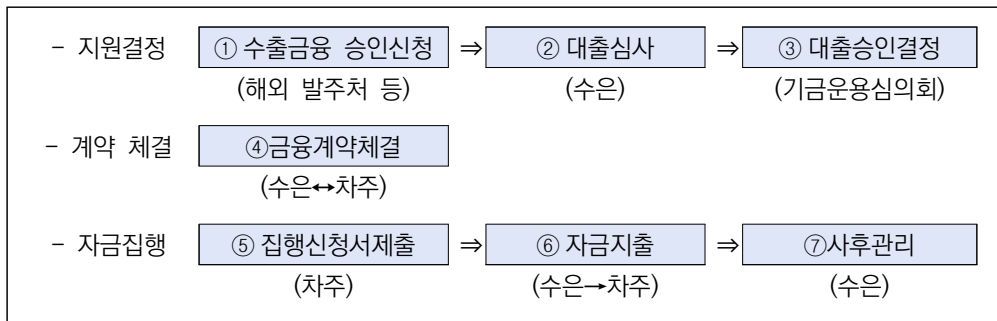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목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	9,618	9,618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경제부는 2027년 기금의 대출 승인목표액을 2조원으로 예상하고, 그 중 4,000억원이 실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편성하였다. 참고로 기금의 대출(용자)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금 용자사업 추진 절차]



자료: 재정경제부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전략수출금융기금 54-544

나. 분석의견

대출 취급시 수수하는 관리수수료 및 약정수수료 약 40억원이 기타민간이자수입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면허료 및 수수료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기타민간이자수입 세부 산출근거에 따르면, 대출 집행시기와 채권 발행시기를 2027년 3분기로 가정하여 2027년 평균 대출잔액은 1,000억원, 예상 이자수입은 56.6억원이다.

또한, 대출 취급시 수수하는 제반 수수료 예상 수입 39.5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제반수수료는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로 구성되며, 관리 수수료는 대출 승인금액에 대해 전액 선취하며 약정수수료는 미집행승인금액에 대해 이자 기일마다 수취할 계획이다.

[2027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산출 근거]

산출근거	
9,618백만원	'27년 예상 평균 대출잔액(1,000억원) x 연평균이자율(5.66%) = 56.6억원
	대출 취급시 수수하는 제반 수수료(관리수수료 및 약정수수료) = 39.58억원
	* 관리수수료 = 2조원(승인규모) × 수수료율 등(0.3% 이내) * 약정수수료 = 1.6조원 × 1/4(3개월) × 수수료율 등(0.5% 이내)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목은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의미한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목은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 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2027년 동 기금 계획안에서도 “면허료 및 수수료”에 69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증 승인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라는 점에서 제반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대출 취급시 수수하는 제반 수수료 약 40억원은 기타민간이자수입이 아닌 면허료 및 수수료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4-3.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사업구성 및 투자기준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투자조합출자사업¹⁾은 전략수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 또는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기업(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29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투자조합출자사업 계획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투자조합출자사업	-	22,935	22,935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전략수출금융의 수혜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을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는 만큼, 투자조합 출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수단과 구체적인 투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전략수출금융을 통해 수혜를 받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의 형태로 조성하여, 이를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 산업생태계로 환류하는 것을 설치 취지로 한다.

정부안에 따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용도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집합투자기구·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및 계정 운용비용과 차입금 상환 등이다.²⁾ 그런데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전략수출금융기금 3241-301

2)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의2(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안에 따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지출사업은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운영비를 제외하면 동 사업 1건에 불과하다.

[투자조합출자사업 집행절차]



자료: 재정경제부

펀드 출자는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민간 운용사의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유일한 사업수단으로 삼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첫째, 지원대상이 투자 가능한 기업으로 한정될 수 있다. 펀드는 성장가능성과 투자금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므로, 수출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지분투자에 적합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생태계 전반의 기술·수출역량을 강화한다는 계정의 목적을 펀드 투자만으로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부안은 펀드 출자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도 계정의 용도로 규정하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비용
 3.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고 있으므로, 향후 직접투자 등 다른 지원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펀드 출자만으로는 계정의 정책목적과 투자대상 간 연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펀드 출자는 운용사가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므로, 주목적투자 요건 등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출자재원이 실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나 전략수출 관련 산업생태계에 투자된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서는 출자 대상 조합과 운용사, 출자비율 및 투자대상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확보된 재원이 어떠한 기업에 어떠한 기준으로 환류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기존 정책펀드와의 차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자조합 출자는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인 만큼, 별도의 계정과 재원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수출금융의 수혜기업 또는 관련 산업생태계 중 기존 정책펀드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투자수요가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기업 또는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기업’이라는 현재의 투자대상 범위만으로는 기존 정책펀드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전략수출과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① 직접투자 등 법정 용도를 고려한 중기적인 사업 구성 및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② 펀드 출자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에 대한 주목적투자 비율 등 구체적인 투자대상 요건을 설정하며, ③ 기존 정책펀드와의 차별성, 출자규모의 산출근거 및 투자금 회수·재투자 계획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복권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3개 기금(미래대응기금, 복권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1조 4,811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3억원(0.0%)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7년도 총수입은 각 회계·기금 별로 일반회계 4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조 9,670억원, 복권기금 8조 5,097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 기획예산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211,972	3,149,494	3,149,494	2,971,391	△178,103	△5.7
- 일반회계	-	4,414	4,414	4,414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11,972	3,145,080	3,145,080	2,966,977	△178,103	△5.7
기 금	7,907,562	8,331,251	8,331,251	8,509,660	178,409	2.1
- 복권기금	7,907,562	8,331,251	8,331,251	8,509,660	178,409	2.1
합 계	11,119,534	11,480,745	11,480,745	11,481,051	306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작성됨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57조 1,202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41조 8,751억원(274.7%) 증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7년도 총지출은 일반회계 5조 2,574억원, 미래대응기금 45조 3,858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 2,659억원, 복권기금 6조 2,110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 기획예산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815,245	4,247,245	9,248,390	5,257,376	△3,991,014	△43.2
- 일반회계	815,245	4,247,245	9,248,390	5,257,376	△3,991,014	△43.2
기 금	5,627,253	5,943,517	5,996,684	51,862,817	45,866,133	764.9
- 미래대응기금	-	-	-	45,385,847	45,385,847	순증
- 공익신고장려기금	-	-	-	265,924	265,924	순증
- 복권기금	5,627,253	5,943,517	5,996,684	6,211,046	214,362	3.6
합 계	6,442,498	10,190,762	15,245,074	57,120,193	41,875,119	274.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나.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36조 5,178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14조 4,208억원(65.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조 5,04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조 134억원이다.

[2027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	4,414	4,414	12,504,414	12,500,000	283,189.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141,612	21,954,084	22,092,552	24,013,368	1,920,816	8.7
합 계	15,141,612	21,958,498	22,096,966	36,517,782	14,420,816	65.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78조 4,848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161조 789억원(925.4%) 증가하였으며, 전액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7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700,711	16,960,821	17,405,810	178,484,752	161,078,942	925.4
합 계	7,700,711	16,960,821	17,405,810	178,484,752	161,078,942	925.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대응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26조 8,254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216조 4,628억원(2,088.9%) 증가하였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대응기금 215조 1,623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 3,055억원, 복권기금 10조 1,528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조 2,047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대응기금	-	-	-	215,162,316	215,162,316	순증
공익신고장려기금	-	-	-	305,540	305,540	순증
복권기금	9,102,721	9,586,331	9,586,331	10,152,837	566,506	5.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90,366	776,287	776,287	1,204,715	428,428	55.2
합 계	9,793,087	10,362,618	10,362,618	226,825,408	216,462,790	2,088.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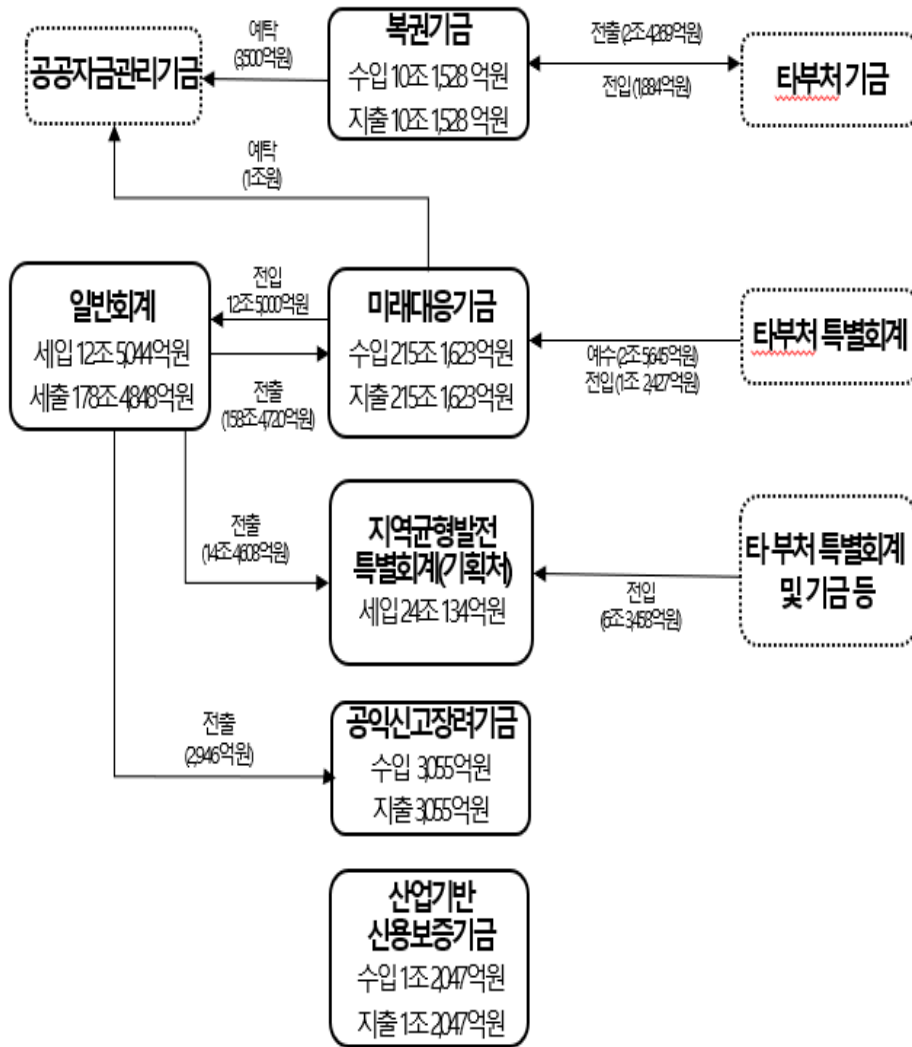
2027년 기획예산처 소관 회계·기금 간 주요 재원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4조 4,608억원, 미래대응기금으로 158조 4,720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2,946억원을 전출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12조 5,000억원을 전입받는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6조 1,858억원,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600억원을 전입받는다.

미래대응기금은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2조 5,645억원을 예수받고 1조 2,427억원을 전입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원을 예탁한다.

복권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2조 4,269억원을 전출하고,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884억원을 전입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500억원을 예탁한다.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027년도 기획예산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출연 사업의 집행잔액과 출연금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분 반환,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적립금 반납 등을 위한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이 '26년과 동일한 수준(4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① 신사업·신유형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 및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내 고품질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활성화와 관련한 인증 인프라 구축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127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③ 미래대응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어 미래대응기금에는 130개 사업에 45조 3,858억원, 공익신고장려기금에는 26개 사업에 2,659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한국탄소센터 설립·위탁과 인증체계 구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의 대부분이 법률 시행 전에 집행되는 구조이므로 계류 중인 법안의 심사 경과와 시행일을 고려하여 편성 규모와 집행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세수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재원으로 경상적·계속적 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기존 회계·기금과의 차별성도 불분명하므로, 총괄계정은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성장동력계정은 출연·출자 방식의 장기 투자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당초 설치 취지인 '재정안정화'와 '미래 투자'에 충실하도록 기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신설 타당성 심사가 사전 검증 절차로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심사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가세수의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세수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적립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균형에 가까워지나 적자국채는 100조원이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107조원 증가하므로,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증가 간 괴리의 원인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고채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상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과세수·세계잉여금의 기금 전출 시에도 일정 비율은 채무상환에 우선 배분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와 관련하여, 연도 중 세입 변동에 따른 기금 적립·인출을 한도 없이 세입세출외로 처리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연도별 적립·인출 한도를 예산총칙과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하여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항목 변경한도(30%)를 다른 사업성기금과 같이 20% 이내로 조정하고, 16개 중앙관서가 집행하는 사업을 단일 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분리되는 상임위원회 간 심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대응기금 전출액만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자동으로 축소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이 폐지되어 세수 호황에 따른 증가분을 지방과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부는 현행 법정 교부율 적용 대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의 경우,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각 부처 소관을 유지하면서 지급기준만 표준화하거나 일반회계 내에서 통합 편성하는 방안 등과 비교하여 기금 신설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피해자간접구제제정의 신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61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45조 6,682억 7,400만원이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신규사업은 4개이며, 이 중에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내 고품질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활성화와 관련한 인증 인프라 구축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설된 미래대응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에는 각각 130개, 26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복권기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창의발명교육지원 사업 1개이다.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12,746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531
	기금운용 관리강화	477
	국제재정협력 강화	2,188
미래대응기금 (130개)	기금운영비(미래대응기금)	23,333
	주택금융 이차보전(금융위)	59,660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금융위)	28,616
	청년미래적금(금융위)	1,701,089
	우리아이자립펀드(금융위)	146,531
	청년기회자금(금융위)	102,676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	792,527
	K-Art 청년 창작자 지원(문체부)	39,500
	청년월세지원(국토부)	231,859
	보편형 매입임대(용자)(국토부)	238,000
	보편형 전세임대(용자)(국토부)	900,000
	보편형 매입임대출자(국토부)	306,000
	청년 지원 주택(국토부)	1,400,000
	아동기본수당 지급(복지부)	2,927,243
	출산지원금 지원(복지부)	698,111
	혼인지원금(성평등부)	166,28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노동부)	901,18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노동부)	825,477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노동부)	379,301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창업사업화지원(중기부)	954,2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중기부)	291,936
	중소기업 재기지원(중기부)	139,813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중기부)	99,552
	국민성장펀드(금융위)	1,000,000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재경부)	150,000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재경부)	2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금융위)	500,000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재경부)	500,000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복지부)	37,708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기후부)	596,860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기후부)	65,782
	송전단 ESS 구축 지원 사업(기후부)	572,409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기후부)	2,679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ESS 설치 보급사업(기후부)	2,376
	한국전력공사 출자(기후부)	500,000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사업(기후부)	19,600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기후부)	350,000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산업부)	119,329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산업부)	115,800
	폴스택AI팩토리및제조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산업부)	120,000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 개발(R&D)(산업부)	290,000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과기정통부)	87,800
	AIDC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고도화(R&D)(산업부)	39,0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산업부)	25,742
	안보전문투자기관(중기부)	3,820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실증(중기부)	172,800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중기부)	20,000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국토부)	35,000
	CO.AX 프로젝트(국토부)	58,500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국토부)	841,509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과기정통부)	800,000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과기정통부)	4,275,185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과기정통부)	250,000
	피지컬AI핵심기술개발(R&D)(과기정통부)	55,000
	피지컬AI 트레이닝 센터 구축(과기정통부)	40,000
	AIDC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고도화(R&D)(과기정통부)	115,500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과기정통부)	33,512
	수자원공사출자(기후부)	250,000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기후부)	8,091
	호남권 반도체산업 용수공급 사업(기후부)	119,640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국토부)	100,0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공공연구성과 기반 투자형 R&D 지원(R&D)(과기정통부)	24,255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과기정통부)	511,291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과기정통부)	79,853
	뉴스페이스투자지원(우주청)	100,000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우주청)	154,959
	차세대발사체개발(R&D)(우주청)	291,567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우주청)	93,716
	소형달착륙선개발(R&D)(우주청)	106,300
	핵융합핵심기술개발및실증기반(인프라)구축사업(R&D)(과기정통부)	160,100
	i-SMR 상용화 기술개발사업(R&D)(과기정통부)	18,000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과기정통부)	71,671
	Net-zero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R&D)(과기정통부)	13,421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화 및 성과환류형 투자생태계 구축사업(R&D)(과기정통부)	25,000
	화합물반도체R&D상생패 구축(투자형R&D)(과기정통부)	40,000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행안부)	1,500,500
	지방미래성장지원금(행안부)	3,500,000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행안부)	650,000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출연금(행안부)	2,850,000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재경부)	100,000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행안부)	89,725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문체부)	152,28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	1,165,765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농식품부)	5,500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농식품부)	20,810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해수부)	5,50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해수부)	45,162
	공공기관 2차 선도이전 지원(국토부)	181,004
	교사대아동비율 개선(교육부)	526,90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기후부)	35,000
	창업중심대학(중기부)	108,300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과기정통부)	68,578
	대통령 과학장학금(과기정통부)	21,317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91,801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교육부)	19,960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교육부)	465,000
	대학창업교육기반고도화(교육부)	47,000
	지역균형발전장학금(교육부)	328,015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교육부)	691,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교육부)	551,885
	이공학하술연구기반구축(R&D)(교육부)	646,895
	거점국립대 혁신사업(교육부)	794,35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교육부)	600,000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교육부)	30,000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교육부)	207,000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교육부)	23,500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기후부)	51,108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노동부)	406,50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노동부)	54,258
	에너지인력양성(R&D)(기후부)	71,457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중기부)	28,350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산업부)	201,898
	AI중심대학(과기정통부)	184,960
	생성AI선도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29,200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사업(R&D)(과기정통부)	54,000
	디지털선도기술 핵심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59,529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353,279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R&D)(과기정통부)	20,56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155,54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147,121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162,20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22,798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25,529
	국가과학자 지원사업(과기정통부)	14,910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과기정통부)	83,043
	양자정보과학 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30,097
	과학영재양성(R&D)(과기정통부)	22,951
	인재활용확산지원(R&D)(과기정통부)	108,831
	과학기술AI혁신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48,300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사업(R&D)(과기정통부)	10,000
공익신고장려금 (26개)	기금운영비	359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4,100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31,3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9,900
	국세 공익 신고 포상금	58,594
	담합 등 신고포상금	24,817
	영업비밀 신고포상금	300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2,837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4,653
	매장유산 신고포상금	50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20
	관세탈루등 신고포상금	20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979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369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1,100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포상금	45,156
	불공정 조달 신고포상금	1,250
	마약수사 신고포상금	424
	밀수 신고포상금	17,485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0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3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00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3,110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1,500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270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 운영	5,098
복권기금 (1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창의발명교육 지원	561
합 계		45,668,274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¹⁾을 살펴보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협동조합활성화사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신사업·신유형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 및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③협동조합활성화사업은 AX·DX 및 금융 등 스케일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출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재원 증가 등에 따라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1) 전년 추경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내부거래, 인건비·기본경비 등 경직성 지출 및 신규사업 제외)

[기획예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12개)	증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사업	3,382	3,382	8,853	5,471	161.8
	협동조합활성화사업	2,930	2,930	81,811	78,881	2,692.2
	재정교육	735	735	1,335	600	81.6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130	1,130	1,500	370	32.7
	한국재정정보원운영	40,530	40,530	51,923	11,393	28.1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1,702	1,702	4,568	2,866	168.4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230	230	1,330	1,100	478.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50,000	50,000	433,600	383,600	767.2
	정보화 투자관리 효율화(정보화)	960	960	1,913	953	99.3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456	1,456	2,490	1,034	71.0
	정책연구개발(기획예산처)	653	653	1,153	500	76.6
	정책홍보사업(기획예산처)	1,920	1,920	3,226	1,306	68.0
복권 기금 (3개)	복권사업비	4,806,289	4,806,289	4,989,706	183,417	3.8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350,000	350,000	444,571	94,571	27.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5,769	85,769	97,557	11,788	13.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II

주요 사업 분석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사업의 증액 소요 과다 등

가. 현 황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사업¹⁾은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정책과제 구체화를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54억 7,100만원이 증액된 8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789	3,382	3,382	8,853	5,471	161.8
지속가능혁신랩	-	-	-	1,280	1,280	순증
미래전략센터 운영	-	-	-	4,000	4,000	순증
청년일자리·소득안전망 보완방향 연구	-	-	-	250	250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지속가능혁신랩은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2027년 과제와 과제당 단가의 산출근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한 것이므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26년 3월 지속가능혁신랩 도입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2026년에는 ‘에너지 수요 절감 방향 연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실험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2-401

은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기존 통계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책 연구와 달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실제 대상자에게 정책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직접 검증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²⁾

[일반 정책연구와 정책실험(RCT) 비교]

구분	일반 정책연구	정책실험(RCT)
방법	문헌·사례조사, 기존 통계 분석	대상자를 무작위로 나눠 실험군에만 정책 적용 후 비교
시점	정책 설계 단계 검토 또는 시행 후 사후 분석	정책 본격 시행 전 사전 검증
산출물	정책대안, 개선방향	정책효과의 크기 추정 → 도입·확대 여부 판단 근거
수행 요건	연구진 중심	대상자 모집, 실제 개입, 측정 기간, 행정데이터 연계, 연구윤리 심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시범 과제는 8월 입찰을 거쳐 2026년 10월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6년 시범과제의 총괄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실험 대상과 표본 규모, 실험·대조군 배정 방식 등 연구 설계의 핵심 사항은 확정되었으나 연구윤리(IRB) 심의는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정책실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4개 정책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제1호 과제의 최종 보고서는 2027년 3월 말에야 제출될 예정이어서,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이 시작된 이후에나 결과가 도출된다. 기획예산처도 2027년 확대를 결정하면서 활용한 시범사업의 성과자료는 없으며, 시범사업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조정·중단 기준은 향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2027년 4개 과제의 과제명·내용·수행 기관·일정은 모두 미정이고, 각 부처의 정책실험 수요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과제당 단가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27년 계획은 과제당 3억 2,000만원으로 시범과제 사업금액(1억 5,000만원)의 약 2.1배 수준이다.

2) 동 사업의 정책실험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방식으로, 정책 대상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에만 정책을 적용한 후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제1호 과제는 동절기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행동 유도형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이다.

기획예산처는 처치(treatment)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표본 수를 늘려 통계적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과제별 인건비·실험비·인센티브 등 세부 소요액은 2026년 시범사업 산출내역을 토대로 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2027년 과제의 연구설계가 정해지지 않아 세부 소요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2026년도 시범사업(제1호 과제) 사업금액 산출내역]

항목	금액(만원)
인건비	1,600
외부용역비(설문참가자 성과 인센티브, 참여보상 포함)	11,500
수용비	400
일반관리비	100
부가가치세	1,400
계	15,000

자료: 기획예산처

따라서 2027년에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정책실험의 필요성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과제 수를 축소하거나 시범사업 결과 도출 이후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제별 연구설계와 산출내역을 토대로 과제당 단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³⁾

둘째, 미래전략센터는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센터 설치 필요성과 기존 조직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 근거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전략센터는 2045 국가발전전략의 후속연구와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45 국가발전전략은 2026년말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이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 중이라는 설명이다.

3)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 2027년 정책실험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효과 분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소요비용은 연구주제와 실험설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시범사업 사례를 반영하여 과제당 단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전략센터 업무]

① 2045 국가발전전략 후속 연구

- 2045 국가발전전략의 정책과제 구체화, 후속 정책과제 발굴
- 2045 국가발전전략 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평가

②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

- 주요국 중장기전략 및 정책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미래 시나리오 분석
- 인구·산업·기술·문화 등 주요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상호영향 분석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는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 이후에도 급격한 경제·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7년부터 출연연 등에 위탁하여 미래전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센터는 2045 국가발전전략의 정책과제 구체화·이행 점검 등 후속 연구와 주요국 사례, 중장기 전망·시나리오 분석 등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를 수행하며, 인력은 센터장 등 약 30명이다.

[미래전략센터 예산 세부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19억 2,500만원				
	분류	월 임금	명수	개월 수	합계
	센터장	7,567,456	1	12	90,809,472
	연구원	5,802,624	21	12	1,462,261,248
	연구보조원	3,878,858	8	12	372,370,368
	총계		30		1,925,441,088
② 사업운영비	○ 20억 7,500만원				
	- 사무실 임차료(400백만원): 보증금 200백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18백만원×12개월				
	- 연구위탁비(700백만원): 국내외 자료 확보, 조사·분석, 장기전망 시나리오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등 분야별 미래전략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 기타(975백만원): 자문 등 회의관련 비용(300백만원), 여비 및 자료제작비(500백만원), 일반관리비(175백만원) 등				

자료: 기획예산처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 AI 등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센터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센터의 기능이 기존 조직·연구기관과 충분히 구분되는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센터를 기존 출연연의 분야별 연구를 뛰어넘는 ‘미래전략 전담 종합 연구조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주제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발전전략 관점에서 종합·연계하는 기관은 없고, 미래전략기획실의 기능과 인력만으로는 전략 수립 이후의 심층 후속연구와 이행 결과 분석, 전략 수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센터가 수행할 중장기 전망·구조변화 분석·사례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2045 국가발전전략의 정책과제 구체화와 이행 점검은 전략을 수립·조정하는 미래전략기획실의 본연의 업무로 볼 여지도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미래전략기획실·출연연·미래전략센터 기능 비교(정부 제시)]

구 분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전략기획실	기존 출연연	미래전략센터
성격	기획예산처 장관의 민간전문가 자문기구	정부 내 정책수립·총괄 조정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	미래전략 전담 종합 연구조직
기능	중장기전략의 방향·내용에 대한 자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관계부처 정책 조정	경제·산업·노동·복지·과학기술 등 소관 분야별 전문연구	분야별·학제간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이슈 종합 분석
산출물	중장기 전략 관련 정책 자문 보고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보완	분야별 정책연구 보고서	미래전망, 구조변화 분석, 전략대안, 사례연구 등

주: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7기(임기 2025.9.~2027.9.) 운영 중이며 위원장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
자료: 기획예산처

또한 센터의 7대 연구분야(미래전략 전반, 기술·산업, 기후·에너지, 청년·인재 양성, 사회 복지·일자리, 지역균형, 국제·대외통상) 중 일부는 기존 정부 조직의 기능이나 동일 세무사업 내 청년일자리·소득 안전망 보완방향 연구와도 대응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래전략센터가 개별 연구를 중복 수행하기보다 기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조망·종합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명확히 하고,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역할이 종합·조망 중심으로 한정된다면 연

구원 21명을 포함한 30명 규모의 인력과 분야별 연구위탁비 7억원의 적정성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센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

(방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
(기준)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역량, 전문 연구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계획,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등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및 중장기 국가전략 연구역량을 갖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등
(추진상황) 위탁사무 범위, 세부 연구과제, 선정기준 등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중이며 수탁기관 미선정

자료: 기획예산처

이처럼 기존 조직과 미래전략센터간 기능 중복 가능성 외에도, 현재 센터의 설립 및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모를 원칙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2027년 초부터 미래전략센터가 출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동 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모두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

기획예산처는 센터 선정 절차 및 계획, 세부 연구과제안을 국회 예산안 확정 전 까지 마련하고 법적 근거와 세부 시행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며, 현재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중이어서 수탁기관과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분 운영비 40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심사 시 선정 절차와 법적 근거가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과 기존 조직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 근거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일자리·소득 안전망 보완방향 연구는 조직 개편에 따라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 미래전략센터·기타정책연구개발 및 관계부처 연구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정책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안과 중장기적 지원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연구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동 연구는 2026년 말 발표 예정인 2045 국가발전전략 이후 일자리·사회안전망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며, 종합 연구 2건과 과제 구체화 연구 1건으로 구성된다.

[청년일자리·소득 안전망 보완방향 연구 산출내역]

(단위: 건, 백만원)

연구과제	건 수	건당 금액	금 액
AI 전환기 청년일자리 지원방안 종합연구	1	100	100
사회안전망(고용·복지 등) 재설계 종합연구	1	100	100
분야별 과제 구체화 연구	1	50	50
계	3	-	25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예산처는 청년일자리·사회안전망 문제가 고용·복지 분야를 넘나드는 다부처 연계 과제이고 대규모 제도 재설계와 재정소요가 수반되어 재정당국 차원의 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동 세부사업의 기타정책연구개발 내역사업이 아닌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로는, 2026년 초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기획실 내 성장기획정책관과 통합성장정책관이 분리된 이후 통합성장정책관 소관 현안과제를 별도로 중점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 내용의 차이라기보다 소관 부서에 따른 구분으로서, 동일 세부사업 내에 이미 정책연구 목적의 기타정책연구개발(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도 내역사업을 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동일 세부사업의 미래전략센터는 7대 연구분야에 ‘청년·인재 양성’과 ‘사회복지·일자리’를 포함하여 연구위탁비 7억원으로 분야별 전략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동 연구의 ‘분야별 과제 구체화 연구’와 대상·시기가 중첩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센터의 과제가 청년, 사회복지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반면 동 연구는 청년일자리 및 소득안전망으로 특정되어 있어 충분히 차별화하여 중첩되지 않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분야별 과제 구체화 연구’와 센터의 분야별 과제 구체화 연구의 범위와 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제시되지 않

있다. 기획예산처도 각 부처별로 청년 지원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2026년 8월에는 이미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과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이 발표된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연구·논의 경로]

구 분	사업·조직	주요 내용
동일 세부사업	기타정책연구개발(150백만원)	중장기 전략 관련 정책연구
	미래전략센터 연구위탁비(700백만원)	7대 분야(청년·인재 양성, 사회복지·일자리 포함)별 전략 정책과제 구체화
기획예산처	정책연구개발사업(7135-314)	정책현안·제도개선 정책연구
정부 대책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청년일자리 회복방안」(2026.8.28.)	청년 지원 종합대책
관계부처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청년 지원방향 검토
청년정책 총괄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총괄·조정
청년 지원사업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2027년 신설)	청년 자산형성·취업지원 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기획예산처는 직제상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을 담당하고 있어⁴⁾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지는 있으나,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은 「청년기본법」상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관이므로 연구 결과가 관계부처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기타정책연구개발 또는 미래전략센터의 분야별 연구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2045 국가발전전략 발표 이후 확정되는 과제별 연구내용과 관계부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1항

2-1. 개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¹⁾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고품질 자발적 감축실적(탄소 크레딧) 발행·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정부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하에서는 먼저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념과 작동 원리, 필요성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본 이후 분석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개요

(1) 개념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기관·개인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한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크레딧(carbon credit)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줄이거나 대기 중에서 제거한 온실가스 1톤(CO₂ eq)을 1단위로 하여,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행되는 증서이다. 감축사업을 수행한 자는 크레딧을 판매하여 추가 수입을 얻고, 구매자는 크레딧을 사용 처리(소각)하여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탄소시장은 감축 의무의 유무에 따라 규제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으로 구분된다. 규제시장은 정부가 배출총량을 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처럼 법적 의무에 기초한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ESG 경영, 탄소중립 선언, 공급망 감축 요구 대응 등을 위해 기업 등이 스스로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이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4-300

[규제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 비교]

구분	규제시장(배출권거래제 등)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법적 의무(할당대상업체)	자율(기업·기관·개인 등)
운영 방식	배출권 할당(유·무상) 후 거래	감축량 인증 후 거래
거래 대상	배출권(국내: KAU, KCU 등)	탄소크레딧(VCU, GS VER 등)
가격	단일 가격체계	사업 유형·품질별 차등 가격
검증·인증	공공 MRV(법령·고시)	민간 MRV(민간 표준)
수요 동기	과징금 회피 등 의무 이행	ESG 공시, 탄소중립 목표 등
근거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현재 없음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주: MRV는 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즉 배출량·감축량 산정 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작동 구조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크레딧은 감축사업의 등록에서 시작하여 발행, 거래를 거쳐 최종 소각으로 끝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각 단계에는 감축사업자, 검증기관, 등록기관(인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 최종 수요자가 참여한다. 국제적으로는 Verra(VCS), Gold Standard 등 비영리 민간기관이 표준(방법론)을 제정하고 등록부(registry)를 운영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탄소크레딧의 발행·거래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① 사업 등록	감축방법론 적용, 사업계획서 심의·승인	감축사업자 → 등록기관
② 모니터링·검증	실제 감축량 측정, 제3자 검증(MRV)	감축사업자 → 검증기관
③ 인증·발행	감축량 인증, 고유 일련번호 부여, 등록부 등재	등록기관
④ 품질 평가	추가성·영속성 등 품질 등급화	평가기관
⑤ 거래	거래소 또는 장외 매매, 등록부상 소유권 이전	거래소·등록기관
⑥ 소각	사용 처리하여 재거래 차단, 상쇄 주장 확정	최종 수요자 → 등록기관

자료: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793)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보일러 연료를 전환하여 연간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검증과 인증을 거쳐 1,000단위의 크레딧이 발행된다. 이를 판매하면 감축사업자는 추가 수입을 얻고, 구매 기업은 소각을 통해 1,000톤의 배출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3) 탄소크레딧의 유형과 품질 문제

크레딧은 배출을 줄이거나 피하는 감축(회피)형과 대기 중 온실가스를 직접 흡수·제거하는 제거형으로 구분된다. 감축형에는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산림 황폐화 방지 등이 있고, 제거형에는 조림·재조림, 블루카본 같은 자연기반 방식과 직접공기포집(DAC), 바이오차 같은 기술기반 방식이 있다. 제거형은 감축 효과가 명확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2024년 기준 제거형 크레딧의 가격은 감축형보다 약 381% 높았다.²⁾

자발적 탄소시장은 민간 표준에 의존하므로 크레딧의 품질이 핵심 쟁점이다. 2023년 해외 주요 인증기관이 인증한 산림보전 크레딧 상당수가 실제 감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언론 조사가 발표되면서 시장 신뢰가 크게 흔들린 바 있다.³⁾ 참고로 품질 문제는 주로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탄소크레딧의 주요 품질(무결성) 위험]

구분	내용
추가성	크레딧 판매 수입이 없어도 어차피 추진되었을 사업에서 크레딧이 발행되는 문제
과다산정	기준선(베이스라인)을 과대 설정하는 등 감축량을 부풀려 산정하는 문제
이중계상	같은 감축을 여러 등록부에 중복 등록하거나, 여러 주체가 동시에 감축 성과를 주장하는 문제
영속성	산림 화재·개발 등으로 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어 감축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

자료: 한국은행(2026), 삼성증권(2026)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Ecosystem Marketplace(2025), 「State of the Voluntary Carbon Market 2025」

3) 관계부처합동,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2025.12.24.)

나. 세계적 추세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거래가치는 품질 논란으로 신규 발행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2021년 약 21억 달러에서 2024년 약 5.4억 달러로 줄었다.⁴⁾ 반면 실제 사용량인 소각량은 연 1.5억~1.7억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측정·검증이 명확한 사업과 국제 품질 기준(ICVCM 핵심탄소원칙, CCP)을 충족한 크레딧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CCP 승인 크레딧 발행량은 2026년 상반기 1,60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다.⁵⁾

[세계 탄소크레딧 발행·소각량 및 평균가격 추이]

(단위: 백만톤CO₂e, 달러/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발행량	345	285	257	261	229
소각량	167	155	165	170	151
평균 거래가격	4.07	7.37	6.71	6.34	-

주: 발행·소각량은 4개 국제 인증기관(VCS, GS, ACR, CAR) 합계

자료: BloombergNEF(2026), Ecosystem Marketplace 등

최근 자발적 크레딧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규제시장과의 연계이다.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의무화되고, 여러 나라가 배출권거래제·탄소세 의무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가 크레딧을 직접 구매(2024년 1월까지 발행량의 약 62%)하여 초기 시장을 형성한 뒤 민간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였다.⁶⁾ MSCI는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 70억~3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나, 성장 폭은 품질 기준과 규제시장 연계 방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

4) Ecosystem Marketplace(2025) 등

5) Deloitte 안진(2026.9.), 「자발적 탄소시장(VCM)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AlliedOffsets 인용).

6)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5.11.),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시장에 관한 연구」

7) 기획예산처(2026.4.27.),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MSCI 인용).

[주요국 규제시장의 탄소크레딧 상쇄 허용 현황]

국가	주요 내용
한국	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활용 (의무량의 최대 5%)
일본	GX-ETS(2026년 4월 의무화, 연 10만톤 이상 배출기업)에서 정부 인증 크레딧(J-Credit)·양자협력(JCM) 크레딧을 의무의 최대 10%까지 활용
싱가포르	탄소세(2026~2027년 톤당 45싱가포르달러) 과세 배출량의 최대 5%를 파리협정 제6조 요건을 갖춘 국제 크레딧으로 상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는 최대 4%, 워싱턴주는 최대 8%까지 상쇄 허용
호주	세이프가드 제도 대상 시설이 기준선 초과 시 정부 인증 크레딧(ACCU)으로 상쇄

자료: 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 ICAP(Japan GX-ETS), Deloitte 안전(2026.9.)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는 2018~2024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9,100만톤 줄였으나(7.42억톤 → 6.51억톤), 2030 국가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약 1.8억톤을 더 줄여야 하고, 2035 NDC 목표 하한(△53%)을 달성하려면 2030년 이후에도 1.2억톤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배출량의 약 70%만 다루고 있어, 나머지 약 30%를 차지하는 중소·비대상 기업에는 감축할 의무나 실익이 없다.

실제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비대상기업 300곳 중 74.4%는 감축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역시 낮은 배출권 가격과 배출권 공급 과잉으로 감축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가 더 합리적인 상황이어서 감축 유인이 저조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⁸⁾

한편, 국내에는 이미 여러 부처와 민간기관이 감축실적을 인증하고 있으나, 기준과 등록부가 제각각이고 통합 거래 플랫폼이 없어 시장이 분절되어 있다. 또한, 국내 인증 실적은 국제 신뢰도가 낮아 CORSIA 등에 통용되기도 어렵다.

8)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4.27.). 비대상기업 설문은 중소기업중앙회(2024) 조사로, 감축 계획 부재의 주된 원인은 탄소중립에 대한 무관심(61%), 자금·인력 부족(26.5%) 등이다.

[국내 자발적·상쇄 크레딧 제도 현황]

제도	운영 주체	현황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KOC)	기후에너지환경부	할당대상업체 상쇄에 활용, 등록사업 886개 (2024.8.)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 (ARCOP)	농림축산식품부	감축실적 정부 구매, 322건·19.8만톤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청	산림 흡수량 인증·판매, 691건·68.3만톤
탄소감축인증표준(KCS) 등	대한상의 등 민간	누적 발급량 약 290만톤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서울연구원(2025.5.),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5.11.)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정부는 해외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2025.12.)에 이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4.)을 발표하였다. 조성 방향은 감축 의무와는 별개로 기업의 감축 노력이 영업이익으로 직접 이어지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아시아 자발적 탄소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① 법 제정, ② 거래소 개설, ③ 수요 발굴, ④ 공급 지원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4.27.) 주요 내용]

추진 축	주요 내용	동 사업 관련 내역
① 법 제정	등록기관(신고제, 감축실적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 관리 및 등록부 운영)과 평가기관(품질평가, 무결성 원칙 준수, 타 업무 겸영 금지) 체계 구축, 거래소 지정·운영규정 승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소각 정보 통지 절차, 활성화 사업 근거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운영	인증체계 구축 지원 (등록부·인증표준), 한국탄소센터 운영
② 거래소 개설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2026년 말), 통합 등록부 구축 및 등록기관과 API 연계,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상장, 상품군별 표준화,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 실적 구매 허용 및 해외 감축실적 국내 상장 검토	거래소·국제등록부 연계

추진 축	주요 내용	동 사업 관련 내역
③ 수요 발굴	민관합동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대한상의 사무국), 2027년 예산안 마련 시 활성화 과제 발굴, 중장기적으로 CORSIA·배출권시장·ESG 공시 등에 통용 되도록 발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반영	탄소크레딧 정부구매·선구매 공모
④ 공급 지원	중소기업 감축 지원(탄소중립전환 191억원, 탄소중립 바꾸어 118억원,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 938억원 등), 감축실적 사전 발행(EPC)·전환금융 등 자금 조성 메커니즘 발굴	감축사업 발굴·기획 지원

주: 동 사업 관련 내역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동 사업의 산출내역과 대응시킨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2026.4.27.)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성 방향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사업자가 등록기관을 통해 감축실적을 승인·인증·발행받고, 평가기관의 품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거래소에 상장·거래된 후, 수요자가 소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모든 거래와 소각 사실은 등록기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통합 등록부를 구축하고 등록기관과 연계하여 거래·소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장 활성화 사업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센터’⁹⁾가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조성 방향이 제시한 활성화 사업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통계 작성·공표, 국제협력, 시장 참여자 교육·홍보 등이다.

한편 조성 방향은 수요 발굴 과제로 얼라이언스 운영과 함께 2027년 예산안 마련 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탄소크레딧 직접구매(최대 20만톤)와 탄소제거 크레딧 선구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안의 동 사업은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9) 동 세부사업 내 ‘한국탄소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약 30%의 배출 부문과 중소기업에 감축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 기업이 자발적 감축실적을 크레딧으로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감축 노력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탄소 포집·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레딧 판매는 직접공기포집(DAC) 등 고비용 감축기술의 수익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2027년부터 의무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감축·상쇄 수단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이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감축사업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국내 시장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동 사업은 배출권거래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에 감축 유인을 제공하고, 초기 자발적 탄소시장의 공급 기반과 수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이며, 관계부처 간 역할분담과 정부 구매의 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2-2.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및 자원 측면 분석

가. 현 황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¹⁾의 2027년도 예산안은 127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내역사업인 인증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30억원, 한국탄소센터 운영 사업에 97억 4,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	-	12,746	12,746	순증
인증체계 구축 지원	-	-	3,000	3,000	순증
한국탄소센터 운영	-	-	9,746	9,746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일자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실적의 등록·검증·거래·소각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기 시장에서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며,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등록기관의 지위와 업무, 거래소의 지정·감독, 정부 지원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현재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 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²⁾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정법안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1134-300

2) 의안번호 제2220793호(배준영의원 대표발의)

특히, 해당 법안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국회 심의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법률의 시행 시기는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동 사업의 예산 규모 역시 이를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내역사업인 한국탄소센터 운영은 시장조성 전담기관을 통해 크레딧 구매, 제도·방법론 연구,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 또는 사업 수행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센터 설립·운영에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별도로 서술하도록 한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현재 발의된 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시행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동 사업의 수행 주체와 재원은 관계부처의 기능과 기후대응기금의 법정 용도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발의된 제정안도 등록기관 신고 수리, 거래소 지정·감독,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추진 근거로 제시한 국정과제(40번,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주관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며, 법률안도 크레딧의 품질을 담보하는 검증기관·검증심사원 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고, 시세조종 금지·과징금 등 시장 감독은 금융감독원의 협조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생산·거래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② 「배출권거래법」상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소시장에서 이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③ 자발적 탄소시장은 산업·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부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획예산처 소관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안 제23조는 행정권한 위임·위탁을 정한 것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설립·지정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기능별 소관 현황]

기능	관련 제도	소관 부처
규제시장 상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KOC)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문별 감축실적 인증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ARCOP) 산림탄소상쇄제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제항공 상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CORSIA)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거래 감독	한국거래소 감독	금융위원회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기획예산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직제 시행규칙은 부처 내부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고 그 분장 범위도 ‘정책 수립’으로 되어 있어, 보조금 교부·민간위탁·크레딧 직접구매와 같은 집행사업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배출권거래법」상 기획예산처의 역할도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검증기관 지정·외부사업 인증 등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과는 구분된다.

동 사업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시장의 첫 대규모 구매자가 되면 시장을 규율하는 부처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최대 구매자가 모두 일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과 달리, 법률안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임의규정(제16조제2항)이 있을 뿐 기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와의 역할분담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⁴⁾

한편, 재원 측면에서도 일반회계보다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는 기금의 용도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제1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제2호), 교육·홍보(제7호), 국제협력(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4) 다만 법률안은 자발적 감축실적의 정의에서 「배출권거래법」상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실적과 외부사업 감축량을 제외하고(제2조제1호), 중복 인증·등록된 감축량의 인증·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제8조제1항 제2호) 이중계상에 대한 사후 장치는 두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ARCOP)·산림청(산림탄소상쇄제도) 등 다른 제도의 등록부와 사전에 대조하거나 연계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증 인프라 구축, 감축사업 발굴 컨설팅·수수료 지원, 탄소크레딧 정부구매, 제도 개선·방법론 연구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 내역과 기후대응기금 용도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 내역	금액	기후대응기금 용도(제70조)
등록부·인증표준·거래소 연계·국제인증 연구 등 인증 인프라	900	제1호, 제8호
한국탄소센터 조직 운영·법률검토	2,576	제1호
감축사업 발굴 컨설팅·인증수수료 지원 등	1,100	제2호
탄소크레딧 정부구매·선구매 공모	6,000	제2호
제도개선·방법론 연구 등	820	제1호, 제5호
인증기관 운영기반(인건비·임차료 등)·국내외 홍보	1,350	제1호, 제7호
합 계	12,746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기금지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수행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더라도 기획예산처가 사업수행부처로서 정책 주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역할분담을 확정하면서 동 사업의 수행 주체와 재원 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인증체계 구축 지원 관련 분석

가. 현 황

인증체계 구축 지원 내역사업은 등록기관 기반 구축 및 인증표준 고도화, 탄소 감축기업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2027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인증체계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	-	12,746	12,746	순증
인증체계 구축 지원	-	-	3,000	3,000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출내역을 보면 인증 인프라 구축(등록부·인증표준·거래소 연계) 9억원 외에, 인증기관의 인건비·임차료 등 운영기반 9억원, 기업 대상 감축사업 발굴·기획 지원 10억원, 성과확산·홍보 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체계 구축 지원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① 인증표준 고도화·국제 인증	추가·영속성, 이중계산 방지, MRV,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 기준 정비 등 인증표준 고도화 150, ICVCM CCP 인증 연구 100, ICAO CORSIA 인증프로그램 등록 연구 100	350
② 등록부 플랫폼 고도화	등록부 유지보수(클라우드 사용료 175 + 유지보수비 75) 250, 등록부 기능개선 100	350
③ 거래소·국제등록부 연계	거래소 연계 API 설계·구축 100, 국제 레지스트리 연계 검토·데이터 표준화 80, 보안·연계 테스트·안정화 20	200
④ 운영기반 구축 지원	인건비(11명 × 5 × 10월) 550, 임차료·관리비(20 × 10월) 200, 인증수수료 지원 100, 기타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 50	900
⑤ 성과확산·시장인식 제고	우수사례 발굴·콘텐츠 제작 40, 국제 컨퍼런스 80, COP 등 국제행사 연계 홍보 50, 기업 세미나·라운드테이블 30	200
⑥ 감축사업 발굴·기획 지원	감축사업 발굴·기획·방법론·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컨설팅 600, 평가수수료 지원 200, 타당성 검토·검증 대응 지원 200	1,000
계		3,0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나. 분석의견

첫째, 인증체계 구축 지원은 수행기관 선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등록기관을 전제로 편성되고 법률 시행 전에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해상충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피보조기관을 '탄소감축인증센터'로 명시하면서도 사업시행주체는 '공모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027년 1분기에 공모에 착수하여 기존 민간 등록기관과 등록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여 자격과 선정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산출내역은 일정한 인력과 등록부를 이미 갖춘 기존 등록기관의 규모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기반 구축의 인건비(11명 × 월 500만원 × 10개월)와 등록부 유지보수비(클라우드 사용료 1억 7,500만원, 유지보수비 7,500만원)는 현재 등록부를 운영하는 기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며, 기획예산처도 등록부 플랫폼 고도화는 선정기관의 인프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과 소요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분기에 공모를 시작하면 선정과 협약 절차를 거친 뒤의 실제 사업기간은 산출근거상 10개월보다 짧아질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은 등록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그 업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고한 등록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 공모가 2027년 1분기에 이루어지면 수행기관은 법률 시행 이전에 선정되므로, 동 보조금은 법률상 등록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며, 이후 등록기관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고 보조를 받은 기관이 사실상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될 우려도 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아래와 같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수요 측 협의체의 운영, 감축실적의 인증, 국고보조의 수령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역할]

역 할	내 용
감축실적 인증	탄소감축인증센터 운영(누적 발급량 약 290만톤)
등록기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상 국내 등록기관의 예시
수요 측 협의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민관 얼라이언스 사무국
대외 협력	기획예산처·해외 인증기관(GCC)과의 업무협약 당사자(2026.9.2.)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기획예산처는 동 보조금이 시장 초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마중물 투자이고, 선정기관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등록기관의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은 등록기관을 신고제로 하여 여러 기관이 경쟁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법적 독점이 아니더라도 한 기관에만 인건비·임차료 등 운영기반까지 포함한 30억원을 전액 보조하면 등록기관 간 경쟁 조건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인증·평가수수료 지원(3억원)과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검증 지원(8억원)이 선정기관을 거쳐 집행되면, 감축사업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선정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등록 수수료가 사실상 한 기관으로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

정부 설명대로 인증표준과 등록부가 시장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인프라라면, 공통 인증표준과 등록부 연계는 한국탄소센터나 거래소 등 공적 주체가 구축하여 모든 등록기관에 개방하고, 수수료·컨설팅 지원은 감축사업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하여 등록기관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¹⁾

또한 기획예산처는 보조율 100%의 사유로 인증표준과 등록부의 공공재적 성격을 들고, 보조금은 기존 수수료 수입을 대체하거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산출내역 중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인증표준·국제인증 연구, 등록부 고도화, 거래소·국제등록부 연계)는 9억원(30.0%)에 그치고, 인건비·임차료 등 기관 운영비 8억원과 인증·평가수수료 지원 3억원은 설명과 달리 운영비 보전과 수수료 수입 대체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권고한 세부지침에 비

1) 법률안 제16조제1항제5호도 감축사업 발굴과 검증·인증·등록 지원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추어, 공모 시 신청기관의 수수료 수입과 운영비 자료를 제출받아 보조 범위와 자부담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공모의 참여 자격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등록 업무와 수요 측 협의체 운영, 국고보조 수령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데 따른 이해상충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부·운영기반 항목은 선정 이후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수수료·컨설팅 지원은 특정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감축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방법론 연구와 국내외 홍보 예산이 두 내역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고 국제인증 관련 연구의 목표와 추진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통합·조정하고 국제인증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인증표준·방법론 연구와 국내외 홍보·행사 예산을 인증체계 구축 지원과 한국탄소센터 운영에 각각 편성하고 있다. 두 내역사업이 같은 시장을 대상으로 제도 연구와 홍보를 수행하는 만큼 과업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내역사업별 연구·홍보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증체계 구축 지원	한국탄소센터 운영
제도·방법론 연구	인증표준 고도화 150, ICVCM CCP 인증 연구 100, CORSIA 등록 연구 100(계 350)	제도개선 연구 400, 탄소제거 방법론 연구 300 등(계 820)
홍보·행사	우수사례 40, 국제 컨퍼런스 80, COP 연계 홍보 50, 세미나 30(계 200)	국제행사 연계 200, 국내 컨퍼런스 100 등(계 35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국제 컨퍼런스와 COP 등 국제행사 연계 홍보는 두 내역사업 모두에 편성되어 있어, 행사 목적과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방법론 연구 역시 인증표준 고도화(1억 5,000만원)와 한국탄소센터의 제도개선 연구(4억원)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나 과제별 범위와 수행기관의 구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인증체계 구축 지원에는 국내 인증기관이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연구가 각각 1억원씩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CORSIA)

의 적격 프로그램 등록 연구와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 원칙(CCP) 인증 연구로서, 두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CORSIA와 ICVCM CCP 개요]

구 분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제도)	ICVCM CCP(핵심탄소원칙)
운영 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 (민간 국제기구)
제도 취지	국제항공 배출 증가분을 항공사가 탄소 크레딧으로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1단계 2024~2026년 자발 참여, 2027년부터 의무)	추가성·영속성·이중계상 방지 등 국제 품질기준을 충족한 고품질 크레딧임을 표시하는 라벨
인정 대상	ICAO가 승인한 프로그램이 발행한 크레딧만 항공사의 상쇄에 사용 가능	인증기관(프로그램)의 운영체제와 개별 감축방법론을 각각 심사
추가 요건	크레딧 발행국 정부의 승인서와 상응 조정(해당 감축분을 자국 감축실적에서 제외)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모두 통과한 크레딧에 CCP 라벨 부여
동 사업 관련 연구	CORSIA 등록 연구 100백만원	ICVCM CCP 인증 연구 100백만원

자료: ICAO, ICVCM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현재 두 제도의 인정 프로그램은 모두 해외 기관이며, 국내 인증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CORSIA·CCP 인정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인정 프로그램
CORSIA 1단계(2024~2026년) 적격 프로그램 8개	American Carbon Registry, Architecture for REDD+ Transactions, Climate Action Reserve, Global Carbon Council(GCC), Gold Standard, Isometric, Premium Thailand VER(태국), Verified Carbon Standard(VCS)
CORSIA 2단계(2027~2029년) 추가 승인	4개 프로그램 추가(2025.11. 기준)
ICVCM CCP 적격 프로그램	13개(2026.8. 기준),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누적 발행량의 95% 이상을 차지

자료: ICAO(2025.11.26.), ICVCM(2026.8.4.)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예산처도 국내 기관이 인증한 감축실적의 국제 신뢰도가 낮고 국내에 CORSIA 인정 기관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 9월 해외 인증기관인 G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인정 프로그램과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인증기관이 독자적으로 국제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인지, 해외 인정 프로그램과의 연계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ORSIA에 사용되는 크레딧은 인증기관의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국 정부의 승인과 상응조정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연구 결과가 실제 인증으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기구 심사 등 후속 절차와 비용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은 두 내역사업에 나뉘어 편성된 연구·홍보 예산은 수행 주체를 정리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고, CORSIA 등록 연구와 ICVCM CCP 인증 연구는 국내 인증기관의 독자 인증 추진 여부, 해외 인정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인증 취득 목표 시점과 단계별 추진계획, 후속 소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4. 한국탄소센터 운영 및 고품질 크레딧 구매 관련 분석

가. 현 황

한국탄소센터 운영 내역사업 예산은 97억 4,600만원으로 이 중 60억원이 탄소크레딧 정부구매를 위한 예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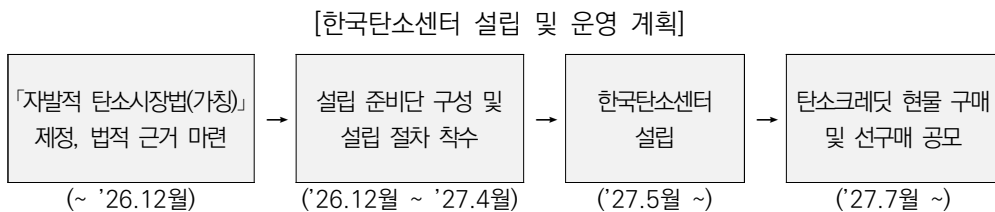
[2027년도 한국탄소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	-	12,746	12,746	순증
한국탄소센터 운영	-	-	9,746	9,746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탄소센터는 국가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크레딧 수요·공급 활성화 및 기후테크 등 혁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관리 및 크레딧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획예산처는 근거 법률 제정 이후 탄소센터 준비단 구성 및 탄소센터 설립 절차를 거쳐 탄소크레딧 현물 구매 및 선구매 공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탄소센터 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세부 산출내역	금액
용역비	제도개선 연구(100 × 4회) 400, 탄소제거 방법론 연구(150 × 2회) 300 등	820
사무실 운영	인건비(15명 × 9.5 × 8월) 1,140, 임차료 200, 임차보증금 250 등	1,976
법률검토	정부구매 계약서 검토(20 × 20회) 400, 시장조성 법률검토 200	600
탄소크레딧 정부구매	현물구매(0.025 × 20만톤) 5,000, 탄소제거 크레딧 선구매 공모 (100 × 10개) 1,000	6,000
인력양성·사업홍보	국제행사 연계 200, 국내 컨퍼런스 100 등	350
계		9,746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구매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수요 발굴 과제로서, 중앙 정부 연간 배출량 약 90만톤 중 20만톤에 해당하는 고품질 크레딧을 톤당 2만 5,000원에 구매(50억원)하고, 탄소제거 크레딧 선구매 공모를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초기 상금(1억원 × 10개)을 지급한 후 인증을 취득하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탄소센터는 설립·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운영 예산의 대부분이 근거 법률 시행 전에 집행되는 구조이므로, 법률 제정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규모와 집행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7년 5월 한국탄소센터를 설립하여 8개월분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7월부터 크레딧 구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런데 근거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연내에 법률이 제정·공포되더라도 법률 시행 이후 센터 설립, 구매 착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운영비와 구매비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시행일을 더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 설계와 하위법령 입안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준비 기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정안에는 센터에 대한 위탁 근거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센터 예산의 61.6%인 60억원은 정부를 대신한 크레딧 구매비인데, 이를 민간의 명의·책

임하에 수행하는 위탁사무로 볼 수 있는지, 구매한 크레딧이 국가와 센터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구매 크레딧이 센터에 귀속된다면 국가 예산으로 취득한 자산이 민간 법인에 귀속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에 귀속된다면 크레딧의 관리·소각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탄소센터 운영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근거 법률 제정과 센터의 설립·위탁 근거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구매 크레딧의 귀속 주체와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크레딧 정부구매는 고품질 기준과 가격 결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물량과 금액이 먼저 편성되었으므로, 구매 설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 시장에서 공공부문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구매한 크레딧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축 효과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크레딧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이미 반영되므로, 정부구매가 국가 전체의 감축량을 늘리는 효과는 크레딧 수입이 없었다면 추진되지 않았을 감축사업을 새로 이끌어내는 경우에 한정된다. 해외 크레딧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응조정 없이 국가 감축목표(NDC)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매 대상 크레딧과 가격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고품질 크레딧 기준은 현재 마련 중이다. 민간 평가기관에 의한 품질 등급화는 법률 없이도 가능하나, 정부가 구매 시 어떤 평가를 ‘고품질’의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법률 공포 및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2027년 내에 법률에 따른 품질평가를 거친 크레딧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처럼 ‘고품질 크레딧’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매물량과 금액이 산정되었다.

또한,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국내에 이미 발급된 크레딧 물량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연간 공급량이 아닌 각 제도적 누적 발급량으로 이 물량에는 이미 정부가 구매했거나 발급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소각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ARCOP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장 유통 물

량으로 보기 어렵다. 2027년에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물량과 그 중 고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은 기준이 마련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시장에서 이미 형성된 가격에 따라 고품질 크레딧을 구매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나, 예산안은 톤당 2.5만원의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탄소크레딧 정부구매 단가와 주요 가격 비교]

비교 대상	가 격	정부 구매단가 대비
정부 구매단가(예산안)	25,000원/톤	-
국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2026.2.	10,500원/톤	구매단가가 약 2.4배
국내 할당배출권(KAU), 2026.8.25.	약 29,250원/톤	구매단가가 약 85%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평균, 2024년	6.34달러/톤	구매단가가 약 2.8배
고품질 탄소제거 크레딧	74~127달러/톤	구매단가가 크게 낮음

주: 정부 구매단가는 톤당 2만 5,000원이며, 달러 환산은 1달러=1,400원 가정

자료: 기획예산처(2026.4.27.; 2026.8.31.), Ecosystem Marketplace, 삼성증권(2026.5.2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고품질 크레딧의 기준과 구매 대상 크레딧의 유형(감축형·제거형)·원산지(국내·해외), 가격 결정 방식(경쟁입찰 여부)을 먼저 확정하고, 구매 가능한 물량을 확인한 후 구매단가와 규모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탄소센터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월 9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한국탄소센터의 인건비를 15명에 대해 월 950만원, 8개월분을 편성하였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1,400만원에 달하는바, 통상적인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인건비로는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한국탄소센터는 VCM 활성화를 위한 시장관리 및 크레딧 수요 창출(정부구매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형 공공기관 정규직 보수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는 설명이다.

가. 현 황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¹⁾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을 수행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28억 6,600만원이 증액된 4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12,932	1,702	1,702	4,568	2,866	168.4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정 투자시기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정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 3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²⁾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사비 산출근거는 현행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1~2025년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사업은 8건(SOC 3건)에 불과하여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조사 건수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6-301

2) 2026. 3. 10.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은 정보화 사업에 대해 비용효과분석(E/C) 전환, 평가기간 단축(9개월 → 6개월), 진단형 평가 도입, 민간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 및 조사기관 확대(한국재정정보원 등) 등을 포함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정보화사업 투자 자문위원회 지원 8억원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세부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고 위원회 관련 예산이 두 세부사업에 나뉘어 있으며 설치 근거도 불명확하므로, 편성 위치와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역사업인 ‘타당성조사 사업비’ 35억 1,800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출연금(27억 1,800만원)과 정보화사업 투자 자문위원회 지원(8억원, 한국재정정보원 출연)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회 지원은 전문가활용비(4억 1,900만원)와 연구용역비(2억원)가 약 77%를 차지한다. 기획예산처는 신기술 도입으로 정보화사업 요구가 급증하고 검토가 어려워졌으며, 민간 전문가 위원회(6개 분과, 위원 24명)의 검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술검토 → 예산실 최종 판단의 3단계 사전검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요구 전반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로서,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그럼에도 운영 경비를 ‘타당성조사 사업비’에 편성한 것은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 관련 2027년 예산 26억 6,200만원 중 이 사업의 8억원을 제외한 18억 6,200만원(약 70%)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AI정보화 예산센터’(30명)의 인건비 등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의 기관운영 출연금에 별도 편성되어 총소요를 파악하기 어렵다. 위원 24명의 회의체를 지원하기 위해 30명 규모의 조직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담당자 1인당 검토 물량이 1.6배 증가한 점을 신설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세부사업 수 증가(468개 → 565개, 20.7%)와 담당 인력 감소(4명 → 3명)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담당자가 4명으로 유지되었다면 1인당 사업 수는 141개로 20.7% 증가에 그치므로, 외부 위원회와 지원조직 신설에 앞서 담당 인력의 적정 운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업 검토 물량 및 담당 인력 추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세부사업 수(개)	473	456	462	475	468	565
담당자(명)	4	4	4	4	4	3
1인당 사업 수(개)	118	114	116	119	117	188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원회의 성격과 설치 근거도 불명확하다. 기획예산처는 위원회가 ‘사전 자문’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위원회 검토를 ‘통과한 사업만’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사실상 부처 예산요구의 진입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설치 근거는 신설을 추진 중인 훈령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가 근거로 든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6호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아니며, 위탁사업을 근거로 출연금에 편성한 것이 예산 성격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은 이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SP 사전검토(19억 1,300만원)와 기술검토를 거치고 있는데,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위원회와 지원조직 예산을 합한 총소요 26억 6,200만원의 산출근거와 지원조직 인력 산정근거,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존 검토체계와의 역할 분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위원회 운영 경비가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지원조직 규모의 적정성을 두 사업을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당성조사 제도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250.0% 증액되었으나 과제별 수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토대로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조사 제도 연구용역비는 2025~2026년 각각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은 이보다 4억원(250.0%) 증액된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반면 최근 착수 과제는 연간 1~4건에 그치고 2026년에는 단 1건만 수행 중인 상황이다.

참고로, 2024~2026년 연도별 예타 관련 연구용역 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4~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용역 수행 내역]

착수연도	과 제 명	계약기간
2024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갱신 및 보완 연구	'24.10~'25.7
202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영향에 관한 연구	'24.10~'25.7
2025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기간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5.6~'26.1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운영 평가	'25.9~'25.12
2025	정보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개편 연구	'25.11~'26.6
2025	예비타당성조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25.11~'26.6
202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26.6~'26.12

주: 2026년은 4분기 중 연구용역 수요 발굴 및 의뢰 계획 중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027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와 데이터베이스화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와, 2026년 3월 예타제도 개편에 따른 부문별 세부지침 개정 등 후속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부문별 세부지침의 개정 시점이 2021~2022년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편에 맞춰 지침을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 이후 27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그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는 방안은 이제야 선행연구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산출되는 수요예측과 비용·편익 추정치는 사업 추진 이후 실적과 비교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의 조사에 활용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이다. 또한 선행연구 이후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구축 범위와 일정, 총소요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2027년 연구용역의 과제명과 과제 수, 과제별 연구기간 및 소요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3년간 연간 착수 과제는 1~4건 수준이었고, 2026년에는 7월 말 현재 1건만 착수했으며 나머지는 4분기 중 수요를 발굴해 의뢰할 계획이다. 2026년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도 7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는 만큼, 증액된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2027년 연구용역의 과제별 목적과 기간, 소요액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연구 이후의 구축 계획과 총소요 재원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최근 연구용역의 착수·집행 실적과 신규 과제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¹⁾은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에 대한 포상 제도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예산절약·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억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참고로 동 사업은 당초 재정집행관리²⁾ 사업의 내역사업(2026년 본예산 기준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7년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되었다.

[2027년도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	-	531	531	순증
예산낭비 신고제도 운영	-	-	472	472	순증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	-	59	59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이 운영하는 두 제도는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포상과 공직자의 예산절약·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예산성과금은 각 중앙관서가 절약분을 포상금 비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하므로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며,³⁾ 동 사업에는 성과금 지급액이 아닌 심사 운영경비만 편성되어 있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643-301

2) 코드: 일반회계 2643-300

3)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6.4.), 265쪽

[예산낭비신고 포상금과 예산성과금 제도 개요]

구분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예산성과금
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 규정」,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대상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을 제안한 국민	예산 집행방법·제도 개선으로 지출절약·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
지급 수준	7개 등급, 20만원~600만원	지출절약액·수입증대액 규모에 따라 산정
재원	동 사업 포상금 (2027년안 6,000만원)	각 중앙관서가 절약분을 전용하여 지급 (별도 예산 없음)
심사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제시한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낭비신고 포상금과 홍보비가 각각 2배 이상 증액되었고 제도개선 연구용역(1억원)과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1,000만원)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신고센터 인력 증원과 회의 운영경비 현실화 등이 반영되었다.

[2027년도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안	증 감	비 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20	60	40	30건 × 200만원
예산낭비신고 홍보	45	90	45	연 1회 → 2회
예산성과금 제도 안내	-	10	10	부처 공무원 대상
제도개선 연구용역	-	100	100	제도 시행 20주년
신고센터 인력 증원(1명 → 2명)	51	137	86	2026년 채용분 연간화 28 포함
회의 운영경비 현실화 등	84	134	50	산출근거 미제시
계	200	531	331	

주: 2026년 예산은 기존 재정집행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예산낭비신고 포상금과 홍보비는 최근 실적과 포상 부진의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적을 토대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은 신고로 인한 예산절감 등의 효과에 따라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2027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의 건당 단가(200만원)는 4등급 금액에 해당한다.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 급	지급액
1등급	600만원
2등급	500만원
3등급	300만원
4등급	200만원
5등급	100만원
6등급	50만원
7등급	20만원

자료: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2027년도 포상금 예산 6,000만원은 30건에 건당 20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2025년 지급실적(11건, 1,100만원)의 5.5배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건수는 실적의 약 3배이고, 단가 200만원은 최근 건당 평균 지급액(66만~100만원)의 2~3배 수준으로서 7개 포상등급 중 4등급 금액에 해당하나, 실제 등급 분포를 반영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026년 예산(2,000만원)도 2025년 실적의 1.8배였는데, 2026년 집행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3배로 증액되었다.

예산낭비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낭비신고 제도에 대한 제도개편 등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집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신고량의 부족이 아니라 채택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 건수는 2021년 3,065건에서 2024년 1,531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596건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8월까지 1,519건이 접수되어 이미 2024년 연간 건수에 이르렀다. 반면 포상은 연 10건 내외로 접수 대비 약 0.7%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신고량이 5년 전 대비 감소하여 포상 대상 발굴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나, 최근 접수 건수가 늘고 있음에도 포상이 늘지 않고 있는 만큼 홍보를 2배로 늘리는 것(4,500만원 → 9,000만원)이 포상 확대나 예산절감으로 이어질지 불분명하며, 2026년 홍보비의 집행 내역과 홍보 전후의 접수·채택 변화 등 효과 분석도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2026년 9월 지침 개정으로 민원성 신고를 일반민원으로 재분류하는 근거(제7조제3항)가 지침에 명시되었는데,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재분류가 개정 전에도 이루어졌고 개정은 처리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느 경우든 그간의 접수건수에는 예산낭비와 무관한 민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보를 통해 접수를 늘리기보다 타당한 신고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상금은 최근 지급건수와 등급 분포를 토대로 재산정하고, 홍보비는 2026년 집행 효과를 확인한 후 증액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1. 미래대응기금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에 모두 사용하기보다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초 2026년 상반기에는 증가한 세수를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안이 먼저 거론되었고, 6월에는 국부펀드 투자와 함께 ‘미래대응기금(가칭)’ 신설·적립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기획예산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였다.¹⁾ 이후 7월 초에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국부펀드 출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7월 5일 고위당정협의회와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기금 신설이 공식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토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현행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잔여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국부펀드에 직접 출자하여 장기 투자자산으로 축적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별도 기금에 적립한 뒤 재정안정화와 투자 사업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셋째 방식을 택하였고, 국부펀드는 2026년 7월 31일 한국투자공사 내 전략투자계정 설치 방안으로 별도 발표된 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의 세부사업(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는 재정안정화와 미래대응투자 두 가지이다. 재정안정화는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시기에 그 초과분을 적립하였다가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 일반회계로 환원하여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투자는 적립 재원의 일부를 청년·성장동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미래대응기금 신설·적립,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2026.6.).

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세대·지역 간에 확산한다는 취지이다. 기획예산처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년도 예산 원칙상 여유재원을 적립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²⁾ 사업 편성 기준으로는 인적·물적 자본형성(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의 이른바 ‘NEXT 원칙’을 제시하였다.³⁾

이러한 구상은 2027년 세입 전망과 맞물려 있다. 2027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390조 2,000억원) 대비 4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법인세가 216조 7,000억원으로 약 2.5배 수준까지 증가하여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520조 5,583억원) 중 장기 추세치(362조 863억원)를 초과하는 158조 4,720억원을 ‘추가세수’로 산정하여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총계		-	2,151,623	2,151,623	순증
수입	일반회계전입금	-	1,584,720	1,584,720	순증
	특별회계전입금	-	12,427	12,427	순증
	특별회계예수금	-	25,645	25,645	순증
	기금예탁이자수입	-	205	205	순증
	기금내 계정간 전입금	-	528,625	528,625	순증
지출	사업비	-	453,625	453,625	순증
	(청년계정)	-	133,296	133,296	순증
	(성장동력계정)	-	141,638	141,638	순증
	(지방계정)	-	102,662	102,662	순증
	(교육·인재계정)	-	76,029	76,029	순증
	기금운영비	-	233	233	순증
	일반회계 전출	-	125,000	125,000	순증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	526	526	순증
	공자기금 예탁	-	10,000	10,000	순증
	여유자금(비통화금융기관 예치)	-	1,033,614	1,033,614	순증
기금내 계정간 지출		-	528,625	528,625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2)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9.1.) 관련 설명.

3) 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2026.9.17.).

2027년 미래대응기금 총 운용규모는 215조 1,623억원, 기금 내 계정 간 전입금 52조 8,625억원을 제외한 순 운용규모는 162조 2,998억원이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158조 4,720억원이며, 이 외에도 특별회계 전입금과 예수금 등이 반영되었다.

나.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특징

미래대응기금은 일반회계 내국세 세입 중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이전하는 구조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단계의 추가세수, 연도 중 재추계에 따른 초과세수, 결산 후 세계잉여금 잔액의 세 가지 경로로 일반회계 재원을 기금에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이 되며, 교육·인재계정은 내국세 세입예산과 추세치 중 적은 금액의 20.79%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직접 전입받을 수 있다.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구 분	정 의	전출 시점·방식	2027년 계획안
추가세수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내국세 세입 추세치(2년 전 결산액에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를 뺀 금액	예산 편성 단계, 세출예산 계상	158조 4,720억원
초과세수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 중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을 넘는 금액	연도 중, 세입세출외	-
세계잉여금 잔액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후 잔액	결산 후, 예산 외	-
기타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	3조 8,277억원

주: 기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조 2,427억원, 예수금 2조 5,64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 205억원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세 재원은 재원이 발생하는 시점과 확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추가세수는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에서 내국세 세입 추세치(해당 연도의 2년 전 결산액에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

4) 제정안 제9조제1항제1호. 2027년에는 이 경로의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산 편성 단계에서 확정된다. 초과세수는 연중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에서 확정되는 잉여금(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추가세수는 편성 단계, 초과세수는 연중 재추계 단계, 세계잉여금은 결산 단계에서 각각 산정되는 세수 초과분에 해당한다.

(1) 계정 구조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총괄계정에 우선 유입되고, 총괄계정이 이를 각 사업계정에 전출하거나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한다.

2027년 기금 총수입(계정 간 전입금 제외)은 162조 2,998억원이며, 이 중 52조 8,625억원이 4개 사업계정에 전출되어 129개 세부사업(45조 3,625억원)에 편성되었다. 세부사업비 외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12조 5,000억원), 여유자금 운용(103조 3,614억원, 지방계정 5조원과 교육·인재계정 2조 5,000억원 포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1조원) 등에 배분된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수입·지출 구조]

(단위: 억원)

계 정	주요 용도(제정안)	수 입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	그 밖의 지출
총괄	재정안정화, 사업계정 전출, 일반회계 전출	1,622,998	-	958,614	664,384
청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혼인·출산 지원	133,296	133,296	-	-
성장동력	첨단산업·연구개발, 출자·정책금융	141,638	141,638	-	-
지방	지방주도성장, 지방자치단체 지원	152,662	102,662	50,000	-
교육·인재	인재양성, 대학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101,029	76,029	25,000	-
계(총계)	-	2,151,623	453,625	1,033,614	664,384

주: 1. 사업계정의 수입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이며, 계는 계정 간 거래(52조 8,625억원)를 포함한 총계

2. 그 밖의 지출은 사업계정 전출 52조 8,625억원,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조원,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 526억원, 기금운영비 233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운용 방식과 집행 구조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기존 기금과 다른 여러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연도 중 초과세수 전출과 세입 부족 시의 일반회계 전입을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고, 비금용성기금임에도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이월과 집행잔액 사용에 특례를 인정한다. 또한 타 기금이 설치 근거 법률과 관계없이 여유자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에 전출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미래대응기금에 적용되는 주요 특례]

구 분	현행 기금	미래대응기금(정부안)
연도 중 세입 변동 대응	추가경정예산(초과세수의 국채상환만 세입세출외)	초과세수 전출·세입부족 보전 전입 모두 세입세출외, 한도 없음
주요항목 변경한도	비금용성기금 20%	30%(일반회계 전출 포함)
이월·보조금 관리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보조금법 적용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 보조금법 일부 배제
지방교부세·교부금	내국세의 19.24%·20.79%	기금 전출분을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
집행 구조	기금관리주체가 집행	기획예산처 소관, 16개 중앙관서 집행
여유자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다른 기금의 미래대응기금 예탁 특례(제정안 제10조)

자료: 관련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이나, 4대 사업계정의 129개 세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16개 중앙관서가 집행하며 각 집행부처는 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 다수 부처가 사업을 집행하는 다부처 사업성 기금, 출자·용자를 수행하는 정책금융수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한편,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세입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특례와 금융성기금 수준의 지출 변경한도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 신축성은 커지는 반면 국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적 심의·통제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⁵⁾ 또한 추가세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계속사업의 지출 수요는 유지되어 일반회계 등으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재원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청년계정이 “법률상 거의 모든 청년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과 미래대응투자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⁶⁾ 편성된 사업이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⁷⁾

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해외 주요국 역시 재정수입의 변동성에 대응하거나 비경상적 재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해외 기금은 주된 기능과 재원의 성격에 따라 적립·인출 규칙 및 자산 운용 방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재정 변동에 대응하는 칠레의 경제·사회 안정화기금(ESSF) ▲세수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웃돌 때 초과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예산안정화기금 ▲석유수입을 장기 관리하여 세대 간 자산 배분을 도모하는 노르웨이의 정부연금기금 글로벌(GPFG) ▲법인세 초과수입(횡재세 성격의 우발 세수)을 재원으로 장기 저축기금인 미래아일랜드기금(FIF)과 경기 대응 및 특정 목적 지원 기금인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을 분리 운용하는 아일랜드의 사례 등이다. 정부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르웨이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⁸⁾

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6.10.).

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6.9.), 55쪽. 청년계정은 인적자본 축적·노동시장 참여·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성장동력계정은 기술혁신·민간투자 유발·산업구조 전환·생산성 향상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선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6.9.), 32~35쪽.

8) 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정감사(2026.10.8.)에서 노르웨이도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발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공식 방침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미래대응기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해외의 재정안정화·저축기금은 적립 기준뿐만 아니라 인출 요건 및 규모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준칙을 운용한다. 노르웨이 GPF는 석유수입과 투자수익을 축적하되, 기금의 예상 실질수익률(현행 3%)을 장기 예산 이전 규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매년의 인출액을 일률적으로 묶는 절대적 상한이 아니라,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용 기준이다. 칠레 ESSF는 재정책임법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용 자산을 축적하며, 구조적 수지 산정에 필요한 장기 구리가격과 추세 GDP 등 핵심 변수를 독립 전문가위원회가 추정하도록 하여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최근 회계연도 세수 증가율이 직전 6개년 평균을 초과할 때 차액 산정분의 최소 50%를 적립하되, 기금 규모에 상한을 두고 세입 전망 악화 등 법정 요건 충족 시에만 한도 내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한다. 아일랜드는 2024~2035년 중 매년 GDP의 0.8%를 FIF에 이전하되 2041년 이전의 인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ICNF에는 매년 20억 유로씩 최대 140억 유로까지 적립하되 경기 악화 시 인출 한도를 연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기금의 주된 기능에 따라 금융자산 운용과 일반 예산지출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노르웨이·칠레의 기금과 아일랜드 FIF는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재원을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이전할 뿐, 기금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재정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한편, 아일랜드 ICNF는 안정화 기능과 환경사업 지원 기능을 겸하고 있으나, 사용 목적을 ‘경제·재정 여건이 중대하게 악화될 때의 지출 지원’과 ‘2026~2030년 지정 환경사업 지원’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환경사업 인출 규모도 기금 가치의 22.5%(최대 31.5억 유로) 이내로 제한한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와 미래투자 기능을 결합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적립·인출 원칙이나 사업계정 전출 통제 기준 없이 다수 사업계정을 통해 일반 재정사업까지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 기금과 대비된다. 추세 초과 세수를 적립한다는 점은 미국 버지니아주와, 초과수입을 장기 저축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은 아일랜드와 외형상 유사하다. 그러나 버지니아주가 법정 산식과 기금 상한을 두고 아일랜드가 적립 비율(GDP의 0.8%)·기간(2035년까지) 및 인출 개시 시

점(2041년)을 법률로 명시한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추세 초과분을 적립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적립 상한이나 인출 통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사업계정 지출에는 자본성 투자뿐만 아니라 현금급여·보조사업 등 일반 재정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해외 재정안정화·저축기금은 물론, 안정화와 지출 기능을 겸하는 아일랜드 ICNF와 비교하더라도 인출 요건과 지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기금 고유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있다.

[해외 유사 기금과 미래대응기금 비교]

구분	노르웨이 GPF	칠레 ESSF	미국 버지니아주 RSF	아일랜드 FIF·ICNF	미래대응기금 (정부안)
주요 기능	장기 자산 관리 및 세대 간 배분	경기·재정 변동 안정화	추세 초과 세수 예산안정화	장기 저축(FIF), 경기대응·환경사 업 지원(ICNF)	재정안정화 + 미래대응투자 (혼합형)
적립 규칙	정부 석유 수입 잔액 및 투자수익	재정책임법상 재정운용 규칙에 따라 연금준비기금 출연 등을 반영한 뒤 적립	최근 세수 증가율이 직전 6개 회계연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그 차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최소 50% 적립	법인세 초과수입 중 매년 GDP의 0.8% (FIF, ~2035년) 이전	추세치 초과 내국세 잔액(추가세수), 초과세수·세계잉 여금 잔액(임의) 등
규모 상한	없음	없음	직전 3개 회계연도 소득세·판매세 수입 평균의 15%	FIF 없음, ICNF 140억 유로	없음
인출 규칙	예산 실질수익률을 장기적인 예산 이전의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	재정적자 보전, 공공부채 상환 등	세수 2% 초과 감소 시 감소분의 1/2과 잔액의 1/2 중 작은 금액	FIF 2041년 이전 인출 금지, ICNF 연 25% 이내	일반회계 보전 전출, 사업계정 전출 모두 요건·한도 없음
의회 통제	인출은 예산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예산법으로 인출	적립·인출 모두 의회 세출 승인	FIF 인출 시 정부 승인·하원 결의	세입·세출 외 전출입은 사후 제출, 사업비 30% 내 자체변경
직접 사업 지출	없음 (해외 금융자산에만 투자)	없음 (금융자산 운용)	없음	없음 (NTMA가 금융자산 운용)	129개 세부사업 45조 3,625억원 (경상·보조사업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소결

반도체 업종의 호황기 도래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별도의 재원으로 적립·운용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구상은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운용상 재량이 확대되는 한편,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개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 재원 및 계정 구조 등을 살펴보고, 기금 신설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현행 재정운용체계와의 정합성 및 향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신설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주요 논의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정부제출 안건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소관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2221052)	미래대응기금 설치,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계정 구성, 기금의 재원·용도 및 관리·운용체계 규정	재경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6)	초과세수·세계잉여금의 미래기금 전출,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절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허용범위 등	재경위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21033)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제로 편성	재경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47)	미래대응기금 재원조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조정	행안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체계 조정	교육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특별회계 재원 조정	교육위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체계 변경을 반영한 특별회계 재원 조정	교육위

자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6.9.)

5-2. 대규모 일시적 세수의 활용방식에 대한 검토

가. 현 황

반도체 업황 호조로 2026년부터 국세수입이 예산을 대폭 상회함에 따라, 증가한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415조 4,000억원)보다 63조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4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중 내국세 추세치를 초과하는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세부 배분 내역을 보면, 45조 3,625억원은 4개 사업계정의 129개 세부사업에, 103조 3,614억원은 여유자금 예치에 각각 배분하였다. 반면 국채 발행 축소와 직접 연결되는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조원으로, 추가세수 총액 대비 8.5% 수준에 불과하다. 2026년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 세입예산을 25조 2,000억원 증액경정하였으나 국고채 순상환은 1조원에 그쳤다. 한편 2026년에는 9월 재추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10월 국채 발행량을 당초계획 대비 5조원 축소하였으나, 이는 2026년 내국세 초과세수(56.2조원)의 약 9% 수준이다.

[2027년도 추가세수의 활용 구조]

(단위: 억원, %)

구 분	금 액	비 중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적립)	1,584,720	100.0
· 4개 사업계정 세부사업	453,625	28.6
· 여유자금 예치	1,033,614	65.2
· 일반회계 전출	125,000	7.9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000	0.6

주: 기금 수입에는 추가세수 외에 전입금·예수금 등 3조 8,277억원이 더 있으므로 항목의 합은 추가세수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세수 활용방식을 두고 정책적으로 크게 세 갈래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세수를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본 투자, 신산업·전략기술 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일시적 호황 이후의 세수 감소와 잠재적 위기에 대비하여, 초과세수 일부를 기금 등 별도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경상적 세수를 적자국채 조기상환이나 신규 국고채 발행 축소에 우선 투입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실제로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⁹⁾

[대규모 일시적 세수의 활용방식에 관한 주요 주장과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근거
미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 및 인적자본 투자 - 신산업·전략기술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등 특정 업종 가변성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세수 기반확충 - 잠재성장 제고를 통한 중·장기 재정 여력확보
미래대응 적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결손·긴급 재정위기 등에 대비한 재원 적립 - 초과세수 일부를 별도 재원(기금 등)으로 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호황 이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안전판 - 잠재적 경제·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 확보
국가 채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발행 적자국채 조기상환 - 신규 국고채 발행 규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채무·이자비용 누적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 - 일시적 세수를 항구적 지출로 연결하는 위험 차단

자료: 언론 보도 및 토론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추가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방안은 채권시장 유동성과 재정운용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나, 위기로 급증한 채무를 세수 호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8.7.). 현행 제90조제1항의 초과 조세수입 국채 상환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가세수의 세 가지 활용방식은 각각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재원의 성격에 맞게 조화롭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투자는 중·장기적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나,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확대할 경우 세수가 둔화된 이후에도 지출 소요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안정화 적립은 세수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로서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적립 재원이 장기간 유흯화되거나 국회의 통제 밖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 국채 상환은 재정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국고채 시장에 수급상 부담을 줄 수 있다.

먼저, 추가세수 전액을 채무 상환에 투입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채는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이자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발행 물량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고, 향후 세수 여건이 다시 악화될 때 일시에 대규모 발행이 불가피해져 발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 충격과 조달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정부도 노르웨이가 적자 보전 수요가 부재함에도 국채 발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공식 방침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2023~2024년과 같은 세수결손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호황기 재원의 일부를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비축하는 것도 정책적 타당성을 지닌다.

한편, 여유재원을 즉각적인 채무 상환 대신 미래대응투자로 연계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국내총생산(GDP)이 확대되어, 채무의 절대 규모를 직접 줄이지 않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¹⁰⁾ 다만 이러한 효과는 투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되고 그 경제적 수익률이 국채 조달비용을 상회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사업 타당성 검증과 철저한 성과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증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계잉여금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후 남은 잔여 재원의 51% 이상을 공적 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호황기의 비경상적인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배분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다.

10) 국회예산정책처(2026)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호황에 따라 GDP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어 2030년 기준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2026년 대비 증가하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초반대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0년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723조 2,000억원에서 2022년 1,067조 7,000억원으로 3년간 344조 5,000억원 증가하였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위기로 급증한 채무를 비경상적 세수 호조 시기에 감축하는 것은 경기대응적 재정운용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2027년도 계획안은 추가세수 중 국채 발행 축소에 직접 연결되는 금액이 8.5%에 불과하며,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의 국고채 시장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채무 상황을 병행할 필요성이 크다. 2027년 국고채 만기상환은 110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나, 차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상환·교환은 15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축소되었다. 더욱이 2026년 하반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4%대로 상승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불안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축소 조정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국채 물량 조절에 활용하는 것이 채권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처럼 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면서 같은 해에 4%대 고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양자 간 금리 차이만큼 재정 전체의 순손실(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점에서 국고채 순발행을 줄이거나 만기가 집중된 종목을 조기상환하는 데 일부 재원을 투입할 경우, 채권시장 소화 부담과 국가의 이자비용을 동시에 경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세수 중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적정 유동성 규모와 미래대응 투자 소요를 먼저 정밀하게 산정해야 한다. 그 후 이를 초과하는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통해 국채 발행 축소와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환 규모는 연간 만기 분포와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하되, 적어도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 상환에 투입되었을 법정 수준(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을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3.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절차 준수 여부 검토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14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¹¹⁾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 회계·기금 대비 사업수행의 효과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미리 재정정책자문회의¹²⁾에 자문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계획서의 재검토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심사 대상이다.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그간 미래대응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와 입법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생략)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 및 입법 추진 경과]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8.14.	재정정책자문회의: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추진계획안' 상정	심사 요청 전
8.21.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 → 기금운용혁신과에 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 요청	기획예산처 내부
8.21.	재정정책자문회의: '미래대응기금 추진계획안' 상정	심사 요청 당일
8.21.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계획 발표, 입법예고(8.24.)·국회 제출(9.3.) 일정 제시	심사 요청 당일
8.24.~8.28.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5일간
8.31.	기금운용혁신과, 신설 타당성 인정으로 자체 심사 완료	입법예고 종료 후
8.31.	법률안 법제처 제출(심사 의뢰)	심사 완료 당일
9.1.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발표	심사 완료 다음 날
9.3.	법률안 국회 제출(의안번호 2221052호)	예산안과 함께 제출

주: 정부입법계획상 국회 제출 예정일은 2026.9.30.이었으나 9.3.에 제출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법제처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신설 타당성 심사를 형식상 거쳤으나, 신설 계획과 입법 일정이 공개된 이후에 기금관리주체가 될 기획예산처 내부에서 열흘 만에 절차가 이루어졌고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자문도 추진계획 보고에 그쳐 사전 검증 절차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심사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의 독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14조의 심사는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하여 법률안이 확정되기 전에 재정당국이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 절차이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심사 경과를 법률이 정한 절차 요건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요청 시기는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밖의 요건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14조의 절차 조건과 미래대응기금 심사 경과 비교

구 분	법률 규정	미래대응기금	평 가
심사 요청 시기	입법예고 전 요청(제1항)	8.21. 요청, 8.24. 입법예고	형식상 충족
요청·심사 주체	중앙관서의 장 → 기획예산처장관(제1항)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 → 기금운용혁신과	요청 주체와 심사 주체 동일
자문회의 자문	심사 시 미리 자문(제2항)	8.14.·8.21. 예산안 등과 함께 '추진계획안'으로 상정	신설 기준에 대한 자문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 결과 반영	부적합 시 재검토·수정 요청(제3항)	8.31. 완료(입법예고 종료 후, 같은 날 법제처 제출)	법률안에 반영할 여지 없음

자료: 「국가재정법」 및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먼저, 심사는 신설 여부와 입법 일정이 이미 정해진 뒤에 이루어졌다. 기획예산처는 심사를 요청한 8월 21일 당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일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입법예고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되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종료되었다. 내부 심사가 완료된 8월 31일에는 법률안이 법제처에 제출되었고, 다음 날인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법률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심사가 완료된 것이어서, 심사 결과에 따라 계획서를 재검토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할 여지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도 「행정절차법」이 정한 원칙(40일 이상)보다 크게 짧아, 교부세·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견을 제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기금 신설 추진부서와 심사부서가 모두 기획예산처 내부에 있다. 제 14조는 소관 중앙관서가 기금 신설을 추진할 때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 구조이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주도하고 기금관리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심사 주체이기도 하다. 미래전략과의 요청에 대하여 기금운용혁신과가 열흘 만에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내부 검토에 가까워, 다른 부처의 기금 신설을 재정당국이 견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이 정한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도 신설 타당성 심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8월 14일과 8월 21일에 개최되었으나, 미래대응기금은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함께 ‘추진계획안’으로 상정되었다. 첫 회의는 심사 요청 이전이었고 두 번째 회의는 심사 요청 당일이었으며, 제14조제2항이 정한 네 가지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서와 심사 결과서,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 내용 등 제14조에 따른 검토 내역을 제출하여 네 가지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¹³⁾ 아울러 기획예산처가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기금처럼 심사를 요청하는 주체와 심사하는 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별도 심의나 외부 전문가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근거로 신설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제14조의 기준에 따른 신설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4개 기금의 신설이 반영되었다. 두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은 이미 제정되었으나, 전략수출금융기금·농업발전기금·자원안보기금·공익신고장려기금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다.

「국가재정법」 제14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 계획서를 제출해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률안을 마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에는 현행 제14조의 심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13)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예산처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내부 공문만을 제출하였다.

[2027년도 신설 특별회계·기금의 근거 법률안 현황]

회계·기금	총지출 (조원)	근거 법률안	발의 형식
미래대응기금	45.4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21052호, 2026.9.3.)	정부 제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2.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제2215103호)	위원회 대안 (기제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위원장 대안, 의안번호 제2215121호)	위원회 대안 (기제정)
자원안보기금	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21238호,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2026.9.9.)	의원 발의
전략수출 금융기금	1.4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216289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6.1.23.)	의원 발의
농업발전기금	6.3	「농업발전기금법안」 (의안번호 제2221142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26.9.8.)	의원 발의
공익신고 장려기금	0.3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의안번호 제2220978호,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026.9.1.)	의원 발의

주: 1. 총지출은 2027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기준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2.8조원)은 기존 특별회계 내 계정 신설이므로 제외

3.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9.3. 국회 제출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2027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개 기금의 근거 법률안 발의 시점은 서로 다르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법률안은 2026년 1월 23일, 공익신고장려기금 법률안은 9월 1일 발의되어 9월 3일 예산안 제출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반면 농업발전기금과 자원안보 기금의 근거 법률안은 각각 9월 8일과 9월 9일 발의되었다. 정부는 이 두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해당 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발의 시점과 관계없이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사전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와 재정운용계획이 서로 다른 절차와 시점에서 심사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신설이 기존 회계·기금이나 일반회계보다 효과적인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등을 예산안 제출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을 전제로 정부가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신설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의 안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재정법」 제14조의 심사기준을 준용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4.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 검토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은 기금 신설의 심사 기준으로 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 ④ 기존 회계·기금 대비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정하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기금의 신설이 재정의 칸막이를 늘리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할 실익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세수변동성 완화와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총괄계정에 적립하여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의 4대 사업계정을 통해 미래대응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신설 요건별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금 신설 요건별 미래대응기금 주요 현황]

신설 요건	미래대응기금 현황
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기금 수입 162조 2,998억원 중 97.6%(158조 4,720억원)가 추가세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총괄계정에서 4대 사업계정으로 52조 8,625억원 전출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	비금융성기금임에도 금융성기금과 같은 주요항목 변경한도(30%) 적용 추진,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
③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조달	추가세수(당초 내국세 세입예산 - 추세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등 세입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재원에 의존
④ 기존 회계·기금 대비 효과성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 3,625억원 중 58.4%(26조 4,959억원)가 기존 사업의 이관·통폐합분이며, 16개 부처가 집행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기금 신설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투자 기능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나. 분석의견

(1)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안정화 및 미래대응투자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운용 방식과 계정 구성 및 사업 편성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1호는 기금 신설요건으로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총괄계정)과 미래산업·성장동력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투자 기능(4대 계정)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두 기능은 목적과 재원 활용방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은 두 기능을 엄격히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추가세수·초과세수 등 재정여력의 일부를 기금 내 총괄계정에 적립하여 향후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은 재원의 성격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입이 당초 전망이나 추세를 상회한 시기에 발생한 재정여력을 모두 당해연도 지출 확대에 사용하기보다 일정 부분 적립하였다가 향후 세입 감소나 경기 악화 시 활용할 경우, 세수 변동에 따른 총지출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국채 발행·상환 제도가 이미 이러한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도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바,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감축 및 이자비용 절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투자는 그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일시적·대규모로 유입된 내국세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유효한 재원 배분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괄계정과 4대 사업계정 간 재원 배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및 재원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칙이 부재한 점은 국회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각 계정에 편성된 사업이 법정 미래대응투자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가 기

금 설치의 근본적인 정당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심사가 요구된다.

(2)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

미래대응투자 사업에 요구되는 신축성은 기존 재정제도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별도 기금 신설의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기금을 신설하더라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일반 비금융성기금 수준(2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2호는 기금 신설요건으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산업 육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은 기술·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재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수준의 고도화된 신축성을 요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현행 재정제도에서도 탄력적인 재정운용 수단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일반회계 및 기존 기금에서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일정 범위에서 재원을 기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정책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추경을 편성·의결한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개별 사업이 이러한 기존 재정 수단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축성이나 탄력성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선정기준(NEXT 원칙)의 하나로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fleXible)’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이 어떤 이유로 기존 수단을 초과하는 탄력성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자료나 타당성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기금의 신축성은 주로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가 그에 비례하여 완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가 의결하는 주요항목(장·관·항)과 그 범위 안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정할 수 있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기금관리주체는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고 주요항목 지출금액도 법정 비율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이하 ‘자체변경’).

현행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30%의 변경범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기금으로, 시장 여건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금융성기금과 성격이 판이하므로 금융성기금 수준의 변경범위를 적용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4대 계정 사업 규모가 약 45.4조원에 달하므로, 산술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최대 13.6조원 규모의 지출 변경이 가능해져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투자 기능을 구분하여 보더라도,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미래대응기금 전체를 별도 기금으로 신설·운영해야 할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재정안정화 기능은 세수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원을 적립·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탄력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내 재정안정화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미래대응투자 역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존 회계·기금에서 재원을 조정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충분한 법적·정책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기금을 신설하더라도 신축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간 균형을 고려하여, 4대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최소한 일반 비금융성기금 수준(20%)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 가능성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세입 여건에 따라 발생 여부와 규모가 가변적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3호는 기금 신설요건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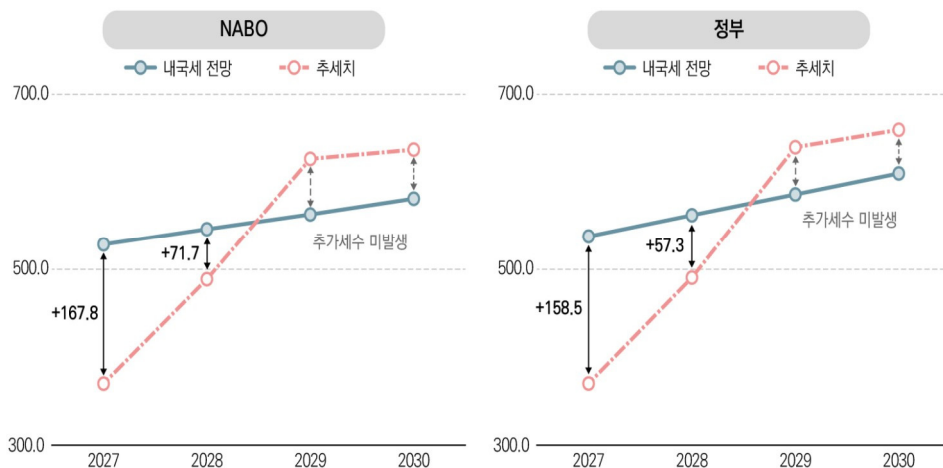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목적성 세입이 아니라, 경기 순환과 세입 여건, 세수 추계의 변동에 연동되는 일시적 재정여력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로 국세수입은 2021·2022년 예산 대비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

생한 이후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반전되는 등 최근에도 변동폭이 매우 컸다. 특히 초과세수는 재추계 결과 세입이 당초 예산에 미달할 경우 전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입 부족을 보전해야 할 수도 있어, 매년 일정한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에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2년 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기 전환기나 변곡점에서는 추가세수 규모가 실제 세입 여건과 크게 괴리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 전망에 따른 추가세수 추이]

(단위: 조원)



- 주: 1. NABO의 추가세수 추이는 내국세 실적 및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
 2. 정부의 추가세수 추이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바탕으로 NABO가 추정한 수치
 자료: 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이러한 가변적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적립·활용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미래대응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미래산업 육성이나 성장동력 확충 등은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한 재원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세수 상황에 따

라 재원 규모가 급변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일단 착수하면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세수가 부족한 연도에는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타 회계·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기금으로 재원을 구분하려던 취지가 퇴색되고, 재정 부담은 결국 일반 회계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종합하면 변동성이 큰 재원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구조는 제3호 요건의 관점에서 볼 때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기금에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존 회계·기금 대비 사업수행의 효과성

미래대응기금에는 기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용할 차별성과 효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4호는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을 기금 신설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 재정체계를 통한 사업 수행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회계·기금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는지(차별성)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별도 기금 운용에 따른 편익이 수반되는 비용보다 큰지(효과성)를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정책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2027년에만 약 4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기존에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해 유사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거나, 기존 재정체계에서도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재원은 내국세로 일반회계와 동일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와 집행방식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기존 재정사업을 새로운 기금으로 단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방식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재원과 회계상 관리체계만 변경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재원·용도·수행주체가 모두 일반회계와 유사하다면,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와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일반회계’에 불과하므로, 45조원 중 기존 사업 이관분과 순수 신규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별도 기금을 통해 미래대응투자 재원을 일반회계 내 다른 지출과의 경쟁에서 분리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 자체가 세수 여건에 따라 급변하므로, 이러한 회계상 분리가 투자 규모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며, 오히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사업 간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별도 기금 운용에 따른 제도적 비용은 명확하다.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되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나 성과관리가 어려워지고, 기존 회계·기금과의 역할분담도 복잡해진다. 또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에 비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 기존 재정체계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국회의 예산심사와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안에서 매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원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미래대응투자는 산업·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틀에서 사업별로 필요성과 성과를 재검토하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종합하면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회계·기금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고, 별도 기금 운용에 따른 편익이 그에 수반되는 재정적·행정적 비용을 상회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가재정법」상 제4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에 편입된 사업별로 기존 재정체계에서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별도 기금으로 관리할 때의 구체적인 실익을 입증해야 하며, 실익이 불분명한 사업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종합의견

미래대응기금 정부안은 변동재원으로 경상적·계속적 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기존 회계·기금과의 차별성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설치 취지인 '재정안정화'와 '미래 투자'에 충실하도록 ▲총괄계정은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청년계정 사업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수행하되 총괄계정에서 재원을 전출하며, ▲성장동력계정은 출연·출자 방식의 장기 투자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법정 재원 비중을 확보한 재원 이전 통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 신설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투자 기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안정화 기능은 호황기 재정여력을 적립하여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인정되나, 현재의 4대 사업계정을 통한 미래대응투자 기능은 '지속가능성'(제3호 요건)과 '차별성'(제4호 요건)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세수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재원으로 아동·출산 수당이나 기관운영비 등 감축하기 어려운 경상적 지출을 수행하면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존 회계·기금 사업을 단순 이관·분리한 사업이 많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할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재정여력 확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호황기에 재정 완충력을 비축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장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미래세대에 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총괄계정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여 중앙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안정화까지 담당하도록 한다. 추가·초과세수와 자금운용 수익을 꾸준히 적립하여 평상시에는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비상시에는 재정 지원이나 채무 조정을 통해 각 재정의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총괄계정은 청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계·기금과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교육·인재계정으로 재원을 전출하는 모계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타 계정 및 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이 본연의 적립 기능을 잠식하지 않도록 전출 대상과 규모에 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 안정화기금과 같이 적립·인출의 조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안정화 기능이 정부의 재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계정은 별도 계정으로 두지 않고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이관사업은 종전 소관 회계·기금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총괄계정이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회계·기금으로 사업 재원을 전출하도록 한다. 청년계정 사업의 상당수는 출산·양육·혼인 등 계속적 현금지원이거나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기금 내 별도 계정으로 편성할 실익이 크지 않다. 사업을 본래의 회계·기금에서 수행하면 유사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과 성과관리가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업을 심사하게 되므로 다부처 기금 편성에 따른 예·결산 심사체계의 분절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개별 사업은 부처 회계에 두고 기금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¹⁴⁾

다만 총괄계정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변동하므로, 전출 대상은 사업별로 지속가능성과 미래대응투자로서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감축하기 어려운 의무성 지출은 전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해당 회계·기금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은 별도의 기금 설치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¹⁵⁾ 해당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성장동력계정은 출연·출자 방식으로 장기적·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 성장동력계정에 편성된 사업 중 보조·경상 성격의 사업은 소관 회계·기금으로 환원하고, 기술료·지분 회수 등 투자 성과가 기금으로 환류될 수 있는 투자형 R&D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정책펀드 출자 사업 중심으로 계정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회수되는 출자 원금과 배당수익을 기금에 환류하여 재투자하면 세수 변동기에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성과가 미래세대에 귀속되어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모태펀드 등 다양한 정책 투자수

14) 국회입법조사처,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2026.10.8.).

15)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국민에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고, 18세 이후 고등교육·주거·창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단이 이미 운용되고 있으므로, 출자 대상 간 중복을 피하고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 계정 등 기존 투자기구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총괄계정에서 재원을 전출받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법률에 최소 적립 비율이나 계정 간 재원 비중을 명시하고, 개별사업 편성 대신 집행 주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통로로 운용한다. 정부안은 추가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여, 현행법이었다면 약 40%가 지방에 배분되었을 내국세가 중앙의 기금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⁶⁾ 그 구체적인 요건과 규모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부세·교부금 개편의 취지를 고려하면, 두 계정에 배분되는 재원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변동하지 않도록 매년 두 계정에 적립하는 최소 비율이나 계정 간 재원 비중을 법률에 명시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 계정은 현재와 같이 개별사업을 직접 편성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등 집행 주체 및 소관 회계로 재원을 이전(전출)하는 통로 역할만 수행하도록 하여, 계정의 지출을 내부거래(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등)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세부사업은 각 집행 주체가 지역과 교육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국회 심사도 해당 특별회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존 회계와의 사업 중복 및 상임위원회 심사 분리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다섯째,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과 운용체계를 보완한다. 총괄계정의 재정안정화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계정과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 한도(또는 총괄계정 최소 유보 규모)를 법령에 명시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를 일반 비금용성기금 수준(20%)으로 조정하며, 중기 적립금 전망과 투자 회수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과세수는 정부의 세입 재추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

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7호) 제4조제3항

로, 연도 중에 기금으로 전출하기보다 결산으로 확정된 세계잉여금 중 법정 처리절차를 거친 잔액을 전입하는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종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었을 내국세에서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와 교육재정 운용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1. 미래대응기금 자원 분석

가. 현 황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자원은 정부안¹⁾에 따른 추가세수(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와 초과세수(매년 9월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²⁾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계잉여금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총괄계정) 자원 구성]
(단위: 백만원)

근거 규정 (안 제5조제1항)	내용	'27년 계획액(안)
제1호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8,472,040
제2호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
제3호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결산 후 차년도 계상
제4호	4대 사업계정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제5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242,737
제6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약받는 자금(총괄계정 예수금)	2,564,525
제7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약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20,500
제8호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교육·인재계정 제외)으로부터의 전입금	-
제9호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약받는 자금	-
제10호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 예약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
제11호	총괄계정의 운용 수익금	-
제1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
합 계		162,299,802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이하에서 '정부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5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5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53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47호)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의미한다.

2) 재추계 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별회계전입금 1조 2,427억원, 특별회계예수금 2조 5,645억원, 공자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05억원으로 구성된다.

초과세수에 따른 기금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안에 따른 초과세수가 매년 9월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국가재정법」 제55조의2)함에 따라 확정되고 해당 초과세수는 세입·세출 외로 기금에 전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 중 기금 전입금은 세계잉여금 규모가 결산으로 확정되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 분석의견

(1) 추가세수 관련 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추가세수는 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속사업의 재원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예산액에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추세치는 해당 회계연도의 2년 전 내국세 결산액에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하여 산정한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추가세수의 정의]

○ “추가세수”란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

*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times (1 + B)^2$

A: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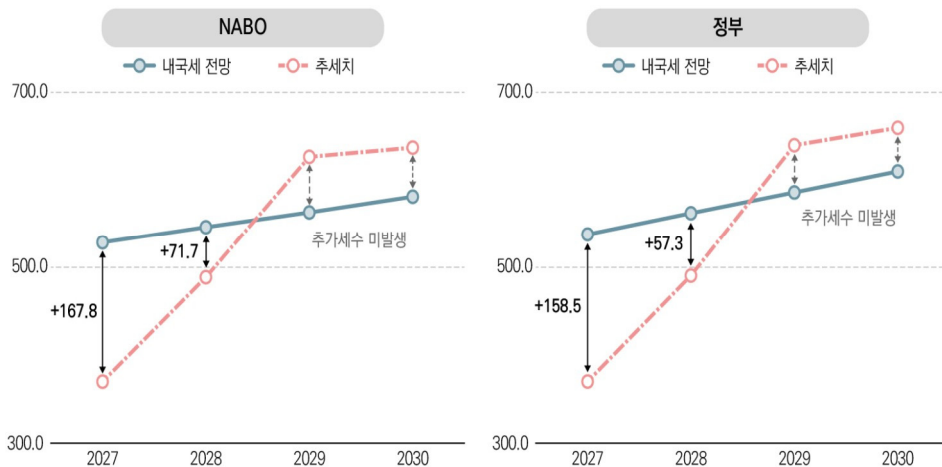
B: 특정 회계연도의 1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2조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추가세수는 직전 2년의 내국세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을 웃돌 때에만 발생하는 구조여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세 전망치를 감안하면 추세선을 넘는 내국세 수입이 2029년부터 음(-)으로 제시되어 2029년 이후에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특정 기준연도의 결산 실적과 과거 단순 평균 증가율에 의존하는 산정방식은 기준시점의 세수 등락이나 경기 국면에 따라 적립 규모가 크게 변동하고 단기간 내에 재원 조달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 전망에 따른 추가세수 추이]

(단위: 조원)



- 주: 1. NABO의 추가세수 추이는 내국세 실적 및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
 2. 정부의 추가세수 추이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바탕으로 NABO가 추정한 수치
 자료: 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이에 추가세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각종 토론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는 ① 세입예산액이 아닌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중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운용하고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사후 정산하자는 의견3), ② 과거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잠재GDP와 세수탄성치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세수 추정을 활용하거나 기준기간·산식을 보완하여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자는

3) 김우철, 「2027년 예산안 검토: 미래대응기금을 중심으로」,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2026. 9. 10.; 박정흠, 토론문,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의견⁴⁾, ③ 3년 평활화,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등 최근 연도 결산액에 따른 적립액 변동을 완화하는 산식 대안⁵⁾, ④ 세수 추계의 신뢰성 확보기제를 강화하고 최근 세수실적과 중·장기 세입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의견⁶⁾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추가세수의 산정방식은 단순한 세수 추계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 재원의 규모와 시기, 중장기적 안정성을 좌우하며, 이는 재정안정화와 미래대응투자라는 기금의 목적 및 계속사업 등 편성된 사업의 성격과 직결된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목적과 재원의 안정성,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산정방식을 논의하는 한편,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계속사업의 재원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초과 조세수입 전출에 따른 세계잉여금 법정 처리절차 우회

초과 조세수입의 연중 기금 전출 허용은 결산 후 세계잉여금의 법정 처리절차를 우회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자의적 재정을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출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7)제1항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
- 4) 김우철, 위의 자료집; 송헌재, 「미래대응기금 162조, '재정 댐'인가 '통제 밖' 곳간'인가, 긴급진단토론회 자료집, 2026. 9. 10.; 우석진, 토론회,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6. 9., pp. 37~39.
- 5) 김현아, 「오늘의 호황을 내일의 성장과 안정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2026. 10. 22.
- 6) 이정혁, 토론회,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자료집, 2026. 9. 11.;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6. 9., pp. 39~40.
- 7)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이용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정부안) 제90조제1항은 초과 조세수입을 기존의 용도(기발행 적자국채 상환) 외에 미래대응기금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선택적 용도로 추가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한 초과 조세수입은 세입세출외로 처리되어 결산상 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최종 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법정 처리절차(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를 거치고 남은 잔여 세계잉여금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하면서(안 제90조제5항), 이러한 전출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안 제90조제6항 및 제17조제2항) 국회 보고·의결 절차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⁸⁾⁹⁾

[세계잉여금 처리 및 초과조세수입 활용 절차 비교]

단계	현행법	개정안	변경
① 세입예산 집행 (회계연도 중)	초과조세수입 발생 예상 시 - 회계연도 중 국채상환 가능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목적, 해당 연도 발생 국채 범위)	초과조세수입 발생 예상 시(회계연도 중 활용 가능) - 국채상환(현행과 동일)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목적, 해당 연도 발생 국채 범위) -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 (전출 시 그 내역을 자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예결위에 제출)	신설
②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결산(현행과 동일)	동일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8) 정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계잉여금을 통한 사후 정산 절차도 삭제하고 있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은 법정 처리 절차에서 제외된다.
- 9) 2027년 예산안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어, 2026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의 정합성 검토도 별도로 필요하다.

단계	현행법	개정안	변경
③ 세계잉여금 산정	결산상 잉여금(회계연도 중 국채 상환에 사용한 초과조세수입은 세입·세출 외 처리로 미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 처리 금액 - 이월액 등	결산상 잉여금(정의는 현행과 같으나, 회계연도 중 기금으로 전출한 초과조세 수입도 세입·세출 외 처리로 미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 처리금액 - 이월액 등	변경
④ 세계잉여금의 법정 처리절차 (「국가재정법」 제90조)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잔여액의 30% 이상) - 국가채무 상환 (잔여액의 30% 이상)	- 지방교부세 정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교부금 정산 규정 삭제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잔여액의 30% 이상) (현행과 동일) - 국가채무 상환 (잔여액의 30% 이상) (현행과 동일)	삭제
⑤ 잔액 활용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 이입	- 추가경정예산 편성 -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 -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 이입	신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정부안은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출 요건이나 한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산 시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야 할 세입 초과분이 회계연도 중에 기금으로 사전 유출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결산 이후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법정 처리절차(교부세·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등)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채무상환 기능의 약화는 별도 서술).

현행 「국가재정법」이 세계잉여금의 교부세·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등 엄격한 처리절차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를 경우 이러한 재정건전성 유지 장치의 작동 여부가 회계연도 중 정부의 재량적 전출 규모 결정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초과 조세수입의 전출 요건과 적립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금 전출에 대한 국회 사전 심의·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통제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초과 조세수입'과 '초과세수'의 개념 불일치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초과 조세수입'과 「미래대응기금법안」의 '초과세수'는 비교 기준이 되는 예산과 대상 세목이 서로 달라 실질적인 기금 전출 한도로 기능하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의 정의와 산정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는 반면, 「미래대응기금법안」은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¹⁰⁾ 세입예산 중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새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개념은 아래 표와 같이 비교 기준 시점과 대상 세목이 서로 다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초과 조세수입'과 「미래대응기금법안」의 '초과세수' 비교]

구 분	국가재정법 개정안 초과 조세수입	미래대응기금법안 초과세수
비교 기준	정의 없음(통상 추경 포함 예산)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
대상 세목	조세 전체	내국세 7개 세목
2026년 규모	63.2조원(추경 대비)	약 77조원(본예산 대비)
교부세 재원	초과세수 외 전출분은 미제외	제외(교부세법 개정안 제4조)

주: 2026년 미래대응기금법안 기준은 일반회계 국세 기준(76.7조원)

자료: 관련 법률안 및 재정경제부 재추계 보도자료(2026.9.3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을 예로 들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대비 내국세 증가분 56.2조원을 초과세수로 보고, 이 중 5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한편 기금 전출·적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국회가 확정된 최초 예산액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부가 적용하는 추경 기준과 다르다.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추경 편성 시 증액경정하여 이미 세출 재원으로 활용한 금액(일반회계 세입예산 기준 20조 1,000억원)까지 초과세수에 포함되어, 실제 전출 추진액보다 약 20조원 커진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초과 조세수입은 총국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경 대비 63.2조원으로 산정되어, 내국세 기준 초과세수(56.2조원)와도 약 7조원 차이가 난다. 이처럼 두 법안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예산과 세목 범위를 서

10)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담배분을 제외한 개별소비세, 인지세 및 증권거래세 합산 금액

로 다르게 정하고 있고 실제 전출 규모는 정부의 전망과 판단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안의 초과세수 정의가 실질적인 전출 한도로 기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의 초과 조세수입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추계액이 해당 연도 세입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미래대응기금법안」의 초과세수도 같은 기준으로 맞추어 전출 한도와 회계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여유자금 운용수익 미계상 문제

정부는 100조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누락 없이 계상하여 재원 파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도별 수입·지출 및 적립금 증기 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총괄계정에 적립한 후 4대 사업계정 전출과 재정안정화 목적에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일정 규모의 적립금이 기금 내에 상시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괄계정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총괄 운용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2027년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약 100조원이다. 정부가 자금위탁 수수료(225억원)를 산정하면서 적용한 위탁운용 자산의 연평균 잔액 75조원(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2026.9.23.)을 기준으로 할 때,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탁 이자율(2.05%)만 적용하더라도 약 1조 5,000억원(1조 5,375억원), 연평균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약 3조원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205억원)를 제외하면,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총괄계정 95조 8,614억원 등)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수입으로 일절 계상되어 있지 않다. 운용에 따른 수반 비용인 자금위탁 수수료 225억원은 기금운영비로 편성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자산 운용수익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기금의 재원조달 능력과 적립금 규모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추가세수·초과세수는 경기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재원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수익이 기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함께 제시되어야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연도별 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전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매년 변동하는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중·장기 투자사업에 배분하는 구조이므로, 향후 적립금 추이와 사업계정으로의 전출 지속가능성이 기금 심사의 핵심 판단 요소이다. 그러나 중기 수입·지출 전망이 부재할 경우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원이 급감하는 연도에 투자사업을 어떻게 유지·조정할지, 그리고 비상시 재정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 적립금이 얼마나 확보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기금 수입으로 명확히 계상하고, 2027년 이후 연도별 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6-2. 미래대응기금 계정운용 분석

가. 현 황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의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기금 수입 162조 2,998억원 가운데 97.6%인 158조 4,72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다. 2027년에는 이 재원이 모두 총괄계정으로 들어온 뒤, 총괄계정이 각 사업계정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획안에 따른 계정별 자원 배분]

(단위: 억원, %)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합계
규모	1,094,373	133,296	141,638	152,662	101,029	1,622,998
비율	67.4	8.2	8.7	9.4	6.2	100.0

주: 기금 내 계정간 전입금을 제외한 순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에는 총괄계정 수입의 32.6%인 52조 8,625억원이 사업계정에 전출되고, 나머지 67.4%인 109조 4,373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과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총괄계정에 남는다.

[미래대응기금의 계정별 용도]

계정	용도
총괄	- 다른 회계 또는 기금, 미래대응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예탁 등을 통해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관리 - 그 밖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청년	-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지원 사업
성장동력	-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R&D)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지방	-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정부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지원 사업
교육·인재	-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사업,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 - 첨단산업 인재양성,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인재 육성 사업 -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인재 지원 사업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나. 분석의견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이 사업계정에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과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정별 전입 규모가 사업 소요에 따른 것인지 가용 재원 규모에 맞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정별 배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사업계정 전출 한도 또는 총괄계정의 최소 유보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총괄계정의 용도로 미래대응기금 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을 규정할 뿐(안 제5조제2항제3호), 계정별 배분의 원칙이나 사업계정 전출 총액의 한도,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총괄계정에 유보해야 할 최소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2027년도 계정별 배분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7년 배분 결과를 보면 청년계정과 성장동력계정은 전입금과 사업비가 일치하나,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사업비보다 각각 5조원과 2조 5,000억원을 추가로 전입받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입금 대비 여유자금 유보 비중이 각각 32.8%, 24.7%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과 교육·인재 분야의 정책 소요를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나, 사업 소요를 넘는 유보분의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년·성장동력계정에는 유보분이 없어 계정 간 배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추가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이 2년 전 결산액에 과거 추세 증가율을 적용한 수준을 상회할 때에만 발생하므로, 세입 여건에 따라 향후 재원 유입이 축소되거나 전무할 수 있는 높은 가변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업계정 지출에는 현금급여·기관운영비 등 감축하기 어려운 하방경직적 계속사업이 많아, 명확한 배분 기준 없이 책정된 2027년의 전출 규모가 향후 연도 배분의 사실상 하한으로 작용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계정별 배분의 산정근거와 사업계정 여유자금의 유보 기준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계정 전출 총액의 한도나 총괄계정의 최소 유보 비율(규모)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정 간 자원 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계정별 전출금이 단일 ‘항(項)’으로 편성되어 국회가 의결한 계정별 배분 규모가 연도 중 임의로 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정별 전출을 별도의 주요항목으로 편성하는 등 계정 구분이 실질적인 자원 통제의 단위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사업계정 간 직접 전출은 허용하지 않으나, 총괄계정은 사업계정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계정은 총괄계정으로 금액 제한 없이 전출할 수 있어 총괄계정을 경유할 경우 사업계정 간 자원 이동이 사실상 가능하다. 다만, 교육·인재계정만 총괄계정으로의 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래대응기금 계정 간 자원 이동 경로]

이동 경로	근 거	금액 제한	2027년 계획안
총괄 → 사업계정 (전출·예탁)	안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없음	‘계정간거래’ 1개 항에 4개 계정 전출 편성
청년·성장동력 → 총괄(전출)	안 제6조제2항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없음	미편성
지방 → 총괄 (전출·예탁)	안 제8조제2항제4호·제5호	없음	미편성 (여유자금 5조원 예치)
교육·인재 → 총괄	예탁만 가능 (안 제9조제2항제8호)	전출 불가 (안 제5조제1항제8호)	미편성 (여유자금 2.5조원 예치)
사업계정 ↔ 사업계정	규정 없음	총괄계정 경유 시 가능	-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호) 및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52조 8,625억원을 총괄계정의 ‘계정간거래’라는 하나의 항(프로그램) 아래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다. 「국가재정법」은 주요항목(장·관·항)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기금관리주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70조제1항), 항의 총액이 유지되는 한 계정별 전출액을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여지가 크다.

나아가 항 전체도 30% 범위(15조 8,588억원)에서 자체 증감할 수 있고(정부안 제70조제3항제2호), 그 재원이 되는 총괄계정의 여유자금 운용(95조 8,614억원)은 변경 한도가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호가목). 또한 전입받는 사업계정의 사업비 증액은 프로그램별 30% 한도의 제약을 받지만, 전입받은 재원을 사업계정의 여유자금

으로 유보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결국 국회가 계정별로 의결한 배분 규모가 연도 중 행정부의 자체적 판단으로 상당 폭 조정될 수 있어, 계정 구분이 국회의 사전적 재원 통제 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다.¹⁾²⁾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계정별 전출액을 각각 별도의 주요항목(항)으로 편성하거나, 계정 간 재원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제도화하여, 국회가 의결한 계정별 배분의 취지가 충실히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사업계정에서 회수한 자금이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편입되어 계정별 재원과 사업 성과의 연계가 단절되므로, 회수자금과 그 수익 및 결산상 손익은 해당 사업계정에 귀속시키거나 계정별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은 4개 사업계정의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5조제1항제4호). 2027년 사업계정에는 출자·용자 방식의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명칭상 출자·용자·펀드 사업만 보더라도 청년계정 1조 4,440억원(보편형 매입임대 용자·출자, 보편형 전세임대 용자), 성장동력계정 3조원(국민성장펀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등)에 이른다. 이들 사업에서 상환되는 원금이나 회수되는 출자금은 해당 사업계정으로 환류되지 않고 총괄계정에 귀속되어 다시 타 계정에 배분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계정의 보편형 매입임대 용자는 20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어서, 2047년 이후 회수되는 원금이 청년 지원이 아닌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별로 재원의 조성·사용·회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자·용자 사업의 성과를 계정 단위로 평가하는 데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1) 계정을 구분하는 기준도 청년계정은 수혜 대상, 성장동력계정은 산업·기술 분야, 지방계정은 지역, 교육·인재계정은 교육·인력양성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서로 달라 하나의 사업이 여러 계정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창업 지원(청년계정 창업사업화지원 등 3건, 교육·인재계정 창업중심대학 등 2건), 제조 AI 인력(성장동력계정 중소기업 피지컬 AI실증, 교육·인재계정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AI 서비스 이용 지원(성장동력계정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교육·인재계정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사업이 둘 이상의 계정에 나뉘어 편성되었다.

2) 아울러 법률안은 4개 사업계정의 용도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두고, 총괄계정의 용도도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위임하고 있어(안 제5조제2항제8호,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제5호), 계정별 용도도 법률 개정 없이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융자 이자나 출자 배당이 총괄계정에 귀속되는 ‘회수한 자금’인지, 각 사업계정에 귀속되는 ‘운용 수익금’(안 제6조제1항 등)인지가 법문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결산상 이익금과 손실금도 계정 구분 없이 미래대응기금 전체에 통합하여 적립·보전하도록 하고 있어(안 제16조제3항·제4항), 특정 계정의 대규모 출자 손실을 타 계정의 고유 재원으로 사후 보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계정에서 회수한 자금과 그 수익은 해당 사업계정에 직접 귀속 시키거나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보고하도록 하고, 결산상 이익금과 손실금의 계정별 귀속 및 결손보전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6-3.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총괄 분석

가. 현 황

(1) 계정별 편성 규모(총계·총지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총계 기준)은 5개 계정, 140개 세부사업, 총 215조 1,623억원이다. 이 중 총괄계정(162조 2,998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금 수입을 4대 사업계정에 52조 8,625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출(12조 5,000억원)과 여유자금 운용(96조 8,614억원, 공자기금 예탁 1조원 포함) 등에 활용한다. 계정 간 전출과 회계·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은 내부거래 또는 보전지출이어서 총지출에서 제외되므로, 미래대응기금의 총지출은 4대 사업계정, 129개 세부사업, 45조 3,625억원과 총괄계정 기금운영비 233억원을 합한 45조 3,858억원으로 총계의 21.1%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총계 및 총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계 정	세부사업 수	총계(A)	총지출(B)	여유자금 운용	계정간 전출 등
총괄계정	9	1,622,998	233	968,614	654,151
청년계정	22	133,296	133,296	-	-
성장동력계정	52	141,638	141,638	-	-
지방계정	14	152,662	102,662	50,000	-
교육·인재계정	43	101,029	76,029	25,000	-
계	140	2,151,623	453,858	1,043,614	654,151

주: 세부사업 수는 총계 기준 140개, 총지출 기준 130개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대 사업계정의 사업비 규모는 성장동력계정 14조 1,638억원(31.2%), 청년계정 13조 3,296억원(29.4%), 지방계정 10조 2,662억원(22.6%), 교육·인재계정 7조 6,029억원(16.8%) 순이다.

청년계정과 성장동력계정은 총괄계정 전입금을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전입금 중 각각 5조원과 2조 5,000억원을 여유자금운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용으로 편성하였다. 140개 세부사업은 모두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가 수행한다.

(2) 정부 총지출 대비 규모

미래대응기금 총지출 45조 3,858억원은 2027년도 정부 총지출 820조 9,000억원의 5.5%, 기금 총지출 315조 8,000억원의 14.4%에 해당한다. 2027년도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93조원(12.8%) 증가하는데, 미래대응기금 총지출은 이 증가액의 4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통폐합·분리 및 타부처 이관분 26조 4,959억원은 2026년에는 다른 회계·기금의 총지출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기금 신설에 따른 총지출 순증 규모는 이보다 작다. 순수신규 사업(기금운영비 포함) 18조 8,899억원은 총지출 증가액의 20.3%이다.

[2027년도 정부 총지출과 미래대응기금 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B-A)	미래대응기금 총지출(C)	C/B	C/(B-A)
총지출	727.9	820.9	93.0	45.4	5.5	48.8
· 예산	481.4	505.0	23.7	-	-	-
· 기금	246.5	315.8	69.4	45.4	14.4	65.4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신규·이관 구성

정부가 제출한 사업유형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지출에 계상되는 4대 사업계정 129건 45조 3,625억원 중 순수신규는 55건 18조 8,666억원(41.6%), 타사업 통폐합·분리는 3건, 4조 47억원(8.8%), 타부처 이관은 71건 22조 4,912억원(49.6%)이다.

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금액(통폐합·분리+이관)이 26조 4,959억원으로 사업비의 58.4%를 차지한다. 계정별 이관(통폐합·분리 포함) 비중은 청년계정이 가장 높고 지방계정이 가장 낮다. 총괄계정 기금운영비 233억원(순수신규)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총지출 전체로는 순수신규 56건 18조 8,899억원(41.6%)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신규·이관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건, 억원, %)

계 정	순수신규		통폐합·분리		타부처이관		계	기존사업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청년	6	27,011	3	40,047	13	66,238	133,296	79.7
성장동력	31	45,771	-	-	21	95,866	141,638	67.7
지방	8	88,920	-	-	5	13,742	102,662	13.4
교육·인재	10	26,964	-	-	32	49,066	76,029	64.5
총괄계정	1	233	-	-	-	-	233	-
계	56	188,899	3	40,047	71	224,912	453,858	58.4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위 계정별 신규·이관 사업 구성 자료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II-3)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인데, 정부는 보도설명자료(2026.9.17.)에서 사업 내용·지원대상·규모가 전면 개편된 이관사업은 사실상 신규사업이라며 13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79개, 계속사업이 51개라고 밝혀,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 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설명자료 기준으로 정부가 ‘순수신규’로 분류한 55건(총괄계정 제외) 중 4건(1,738억원)은 2026년 기존 사업을 옮겨 오거나 기존 사업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250억원 → 350억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일반회계 210억원 → 918억원),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일반회계 701억원 → 257억원)은 같은 명칭의 사업이 회계·기금만 바뀌어 편성되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213억원)은 사업설명자료의 신규반영사유에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에서 분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순수신규로 분류된 수자원공사출자(2,500억원)는 일반회계의 수자원공사지원(3,40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두 재원으로 나뉘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일반회계와 같은 내국세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 측면에서 기금사업의 신규·이관 구분이 갖는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은 기금 신설에 따른 총지출 순증 규모, 원사업 존치에 따른 재원 이원화, 이관 전후 사업 성과의 연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정부

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보도자료 간에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보다 엄밀한 분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부는 각 사업별 신규·이관 분류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계정별 주요 내용

계정별로 보면 청년계정은 현금급여(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혼인지원금), 자산형성(청년미래적금 등), 주거(청년 지원 주택·전세임대 용자 등), 일자리·창업 지원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집행한다.

성장동력계정은 AI 컴퓨팅·데이터, 에너지·전력망, 바이오·양자·우주 등 R&D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출자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비의 46.6%를 집행한다.

지방계정은 13개 사업 중 행정안전부 소관 5개 사업이 사업비의 83.7%를 차지하고, 상위 5개 사업이 94.2%에 이르러 소수 대형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인재계정은 42개 사업으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위 5개 사업의 비중(43.2%)이 가장 낮으며,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운영비와 대학 재정지원, 인재양성 R&D가 주된 사업 내용이다.

[사업계정별 주요 집행부처 및 주요 사업]

(단위: 억원, %)

계정	사업비	주요 부처 비중	상위 5개 사업
청년	133,296	복지부 27.2 국토부 23.1 고용부 15.8	아동기본수당 지급(복지부) 29,272 청년미래적금(금융위) 17,011 청년 지원 주택(국토부) 14,000 창업사업화지원(중기부) 9,5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노동부) 9,012
성장동력	141,638	과기부 46.6 기후부 17.6 금융위 10.6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과기정통부) 42,752 국민성장펀드(금융위) 10,000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국토부) 8,415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과기정통부) 8,000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기후부) 5,969

(단위: 억원, %)

계정	사업비	주요 부처 비중	상위 5개 사업
지방	102,662	행안부 83.7 농식품부 11.6 국토부 1.8	지방미래성장지원금(행안부) 35,000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출연금(행안부) 28,500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행안부) 15,00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 11,658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행안부) 6,500
교육·인재	76,029	교육부 64.9 과기부 22.6 고용부 6.1	거점국립대 혁신사업(교육부) 7,944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교육부) 6,91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교육부) 6,469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교육부) 6,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교육부) 5,519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집행부처 기준으로 보면 행안부 8조 5,902억원(18.9%), 과기정통부 8조 3,151억원(18.3%), 교육부 4조 9,315억원(10.9%) 순이며, 상위 3개 부처가 총지출의 48.1%를 차지한다. 국토부·중기부는 3개 계정에, 과기정통부·복지부·금융위·기후부·고용부·문체부·재경부·산업부 등 8개 부처는 2개 계정에 걸쳐 사업을 집행한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집행부처별 총지출]

(단위: 건, 억원, %)

집행부처	건수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총괄	계	비중
행안부	5	-	-	85,902	-	-	85,902	18.9
과기부	38	-	66,006	-	17,145	-	83,151	18.3
교육부	13	-	-	-	49,315	-	49,315	10.9
국토부	10	30,759	10,350	1,810	-	-	42,919	9.5
복지부	3	36,254	377	-	-	-	36,631	8.1
금융위	7	20,386	15,000	-	-	-	35,386	7.8
기후부	14	-	24,874	-	1,576	-	26,450	5.8
고용부	5	21,060	-	-	4,608	-	25,667	5.7
중기부	9	14,855	1,966	-	1,366	-	18,188	4.0
농식품부	3	-	-	11,921	-	-	11,921	2.6
문체부	3	8,320	-	1,523	-	-	9,843	2.2
재경부	4	-	8,500	1,000	-	-	9,500	2.1

(단위: 천, 억원, %)

집행부처	건수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총괄	계	비중
산업부	7	-	7,099	-	2,019	-	9,118	2.0
우주청	5	-	7,465	-	-	-	7,465	1.6
성평등부	1	1,663	-	-	-	-	1,663	0.4
해수부	2	-	-	507	-	-	507	0.1
기획처	1	-	-	-	-	233	233	0.1
계	130	133,296	141,638	102,662	76,029	233	453,858	10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총괄)

(1) 기존 회계·기금과의 재원 이원화

미래대응기금에는 기존 사업에서 일부만 분리한 사업과 부담금·목적세 등을 재원으로 하던 특별회계·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동일 성격의 사업이 이원화되거나 재원의 장수 목적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분리·이관의 기준과 종전 회계·기금의 재원 변화를 제시하고, 성격이 같은 사업은 하나의 회계·기금에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사업의 일부만 분리하여 이관함에 따라 같은 성격의 사업이 두 개의 재원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므로, 분리 기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와 용자는 2027년에도 각각 5조 9,377억원과 6조 7,70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급유형 신설’을 이유로 보편형 매입임대 출자·용자 5,440억원만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되었다. 같은 매입임대 공급이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나뉘었으나, 명확한 분리 기준과 물량 배분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회계 외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사업]

(단위: 억원)

기존 회계·기금	건수	2026 본예산	2027 계획안	비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	14,994	19,871	7건 모두 교육·인재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2,341	11,65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2	2,421	6,319	전기요금 부담금 재원
주택도시기금	2	-	5,440	기존 사업 유지 보편형 공급유형만 분리
기후대응기금	2	765	849	목적세 전입금 등 재원
환경개선특별회계	1	446	511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	1,170	1,230	-
계	17	-	45,8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2027년에 2,680억원 편성하면서 거점국립대 혁신사업(7,944억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하여, 대학 재정지원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나뉘었다. 정책금융지원 단위사업 역시 투자 대상과 방식이 비슷한 출자·펀드 사업 7개를 함께 편성하고 있으므로, 기금 밖의 기존 정책금융 수단과의 역할 분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의 회계·기금으로 묶어 편성하는 것이 사업 간 연계와 유사·중복 점검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2026.9.17.), 위 사업들은 원사업을 남겨 둔 채 일부만 기금으로 옮겨 오히려 같은 성격의 사업이 두 재원으로 분산되었다.

기획예산처는 보편형 매입임대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2027년에 신설되는 공급유형이고, 거점국립대 혁신사업은 국립대 전반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달리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는 두 사업을 각각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용자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은 2026년 8,736억원에서 2027년 2,68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부담금과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던 특별회계·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전입금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은 해당 재원의 징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2,171억 원에서 5,969억원으로 증액되어 이관되었고, 기후대응기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도 3개 사업 1,360억원이 이관되었다. 부담금과 목적세는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재원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던 사업을 일반재원으로 옮기면 징수 목적과 지출 간 연계가 약해진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회계·기금이 자체 수입 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지원받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여유자금이 2025년 9,421억원에서 2027년 699억원으로 줄어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전 회계·기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일반재원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기보다 종전 회계·기금에 대한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담금·목적세와 지출 간 연계를 유지하면서 재원 부족 규모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존 사업과 분리 사업의 역할 구분 기준, 이관에 따른 종전 회계·기금의 재원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성격의 사업은 하나의 회계·기금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금·목적세 재원 사업의 이관 여부는 해당 재원의 징수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계정 목적과 사업 성격의 부정합

계정은 기금 재원을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계정 목적과 관련이 적은 사업이 상당수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을 성격에 맞는 계정이나 회계·기금으로 재배치하고, 계정별 용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정 명칭과 사업 대상이 맞지 않는 편성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청년계정의 최대 사업은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원)이며, 출산지원금·혼인지원금을 합하면 아동·출산·혼인 지원이 3조 7,916억원으로 청년계정 사업비의 28.4%를 차지한다. 법률안은 청년계정의 용도에 ‘혼인·출산’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동기본수당은 아동 양육을 대상으로 하고 출산지원금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대응이 잠재성장률의 핵심 요소인 인구 문제와 직결되고 양육비 부담이 청년의 주요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청년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나, 법률안의 ‘혼인·출산’은 청

년 지원 사업의 예시이고, 아동기본수당은 부모의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전기요금 할인 손실 보전(성장동력계정)이나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총인건비 인센티브(지방계정) 등 인건비성 지원도 계정 목적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법률안이 계정별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정별 사업 편성 기준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투자 성격이 아닌 사업의 편입은 선례가 되어 기금의 설치 취지와 계정 간 칸막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할인 보전이나 공공기관 인건비 지원은 투자적 지출이 아닌 정상적 지출로서, ‘미래대응 투자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전기요금 지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부담을 덜어 전력망 적기 구축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은 한시적 전환지원 재원이라고 설명하나(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2026.10.7.), 이는 간접적 효과이거나 지출의 한시성을 설명하는 것일 뿐 투자적 지출로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

[계정 목적과 성격이 다른 주요 사업]

(단위: 억원)

계정	세부사업(부처)	2027 계획안	사업 내용
청년	아동기본수당 지급(복지부)	29,272	아동 대상 수당
청년	출산지원금 지원(복지부)	6,981	출산 가구 지원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통합)
청년	혼인지원금(성평등부)	1,663	혼인 가구 지원
성장동력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기후부)	3,500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손실 보전
지방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재경부)	1,000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 총인건비 인센티브
계		42,4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정별 용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재원 여건에 따라 성격이 다른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거나 신설될 수 있고, 계정 간 전출과 주요항목 30% 범위의 자체 변경이 결합되면 국회가 의결한 계정별 사업 구성도 사후에 정부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계정 목적이나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당 부처의 일반회계나 관련 회계·기금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는 계정별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계정 구분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항구적 지출을 유발하는 사업 다수 편성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재원 감소 시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원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사업별 처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지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고,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에게 여러 해에 걸쳐 정부 기여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어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더라도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운영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지차 보전 기관이고,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은 어린이집이 추가 배치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와 보육료 지원이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일반재원이다. 이관사업 71개도 대부분 종전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업이므로 기금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소요가 지속된다. 추가세수가 감소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다시 이관되거나 기금 사업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해야 할 우려가 있다.

둘째, 융자·이차보전과 대규모 R&D 사업의 향후 재정부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 사업은 2027년에 실행되는 대출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8년에는 이차 보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 신규 대출 없이도 소요가 2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 보편형 매입임대 융자는 20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어서 원금은 2047

1) 2027년 예산은 대출이 연중 실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지원은 평균잔액을 공급 규모의 1/2로,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은 10개월분 이자로 산정하였다. 같은 대출 잔액에 대해 2028년에 12개월분 이자를 보전하면 이차보전 4개 사업의 소요는 1,032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늘어난다(청년기회자금은 산출내역이 제시된 이차보전분만 반영).

년 이후에야 회수되며, 대규모 신규 R&D 6개 사업의 2028년 이후 잔여 총사업비도 4조 2,976억원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2026~2030년 5년간 5조원을 출자할 계획이어서(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2026.9.14.) 2028년 이후 3년간 3조원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해당 연도 소요만 표시되어 이차보전 약정 총액이나 용자 회수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어서 기금 사업별 중기 소요를 보여주지 않는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원이 세수 여건에 따라 급변하므로, 사업별 중기 소요는 재원 감소 시 사업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4대 사업계정 사업비 중 매년 반복 소요가 우려되는 지출]

(단위: 억원, %)

유 형	주요 사업	금액	비중
현금급여·수당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12개	92,521	20.4
지방 일반재원 이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	70,000	15.4
장학금·학생지원·보육교사 인건비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역균형발전장학금 등 7개	21,839	4.8
기관 운영비	4대 과학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10개 기관	13,828	3.0
용자·이차보전	보편형 전세임대·매입임대 용자, 주택금융 이차보전 등 5개	13,786	3.0
계		211,973	46.7

주: 비중은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 3,625억원) 대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129개 사업별 2028~2031년 재정소요와 추가세수 감소 시 사업별 처리계획(일반회계 이관, 축소, 종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금급여·기관운영비처럼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보전·용자 사업은 약정 총액과 회수금 귀속 방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여부는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정부 제출안대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때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1. 재정수지·국가채무 간 괴리 요인 제시 필요

가. 현 황

2027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조 1,000억원(GDP 대비 △0.1%)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104조 7,000억원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은 100조 64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원(GDP 대비 48.3%)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7조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재정수지 개선세와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관리재정수지와 적자국채 발행 규모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2026 본예산	2027	2028	2029	2030
관리재정수지(A)	△107.8	△3.1	△48.0	△83.4	△100.8
적자국채 발행(B)	108.3	100.1	75.1	53.3	66.5
차이(A+B)	0.5	97.0	27.1	△30.1	△34.3

주: 적자국채 발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본예산까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발행 규모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27년에는 두 지표 간의 괴리가 약 97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폭 확대된다. 나아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9년 이후에는 반대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분석의견

2027년도 관리재정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추가세수의 기금 여유자금 유보와 지방교부세·교부금 제도 개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는 적자국채가 100조원 발행되고 국가채무가 107조원 증가하므로, 정부는 재정수지와 채무 증가 간 괴리 원인을 요인별로 구체화하고 이전지출 축소 효과의 지속성 및 지방재정 파급영향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은 국세수입으로서 총수입에 전액 계상되나,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전출금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에, 기금이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103조 3,614억원은 보전지출에 해당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조원 역시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모두 총지출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통계상 재정수지 산식에서는 추가세수가 재정적자를 보전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현금 재원은 기금 내에 묶여 있어 일반회계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회계적 괴리 구조가 발생한다.

또한 전년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폭(3.8%p) 중 2.0%p는 추가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현행법 대비 63조 231억원을 지방에 교부하지 않고 감액 편성한 효과에 기인한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7년도 관리재정수지는 △66조 1,231억원(GDP 대비 △2.1%)을 기록하게 된다.¹⁾

기획예산처는 이것이 일회성 수지 조정이 아니라 법정 이전지출 제도의 구조적 개편이라는 입장이나, 이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연도에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추가세수가 축소되면 수지 개선 효과도 함께 소멸·축소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역시 내국세 증가율과 개편 산식상 증가율 간의 격차에 따라 규모가 가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개선폭 중 교부세·

1) 지방교부세는 추가세수에 법정 교부율(19.24%)을 적용한 금액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현행법 기준 금액(111조 4,049억원)과 2027년 예산안(78조 8,718억원)의 차이이다. 정부 발표 절감액(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원, 계 63조원)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가 △66조 1,000억원이다.

교부금 제도 변경에 기인한 효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그 중·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에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관리재정수지 개선폭의 구성]

(단위: 조원, %, %p)

구 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026년 본예산(A)	△107.8	△3.9
2027년 예산안(B)	△3.1	△0.1
교부세·교부금 현행법 적용 시(C)	△66.1	△2.1
개선폭(B-A)	104.7	3.8
이 중 교부세·교부금 미배분분(B-C)	63.0	2.0

주: (C)는 지방교부세 미배분분(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19.24%)과 교육부 산정 현행법 기준 교부금과의 차이(32조 5,331억원)를 합한 63조 231억원을 지출에 더한 금액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가채무의 성질별 분류와 중기재정전망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따른 통계적 영향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는 상환 재원에 상응하는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분류되어 2026년 976조원에서 2027년 1,076조원으로 10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되지만, 범정부 재정 차원에서는 세입의 상당 부분이 기금으로 전출되어 예치금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유보된다. 따라서 통계상 적자성 채무는 실질적인 재정적자 규모보다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금 보유 금융자산은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통계적 왜곡이 발생한다. 더욱이 2029년 이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하회하는 역전 현상은 2027년에 적절한 여유자금을 이후 연도 지출 재원으로 순차 회수·투입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2029~2030년도의 구체적인 여유자금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중기 채무 추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와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증가 규모 간 괴리의 원인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적립 등 요인별로 상세히 규명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예산안 첨부서류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와 연차별 회수·사용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회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채무 증가 실태를 일관되고 정밀하게 심사·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2. 세계잉여금 등의 채무상환 기능 보완 필요

가. 현 황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는 당해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범위 내에서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잔액의 30% 이상), 국채 등 채무상환(잔액의 30% 이상)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 절차를 거친 후의 최종 잔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0조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초과 조세수입(제1항)	국채 우선 상환에 사용 (세입세출외 처리 가능)	국채 상환 또는 미래대응기금 전출 중 선택(세입세출외)
세계잉여금 산정(제2항)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액과 이월액 공제	현행 유지(교부금 정산 근거만 삭제) 기금 전출분은 세입·세출 외 처리로 미포함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제3항)	정산 후 잔액의 30% 이상 출연	삭제(별도 개정안)
채무상환(제4항)	출연 후 잔액의 30% 이상	현행 유지
세계잉여금 잔액(제5항)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미래대응기금 전출
사용 절차(제6항)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제5항(기금 전출 포함)까지 적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예산총계주의(제17조제2항)	-	제90조제1항·제6항에 따른 처리를 예산 외로 처리

자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6호)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런데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일몰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외환위기 대응 공적자금의 상환을 마무리하고, 2027년 말 동 기금을 공식 청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이 종료되며, 현재 국회에는 제90조의 공

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규정(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²⁾

이와 별도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세출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잉여금 중 정산·출연·채무상환 절차를 거친 잔액 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을 결산 이후가 아닌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출예산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직접 전출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과 초과세수·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출 허용이 맞물려 국가채무 감축 경로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적자금 출연 규정 삭제에 상응하여 법정 채무상환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기금 전출 시에도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에 우선 배분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 사실상 채무상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후 잔액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남은 금액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므로 최소 51%(출연 30% + 잔여 70%의 30%)가 실질적인 국가채무 감축에 투입되지만, 출연 규정이 삭제되면 이 비율은 단순 30%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27년 추가세수로 일반회계에 발생하는 순잉여재원은 37조 6,095억원인데, 이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 채무 감축 최소액은 현행 19조 1,400억원에서 출연 규정 삭제 후 11조 2,588억원으로 7조 8,812억원 감소한다. 다만 202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청산된 이후인 2028년에 처리되므로, ‘현행’ 수치는 출연 규정이 존속한다고 가정한 값이다.³⁾

2) 의안번호 제2221420호(문진석의원 대표발의)

3) 미래대응기금이 없고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일반회계에 남는 여유재원 37조 6,095억원에서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800억원)을 뺀 37조 5,29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현행 체계의 19조 1,4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11조 2,588억원(30%)과 채무상환 7조 8,812억원(나머지의 30%)의 합계이고, 출연 규정 삭제 후에는 채무상환 11조 2,588억원(30%)만 남는다.

이는 추가세수 중 순잉여재원이 전액 결산상 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세입 초과분과 세출 불용액이 더해져 이보다 확대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없을 경우의 일반회계 여유재원]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미래대응기금 전출 미발생	1,584,720	세출 감소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미발생	△125,000	세입 감소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급	△630,000	세출 증가
기금 사업의 일반회계 수행	△453,625	세출 증가
일반회계 여유재원	376,095	

- 주 1.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발표 절감액(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원) 기준(6-1의 63조 4,363억원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37조 1,732억원)이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4개 법률안이 모두 의결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
2. 미래대응기금 총지출 사업 45.4조원은 동일 재원인 일반회계에서 수행함을 가정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12.5조원은 기금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재원이므로 일반회계 여유재원에서 차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처리 경로별 채무 감축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안 편성 단계 국채 발행 축소	세계잉여금 처리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 (출연 삭제 후)
일반회계 여유재원	376,095	376,095	376,095
① 지방교부세 정산	-	△800	△800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30%)	-	112,588	-
③ 채무상환(30%)	-	78,812	112,588
④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	183,895	262,707
채무 감축 계	376,095	191,400	112,588

- 주: 1. 세계잉여금 처리는 「국가재정법」 제90조의 법정 최소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②는 ① 이후 잔액의 30%, ③은 ①·② 이후 잔액의 30%, ④는 남은 금액
2. ①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25회계연도분 지방교부세 정산액(약 800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즉,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채 발행을 줄여 37조 6,095억원 전액을 채무 감축에 활용할 수 있고,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더라도 11조 2,588억원 이상은 법정 채무상환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 체계에서는 추가세수가 편성 단계에서 기금으로 이전되어 세계잉여금으로 유입되지 않고, 연도 중 발생한 초과세수도 세입세출외로 기금에 전출할 수 있어 그만큼 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나아가 결산 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정산·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역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결국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규정 삭제와 미래대응기금 전출 허용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액을 기금에 우선 전출하면,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채무상환에 활용될 재원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과 기금 전출 중 어디에 우선 사용할지 정하는 선택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초과세수를 세입세출외로 국채 상환에 사용할 때 그 범위를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금 전출에는 이러한 한도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하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기금으로 전출하면 예산 총계주의 적용 배제(예산 외 처리)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된다.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국회에는 그 내역이 사후에 제출될 뿐이어서, 정부로서는 의회 통제가 약한 기금 전출을 선호할 구조적 유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규정 삭제 시, 그 축소분(21%p)에 상응하도록 채무상환 의무 비율(현행 30% 이상)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은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국채 상환과 기금 전출 간 우선순위 및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며, 기금 전출분은 국회에 사전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통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7-3.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기금 적립·인출에 대한 국회 통제 확보 필요

가. 현 황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 사이의 재원 이동은 시점에 따라 네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추가세수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전출한다. 연도 중에는 두 경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9월 세입 재추계 이후 활용할 계획이나, 법안은 시기나 재추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기금에 전출하고, 세입이 부족하면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정부안은 이 두 경로를 모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산 후에는 세계잉여금 중 정산·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른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 간 재원 이동 경로별 국회 통제 절차]

경로	시점	예산 계상	한도	국회 절차
① 추가세수 전출	예산 편성	세출예산	추가세수 산식	예산 심의·의결
② 초과세수 전출	연도 중 (시기 요건 없음)	세입·세출외	없음	내역 사후 제출
③ 세입부족 보전 전입	연도 중 (시기 요건 없음)	세입·세출외	없음	변경내역 사후 제출
④ 세계잉여금 잔액 전출 (참고) 현행	결산 후	예산 외	정산·출연·채무상환 후 잔액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회 제출 규정 없음)
초과세수 국채 상환	연도 중	세입·세출외	해당 연도 발행 국채 금액	결산으로 확인

자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6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 중 국회가 사전에 금액을 의결하는 경로는 ①뿐이다. ②와 ③은 정부가 규모를 정하고 국회에는 사후에 내역을 제출한다. ③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한도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국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세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연도 중 세입과 예산의 차이는 수십조원 규모이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세입 부족을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등으로 대응하였다. 2026년에는 9월 재추계 결과 내국세가 추가경정예산 대비 56.2조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이 중 5조원을 활용하여 10월 국채 발행량을 당초계획 대비 축소하였으며, 나머지 초과세수의 활용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

[최근 세입 재추계 결과와 개정안 체계에서의 처리 경로]

연 도	재추계 결과	실제 대응	개정안 체계에서의 경로
2023	국세 △59조 1,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여유재원 24조원(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포함), 세계잉여금, 불용 등으로 대응	③ 세입부족 보전 전입
2024	국세 △29조 6,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 5,000억원 축소, 불용 7조~9조원으로 대응	③ 세입부족 보전 전입
2026	내국세 +56.2조원 (추경 대비)	(계획) 연내 법안 시행시 2026년 초과세수는 기금으로 세입·세출 외 전출 예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必) (단, 5조원은 10월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	② 초과세수 전출

주: 1. 2023·2024년은 정부의 재추계 발표 기준이며, 대응 규모는 정부 발표 범위임
 2. 2026년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가분으로, 제정안상 초과세수는 당초(최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전출 가능액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세입 재추계 발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정부안과 같이 한도 없는 세입세출외 처리로 세입 변동분 대응을 정부 재량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보전 전입과 초과세수 전출의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연도별 적립·인출 한도를 예산총칙과 기금운용계획에 정하여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입 변동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안은 세입 여건의 변동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헌법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수행하도록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예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체제에서 연도 중 초과세수는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의 범위에서 국채 상환에만 세입세출외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법정 순서에 따라 처리한 뒤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연도 세입 이입을 통해 국회가 용도를 심의·결정한다. 세입 부족도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감액경정하고 세출을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결손 규모와 대응 방식을 심의한다.

반면 개정안 체제에서는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기금에 얼마를 적립할지, 기금에서 얼마를 전입할지를 전적으로 정부가 정하고, 국회는 사후에 그 내역을 제출받을 뿐이다. 연간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는 세입 변동분의 처리가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없이 집행부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되는 차원을 넘어, 국회가 확정된 예산의 결과에 대해 국회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세입여건 변동 시 결정 사항별 결정 주체]

결정 사항	현 행	정부안
초과세수의 용도	국채 상환(법정 용도) 외에는 세계잉여금으로 법정 처리, 잔액은 추가경정예산(국회)	국채 상환 또는 기금 전출 중 정부 선택(최소한의 요건·기준 부재)
초과세수 처리 규모	국채 상환은 해당 연도 발행 국채 범위	기금 전출은 한도 없음(정부 결정)
세입 부족 대응 수단	추가경정예산(국회), 불용 등	기금 전입 추가(정부 결정)
세입 부족 보전 규모	추가경정예산 시 국회 의결	한도 없음(정부 결정, 사후 제출)
적립 재원의 사용처	-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범위(30%) 내에서 정부 재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더욱이 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고 일부 재원의 활용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는 단계부터 이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국회가 사전에 관여할 제도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 그 결과 국회가 의결한 세입예산은 형식적인 수치로만 남고, 결산 과정에서도 예산 대비 실적의 차이가 기금을 통해 얼마나 조정되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후 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입 변동분의 처리 중 적어도 그 규모와 한도에 관한 결정은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세입예산을 확정된 국회가 그 결과의 처리까지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의 세입세출의 처리는 현행 예산총계주의 예외 요건과 성격이 상이하고 금액 한도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2023·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연이어 시정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없는 세수결손 대응’의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크므로, 보전 전입 등의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규모 세입 변동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편성 요건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현물출자·외국차관 전대처럼 거래의 특성상 예산에 계상할 실익이 낮거나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세수를 세입세출외로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도는 국채 상환으로,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의 범위로 엄격히 제한한다.

반면 개정안의 기금 전출·전입 경로는 일반회계의 세입 과부족 자체를 기금과 상호 수수(授受)하는 방식이며, 기금 전출과 보전 전입 모두 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보전 전입을 재추계에 따른 세입 부족액 범위에서 타 수단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설명하나, 정부안에는 이를 규율할 명시적 조항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연도 중 세입 부족에 대응하는 규모와 방식이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일임된다는 점에서, 2023년과 2024년의 세수결손 대응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정부는 대규모 세입 부족을 추가경정예산 없이 외국환 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동원,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세출 불용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세수결손 대응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한계가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도 아래와 같이 2023회계연도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없이 불용 등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세수결손 대응 관련)]

시정요구명	대규모 세수결손 시 국회의 심의·확정권 존중 필요(시정,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① 2023. 9. 18.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9조원으로 예상되었고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세입감액 추경을 추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세입 예산 조정 없이 일방적 불용, 내부거래 등으로 대응 ② 이는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 제54조제1항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추경 없이 정부가 사업별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국회가 당초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예산안 편성 등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의안정보시스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세수결손 대응 관련)]

시정요구명	세수결손 대응 부적절(주의,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①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30.8조원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인 불용 등을 반복 ②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 재발
시정요구사항	① 세수결손 대응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대응하는 문제 및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②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국회의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의안정보시스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부의 재량적 대응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국회 통제 절차를 단순 ‘사후 제출’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요구의 핵심 취지인 국회의 사전 심의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더욱이 추가세수는 당초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편성 단계에서 세입을 과대 추계하여 기금 적립액을 늘리고 실제 세수가 부족하면 국회 심의 없이 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부의 세입 추계 정확성에 대한 책임성과 재정 규율도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장치가 2023~2024년 세수결손기의 재량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회가 의결한 지출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최대한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 제70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통제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후 제출은 헌법상 사전 심의·의결을 갈음할 수 없고 보전 전입 한도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입 부족 시 지출 수준을 유지할지 감액 조정할지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다.

물론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경기침체 등 지출 증가 소요 위주로 열거하고 있어, 대규모 세수 오차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세계잉여금 처리나 집행 관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대규모 세입 변동은 그 자체로 예산 편성 당시 전제된 경제·재정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뜻하며, 현행 요건 규정의 해석상 한계가 곧 국회의 사전 심의를 우회하는 세입세출외 기금 전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세입예산 역시 국회가 심의·확정한 것이므로, 세입 추계와 실적 간 과도한 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부의 집행상 재량에 일임할 사안이라기보다 예산을 확정된 국회가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투입할지 기금에 적립할지, 세수결손을 지출 조정으로 대응할지 채무나 적립금으로 보전할지는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부담 배분에 관한 중대한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기금 잔액의 내부적 증감으로 처리되면, 국회는 자신이 확정된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 간 재정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부족 보전 전입과 초과세수 전출의 요건 및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2년 연속 이루어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세수결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회가 그 처리 방향을 직접 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세입경정 사유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금 전입·전출로 세입 과부족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규모와 사유를 결산 시 본래의 세입 실적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결산 단계의 사후 통제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속한 재원 보강이라는 정부의 논거는 법률에 적립·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세입 추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기획예산처는 9월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입 결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집행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속한 재원 보강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9월 세입 재추계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루어지므로, 10월 중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면 차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입예산 대비 일정 비율 등 연도별 기금 적립·인출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면, 정부는 그 법정 범위 안에서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사전에 재정 변동 규모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 추계에는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통상적인 오차가 불가피하므로, 일정 범위 내의 세입 과부족은 기금으로 흡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재정안정화 기능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재추계에 따른 세수 초과 또는 결손 규모가 수십조원대로 확대된다면, 이는 통상적인 경기 변동이 아니라 세입 추계나 재정운용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징후로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대규모 오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국회에 소명하고, 국회가 세입예산 경정과 세출 조정을 직접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추계 책임을 규명하고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제출된 정부안과 같이 미래대응 기금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오차까지 별도 한도 없이 흡수한다면, 추계 실패의 결과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 잔액의 단순한 내부 증감으로만 처리되어 정부가 세입을 정밀하게 추계하려는 유인과 규율도 구조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연도별 기금 적립·인출 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입 변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7-4. 2026년 초과세수 적립 여부·규모 및 처리 방식 검토 필요

가. 현 황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세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56.2조원 늘어난 내국세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게 된다.⁴⁾ 재추계에 따른 증가는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에 기인하며, 추정 대비 법인세 35.0조원, 소득세 15.6조원이 증가를 주도하였다.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본예산 대비 (C-A)	추경 대비 (C-B)
	본예산(A)	추경(B)	전망(C)		
○ 총 국 세	390.2	415.4	478.6	88.4	63.2
- 일반회계	378.6	398.7	455.3	76.7	56.6
(소득세)	132.0	136.8	152.4	20.4	15.6
(법인세)	86.5	101.3	136.4	49.9	35.0
(부가세)	86.6	86.6	89.0	2.4	2.4
(증권거래세)	5.4	10.6	12.4	7.0	1.9
- 특별회계	11.6	16.8	23.3	11.7	6.5
(농특세)	8.5	13.6	20.3	11.8	6.7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보도자료(2026.9.3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2026년 10월 국채 발행량을 당초계획 대비 5조원 축소하면서 그 재원으로 2026년 초과세수를 활용하였다.⁵⁾ 11~12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발행 추가 축소 여부와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초과세수 56.2조원 중 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 적립 대상은 최대 약 51.2조원이 되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전출 규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4) 정부안의 '초과세수'는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보다 클 수 있으며, 일반회계 국세 기준으로는 본예산 378.6조원 대비 76.7조원 증가

5)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2026.10.14.) 「26년 11~12월 국채발행 추가 축소 여부 및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설명자료(2026.10.18.) 「정부는 국채 이자지출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중이며, 향후 차환 리스크도 낮은 편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 및 시행을 전제로, 내국세 증가분 56.2조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초과세수’ 형태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설립 및 초과세수 적립의 법률적 근거가 신설되는 것과는 별개로, 2026년도 중에 발생한 초과세수를 연도 중에 적립하기 위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2026년 기금운용계획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정부는 이를 위해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연내 제출하겠다는 설명이다.

나. 분석의견

2026년 초과세수 중 일부가 이미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된 만큼 기금 적립 대상 규모부터 명확히 확정해야 하며, 잔여 재원의 연내 전액 적립은 현행법상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립 여부 및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는 초과세수 적립 조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부의 과도한 재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미래대응기금법안」)은 당초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세수로 분류하여 기금에 우선 전출하고, 재추계한 세입예산이 당초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초과세수로 규정하므로, 법제화 이후의 초과세수는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세입 추계 오차분으로 국한된다.

2027년 추가세수(158조 4,720억원)가 이미 대폭 확대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향후 대규모 초과세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고, 2023~2024년과 같이 세수 오차가 음(-)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반면 2026년 세입예산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이전에 편성되어 세수 증가분이 전액 초과세수로 인식되었고, 2026년 결산 실적은 2028년 추가세수 산정의 기준값이 되어 추세치를 대폭 상향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2026년은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며, 근거 법률의 입법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연내 의결과 기금 전출까지 마무리하려는 것 역시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 대상으로 편성한 2026년 초과세수(당초 56조 2,000억원)는 최근 이 중 5조원이 국고채 발행 축소에 활용됨에 따라 실제 적립

가능 대상이 최대 5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관련 법률안의 시행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26년 11~12월 중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경우, 잔여 재원인 51조 2,000억원 전액이 세입세출외로 연내에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법률 시행 시기에 따른 2026년 초과세수 처리 비교]

구분	2026년 시행	2027년 시행
처리 시점·방식	연내 세입세출 외로 기금 전출	2027년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적용
지방교부세 정산	없음	약 10.8조원 (현행 정산 규정 적용 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없음	약 12.1조원
국가채무 상환	없음	약 8.5조원
미래대응기금 적립	51.2조원(최대)	약 19.8조원

- 주: 1. 지방교부세 정산은 현행 정산 규정을 적용한 금액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5조제3항제1호는 경과규정 없이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분 정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2026년 내국세 세입 예산액·결산액이 모두 2026년 추세치로 간주되어 정산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산에서 제외됨을 가정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부칙은 2026년 이전 연도분 정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면 2027년 시행 시 교부금 정산 약 11.7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약 8.6조원, 국가채무 상환 약 6.0조원, 기금 적립 약 14.1조원)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은 현재 정부안이 출연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12.1조원은 그대로 반영함(단, 이 경우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의 조정이 필요).
3. 2026년 초과세수 56.2조원 중 10월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된 5조원을 제외한 51.2조원을 세계잉여금 처리 대상으로 가정함.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은 내국세 실적에 연동되므로 56.2조원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반면 부칙상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할 경우 해당 잔여 초과세수는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약 10조 8,000억원이 정산되고(현행 정산 규정 적용 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에 20조 6,000억원 이상이 우선 충당된다. 이후 잔여 재원인 약 19조 8,000억원은 개정안에 따라 기금에 전출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늦추더라도 기금 재원 적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연내 즉시 시행을 전제로 잔여 초과세수를 전액 적립하면,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거쳤을 때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상환에 투입되었을 약 31조 4,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흡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⁶⁾

이러한 정부의 초기 재원 확보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된 5조원을 제외한 51조 2,000억원 전액을 연내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법적·제도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재정법」이 초과세수의 국채 상환 활용과 세계잉여금의 최소 51% 채무 감축을 의무화한 것은 호황기의 일시적 재원을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배분하도록 한 입법 취지임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 역시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채권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초과 조세수입 활용 규정의 취지에 맞춰 올해 초과세수 중 5조원을 활용하여 10월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계획 대비 축소할 바 있는데, 이는 일시적 초과세수를 채무 감축 및 시장 수급 안정에 투입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5조원은 당초 예상 초과세수의 약 9% 수준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국채 축소·상환 여부에 따라 실제 기금 전출 가능액도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국채 발행 축소와 기금 적립 간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적립 규모를 재산정·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적립 규모가 9월 재추계 전망치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결산 실적이 이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가 세수 결손으로 떠안게 되는 위험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제출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전출은 12조 5,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1조원에 그치며, 여기에는 2026년 적립분의 활용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적립분을 금융시장에 예치한 채 고금리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조달금리와 역마진만큼 국가재정 전체의 순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세계잉여금 법정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상환에 투입되었을 수준만큼은 국고채 발행 축소와 연계하는 것이 현행 재정법 체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대상에 해당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에서도 제외되므로, 국회 통제를 위해 전출 규모와 용도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초과세수의 적립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를 전적으로 행정부가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어, 기금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6) 다만, 부칙의 내용에 따라 2026년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2027년 이후에는 초과세수의 적립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매 연도의 단기적 재정 여건이나 정부의 정
책적 유인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5. 기금운용계획 변경·이월 통제 보완 필요

가. 현 황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기금과 다른 특례를 두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적용되는 집행 특례]

구 분	현 행	미래대응기금	근 거
주요항목 변경한도	비금융성기금 20% 이내	30% 이내(금융성기금과 동일), 초과세수 재원 활용 시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 70조제3항·제6항
이월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까지	지방계정 보조사업은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기금관리주체 단계와 지방 자치단체 단계에서 각각 다음다음 연도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 72조제1항제2호, 제정안 제17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지방계정 보조사업은 교부결정 변경·정산·반환 등 일부 규정 적용 배제(법령 위반·부정수급 등은 적용)	제정안 제18조제1항
집행잔액	반납	유사 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명세서 기획예산처 제출)	제정안 제18조제2항

자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6호) 및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미래대응기금 사업비는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이 미리 확정된 사업성 지출이므로,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주요항목 변경한도를 타 사업성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계정별 단일 프로그램 구조도 사업 성격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한도를 비금융성기금(사업성기금) 20%, 금융성기금 30%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성기금에 높은 한도를 허용하는 것은 보증·보험 등 금융거래의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

부안은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이고 그 절반 이상이 타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계속사업인 미래대응기금에도 3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계정별 사업이 하나의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30% 한도를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최대 13조 6,088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는 20%를 적용할 때보다 4조 5,363억원 상회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총괄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12조 5,000억원도 자체변경 대상이고, 세입 부족 보전 전출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업계정 프로그램별 자체변경 가능 금액]

(단위: 억원)

프로그램	2027 계획안	20% 적용	30% 적용	차 이
청년종합지원	133,296	26,659	39,989	13,330
성장동력확충	141,638	28,328	42,491	14,163
지방주도성장	102,662	20,532	30,799	10,267
교육·인재지원	76,029	15,206	22,809	7,603
계	453,625	90,725	136,088	45,363

주: 변경한도는 주요항목(장·관·항) 중 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단위로 적용되며,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은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예산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성격과 신축적 집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0%를 설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삭감 사업 증액과 주요항목 신설을 금지하고 초과세수 활용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재정안정화와 여유자금 운용은 총괄계정의 기능이고, 30% 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사업계정의 세출 프로그램이다. 삭감 사업 증액과 주요항목 신설의 금지는 모든 기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원칙이며, 지체 없는 보고도 초과세수 활용과 세입 부족 보전에 한정되어 그 밖의 변경은 분기별 사후 제출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간 사업성기금의 자체변경이 국회 의결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4대 사업계정에 30%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정부의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입법부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한도를 20%로 낮추더라도, 청년계정처럼 현금급여·자산형성·주택 융자·창업 지원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혼재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성격이 상이한 세부사업 간 임의적 재원 이동이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타 사업성기금 수준의 변경한도를 적용하고, 총괄계정의 일반회계 전출은 자체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별 단일 프로그램을 현금급여, 융자·이차보전, 출자, 연구개발, 지방이전재원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이월 특례는 중앙과 지방 단계에서 각각 적용되어 전체 이월 기간이 정부 설명보다 장기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월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월 및 집행잔액 사용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72조는 기금 지출금액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부안은 지방계정 보조사업에 대하여 두 단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가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법안」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두 규정은 이월 주체와 기산점이 달라, 기금 단계에서 이월된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뒤 다시 이월되면 실제 집행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비교]

구 분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72조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7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월 주체	기금관리주체(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
이월 요건	불가피한 사유 (지출원인행위 불요)	불가피한 사유 (지출원인행위 불요)	부득이한 사유 (지출원인행위 불요)
이월 기간	다음다음 연도까지	다음다음 연도까지	2회계연도 초과 불가
이월 사용 제한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기획예산처장관이 제한 가능

자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6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9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예산처는 주민협약·토지보상·영향평가 등으로 단년도 집행이 어려운 지역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월 특례를 차용하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이월 기간을 재이월(사업기간 최대 3년) 범위 내로 일치시킨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과 같이 이월 특례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최대 3년’은 행정적 운용 방침일 뿐 법률안에는 두 단계를 합한 전체 이월 기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지방계정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산·반환 등 일부 규정이 배제되어 집행잔액을 유사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 명세서는 기획예산처에만 제출될 뿐 국회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이후의 이월과 집행잔액 사용은 국가 결산에도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이월 특례는 중앙과 지방 단계를 합한 전체 이월 기간이 편성연도를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특례 대상을 장기 이월이 불가피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월액과 집행잔액 사용 실적을 기금 결산 부속서류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7-6.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축소 및 교부금 산정방식 전환의 영향 제시 필요

가. 현 황

현행 제도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로 법정화되어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맞추어 두 재원에 서로 다른 개편 방식을 적용하였다.⁷⁾

지방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는 추가세수 158조 4,720억원을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여, 산정 대상 내국세가 520조 5,583억원에서 362조 863억원으로 30.4% 축소되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명목GDP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현행법을 적용할 때보다 지방교부세는 30조 4,9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 5,331억원, 합계 63조 231억원이 축소 편성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액과 현행법 기준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A)	현행법 대비 감소분(B)	현행법 기준(A+B)
지방교부세	693,550	771,899	304,900	1,076,7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687	788,718	325,331	1,114,049
계	1,410,237	1,560,617	630,231	2,190,848

주: 1. 지방교부세의 (B)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 158조 4,720억원에 교부율 19.24%를 적용한 산정 제외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B)는 교육부가 산정한 현행법 기준 금액(111조 4,049억원)과 예산안의 차이

2.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000억원, 계 63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7호)은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제2호의 내국세 세입에서 같은 법안 제5조제1항제1호(추가세수) 및 제2호(초과세수)에 따른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이에 따라 현행법상 100분의 45만 제외되던 담배분 개별소비세도 전액 제외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53호)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명목GDP 변화율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제3조제2항, 제4조).

아울러 정부안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 후 정산 경로도 대폭 조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교부세 정산 시 내국세 세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각각 내국세 세입 추세치보다 크면 추세치를 예산액·결산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근거를 삭제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내국세·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정산 규정(현행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2025회계연도 정산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2조).

한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등에 미래대응 기금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지방계정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일반재원 형태로 배분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9조제1항제1호는 내국세 세입예산액과 추세치 중 적은 금액의 20.79%에서 교부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2027년도 계획안의 교육·인재계정 수입 10조 1,029억원은 해당 법정 전입 경로와 달리 전액 총괄계정 전입금으로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만큼 산정기준이 자동 축소되고 정산 시 호황기 세수 증가분 공유가 배제되며 기금의 일반회계 환원분조차 산정에서 누락되므로, 지방재정 영향 분석과 함께 환원 재원 산입 및 지원 기준 법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하나, 개정안은 기금으로 전출되는 추가·초과세수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서는 기금 전출액(158조 4,720억원)이 빠지면서 산정 대상 내국세가 현행법 기준 520조 5,583억원에서 362조 863억원으로 30.4% 감소하며, 전체 내국세 대비 실효 교부율도 13.38%로 5.86%p 하락한다. 수치는 매년 달라지더라도 기금 전출액의 19.24%만큼 지방교부세가 자동 감액되는 구조는 동일하다.

결산 정산 단계에서도 추가세수 발생 연도의 지방교부세는 세입 추계 오차와 무관해진다. 내국세 예산액이나 결산액이 추세치를 초과하면 추세치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2027년처럼 당초 예산액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경우(아래 표 ①~③)에는 결산액이 예산보다 약 158조원 이상 미달하지 않는 한 추가정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세입 과부족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 내부 수수로만 처리된다. 예산액·결산액·추세치 규모에 따른 정산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여섯 가지이다.

[예산액·결산액·추세치 크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시나리오]

구 분	예산액·결산액·추세치 크기	지방교부세(개정안)	지방교부세(현행법)
① 추가세수 발생	추세치 < 예산액 < 결산액	정산 없음 (예산액·결산액 모두 추세치로 간주)	증액 정산 (결산액-예산액의 19.24%)
② 추가세수 발생	추세치 < 결산액 < 예산액	정산 없음 (예산액·결산액 모두 추세치로 간주)	감액 정산 (예산액-결산액의 19.24%)
③ 추가세수 발생	결산액 < 추세치 < 예산액	일부 감액 정산 (추세치-결산액의 19.24%)	감액 정산 (예산액-결산액의 19.24%)
④ 추가세수 없음	예산액 < 추세치 < 결산액	일부 증액 정산 (추세치-예산액의 19.24%)	증액 정산 (결산액-예산액의 19.24%)
⑤ 추가세수 없음	예산액 < 결산액 < 추세치	증액 정산 (현행법과 동일)	증액 정산 (결산액-예산액의 19.24%)
⑥ 추가세수 없음	결산액 < 예산액 < 추세치	감액 정산 (현행법과 동일)	감액 정산 (예산액-결산액의 19.24%)

주: 개정안의 정산액은 $19.24\% \times [\min(\text{결산액}, \text{추세치}) - \min(\text{예산액}, \text{추세치})]$

현행법의 정산액은 $19.24\% \times (\text{결산액} - \text{예산액})$ 임

자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7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요컨대 추가세수 발생 연도의 지방교부세는 추세치의 19.24%로 사실상 고정된다. 지방은 세수 결손 시 감액 부담을 면하는 대신 초과 징수 시의 증액분도 공유하지 못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세수 과부족을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기금 적립·보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하방 안정성은 일부 높아지나, 호황기 세수 증가분이 전액 중앙 기금에 귀속되어 지방재정의 세수 탄력성은 크게 저하된다.

더욱이 기금 전출 재원은 현행법상 약 40%(지방교부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가 지방 몫이었을 내국세임에도, 향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환원될 때는 기금전입금으로 계상되어 교부세 산정에서 영구 배제된다. 당장 2027년 일반회계 전출금(12조 5,000억원)만 보더라도 교부율 적용 시 약 2조 4,050억원이 지방 배분에서 누락된다. 보완 수단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억원) 역시 규모와 기준을 법률이 아닌 매년 예산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산정기준 축소에 따른 연도별·자치단체별 재정 영향을 정밀 산정하여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금의 일반회계 환원 재원을 교부세 산정기준에 재산입하고, 기금의 지방 지원 사업 역시 규모와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정 배분 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폐지로 호황기 세수 증가분을 공유하지 못하는 대신 전년 수준의 하방 안정성을 보장받는 구조로 전환되며, 현행법 대비 감소분에 대한 교육재정으로의 법정 환원 경로가 2027년에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산식 개편에 따른 실질적 영향과 보완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던 교부금은 개정안⁸⁾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명목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교부금이 기금 전출액과 무관하게 독립 산정됨에 따라 2027년 현행법 대비 감소분(32조 5,331억원⁹⁾)은 산식 변경에 따른 격차이며, 2028년 이후의 격차도 내국세 증가율과 신규 산식 증가율 간 차이에 좌우된다. 또한 결산 정산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법상 2026년 내국세 초과분(56조 2,000억원)에 대해 발생했을 정산분 약 11조 7,000억원(추정)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2027년 교부금이 기금 전출 제외 내국세의 20.79%를 상회하고 2026~2030년 연평균 4.9% 증가하므로 교육청 세입이 순감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공식 추계 부재를 이유로 현행법 유지 시와의 실질

8) 전년도 교부금 × (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

9) 현행법 기준 111조 4,049억원 - 개정안 78조 8,718억원

적 격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27년 교부금 증가율(10.1%)은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원) 대비 수치로, 사유서상 추경예산(76조 4,381억원) 기준으로는 3.2%, 부칙상 최초 산정 기준액(75조 6,902억원) 기준으로는 4.2% 증가에 그친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교육·인재계정의 법정 재원을 ‘내국세 예산액과 추세치 중 적은 금액의 20.79%에서 교부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나, 2027년에는 교부금 총액이 추세치의 20.79%를 초과하여 일반회계 법정 전입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7년 계정 수입(10조 1,029억원, 현행법 대비 감소분의 31.1%)은 법률상 기준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총괄계정 전입금으로만 충당된다. 더욱이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때의 차액 보전 전출까지 동 계정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세수 둔화기 보전 소요에 대한 재원 감당 여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산식 개편에 따른 연도별·교육청별 재정 영향을 정밀 산정하여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법 유지 시와의 연도별 격차 및 교육·인재계정 귀속 규모, 학령인구 반영계수(35%)와 3년 평균 변화율 적용의 정책적·통계적 근거, 정산 폐지에 따른 재정 영향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7-7. 다부처 기금 편성에 따른 예·결산 심사체계 보완 필요

가. 현 황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등 다부처 연계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기획예산처의 소관으로 하되, 4대 사업계정에 편성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다수의 개별 부처가 수행할 예정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집행부처별 사업 현황(총지출 기준)]

(단위: 건, 억원, %)

집행부처	사업수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총괄	계	비중
행안부	5	-	-	85,902	-	-	85,902	18.9
과기부	38	-	66,006	-	17,145	-	83,151	18.3
교육부	13	-	-	-	49,315	-	49,315	10.9
국토부	10	30,759	10,350	1,810	-	-	42,919	9.5
복지부	3	36,254	377	-	-	-	36,631	8.1
금융위	7	20,386	15,000	-	-	-	35,386	7.8
기후부	14	-	24,874	-	1,576	-	26,450	5.8
고용부	5	21,060	-	-	4,608	-	25,667	5.7
중기부	9	14,855	1,966	-	1,366	-	18,188	4.0
농식품부	3	-	-	11,921	-	-	11,921	2.6
문체부	3	8,320	-	1,523	-	-	9,843	2.2
재경부	4	-	8,500	1,000	-	-	9,500	2.1
산업부	7	-	7,099	-	2,019	-	9,118	2.0
우주청	5	-	7,465	-	-	-	7,465	1.6
성평등부	1	1,663	-	-	-	-	1,663	0.4
해수부	2	-	-	507	-	-	507	0.1
기획처	1	-	-	-	-	233	233	0.1
계	130	133,296	141,638	102,662	76,029	233	453,858	100.0

주: 기획처 소관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총괄계정) 기금운영비 사업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16개 중앙관서가 집행하는 129개 사업을 기획예산처 소관의 단일 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는 상임위원회와 재원을 심사하는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예·결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종합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기금관리주체로 규정할 뿐(제9조제4항) 기금에 편성된 사업의 실제 수행주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금 사업의 예산과 결산은 원칙적으로 기금관리주체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담하여 심사하게 된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관리주체이나 사업은 16개 중앙관서가 나누어 집행하므로, 동일한 정책 사업임에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 편성된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주체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책임 소재 간에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

[일반회계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예·결산 심사체계 비교]

구 분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	미래대응기금 사업	근 거
예산안 예비심사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의견제시	「국회법」 제84조
결산보고서	집행부처가 작성	기금 소관 중앙관서(기획예산처)가 작성	「국가재정법」 제73조
성과계획서 ·보고서	집행부처가 작성	기금관리주체(기획예산처)가 작성 (2027년도 성과계획서는 기금 사업 140개를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자료: 「국회법」,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실제로 129개 세부사업 중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직접 소관 부처 사업은 4개(9,500억원, 2.1%)에 불과하며, 나머지 125개(44조 4,125억원, 97.9%)는 타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아동수당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원)의 경우 사업 제도와 근거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반면, 재원과 세출예산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 관할 분리가 발생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타 회계·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국회 심사를 거치므로 국회 통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나(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2026.10.7.), 외형적 절차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이 배제됨으로써 국회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는 점이 핵심 한계이다.¹⁰⁾

기존 다부처 기금은 관련 상임위원회가 개별 사업에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왔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2025년까지 기재위가 총괄 심사하고 환노위가 소관 사업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지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해 상임위 간 일정 불일치나 이견 발생 시 실효적 조율이 어렵다. 더욱이 미래대응기금 사업비(45조 3,625억원)는 복권기금의 약 12배, 기후대응기금의 약 6배에 달하며 연계 상임위만 12개에 이른다. 주무부처 비중이 높았던 기후대응기금과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최다 부처(과기정통부 38개, 29.5%)조차 비중이 낮아 다수 부처로 고르게 분산된 파편적 구조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 의견제시 방식만으로는 관련 상임위의 전문적 심사 결과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을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임위 간 협력·심사 절차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산의 작성 주체가 기금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되어 사업을 실제 집행한 부처의 책임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집행부처별 결산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6.9., 32~35쪽

일반회계·특별회계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가 소관 결산을 작성하는 반면,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3조).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결산은 전적으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되고,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역시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 않아 불용·이월의 사유나 성과 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집행부처는 시정요구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이관사업이 종전 회계·기금의 결산 지적사항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2028년에 이루어질 202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관 전후의 집행 추이와 시정요구 이행 여부를 연계하여 추적·점검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에 집행부처별 사업, 이관 전 회계·기금의 예산 및 집행실적 대비표를 포함하고,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처별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처의 조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법정무지출 사업이나 근거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처럼 정책 심사와 예·결산 심사를 긴밀히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업은 집행부처 소관 회계·기금에 직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획예산처는 성과계획서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전면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집행부처의 성과지표 역시 상위 프로그램 단위로 설정되어 기금 사업의 실질적 성과 검증이 제한적이므로, 기금 단위의 총괄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구분·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5조의6제1항¹¹⁾, 제85조의7¹²⁾), 2027년도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는 미래대응기금 140개 세부사업을 모두 성

11)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국가재정법」

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단위의 성과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사업계정 129개 사업 중 112개(35조 3,255억원, 77.9%)는 집행부처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17개(10조 370억원, 22.1%)는 집행부처 성과계획서에서도 비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5개(8조 5,90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집행부처 성과계획서상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 사업의 성과관리 대상 여부]

(단위: 개, 억원)

집행부처	사업수	대상	대상 예산안	비대상	비대상 예산안
행안부	5	-	-	5	85,902
과기정통부	38	30	73,798	8	9,353
교육부	13	13	49,315	-	-
국토부	10	10	42,919	-	-
금융위	7	7	35,386	-	-
기후부	14	14	26,450	-	-
중기부	9	9	18,188	-	-
복지부	3	3	36,631	-	-
고용부	5	3	21,060	2	4,608
산업부	7	7	9,118	-	-
재경부	4	4	9,500	-	-
농식품부	3	3	11,921	-	-
문체부	3	3	9,843	-	-
우주청	5	5	7,465	-	-
성평등가족부	1	1	1,663	-	-
해수부	2	-	-	2	507
계	129	112	353,255	17	100,370

주: 사업계정 129개 사업(45조 3,625억원) 기준이며, 비대상 사유는 행정안전부 부처특성(대외공개근란) 4개·교부금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 운영지원 8개, 고용노동부 기본경비성 2개, 해양수산부 부처특성 2개임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성과지표가 상위 프로그램 단위로 포괄 설정되어 있어 기금 세부사업의 실제 성과와 지표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기금 사업이 포함된 36개 프로그램 중 지표가 기금 사업의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프로그램은 5개(8조 3,799억원, 23.7%)에 불과하며, 14개(12조 701억원, 34.2%)는 성과지표와 기금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 상이하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 프로그램(5조 6,235 억원)은 예산 전액이 기금 사업임에도 지표는 ‘논문 피인용도(영향력 지수)’ 1개에 불과하고, 재정경제부 소관 국부펀드(5,000억원)와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1,000 억원) 사업 역시 상위 프로그램 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금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부합 여부]

(단위: 개, 억원, %)

구분	판단 기준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비중
직접 부합	지표가 기금 사업의 성과를 직접 측정	5	14	83,799	23.7
일부·간접	일부 사업 또는 간접적으로만 관련	17	51	148,755	42.1
불부합	지표와 기금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름	14	47	120,701	34.2
계		36	112	353,255	100.0

주: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지표명·측정산식을 기금 사업의 내용과 대조한 결과이며, 집행부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112개 사업(36개 프로그램) 기준임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성과지표와 기금 사업이 부합하지 않는 주요 프로그램]

(단위: 억원, %)

집행부처	프로그램	기금 사업	기금 비중	프로그램 성과지표	지표와 기금 사업의 관계
과기정통부	성장동력 (Ⅳ-12)	56,235	100.0	논문의 표준화된 순 위보정 영향력 지수 (mrnIF) 1개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 2,752억원) 등 AI 인프라·데이터 사업과 무관
교육부	교육·인재지원 (Ⅱ-7)	49,315	100.0	서울대 대비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기본지원사업비 비율 1개	거점국립대 혁신사업(7,943억원)만 관련, 교사대야동비율 개선 등 세부사업 3개(9,019억원)는 지표 ‘개발중’
국토부	청년주거지원 (Ⅱ-7)	30,759	100.0	보편형 청년주택 임대율 1개	보편형 임대 사업만 관련, 청년월세 지원(2,319억원) 등은 성과 미측정
기후부	메가프로젝트 전력 인프라 구축(Ⅶ-10)	21,097	100.0	지중화 확대 1개	지중화 지원(27억원, 0.1%)만 관련,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등은 미측정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환경 정비(Ⅴ-1)	11,658	41.5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까지의 접근 시간 1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 1,658억원)과 무관
재경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Ⅰ-2)	5,000	35.3	범부처 협의체 발표 안건 수 1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5,000억원)과 무관
재경부	공공기관 생산성·서비스 제고 지원(Ⅱ-4)	1,000	92.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0.7),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방문자(0.3)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1,000억원)과 무관

주: 프로그램 기금 비중은 프로그램 예산 대비 미래대응기금 단위사업 합계 비율이며, 교육부·국토교통부는 지표가 일부 사업과만 관련된 경우이며, 교육부는 기금 사업이 프로그램 전체임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아울러 세부사업 수준에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된 기금 사업은 38개(17조 3,073억원, 49.0%)에 그쳤으며, 교육부는 13개 사업 중 3개(9,019억원)의 지표를 ‘개발 중’으로 제출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금 사업의 세부사업 단위 성과지표 제시 현황]

(단위: 개, 억원)

집행부처	사업수	제시	제시 사업 예산안	미제시	미제시 사업 예산안
과기정통부	30	-	-	30	73,798
교육부	13	13	49,315	-	-
국토부	10	-	-	10	42,919
금융위	7	7	35,386	-	-
기후부	14	3	1,576	11	24,874
중기부	9	-	-	9	18,188
복지부	3	3	36,631	-	-
고용부	3	3	21,060	-	-
산업부	7	-	-	7	9,118
재경부	4	-	-	4	9,500
농식품부	3	1	11,658	2	263
문체부	3	2	8,320	1	1,523
우주청	5	5	7,465	-	-
성평등가족부	1	1	1,663	-	-
계	112	38	173,073	74	180,182

주: 집행부처 성과계획서에서 성과관리 대상인 기금 사업 112개 기준이며, 사업명과 프로그램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만 ‘제시’로 집계하였으며, 교육부 13개에는 ‘개발중’ 3개가 포함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의 기금 사업 포함 프로그램은 별첨7에 수록되지 않음

자료: 각 부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차원의 총괄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기금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성과지표를 구분·연계하며, 성과보고서 역시 집행부처별 실적을 명확히 분리하여 작성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 사유와 대체 점검 방안을 성과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 간의 유기적 연계성과 재정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4항).

넷째, 미래대응기금과 구조가 유사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관서 조직별 구분을 통해 집행부처가 소관 세출을 편성하고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 역시 집행부처별로 지출계획을 구분·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계획 수립과 집행 주체를 일치시키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예비심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거버넌스 및 재정통제상의 한계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체와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가 괴리되는 다부처 활용 기금 고유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다부처 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기금 지출계획을 집행부처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계획 수립 주체와 집행 주체를 일치시키고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직접 예비심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¹³⁾

현행 재정법령 체계에도 이러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총괄 관리부처를 단일화하면서도 세출예산을 중앙행정기관(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부처가 소관 세출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해당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예비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하여 각 소관 지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다부처 재원의 관리·운영 주체와 편성 방식]

회계·기금	관리·운영 주체	편성 방식	근 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예산처	중앙행정기관 조직별 구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에 관한 특별법」 제75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조직별 구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세출예산을 중앙관서 조직별 구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2조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동 관리·운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미래대응기금(안)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편성 (집행부처는 기금사용계획서 제출)	안 제13조, 제14조

자료: 각 법률 및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6., 218~222쪽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미래대응기금과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가 총괄 관리주체이고 다수 부처가 사업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예컨대 지방계정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 1,658억원)은 2026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었으나, 2027년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 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출된 법률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포괄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집행부처는 단순히 기금사용계획서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할 뿐, 집행부처별로 지출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편성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상기 조직별 구분 제도는 특별회계 중심의 입법례이며, 기금은 원칙적으로 단일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 미래대응기금에서 동일한 심사 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례와 같이 집행부처를 공동 관리주체로 규정하거나, 「미래대응기금법안」 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수립·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특례 규정을 두는 입법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계획을 집행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수립·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계획 수립 주체와 사업 집행 주체를 일치시키고,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직접 실질적으로 예비심사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결산 및 성과보고 역시 집행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다부처 기금에서 반복되는 결산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성과관리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7-8. 미래대응기금으로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편성 문제

가. 현 황

2027년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 계획안의 특별회계전입금¹⁴⁾과 특별회계예수금¹⁵⁾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예수금으로, 각각 1조 2,427억원과 2조 5,64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특별회계전입금 및 예수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특별회계전입금	-	1,242,737	1,242,737	순증
특별회계예수금	-	2,564,525	2,564,525	순증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농특세사업계정은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로 총계가 2026년 8조 6,146억원에서 2027년 22조 1,25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의 이전도 6조 7,406억원에서 18조 3,03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특세사업계정의 세출로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와 함께,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만을 규정하고 있다.¹⁶⁾

14) 코드: 미래대응기금 91-912

15) 코드: 미래대응기금 94-942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후생복지·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78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의 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이전 항목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7,934	60,362
농업발전기금 전출(신설)	-	47,81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	29,472	29,412
미래대응기금 예탁	-	25,645
미래대응기금 전출	-	12,427
임업진흥사업계정 전출	-	7,365
계	67,406	183,030

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총계는 2026년 8조 6,146억원에서 2027년 22조 1,255억원으로 증가
 자료: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농특세사업계정의 미래대응기금 전출(1조 2,427억원)은 법률상 전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률이 정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로와 달리 기금을 경유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농어촌 사업을 소관 회계·기금에 직접 편성하거나 전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미래대응기금법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전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¹⁷⁾ 그러나 해당 조항은 미래대응기금이 수납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정한 수입 측 규정에 불과하며, 재원을 지출하는 회계의 세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회계의 세출은 해당 회계의 설치 법률이 정한 목적과 세출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농어촌구조개선 특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7)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호)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생략)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총괄계정 예수금”이라 한다)

별회계법」은 농특세사업계정에서 타 회계·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대상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업업재해보험기금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출금과 지방계정 농어촌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부 처	편성 유형	2027 계획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식품부	지특회계에서 이관	1,165,765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농식품부	순수신규	20,810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농식품부	이관	5,50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해수부	이관	45,162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해수부	이관	5,500
계			1,242,737
농특세사업계정 → 미래대응기금 전출			1,242,73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가재정법」 제13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전입·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번 전출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같은 조는 회계와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인데, 농특세사업계정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액(1조 2,427억원)은 위 표와 같이 지방계정의 농어촌 사업 5건의 사업비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여,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이라기보다 특정 사업의 소요 재원을 기금으로 단순 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¹⁸⁾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농특회계의 목적과 농어촌특별세의 취지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어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전출이므로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부합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증시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목적이 농어업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의 ‘여유재원’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가 아닌 목적세로서 「미래대응

1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도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규정되지 않은 회계·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제주계정, 축산발전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물발전기금)으로 「국가재정법」 제13조를 근거로 전출금을 편성한 데 대하여,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와 다른 계정의 전입금에 세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계정의 전출은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을 규정한 같은 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전출이 필요하다면 개별 법률의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

기금법안」의 추가세수 산정 대상 세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이 이루어졌는데, 동 특별회계 각 계정으로의 전출 근거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2026년 10월 1일 부결된 바 있다.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출 대상이 법률에 열거된 회계·기금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이를 확대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에도 동일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기획예산처도 향후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농특세사업계정의 농업발전기금 전출(4조 7,819억원)은 「농업발전기금법안」¹⁹⁾ 부칙 제5조제6항(타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농업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제10호)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법안」 부칙은 시행일만 규정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안이 정부 원안대로 제정되더라도 농특세사업계정의 미래대응기금 전출 근거는 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이미 적법한 수행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미래대응기금을 경유하도록 설계할 정책적 실익도 분명하지 않다. 농특세사업계정은 지역 단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전출하여 수행할 수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역시 2026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미래대응기금을 거쳐 편성할 경우 실질적인 재원은 농어촌특별세임에도 미래대응기금의 총규모와 사업비가 그만큼 외형상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정부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증시 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운용하여’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2026.9.17.). 더 나아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이 기획예산처 소관 기금의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소관이 변경되고, 기금 내 지방계정 사업에 부여되는 이월·보조금 특례도 새롭게 적용받게 된다.

19) 의안번호 제2221142호(윤준병의원 대표발의)

따라서 해당 농어촌 사업 5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신설 예정인 농업발전기금에 직접 편성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미래대응기금을 거쳐 편성하고자 한다면 농업발전기금의 사례와 같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명시적인 전출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농특세사업계정의 미래대응기금 예탁(2조 5,645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직접 예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재정운용상 실익이 없고 농업 분야 재원배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농업 분야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타 회계·기금 예수금을 총괄계정 재원으로 규정한 「미래대응기금법안」 제5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기금의 수납 근거일 뿐 지출 측 근거는 아니다.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는 타 회계·기금 예탁 근거가 없으며, 설치 법률과 관계없이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정된다(「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제1항).

다만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0조가 설치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총괄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법안 제정 시 법적 근거는 마련된다. 이 점에서 특례가 없는 전출입금과 구별되나, 예탁의 실익과 특례의 적정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셋째 참조). 실제로 본 건을 제외한 2027년도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 20건은 모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집중되며, 개별 기금에 직접 예탁하는 사례는 이 1건이 유일하다.

기획예산처는 농어촌특별세 추가세수를 기금에서 중·장기 운용한 뒤 농업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시 타 분야 지원에 쓰여 연계성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탁금은 만기 시 원리금이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상환되므로 어느 기금에 예탁하든 농업 재원으로서의 귀속은 동일하다. 오히려 미래대응기금 예수금은 총괄계정 내에서 타 재원과 구분 없이 일반 사업계정 전출 등에 혼용될 수 있고, 농업 분야 재투자 의무화한 규정도 법안에 없다.

재정운용상 실익도 찾기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의 예수금 이자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율과 동일하여 이자수익 차이가 없으며, 미래대응기금은 이미 100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타 회계 자금을 차입해 사업비에 충당할 유

인도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예수금을 통해 기금의 외형적 규모만 확대하는 효과에 그친다.

농업 분야 재원배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존 농업 기금들의 재원 부족과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농특세사업계정에서 4조 7,819억원을 전출하면서도, 정작 같은 계정의 여유자금 2조 5,645억원은 농업과 무관한 미래대응기금에 예탁하고 있어 정책 방향이 상충한다. 따라서 해당 여유자금은 원칙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 분야 재원으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0조의 예탁 특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조문을 차용하였으나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원칙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재원의 통합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 연금·보험기금까지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과 이자율 산정 기준을 법률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래와 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제7조·제15조의 예탁 특례, 예수기간·이자율, 기한 전 상환 규정과 동일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자율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법정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를 단서로 두는 반면,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등을 단순 고려 요소로만 열거한 채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르도록 하여,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 지급을 법정 원칙으로 확립하지 않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안」의 예탁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미래대응기금법안」	비 고
예탁 근거	기금등의 관리자는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예탁 가능 (제6조제1항)	같은 문언(안 제10조)	동일
예탁 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이 예탁 요청 가능 (제6조제2항·제3항)	규정 없음	자율 예탁

구 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미래대응기금법안」	비 고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지급이 원칙(제7조제2항)	국·공채 이자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래대응기금운용 심의회가 정하는 이자율 (안 제11조제2항)	원칙 규정 없음
기한 전 상환	15일 이전 요청, 낮은 이자율 적용 가능(제7조제3항, 제15조)	15일 전까지 요청, 낮은 이자율 적용 가능(안 제11조 제2항 단서, 안 제12조)	동일
예수금의 용도	다른 회계·기금 예탁, 관리기금 다른 계정 예탁·전출, 유가증권 매입, 국채·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제3조제2항)	다른 자원과 구분 없이 사업 계정 전출 가능(안 제5조 제2항제3호)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 가능

자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052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수금의 운용 용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수금을 타 회계·기금 예탁, 융자,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며 직접적인 사업비 지출 용도는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은 예수금을 타 자원과 구분하지 않고 각 사업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어,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 자금이 상환의무가 없는 계속사업비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원리금 상환은 장래의 가변적인 추가세수 등 총괄계정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적용 대상 측면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제13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을 전입·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등 9개 연금·보험성 회계·기금은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들 회계·기금의 설치 법률은 아래와 같이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엄격히 한정하고 법정 의결·승인 절차나 수익 확보 의무를 두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0조는 이들 회계·기금마저도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탁은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 전입·전출과 달라 「국가재정법」 제13조와 직접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국가재정법」이 해당 회계·기금을 제외한 본래 취지가 가입자의 급여 지급권 등 고유 목적의 재원을 일반 재정 소요로부터 분리·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대응기금 예탁의 경우 「국민연금법」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대해 명시한 최소 수익률 보장 기준(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 제102조제3항 단서)과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하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상 시장금리 연동 원칙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라는 포괄적 특례 조항이 설치 법률상의 자산운용 대상 제한만을 배제하는 것인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이나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과 같은 필수적인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절차까지 전부 배제하는 것인지도 문언상 불명확하다.

[「국가재정법」 제13조 제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정]

회계·기금	근거 조문	운용방법	절차·보호장치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2조	금융기관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 매매 등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시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7조	금융회사 예입, 재정자금 예탁, 유가증권 매입 등	중요사항 인사혁신처장 승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	금융기관 예입·신탁, 유가증권 매매, 대여 등	중요사항 교육부장관 승인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49조	금융회사등 예입 또는 재정자금 예탁, 유가증권 매입 등	수익 최대 확보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9조	금융기관 예탁, 재정자금 예탁, 유가증권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수익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금융기관 예입, 재정자금 예탁, 유가증권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수익
임금채권 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준용	같음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	대통령령에 위임	-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금융기관 예탁, 증권 매매, 대출, 재정자금 예탁 등	자산별 운용비율 등 대통령령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0.12. 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국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연금·보험성 회계·기금을 제외하거나, 예탁 시 해당 설치 법률에 따른 필수 의결·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제11조제2항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과 같이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정 원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총괄계정 예수금의 조달 규모와 향후 상환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8-1. 청년계정

가. 현 황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는 7개 부처, 22개 사업, 총 13조 3,296억 원이 편성되었다. 분야는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문화및관광, 일반·지방행정 등 4개 분야이며 프로그램은 '청년종합지원'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사회복지	주택	청년월세지원(국토부)	231,859
		보편형 매입임대(융자)(국토부)	238,000
		보편형 매입임대출자(국토부)	306,000
		보편형 전세임대(융자)(국토부)	900,000
		청년 지원 주택(국토부)	1,400,000
	고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노동부)	901,182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노동부)	379,301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노동부)	825,477
	아동·보육	출산지원금 지원(복지부)	698,111
아동기본수당 지급(복지부)		2,927,243	
	성평등·청소년·가족	혼인지원금(성평등부)	166,28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창업및벤처	창업사업화지원(중기부)	954,2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중기부)	291,936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중기부)	99,552
		중소기업 재기지원(중기부)	139,813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	792,527
		K-Art 청년 창작자 지원(문체부)	39,500
일반· 지방행정	재정·금융	주택금융 이차보전(금융위)	59,660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금융위)	28,616
		청년미래적금(금융위)	1,701,089
		우리아이자립펀드(금융위)	146,531
		청년기회자금(금융위)	102,676
합 계(22개)			13,329,555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나. 분석의견

(1) 국토교통부

보편형 매입임대(4233-310(용자), 330(출자)), 보편형 전세임대(4233-320), 청년 지원 주택(4233-340), 청년월세 지원(4233-300) 사업은 각각 공적 주택 공급 및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2027년 계획안에서는 총 3조 759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보편형 매입·전세임대, 청년지원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편형 매입임대(용자)	-	-	-	238,000	238,000	순증
보편형 매입임대출자	-	-	-	306,000	306,000	순증
보편형전세임대(용자)	-	-	-	900,000	900,000	순증
청년 지원 주택	-	-	-	1,400,000	1,400,000	순증
청년월세 지원	139,135	129,953	129,953	231,859	101,906	78.4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보편형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은 그 사업 성격상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서 지속·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온 전세임대(용자), 다가구매입임대(용자) 등의 사업과 대상·방식·집행체계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신규 투자성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주거복지 사업의 청년 특화형 확장에 가깝다는 점에서 재원 편성 기금 및 계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격 관점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신설된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보편형 매입임대의 경우 50%만이 청년에게 우선배정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부 청년 대상 사업은 아니며, 반대로 주택도시기금 내 주거지원 관련 사업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량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 수혜 대상이 청년인지에 따른 구분도 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방식별 사업 분류]

유형	사업명	성격	재원
매입임대	다가구매입임대	계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매입임대	신규	미래대응기금
	청년 지원 주택	신규	미래대응기금
전세임대	전세임대	계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전세임대	신규	미래대응기금
건설임대	통합공공임대	계속	주택도시기금
	보편형 건설임대	신규	주택도시기금

자료: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특히 이러한 편성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재원에 관한 한 주택도시기금을 원칙적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형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지원주택은 그 실질이 공공주택의 매입·임차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상정하는 전형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주택공급이라는 주된 목적을 가진 사업을, 공급물량의 일부를 청년에 우선 지원하는 등으로 청년 지원적 성격을 확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 집행의 효율성, 체계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

(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4231-300)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9,011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일자리창출지원, 1043-301)으로 편성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이관한 것이며, 2026년도 편성 규모는 추경 기준 9,251억 2,600만원이다.

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만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2025년 이후 매년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 등에 맞추어 신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제도의 연속성 측면과 기존 참여자들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집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²⁾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사업(4231-320)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793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청년 취업 특화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234-300)³⁾ 사업 중 청년 유형을 분리하여 미래대응기금에 신규 편성한 것이다.

동 사업은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경험 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 청년이 확대되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유인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시에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동 제도 운영 시에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4231-310)은 ① 수시, 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을 지원하고(K-청년 뉴딜 일경험), ② 구직 단념청년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청년도전성장지원), ③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진입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8,254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

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청년 유형 분리로 동 사업은 전년대비 3,150억 2,200만원(31.1%) 감액된 6,978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되었다.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업(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에 편성되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동 사업은 K-청년 뉴딜 일경험 지원 사업의 맞춤형지원형 프로그램,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집행시 고립·은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구직단념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과 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프로그램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⁵⁾

(3) 보건복지부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4235-310)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조 9,27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아동수당 지원(2539-300) 사업으로 편성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으로, 2026년 본예산(2조 4,821억 6,900만원) 대비 4,450억 7,400만원(17.9%) 증가하였으며, 기존 아동수당 급여 2조 7,421억 2,500만원과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신규 아동기본수당 급여 1,834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동 사업은 지급액과 지급방법(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이 현행 「아동수당법」과 달라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규모 의무지출 성격의 급여를 신설 기금으로 이관하는 만큼 기금운용계획 변경 특례(30%)에 따른 국회 재정통제 범위와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간 책임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생시점(2027년 7월 1일)과 거주지역에 따라 장기간 서로 다른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데 따른 형평성을 점검하고, 신규 수급아동 누적과 기존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국비 소요가 2027년 2조 9,272억원에서 2030년 5조 3,61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만큼 출산·양육 관련 급여 전체를 포괄한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⁶⁾

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참고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4235-300)은 출생아동 가구의 생애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6,981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첫만남이용권 지원(2533-306)으로 지원하던 급여를 포함하여, 2027년부터 출산·양육지원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이며, 상반기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2,685억 1,000만원과 하반기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4,296억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의 지급액·지급방식을 변경하고 출생시점과 거주지역에 따라 급여체계를 차등화하면서 지방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편이므로, 시행에 필요한 법률개정과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 급여 차등의 합리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⁷⁾

(4) 성평등가족부

혼인지원금(4235-300)은 혼인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혼인지원금 지급 및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662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혼인지원금은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혼인한 부부에게 생애 1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가 2026년 일몰됨에 따라, 혼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에서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국내 거주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 부부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혼인세액공제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수혜대상 확대 효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고, 혼인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이를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대상·지원 규모 및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외 혼인신고자 유보액 관리, 홍보·안내, 시스템 구축·연계 및 지자체 집행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⁸⁾

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참고

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성평등가족위원회)」 참고

(5)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4236-300)은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이용 경험 축적으로 청년을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7,925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7년부터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비수도권 지원에 더하여, 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실적의 특정 장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기초예술 분야의 관람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및 본인인증 시스템 강화 및 할인 보전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⁹⁾

(6)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경연·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4232-300)의 내역사업으로, 2026년 제1회 추경으로 신설되었으며 2027년도 계획안에는 전년도 수정계획 대비 2,861억 4,000만원 증액된 4,41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2026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이다.

동 사업은 2026년 1·2차 프로젝트가 2027년 1월에야 마무리되어 참여자의 창업 전환율 등 성과를 분석하기 전에 지원인원을 연간 2만명으로 확대하였으므로, 2027년에는 2026년 참여자에 대한 후속지원(604억 1,600만원)에 집중하고, 신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을 산출하여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¹⁰⁾

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

1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이면서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기업 200개사에 사업화자금·창업인프라·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4232-300)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의 60%를 청년기업으로 하는 지역기반 트랙을 운영하는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 창업지원 사업과 지원대상·내용이 겹치므로, 별도 신규 편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

(7)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사업(4234-300)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층 적금 납입액에 비례하는 정부기여금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전년 추경 대비 9,564억 6,400만원(128.4%) 증액된 1조 7,01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6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되어 2026년 6월 출시되었으며,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다.

동 사업은 2027년부터 가입 및 정부기여금 지급의 소득요건을 폐지할 계획인데, 이 경우 지원이 고소득 청년층으로 분산되고 우대금리를 자체 부담하는 취급 금융기관의 부담도 늘어나므로 소득요건 폐지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 8월 가입유지 인원이 136.9만명으로 기여금 지급 목표 인원(32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 2회 각 2주로 제한된 가입기간을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상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¹²⁾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4234-310)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만 18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에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매칭하기 위한 재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465억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출생시점(2026년 9월)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여 출생일 차이만으로 만기 시 가용자산이 최대 약 7,157만원 차이 나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1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1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로 가입대상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펀드 운용 주체와 방식, 소득 변동 시 매칭비율 적용, 중도해지 및 만기 시 처리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협의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¹³⁾

청년기회자금 사업(4234-320)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의 금융권 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이자면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026억 7,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 중 미취업자를 분리한 것으로, 대출한도(1,200만원→2,000만원)와 최장 거치기간(4년→8년)을 늘리고 취업준비자에 대한 이자면제를 추가하였다.

동 사업은 기존 햇살론유스를 이용한 미취업 청년이 청년기회자금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확대된 대출한도분에 대해서는 청년기회자금 조건을 적용하는 등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대상과 거치기간이 다른 햇살론유스의 순대위변제율을 근거로 사업손실률(20%)을 추산하였으므로, 보증 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 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¹⁴⁾

주택금융 이차보전 사업(4233-300)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7년 1월 출시할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4억원 이하 비아파트)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96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공급대상을 비아파트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 일반보금자리론 청년층 공급액 12조원 중 11.6조원(96.7%)이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 주거로 옮겨 가는 징검다리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요건(4억원 이하) 외에 주택유형까지 제한하는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텔은 「주택법」

1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1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상 주택이 아니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⁵⁾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 사업(4233-310)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7년 1월 출시할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의 우대금리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86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이차보전율을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나, 수도권의 평균 월세와 전세보증금이 비수도권보다 높고 전월세 지원은 자산증식 효과도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 차등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⁶⁾

1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1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8-2. 성장동력계정

가. 현 황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는 9개 부처, 52개 사업, 총 14조 1,638억원이 편성되었다. 분야는 통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일반·지방행정, 과학기술,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이며 프로그램은 ‘성장동력확충’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통신	정보통신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과기정통부)	800,000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과기정통부)	4,275,185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과기정통부)	250,000
		피지컬AI핵심기술개발(R&D)(과기정통부)	55,000
		피지컬AI 트레이닝 센터 구축(과기정통부)	40,000
		AIDC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고도화(R&D)(과기정통부)	115,500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과기정통부)	33,51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기후부)	596,860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기후부)	65,782
		송전단 ESS 구축 지원 사업(기후부)	572,409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기후부)	2,679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사업(기후부)	2,376
		한국전력공사 출자(기후부)	500,000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사업(기후부)	19,600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기후부)	350,000
	산업혁신지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산업부)	119,329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산업부)	115,800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폴스택시팩토리및제조 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산업부)	120,000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 개발(R&D)(산업부)	290,000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과기정통부)	87,800
		AIDC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고도화(R&D)(산업부)	39,00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산업부)	25,74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실증(중기부)
	창업및벤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중기부)	20,000
		안보전문투자기관(중기부)	3,820
일반· 지방행정	재정·금융	국민성장펀드(금융위)	1,000,000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재경부)	150,000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재경부)	20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위)	500,000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재경부)	500,000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과기정통부)	79,853
		뉴스페이스투자지원(우주청)	100,000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우주청)	154,959
		차세대발사체개발(R&D)(우주청)	291,567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우주청)	93,716
		소형달착륙선개발(R&D)(우주청)	106,300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과기정통부)	511,291
		핵융합핵심기술개발및실증기반 (인프라)구축사업(R&D)(과기정통부)	160,100
		i-SMR 상용화 기술개발사업(R&D)(과기정통부)	18,000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 (양자컴퓨팅)(R&D)(과기정통부)	71,671
		Net-zero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R&D)(과기정통부)	13,421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화 및 성과환류형 투자생태계 구축사업(R&D)(과기정통부)	25,000
		화합물반도체R&D상생패 구축(투자형R&D)(과기정통부)	40,000
		과학기술 연구지원	공공연구성과 기반 투자형 R&D 지원(R&D)(과기정통부)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CO.AX 프로젝트(국토부)	58,500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국토부)	841,509
	항공·공항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국토부)	35,000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기후부)	8,091
		호남권 반도체산업 용수공급 사업(기후부)	119,640
		수자원공사출자(기후부)	250,000
	지역및도시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국토부)	100,000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복지부)	37,708
합 계(52개)			14,163,775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 최상위급 독자 AI모델(프론티어 AI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4331-310)**의 내역사업인 GPU서버확충 및 통합운영환경구축에 3조 8,500억원,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4331-300)**의 동일 명칭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7,250억원 증가한 7,500억원을 출자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같은 목적의 인재 지원 예산(생성AI 프론티어 인재, 250억원, 2602-387)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출연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민간 재원 분담, 수익구조, 투자위험 관리 및 회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GPU·데이터·인력 출자가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인 설립 및 출자 완료 시까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추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정된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

심 의 시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GPU 운영 및 배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배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¹⁾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4331-320)은 국산 AI 모델 기반의 AI 서비스를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 안에 2,500억원(GPU 사용료 1,700억원, 서비스 개발·관리 300억원, 특화서비스 개발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사전검토 및 적정 사업설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2026년 8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GPU B200 512장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는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된다.²⁾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4333-300)은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인근에 테스트베드와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국산 AIDC 솔루션의 실증·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878억원이, **AIDC 소부장·클라우드 기술개발·고도화(R&D) 사업(4333-300)**은 AIDC 핵심 장비와 클라우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155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다. 또한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4331-310)에는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한 196억원이 편성되었다.

AIDC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도 검토 완료 전에 착수할 계획이므로,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DC 소부장·클라우드 R&D의 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형데이터센터

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고

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고

지원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후속조치의 취지를 반영하여 AIDC 클러스터 사업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 4331-300)은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14억 2,200만원 증가한 798억 5,300만원이, **피지컬AI 트레이닝 센터 구축 사업(4332-310)**은 피지컬 AI 개발에 필요한 범용 행동데이터 생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슈퍼컴퓨터 6호기는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전체 자원의 30% 내외를 배분할 계획이나, 5호기의 관련 프로그램 실사용 비중은 4.35%에 그쳤고 수요조사 응답률도 1.1%에 불과하므로 전체 GPU 공급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피지컬AI 트레이닝 센터는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구축 이후 운영방식과 수익구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8대 분야별 피지컬 AI 실증 프로젝트, 데이터팩토리 등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로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화 및 성과환류형 투자생태계 구축사업(R&D, 4336-300)**에 250억원, **화합물반도체R&D상생패 구축(R&D, 4336-310)**에 400억원, **공공연구성과 기반 투자형 R&D 지원(R&D, 4336-300)**에 242억 5,500만원을 2027년도 계획안에 신규 편성하였다.

투자형 R&D는 지분 취득과 회수·재투자를 전제로 하나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출연 방식의 R&D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성장동력계정 재원에 투자형 R&D에서 발생한 수익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

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

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

(2) 산업통상부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4332-300)은 공급망 단위 제조AI 솔루션 실증, 제조AX 설비 구축 보조, 지역기반 현장인력 양성, AI로봇(휴머노이드) 공공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192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채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심사 시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단위의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범용 장비가 포함된 설비 지원품목을 구체화하며, 휴머노이드 200대 보급(300억원)은 국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의 개발·실증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급이 연계 되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⁶⁾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사업(4332-310)은 제조 데이터·피지컬 AI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팩토리 구축,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15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편성되었으며, 제조데이터 레퍼런스맵이 완성되지 않아 데이터 수집 소요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별도의 고성능 GPU 연산 인프라(2027~2029년 1,060억원)를 구축하기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하는 국가 공동 GPU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⁷⁾

(3)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출자 사업(4337-350)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1~2025년 누적적자 36.1조원에 대한 이자(약 1조원)의 50% 수준인 5,000억원이 2027년도 계획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2028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에서 2배로 환원되면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22.9조원의 사채를 상환해야 하나, 동

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출자로 늘어나는 한도는 1조원에 그치므로 전력망 확충 투자계획을 고려한 사채발행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⁸⁾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4337-370)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부담하던 전기요금 복지할인 일부와 특례할인 전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성 사업으로 성장동력계정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으며, 매년 안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을 세수 변동에 따라 재원이 달라지는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657억 8,200만원, 4337-310),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196억원, 4337-360),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26억 7,900만원, 4337-330) 및 ESS 설치 보급(23억 7,600만원, 4337-340)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던 전력망 확충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총 904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지중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되지 않아 입지선정 특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지원기준도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설비 지정과 시행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⁰⁾

호남권 반도체산업 용수공급 사업(4337-310)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신설, 댐 증축, 하수 재이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196억 4,000만원이, 수자원공사 출자 사업(4337-320)은 메가프로젝트 용수공급 인프라 투자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2,50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다.

호남권 용수공급 사업은 기본구상 등 사전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일부 내내역사

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1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업(덕남분기 관로 신설, 동북댐 증축)에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2032년까지 국고 1조 4,541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장기 SOC 사업인 만큼 재원 안정성 확보 방안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 출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최소 지원비율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2,829억원보다 329억원 적게 편성되었으므로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지원비율에 관한 산업통상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¹¹⁾

(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4334-300)은 레벨4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운행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증차량 구매·개조, 운영, 보험, 정밀도로 지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일반회계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사업(4633-320)을 이관·개편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전년 대비 7,797억 4,900만원(1,262.5%) 증액된 8,41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실증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실증지역을 5~6개 도시로 확대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교통·물류 분야로 분류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차량 공급과 실증도시 공모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통·물류 분야의 대규모 사업도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¹²⁾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4334-300)은 2028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구입(선급금 150억원)과 항로·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향후 3년간 최소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되었고, 공공형·교통형·지역연계형·관광형 사업모델별 수요와 편익, 민간과 공공의 비용분담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³⁾

1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

1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CO.AX 프로젝트 사업(4332-300)은 건설산업의 피지컬 AI·로봇 실검증 비용과 인증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8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실증랩 구축 없이 현장 실검증비만 먼저 편성되었으므로 기존 실증랩 데이터가 있거나 작업범위가 명확한 공정을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027년 상반기 예정) 이전에 인건비 12개월분 등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¹⁴⁾

(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4332-300)은 공정·공장 단위 피지컬 AI 실증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자율제조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72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실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조AI 데이터가 업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공고와 협약에 제조AI 24 플랫폼 등록을 명시하고, 산업통상부의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¹⁵⁾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4336-300)은 민간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에 민간 선투자자와 1:1로 R&D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투자형 R&D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투자형 R&D와 그 수익의 재원 귀속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¹⁶⁾

안보전문투자기관 사업(4335-300)은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신안보 전용 펀드를 운용할 투자기관(한국벤처투자 자회사)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IT시스템 구축 보조금 32억 2,000만원과 펀드 출자금 6억원 등 38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1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1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1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동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년 10월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출자 예산은 법안 심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K방산수출펀드 등 유사 펀드와 투자대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¹⁷⁾

(6)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사업(4335-330)은 부실·부실우려 부동산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펀드 조성재원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금융위원회는 3년간 재정 1.5조원과 민간 1.5조원 이상으로 3조원 이상 규모의 2차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60%(1.8조원)를 주거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본 PF 투자 유치에 실패한, 즉 민간이 사업성을 낮게 평가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펀드 자금 공급만으로는 사업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 선정 시 소재 지역, 주택 유형, 주거 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자 이후에도 용적률 상향이나 주택유형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을 통한 재구조화를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¹⁸⁾

(7) 재정경제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사업(4335-340)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전략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정부는 초기 자본금을 공공기관 지분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으로 제시하였으나 2027년 실제 투자 가능한 현금성 재원은 약 1조원 수준이므로 그 산정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차입과 채권 발행을 재원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부 축적이라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과 출자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의

1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1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역할을 구분하며, 대규모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동의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⁹⁾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4335-310)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편성되어 오던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1,500억원(중동 재건 관련 금융지원 750억원,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250억원, 전략수출금융기금 보증 프로그램 500억원)이 편성되었다.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은 새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출자금이 전략산업 용도로 구분 관리되지도 않으므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기준과 실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적정 편성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동 관련 금융지원 소요 산정에 적용한 기준환율(1,490원/달러)이 최근 환율 수준보다 높으므로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²⁰⁾

(8) 우주항공청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4334-300)은 우주항공 분야 기업 투자를 위해 모태펀드 방식으로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026년과 같은 1,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에 이관 편성되었다.

2026년 정부출자금 1,000억원 중 결성이 완료된 펀드에 배정된 정부출자금은 375억원(37.5%)에 그치고 투자 집행도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펀드 결성 현황과 투자 집행 실적, 향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¹⁾

1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고

20)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고

2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

8-3. 지방계정

가. 현 황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는 6개 부처, 13개 사업, 총 10조 2,662억원이 편성되었다.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농림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문화및관광 등 4개 분야이며 프로그램은 ‘지방주도성장’이다. 이 외에 여유자금 운용(비통화금융기관 예치)으로 5조원이 편성되어 지방계정 총계는 15조 2,662억원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행안부)	1,500,500
		지방미래성장지원금(행안부)	3,500,000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행안부)	650,000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출연금(행안부)	2,850,000
	재정·금융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재경부)	100,000
	일반행정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행안부)	89,725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	1,165,765
		스마트팜필먼트센터 구축(농식품부)	5,500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농식품부)	20,810
	수산·어촌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해수부)	5,50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해수부)	45,162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공공기관 2차 선도이전 지원(국토부)	181,004
문화및관광	관광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문체부)	152,281
합 계(13개)			10,266,24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1) 행정안전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 사업(4432-300)은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하나로 복합화한 시설의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조 5,00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정부는 2년간 3조원을 투입하여 180 개소(신축형 1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개소당 신축형은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형은 최대 100억원을 정액 지원한다.

동 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다부처 연계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등 기존 거점시설 사업과 기능이 중첩되나 기존 시설의 분포·이용실적과 유희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고, 개별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총량과 지역 배분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부처별로 조성된 기존 거점시설의 위치·기능·이용실적과 유희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후 투자규모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공동 이용, 기능 통합·재배치를 우선 검토하여 이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을 지원하도록 사업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¹⁾

(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431-300)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026년 추경 대비 8,610억 6,000만원 증액된 1조 1,657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에는 대상 지역이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129.4만명)로 늘어나고 국비 지원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동 사업은 2026~2027년 정책효과를 검증한 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므로, 사업 종료연도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농어촌 군(69개)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조군 비교 등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부담하는 총액이 약 2.07배

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참고

늘어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과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²⁾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 사업(4431-310)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센터를 공공·민간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금 50억원 등 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1,000억원이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출자하고 공공 지분은 49% 이하로 할 계획이다.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을 신규 추진하기에 앞서, 스마트폴필먼트센터와 스마트 APC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두 시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이 주도하는 SP가 이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사전동의 사항과 정관·협약상 공적 책임성 확보 방안을 공모 이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³⁾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사업(4431-320)은 AI 농기계 공유, AI 농업로봇 현장 확산, 방역 AX 통합 패키지 등 농식품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실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08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사업기간은 2027~2030년, 총사업비는 5,562억원이다.

농업·방역 분야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축적·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⁴⁾

(3) 해양수산부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4431-300)은 산지 공급망부터 가공·유통·물류까지 통합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도 계획안에 SPC 설립 출연금 49억원 등 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정부가 한국 어촌어항공단에 출연하고 공단이 이를 SPC에 출자하는 구조이다.

동 사업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등 기존 사업과 목적·기능이 겹치므로 기존 시설의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 유통사업과 SPC 출자가 「어촌·어항법」상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출연금이 SPC 지분으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투자회수금이 국고로 귀속되도록 계약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4431-310)은 노후 근해어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정부출자 60%, 금융기관 대출 30%, 선사 자부담 10%)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451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수요 추정은 전체 근해어선 소유자의 16.6%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선사의 자금조달·담보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수요를 재추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 계획안은 펀드 조성액 대부분이 실제 사업 집행이 아닌 기말 잔액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자금이 펀드에 유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자금 유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⁶⁾

(4) 문화체육관광부

비수도권 호텔건설 용자지원 사업(4432-300의 내역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의 지역 대전환과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 소재 호텔 건설의 금융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관광사업 용자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⁷⁾

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

(5)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4432-300)은 기능개혁 대상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특별수당(500억원)과 총인건비 인센티브(500억원)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통폐합에 따른 처우 보전인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상인지 목적이 불분명하고 어느 경우에도 지방계정 편성과 정합성이 낮으므로, 목적을 명확히 하고 편성 계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 대상·단가·배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이 먼저 편성되었고, 공공기관 인건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것은 총인건비 관리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지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고

8-4. 교육·인재계정

가. 현 황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6개 부처, 42개 사업, 총 7조 6,029억원이 편성되었다. 분야는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통신,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환경 등 6개 분야이며 프로그램은 ‘교육·인재지원’이다. 이 외에 여유자금 운용(비통화금융기관 예치)으로 2조 5,000억원이 편성되어 교육·인재계정 총계는 10조 1,029억원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교육	고등교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기후부)	35,000
		창업중심대학(중기부)	108,300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과기정통부)	68,578
		대통령 과학장학금(과기정통부)	21,317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91,801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교육부)	19,960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교육부)	465,000
		대학창업교육기반고도화(교육부)	47,000
		지역균형발전장학금(교육부)	328,015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교육부)	691,00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교육부)	551,885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교육부)	646,895
		거점국립대 혁신사업(교육부)	794,350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교육부)	600,000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교육부)	30,000
	영유아및초중등교육	교사대아동비율 개선(교육부)	526,908
	평생·직업교육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교육부)	207,000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교육부)	23,500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353,279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세부사업명(소관부처)	2027년 계획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R&D)(과기정통부)	20,562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155,54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147,121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162,20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22,798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 운영비 지원(R&D)(과기정통부)	25,529
		국가과학자 지원사업(과기정통부)	14,910
	과학기술인력및문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과기정통부)	83,043
		양자정보과학 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30,097
		과학영재양성(R&D)(과기정통부)	22,951
		인재활용확산지원(R&D)(과기정통부)	108,831
	과학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AI혁신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48,300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지원사업(R&D)(과기정통부)	10,000
사회복지	고용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노동부)	406,50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노동부)	54,258
통신	정보통신	AI중심대학(과기정통부)	184,960
		생성AI선도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29,200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사업(R&D)(과기정통부)	54,000
		디지털선도기술 핵심인재양성(R&D)(과기정통부)	59,529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중기부)	28,350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산업부)	201,898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인력양성(R&D)(기후부)	71,457
환경	자원순환및환경경제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기후부)	51,108
합 계(42개)			7,602,937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1) 교육부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4535-340)은 비수도권 국립대학(21교)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블록펀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6,9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핵심인 다년도 적립과 대학 자체기금 조성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8년 이후의 투자 규모와 대학별 배분기준을 포함한 중기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적립금 운용과 사업 종료 후 잔여 재원 처리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 심사 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¹⁾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4535-380)은 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가 있는 사립대학의 첨단 연구장비와 교육·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6,000억원(약 40개교, 교당 150억원 내외)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R&D)의 기초인프라 지원 등과 지원대상·용도가 겹치므로 기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요를 확인하여 직접지원의 영역과 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대학·반도체공동연구소 등 기존 인프라와의 공동활용을 고려하여 중복 구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 심사 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²⁾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사업(4536-300)은 어린이집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지원을 이관하고 국공립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5,26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2026년 7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의 참여율이 35.5%로 가장 낮고 추가 교사 인건비의 20%와 반 운영비를 시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설된 국공립 인센티브(0세반 20만원, 1세반 10만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세반에는 교사 대아동비율 개선 지원과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가 병행되어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추가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두 제도의 지원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³⁾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사업(4535-310)은 대학·전문대학 학생의 현장실습에 실습지원비와 참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4,6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6만명이 평균 5개월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2025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인원은 31,518명이고 이수학생의 65.9%가 12주 미만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대학별 참여 수요와 실습기관 확보 현황을 점검하여 집행실적에 따라 참여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습생이 기존 근로자 대체나 단순·반복업무에 활용되지 않도록 실습 직무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습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 심사 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⁴⁾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업(4535-330)은 지역대학 학생의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2,130억 1,500만원)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1,150억원)을 확대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전년 대비 2,480억 1,500만원(310.0%) 증액된 3,280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지원 학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연간 약 7,51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등록과 중도 이탈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인재 유치 효과를 점검하고, 지방 사립대 진학 예정자의 이동만 유발하지 않도록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의 균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4535-300)은 대학(원)생의 학업·연구에 필요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동구독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9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예산이 소수 해외 AI 서비스에 집중되어 특정 플랫폼 의존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국산 AI 서비스 지원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공계열 비율과 특정 대학 사례에 근거한 지원 규모를 학생별 필요 기능·사용량에 근거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구독은 구매한 사용량을 여러 학생이 나누어 쓰므로 제공 기능과 1인당 사용 한도를 개인구독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2) 중소벤처기업부

제조AI fellow 양성사업(4532-300)은 4대 과학기술원의 제조 AX 교육을 거친 청년 AI 인재를 중소 제조기업 등과 매칭하여 인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8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 지연으로 실습교육장 구축과 교육·인턴 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⁷⁾

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참고

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고

9-1.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의 타당성 검토

가. 현 황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¹⁾」의 제정을 전제로 2027년 신설 예정인 기획예산처 소관 기금이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공익신고로 발생한 금전적 제재금이 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재원을 통합·관리하려는 것이다.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총계 기준 3,055억원으로, 포상금계정 2,946억원과 불공정행위등피해자간접구제계정(이하 ‘간접구제계정’) 110억원으로 구성되며, 기금의 지출은 주로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되었다.²⁾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수입·지출 계획 개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수입	-	3,055	3,055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	2,946	2,946	순증
계정간전입금	-	110	110	순증
지출	-	3,055	3,055	순증
신고포상금	-	2,546	2,546	순증
간접구제	-	110	110	순증
여유자금 운용 등	-	399	399	순증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의안번호 제2220978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026. 9. 1.)

2) 총지출 기준 규모는 2,659억원이고, 재원이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과 계정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총 수입 기준 수입은 0원이다.

나. 분석의견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은 기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3)은 기금 신설의 심사기준으로 ①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 ④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의 효과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금의 신설 역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인 재원조달의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은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제1호)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제3호)을 기금 신설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이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금 설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안 제2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제3호4)에서 ‘금전적 제재금’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을 정한 안 제5조5)에는 금전적 제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상금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포상금 환수금,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익신고에 따라 부과·징수된 금전적 제재금을 기금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포상금계정 재원 2,946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어,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이 요구하는 ‘특정한 자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⁶⁾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는 것은 아니며, 기금의 규모는 매년 일반회계 편성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의 포상금 재원 부족’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전적 제재금”이란 신고포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공익신고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벌금, 과료,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가산금, 부담금, 몰수금, 추징금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5조(기금의 재원) ①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6)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금전적 제재금과 기금 재원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금전적 제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는 방안은 재원 변동성과 실제 포상금 지급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신고포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금전적 제재금은 부처별, 연도별로 부과·징수 실적의 변동성이 큰 세외수입이므로, 금전적 제재금의 일부를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기보다 수납실적, 신고포상금 지급 소요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산정하였다는 설명이다.
- 또한, 향후 법률 제정 내용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입금 산정시 반영할 금전적 제재금 수납 실적의 범위, 구체적 산정 기준 및 절차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공익신고 포상금 사업의 통합 필요성과 별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할 목적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포상금 소요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변동성이 커 단일 부처의 일반회계로 편성하기보다 여러 부처의 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 위험 분산 차원에서 타당하고, 지급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만으로는 소요 예측과 변동성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 분산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우선 정비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 내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도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3조제2항⁷⁾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요건·금액·절차·중복지급 방지·환수 등 실체적 사항을 모두 개별 법률에 맡기고 있어, 해당 법안이 규율하는 것은 재원의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에 그친다.

특히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기금 결산 및 성과관리, 별도의 회계관리 등 추가적인 재정관리 절차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금관리주체와 사업 집행부처가 분리되는 데 따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이나 21개 포상금 사업의 집행은 17개 부처가 담당하므로, 재원 배분의 책임과 사업 집행·성과관리의 책임이 분리된다.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개별 집행사업의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적정

7)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징수가 수반되는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재원(財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요건·한도·금액·절차 및 중복 지급 금지·환수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포상금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지⁸⁾, 사업별 성과관리와 집행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정비·통합 필요성만으로 별도 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기보다는, ① 각 부처 소관을 유지하면서 지급기준과 절차만을 표준화하는 방안, ② 일반회계 내에서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편성·관리하는 방안 등 대안과 비교하여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접구제계정의 재원을 전액 계정간전입금(91-915) 109억 7,800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5조제2항의 간접구제계정의 재원 목록에는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없고, 포상금계정의 용도를 정한 제6조제1항에도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법률상 근거 없이 계정간 전입·전출 거래가 편성된 문제도 있다.

셋째, 기존에 분산된 신고포상금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이관할 사업과 기존 회계·기금에 존치할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성적이고 법령이나 기금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 신설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7년부터 17개 부처의 21개 신고포상금 사업을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안전한일터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일부 신고포상금 사업은 기존 기금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이고, ‘병역기피 신고포상금(병무청)’ 및 ‘군범죄신고포상금(국방부)’은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된 채 유지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①공익신고로 국가의 수입 확보에 기여한 자와 관련되어 금전적 제재와 연계되고(단순 공익신고 제외), ②행정기관의 조사·감독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공익신고가 반사회적 행위 적발의 주요 계기가 되며, ③신고 건수와 징수

8) 참고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소관 부처로서,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을 변동으로 제재금 규모와 포상 소요의 예측이 곤란한 기존 사업과 신설 신고포상금을 중심으로 이관 대상을 검토하였고, 산재기금·원자력기금처럼 별도 기금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해당 기금의 목적과 소관부처의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관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②와 ③은 법안에서 확인되지 않고 ‘중요성’, ‘예측 곤란’ 등 정성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어, 개별 사업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금전적 제재와의 연계성을 이관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제재금을 기금 재원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점은 첫째에서 지적한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 문제와도 이어진다.

물론 개별 사업의 근거 법률, 지급대상 및 포상요건 등의 차이에 따라 모든 신고포상금 사업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의 주요 설치 목적을 기존 신고포상금 사업의 통합적 관리로 제시하고 있다면, 기금 신설에 앞서 이관 대상 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기존 회계·기금에 존치하는 사업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법령이나 기금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부 사업만 이관할 경우 향후에도 유사한 신고포상금 사업이 기존 회계·기금과 신규 기금에 계속 분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 통합을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한다는 당초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9-2. 피해자간접구제 계정 신설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6조제2항¹⁾이 정한 간접구제계정의 주 용도는 ‘공익 신고활성화사업²⁾’으로,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간접구제계정에는 소비자 불공정 행위 피해구제 등 4개의 세부사업, 총 109억 7,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간접구제계정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6 계획(A)	2027 계획안(B)	증감	
			B-A	(B-A)/A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	3,110	3,110	순증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	1,500	1,500	순증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	1,270	1,270	순증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 운영	-	5,098	5,098	순증
합계	-	10,978	10,978	순증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간접구제계정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설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기존 소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공익신고를 통한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신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인데,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간접구제계정은 소비자 소송지원,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개인정보 피해회복·유출사고 대응 지원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 1) 「공익신고장려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신고활성화사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상담,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외의 사업

등 공익신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피해구제·예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비자 소송지원과 개인정보 관련 사업은 각각 「소비자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공익신고장려기금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 소비자 소송지원은 한국소비자원이 기존에도 수행해 온 사업이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구제·상담·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와의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인 피해구제사업까지 간접구제계정이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기금의 사업범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에 따른 피해의 예방·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계정의 설치목적과 지원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 신설을 계기로 기존 일반회계 사업이 단순히 기금으로 이관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기금 지원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사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 제6조제3항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이 직접 보상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신고포상금 지급과 피해자 구제는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하나의 기금으로 묶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특정한 목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9-3. 공익신고장려기금 개별 사업 분석

가. 현 황

동 기금을 통해 통합 운용하려는 포상금 관련 사업과 피해자 간접구제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1개 포상금 사업은 17개 부처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피해자 간접구제를 위한 4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업이다.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관 부처	'27 계획(B)
포상금 사업 합계		254,587
1.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재정경제부	31,300
2.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	1,100
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979
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성평등가족부	33
5.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국토교통부	4,100
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획예산처	9,900
7. 영업비밀 신고포상금	지식재산처	300
8. 담합 등 신고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	24,817
9.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금융위원회	35,100
10.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금융위원회	7,100
11.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	45,156
12.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369
13. 국세 공익 신고 포상금	국세청	58,594
1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국세청	2,837
15.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국세청	4,653
16. 관세탈루등 신고포상금	관세청	20
17. 밀수 신고포상금	관세청	17,485
18. 불공정 조달 신고포상금	조달청	1,250
19. 마약수사 신고포상금	중대범죄수사청	424
20. 매장유산 신고포상금	국가유산청	50
21.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해양경찰청	20

(단위: 백만원)

구 분	소관 부처	'27 계획(B)
피해자 간접구제 사업 합계		10,978
1.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공정거래위원회	3,110
2.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공정거래위원회	1,500
3.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70
4.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098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① 포상금 계정

재정경제부 소관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은 동법 위반행위 신고 시 몰수금·과징금 등 국고 귀속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13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실제 과징금 부과액과 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7년도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의 시행시기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도에 313억원을 집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성액을 실제 지급소요에 맞게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¹⁾

국세청 소관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사업은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각각 419억 7,500만원, 21억원 증액된 585억 9,400만원, 28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들은 제도개편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모와 지급시기, 홍보 강화 및 업무 개선에 따른 지급건수 증가 효과 등에 대한 산정근거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실제 지급요건과 집행시점을 고려하여 2027년도 소요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

1)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고

2)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고

관세청 소관 밀수 신고포상금 사업은 기존에 관세청의 밀수단속 사업 내에 포함하여 수행하다가 2027년부터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174억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는 초기 단계임에도 제도개편에 따른 실제 포상금 지급규모와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한 소요액 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2027년도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제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소요액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사업은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계획안에 93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및 절차도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하위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지급기준 및 실제 소요재원을 구체화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사업은 불법 농지 소유·전용 등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농지관리기금에서 수행되다가 2027년부터 기획예산처 소관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되어 11억원(포상금 10억원, 운영비 1억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를 반영해 2,000건(건당 5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최근(2026.10.8.) 관행적 임대차 등 경미한 위반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법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실제 행정처분 건수가 당초 추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산출근거(2,000건)를 재검토하여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⁵⁾

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고

4)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5)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신설 예정인 공익신고장려기금에 종전 일반회계 편성액(1,100만원)보다 39억 8,900만원 늘어난 4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24년 13건(2,500만원), 2025년 6건(1,000만원)에 그치고 있어 2027년 계획액과 차이가 크므로,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유형별 지급기준과 예상 지급규모를 반영해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⁶⁾

②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사업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소송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7년 계획안에 15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사업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에도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대리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2027년도 계획안에 50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중소·영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인력양성 및 유출사고 복구지원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보호역량 강화와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과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지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존 일반회계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보안지원 사업과 지원대상·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기업지원 사업은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되, 기존 사업을 통한 지원 가능성과 부처 간 역할분담을 검토하여 지원범위와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⁸⁾

6)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7)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8)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은 법률·기술·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7년도 계획안에 12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체계 등에서 유사한 지원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기능인 단말기 악성코드·스토커웨어 점검 등 기술지원도 나주 소재 단일 거점에서 전국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차별화된 지원방식을 검토하여 별도 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9)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참고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¹⁾으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제주특별자치도 등 법정배분 대상에 배분하고, 나머지 65%는 복권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후 저소득층 주거안정,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법정배분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전출금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등에는 직접사업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정배분사업의 용도에 대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에 명시되어 있고, 법정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²⁾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2027년 복권기금 재원 배분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			공익사업		
기금/사업명	'26년 계획	'27년 계획안	기금/사업명	'26년 계획	'27년 계획안
과학기술진흥기금	114,974	125,280	주택도시기금	400,000	415,000
국민체육진흥기금	94,808	103,460	보훈기금	23,062	29,719
근로복지진흥기금	60,628	65,463	양성평등기금	806,586	831,667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3,308	91,861	문화예술진흥기금	280,871	329,885
국가유산보호기금	170,646	181,863	청소년육성기금	129,012	131,796
			기후대응기금	106,893	117,304
			영화발전기금	1,300	1,300
			응급의료기금	5,635	2,300
지방자치단체지원	206,199	207,94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82	4,254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지원	197,336	199,198	입양아동 가족지원	19,358	17,886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지원	87,519	92,786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2,369	2,3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47,386	52,72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5,769	97,557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지원	80,183	84,217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2,570	-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210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5,000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350,000	444,571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37,097	4,53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창의발명교육 지원	-	561
합계	1,142,987	1,204,801	합계	2,259,814	2,430,672

주: 2026년 계획은 당초 계획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법정배분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별 배분비율에 따라 기초법정배분액을 산정한 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와 자금소요 등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가감조정하고 결산정산액 및 추가배분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평가

90%와 자금소요평가 10%를 합산하여 기관별 종합순위를 산정하고, 평가결과 상·하위 각 4개 기관에 순위에 따라 각각 5%, 10%, 15%, 20%의 가감조정률을 적용하고 있다.³⁾

2027년도 성과평가 순위별 법정배분금 산정내역을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초법정배분액 1,504억 2,500만원에서 270억 7,600만원,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64억 2,000만원에서 247억 7,0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151억 9,7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15억 2,700만원이 증액 조정되는 등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기관별 배분 규모에 반영되고 있다.

[2027년도 복권기금 법정배분금 산정내역(기관별 종합순위 기준)]

구분	기초법정 배분액(A)	가감조정(B=b1+b2)		추가배분· 가산(C)	결산정산액 (D)	2027년 배분계획액 (E=A+B+C+D)	기초배분 대비 증감 (E-A)
		성과평가 반영액(b1)	자금소요 등 기타 조정액(b2)				
중진기금	75,983	15,197	-		681	91,861	15,878
보훈공단	76,844	11,527	-	3,700	715	92,786	15,942
산림자금	69,887	6,989	-	6,687	655	84,217	14,330
국가유산	170,783	7,685	-	2,000	1,394	181,863	11,080
근복지금	63,479	-	-	1,488	496	65,463	1,984
모금회	51,237	-	-	1,100	387	52,725	1,488
지자체	206,420	△8,257	-	8,100	1,685	207,948	1,528
체육기금	123,981	△11,158	△13,638	3,500	775	103,460	△20,521
제주도	206,420	△24,770	-	15,936	1,613	199,198	△7,222
과진기금	150,425	△27,076	△3,008	4,000	940	125,280	△25,145

자료: 기획예산처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법정배분기관의 성과평가 점수는 개별 법정배분사업의 평가결과와 기관평가 가점을 종합하여 산정하고, 자금소요평가와 함께 기관별 법정배분액 조정에 활용한다.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는 집행 25점, 성과 50점, 환류 25점으로 구성되며, 성과목표 달성도가 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주요 평가내용	배점
집행	예산집행률, 계획 대비 집행 및 예산절감 노력	25점
성과	공익적 가치, 성과지표·목표치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50점
환류	사업추진·점검·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환류	25점
가·감점	복권기금 홍보실적, 법령·지침 위반 여부	+4점/△4점

자료: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한편 정부는 현행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관별 재정여건·사업수요 및 성과를 재원배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35%에서 '35% 범위 내'로 변경하고, 기관별 배분비율 조정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편, 2031년부터는 일부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고정 배분비율을 폐지하고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권 관련 제도개편 추진 내역]

구분	현행	개편방향	주요 내용
법정배분 총량	복권수익금의 35%	35% 범위 내	재원배분 경직성 완화
성과평가 조정폭	기관별 배분비율 ±20%	최대 ±40%	성과와 재원배분 간 연계 강화
법정배분 개편	별도 규정 없음	일몰제 도입	관행적·고정적 지원 방지

주: 제도개편을 위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8.19. 정부안)」이 소관위 심사 중임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복권위원회는 법정배분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재원배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항목별 배점 및 가·감점 기준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정배분제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가 기관별 법정배분액을 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기관 및 사업 간 실질적인 성과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기관 단위의 성과평가를 거쳐 실제 법정배분액 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목표의 설정과 각 평가요소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법정배분사업 101개 중 79개 사업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에서도 전체 129개 사업 중 116개 사업이 우수등급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

복권위원회는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관리 개선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도가 향상되었기에 높은 성과목표 달성도가 반드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치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과거 실적과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주요 결과]

구분	전체 사업	법정배분사업	주요 내용
종합평가 대상	129개	101개	법정배분 101개, 공익 28개
종합평가 우수	96개	79개	우수등급 비중이 높음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	116개	-	대부분 세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100% 수준

주: 성과목표 달성도 등급별 사업 수는 성과평가보고서에서 전체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음
 자료: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성과평가에 포함되는 개별 가·감점 항목이 실제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성과평가는 복권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 및 홍보효과에 최대 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에는 최대 4점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사례를 보면 한 법정배분사업은 홍보실적으로 3.6점의 가점을 받은 반면, 불용액 반납 미준수 및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두 건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0.8점이 감점되었다. 전체 평가에서도 법령·지침 위반에 따른 감점은 33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반납기한 미준수가 가장 빈번한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주요 가·감점 항목 비교]

구분	평가내용	최대 배점	실제 적용 사례
가점	복권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효과	+4점	+2.4점, +3.2점, +3.6점 등 높은 점수 적용
감점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	△4점	불용액 반납 미준수 △0.4점 불용액 반납·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2건 △0.8점 결산명세서·실적보고서·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3건 △1.2점

자료: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물론 복권기금의 지원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복권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집행·정산 의무를 준수하는 것 역시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홍보실적에 대한 가점과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이 각각 평가결과에 미치는 수준이 해당 항목의 중요성과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점점은 기관별 평가점수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2025년도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 4개 기관의 평가점수는 지방자치단체 84.75점, 국민체육진흥기금 84.50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4.02점, 과학기술진흥기금 83.96점으로 7위와 10위 간 점수 차이가 0.79점이었다.

[2025년 기관별 종합순위 및 2027년 성과평가 반영액]

(단위: 점, 백만원)

순위	기관	평가점수	기초법정배분액	성과평가 반영액
7위	지방자치단체지원	84.75	206,420	△8,257
8위	국민체육진흥기금	84.50	123,981	△11,158
9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84.02	206,420	△24,770
10위	과학기술진흥기금	83.96	150,425	△27,076

주: 성과평가 반영액은 자금소요 등에 따른 기타 조정액, 추가배분 및 결산정산액과 구분된 금액

자료: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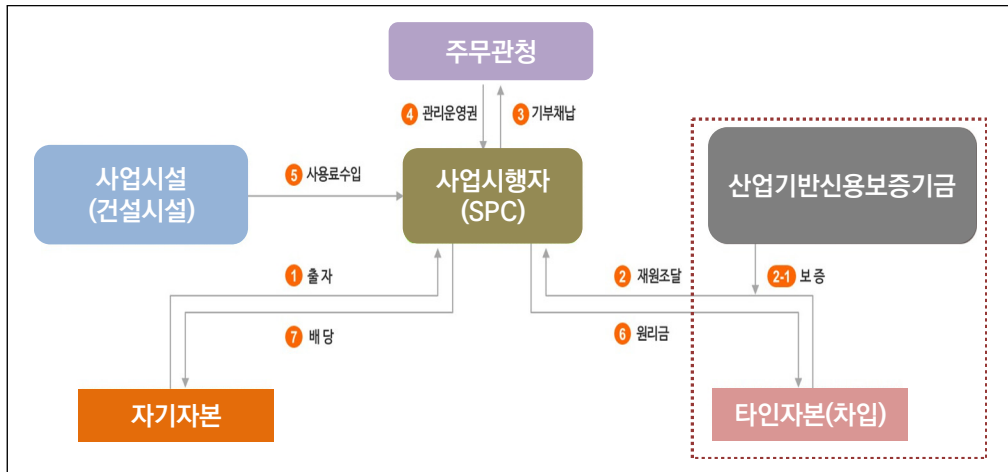
기관별 배분액은 평가점수 자체가 아니라 종합순위에 따라 차등 조정되는 구조이므로, 기관 간 점수 차이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배분액 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위를 기준으로 재원을 차등 배분하는 제도에서는 근소한 점수 차이도 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점수 차이가 기관의 최종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평가요소가 기관 간 점수 차이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성과목표 이외의 평가항목이나 가·감점이 기관 간 점수 차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홍보실적에 대한 가점과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 등 개별 평가요소가 사업성과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과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수준을 점검하고, 홍보실적에 대한 가점과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 등 개별 평가요소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금이다.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1994년 설치 이후 2026년 8월까지 총 440건의 사업에 대하여 46조원의 보증을 제공하였다.

[산업기반신용보증 사업구조]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①도로·철도·항만·하수도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유치원·학교·도서관·과학관·복합문화시설·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공공청사·보훈시설·방재시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시설²⁾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동일 사업에 대해 최대 2조원³⁾이며 보상자금 선 투입제도에 따른 보증은 최대 3,000억원으로 별도 운용하고 있다. 보증료율은 상품에 따라 0.05~1.5%로 일반 보증료율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은 자금조달 방식 및 주체, 자금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분]

자금 조달 방식 및 주체	산업기반대출보증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민간선투자대출보증	계속비 예산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하고, 향후 지급받을 연부액 담보 조달 자금에 대한 보증
	사회기반시설 채권보증	사업시행자가 법 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산업기반유동화 회사보증	유동화전문회사가 법 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자금 용도	시설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주무관청으로부터 법, 시행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조달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
	리파이낸싱보증	기존사업을 인수하거나 저금리로 재조달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브릿지 파이낸싱보증	토지보상비 부족예산을 선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정상화지원보증	부실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부실기업 또는 부실사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
	투자위험 분담형보증	BTO-rs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험분담금을 지급받기 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

자료: 신용보증기금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3) 2024년 12월부터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였다.

4) 2026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은 0.5~3.0%(중소기업 이외 기업 3.5%)

11-1. 맞춤형컨설팅 사업 민자 종합지원센터 신설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맞춤형컨설팅 사업¹⁾은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및 수정 계획 4억 900만원 대비 21억 200만원 증액된 2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맞춤형컨설팅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맞춤형컨설팅	277	409	409	2,511	2,102	513.9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나. 분석의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맞춤형컨설팅 사업 확대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기금은 맞춤형 컨설팅 사업 확대 및 지방정부 민자사업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2027년 세종시에 별도의 민자사업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나 컨설팅의 주요 수요처 및 사업 내용, 기존 보증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 민자사업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2027년 맞춤형컨설팅 사업 확대를 위해 '세종 민자사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세종 민자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발굴·사업화·금융지원 등 확대되는 민자사업 복합지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32-304

2027년 맞춤형컨설팅 사업 관련 계획안은 25억 1,100만원으로 2026년 4억 9백만원 대비 21억 2백만원(513.9%) 증액되었는데 이 중 세종 민자센터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자산취득비 8억 3,000만원, 임차료 2억 6,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원, 용역비 1천만원 등 총 13억 400만원이다.

[세종 민자사업 종합지원센터 신설 관련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맞춤형 컨설팅 사업비	금액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264(22백만*12월) • 시설장비유지비: 200 • 일반용역비: 10 * 설계 용역 등 1회*10백만 	474
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자산취득: 770(냉난방 기계, 전기 통신장비 등) • 무형자산취득: 60(임차보증금) 	830
합 계		1,304

자료: 기획예산처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사업구조, 사업자가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대형 건설업체와 금융투자자 등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기금의 실질적 컨설팅 수요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와 관련된 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맞춤형컨설팅 사업의 주요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등 민간투자 경험이 부족한 주무관청의 민자제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및 민자카라반 확대 운영, 민자사업 실무 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동 기금은 재정사업 민자전환 컨설팅²⁾,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제도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및 정책기관 협업’ 등을 위해 세종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춤형컨설팅 사업의 주요 수요처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인 상황에서, 세종센터를 신설하려면 필요성, 예상 수요, 기대 효과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나 동 기금

2) 환경부, 법무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투자수요가 있는 민자전환 가능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은 사전조사 없이 세종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앞서 필요성, 컨설팅 수요,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맞춤형 컨설팅의 주요 사업인 신규사업 발굴, 운영관리, 사업 재구조화 등의 경우 동 기금이 수행하는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어 기존 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춤형컨설팅이 초기 단계이고 민자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컨설팅과 민자사업의 보증연계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컨설팅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단계	컨설팅 주요 내용	컨설팅 대상
사업 발굴	사업발굴 및 민간제안서 접수	• 신유형 사업 아이디어 컨설팅 • 민자사업 추진사례 연수	사업시행자
		• 민자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 민자사업 신사업 발굴 및 제안	주무관청
	제안서 검토 및 대상사업 지정	• 대상 사업 맞춤형 보증 및 상품 • 금융구조, 자금조달 방안	사업시행자
		• 제안 사업 유사 사례분석	주무관청
	제안공고	• 제안공고 내용 세부조건 조율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체결	• 실시협약 내용 세부조건 조율	
	금융약정 체결	• 금융약정 내용 세부조건 조율	
착공 개시	공사착공 및 준공	• 유사 사업 사례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컨설팅	사업시행자
	운영개시	• 정기적인 사업 현황 점검	사업시행자
사업 운영	사업 재구조화 (리파이낸싱)	• 사업재구조화 방안 모색 • 금융비용 경감 방안 모색 • 재정지원 부담 경감 방안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부실(사고) 발생 및 정상화	• 정상화(자구책) 방안 모색 • 이해관계자별 중재 컨설팅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둘째, 동 기금은 맞춤형컨설팅 사업 확대와 함께 컨설팅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및 본업인 민자사업 보증과의 연계 강화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기금은 2025년 이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며 별도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³⁾를 마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컨설팅 건수를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있다.

동 기금이 맞춤형컨설팅 수행실적 및 계획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살펴보면, 2025년에 102건, 2026년 8월까지 93건의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연간 150건의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에도 2026년 계획 대비 20% 증가한 180건의 맞춤형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컨설팅 수행 건수가 확대되며 컨설팅 관련 인력도 2025년 1개 팀 3명에서 2026년 2개 팀 7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7년에는 2개 팀 8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맞춤형컨설팅 수행 실적 및 계획]

(단위: 건)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2025년		47	55	102
2026년	~8월 실적	70	23	93
	계획	150		150
2027년 계획		180		180

자료: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지표로 컨설팅 건수는 사업초기 또는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정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맞춤형컨설팅 사업 규모 및 관련 조직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지표를 추가로 검토하고 사업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건수’,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동 기금도 종합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맞춤형컨설팅은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며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공급’ 실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과 동 기금의 본업인 보증실적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컨설팅 수행 실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 실제 동 기금의 보증으로 이어진 실적은 2026년 9월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동 기금은 민자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금융조달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나 컨설팅은 202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보증실적과 연계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보증으로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컨설팅이 민자사업 착수로 이어진 실적은 우정사업본부 ‘노후우체국 개축’,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 정보관 건설’ 등 4건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년 맞춤형컨설팅이 시작된 이후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및 담당 조직 등이 확대되고 동 기금 내 컨설팅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컨설팅 사업과 보증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신규 민자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화와 함께 동 기금의 신규 보증 수요를 창출하는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2.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추진 필요 등

가. 현 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자기자본을 투자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어 2026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BTL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2027년에도 신규로 개설되는 특별인프라펀드¹⁾에 2,000억원을 출자해 민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도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특별인프라펀드	100,000	-	-	200,000	200,000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추진할 특별인프라펀드는 산업은행 자체 출자금 2,000억원을 포함해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SPC)’ 출자지분이다. 또한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규정되며 투자 방식은 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내로 준공 시 투자금 및 적정수준의 출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²⁾

한편 2026년에도 신규사업으로 5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동 기금이 각각 500억원,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에 출자해 BTL 민자사업의 자기자본 마련뿐 아니라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32-460

2) 민간투자사업의 최소 자기자본은 BTO의 경우 건설기간 15%, 운영기간 10%이며 BTL 사업의 경우 5%로 규정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원 추가 출자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기금은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³⁾ 1,000억원, 2026년 BTL특별인프라펀드 500억원에 이어 2027년 신규 특별인프라펀드에 2,000억원 추가 출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등과 달리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확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제3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 공고 제2026-15호)을 특별인프라펀드 투자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제시한 법률상 근거 조항은 구체적 내용 없이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포괄위임규정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의 입법례와 같이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보증과 연계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3) 동 기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민자사업의 자기자본 조달을 지원하였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기금의 운용)

-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품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보증연계 투자 성격의 특별인프라펀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동 기금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한 데 이어, 동일한 방식으로 2026년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원, 2027년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원 등 총 3,500억원 규모의 출자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3년간 매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살펴보면 동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업무가 민자사업의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⁴⁾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이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출자를 위해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와 제23조의4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와 제28조의4에서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p>■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p> <p>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2의2. 보증연계투자</p> <p>■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4(보증연계투자)</p> <p>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6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p>■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p>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3의2. 보증연계투자</p> <p>■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p> <p>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와 관련된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04. 7월 발표)”과 (구)재정경제부의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05. 1월 발표)”에 따라 2005년 2월부터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 국회와 감사원이 보증연계투자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1년 7월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을 폐지하면서 신규 보증연계투자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2013년 3월과 2012년 6

월에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보증연계투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 이후 보증연계투자를 재개하였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관련 국회와 감사원의 과거 지적사항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감사원 감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상 신보 및 기보의 업무는 보증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 - 기금 설립목적과 무관하며, 보증업무위축 등의 우려가 있음 ■ '09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손실을 방지하고 부실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개선이 필요 ■ '10년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위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와 기보에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폐지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2.9)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채무를 보증한 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의 경우 리스크 중복 등의 위험이 있어 보증연계투자의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증기업에 대한 주식 인수 등 직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동 기금도 특별인프라펀드 및 BTL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을 통해 출자, 대출 등 투자업무와 함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사례와 같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 기금의 '특별인프라펀드,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문제'에 대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2032-460)' 관련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내용]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보강 필요 등	관련 사업명	총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의	기획 예산처
	지적 사항	-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례와 달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포괄적 위임규정을 근거로 특별인프라펀드·BTL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고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사례와 같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출자 등의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기획예산처는 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 적정성, 경제적 효과 및 리스크 집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자료: 대한민국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8),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정리하면, 동 기금의 특별인프라펀드,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국회 논의 및 입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동 기금이 해당 펀드에 출자할 필요성, 적정성, 경제적 효과 및 위험 집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인프라펀드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가 신설된 이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기금은 2025년 5월 최초로 대위변제가 발생하였고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민자사업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차입보증과 함께 특별인프라펀드를 통해 자기자본까지 출자할 경우 리스크가 집중되어 문제가 발생 시 중복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는 유동성이 장기적으로 제약되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설립 이래 2024년 말까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고 보증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학교·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므로, 건설 및 관리·운영이 쉽게 중단되거나 중간에 폐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최근 민자사업 여건이 악화되며 2025년 최초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동 기금이 2011년 보증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채권은행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25년 5월에 18.2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실제 대위변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보증부실 리스크가 부각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실제 2022년 2월 덕송내 각고속화도로(보증금액 1,968억원), 2024년 1월 인제스피디움 사업(보증금액 768억원) 등이 건설사 워크아웃, 운영수익 악화에 따른 원리금 연체 등으로 부실화되며 보증 이행범위 확대, 보증료 조정 등의 리스크를 부담하여 정상화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동 기금의 보증사업 구조는 부실 가능성이 낮을 뿐 현 고금리·고물가 등 사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위변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개요]

사업명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	주무관청	전라남도
운영기간	'12. 7월 ~ '23. 12월[기준 '30. 7월]	채권은행	광주은행
보증기간	'11. 10월 ~ '28. 7월	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자사업의 특성상 보증 건수가 많지 않고 보증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별인프라펀드를 통해 동일 사업에 출자지원까지 진행할 경우 사고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신용위험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⁵⁾ 실제 동 기금은 2021~2025년 5년간 총 77건, 연평균 15.4건의 민자사업에 대해 보증을 진행하였으며, 보증 1건당 평균 보증금액은 1,796억원으로 보증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5) 다만 동 기금은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등 사업검증 과정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로 인한 위험 구조]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증연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진행한 다수의 기업에 소규모로 투자해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점에서, 소수의 민간투자사업 (연평균 15건 내외)에 대규모 보증과 출자가 집중되는 등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합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연간 기술력이 우수한 스타트업 등 70~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기업당 6~10억원 수준으로 출자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보증규모 대비 보증연계 출자 비율을 살펴보면, 2025년 실적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0.10%(출자규모 666억원/보증액 64.0조원), 기술보증기금은 0.24%(출자규모 743억원/보증액 31.3조원) 수준이나 동 기금은 3.13%(출자규모 1,000억원/보증액 3.2조원)로 13~31배 높은 수준이다.⁶⁾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실적]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021	- 창업기업 91개 업체 446억원 - 일반기업 19개 업체 146억원	- 기술창업 중소기업 50개 업체 394억원

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보증기업에 한정하여 투자하고, 주로 1년 만기 구조로 보증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출자는 보증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보증도 15년 이상 장기 구조로 공급되는 차이가 있다.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022	- 창업기업 99개 업체 381억원 - 일반기업 13개 업체 146억원 - 프로젝트투자 4건 30억원	- 기술창업 중소기업 57개 업체 493억원
2023	- 창업기업 86개 업체 414억원 - 일반기업 24개 업체 215억원 - 프로젝트투자 12건 35억원	- 기술창업 벤처기업 97개 업체 981억원
2024	- 창업기업 57개 업체 423억원 - 일반기업 21개 업체 205억원 - 프로젝트투자 14건 30억원	- 기술창업 벤처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92개 업체 741억원
2025	- 창업기업 ¹⁾ 73개 업체 601억원 - 일반기업 4개 업체 35억원 - 프로젝트투자 14건 30억원	- 기술창업 벤처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104개 업체 743억원
2026.7월	- 창업기업 36개 업체 331억원 - 일반기업 4개 업체 55억원 - 프로젝트투자 4건 14억원	- 기술창업 벤처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41개 업체 274억원

주: 1)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부터 유관기관과 기준 일치를 위해 설립 후 7년 이내 투자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분류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로 인한 위험 집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투자 규모와 관련된 적정한도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다.⁷⁾

따라서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근거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적정한도 설정 등 위험 집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펀드투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가 신설된 이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7)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금은 특별인프라펀드의 투자로 인한 위험 집중 완화를 위해 사업별 한도를 각 사업 출자지분의 1/3(총사업비의 5%) 이내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과 2027년 추진하고 있는 3,000억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⁹⁾ 출자와 2026년 500억원 규모의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는 동 기금의 활용가능한 중기가용자산을 감소시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인프라펀드 3천억원,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원은 동 기금이 산은인프라자산운용에 출자하는 자금으로 투자존속기간이 10~27년에 달하고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재무적으로 활용이 어렵고 실제 대위변제 등에 사용할 수 없어 동 기금의 재무리스크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동 기금의 활용가능한 중기가용자산을 살펴보면, 동 기금의 2025년, 2026년 중기가용자산은 특별인프라펀드 1,000억원, BTL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분 500억원이 차감되며 각각 1조 246억원, 1조 442억원으로 나타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021~2026년 중기가용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자산	부채	기본재산	3년 이내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	잔존만기 3년 이상 부채	중기 가용자산
2021년	9,335	701	8,635	-	-	8,635
2022년	9,574	785	8,789	-	-	8,789
2023년	10,415	858	9,557	-	-	9,557
2024년	11,139	867	10,272	-	-	10,272
2025년	12,126	880	11,246	1,000*	-	10,246
2026년	13,016	1,074	11,942	1,500*	-	10,442

주: *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1,000억원), 2026년 BTL 특별인프라펀드(500억원)

1. 2026년은 계획 기준

2. 중기가용자산 = 자산 - 부채 - 3년 이내 유동화가 불가능한 자산 + 잔존만기 3년이상 부채

3. 기본재산= 자산-부채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정리하면, 동 기금은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에 따른 리스크 중복 위험, 활용가능한 중기가용자산 축소, 2025년 5월 최초의 대위변제 발생 등을 고려하여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등 유동성의 제약이 큰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9) 실제 동 기금은 2025년 1,000억원의 자금을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산업은행 자체 1,000억원 출자금을 포함해 총 2,000억원 규모를 조성하였고,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SPC)' 출자지분이다. 또한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규정되며 투자 방식은 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내로 준공 시 투자금 및 적정수준의 출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가데이터처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1억 2,2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5억 7,100만원(15.5%) 감소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41	3,693	3,693	3,122	△571	△15.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17억 1,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9억 5,300만원(7.7%) 감소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38,191	456,670	456,670	421,717	△34,953	△7.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편,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1,679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6,700만원(4.8%) 증가하였다.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건비 합계	153,801	160,169	167,936	7,767	4.8
본부 인건비	59,214	63,330	66,513	3,183	5.0
경인청 인건비	21,536	22,048	23,736	1,688	7.7
동북청 인건비	18,227	18,775	19,956	1,181	6.3
호남청 인건비	21,122	21,692	22,266	574	2.6
동남청 인건비	14,387	14,376	15,783	1,407	9.8
충청청 인건비	15,165	15,580	14,975	△605	△3.9
국가데이터연구원 인건비	4,150	4,368	4,707	339	7.8

주: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6년도 정원(A)	2027년도 정원(B)	증감	
			B-A	(B-A)/A
국가데이터처	2,184	2,187	3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1.0%) 증가하였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53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5.0%) 증가하였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3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0만원(0.5%) 감소하였다.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기본경비 합계	17,375	18,411	18,600	189	1.0
총액인건비 대상	4,878	5,093	5,346	253	5.0
총액인건비 비대상	12,497	13,318	13,254	△64	△0.5

주: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5년 주기 경제총조사 완료에 따라 경제총조사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반면(2026년 659억원 → 2027년 13억원), ② 경제총조사 실시로 인해 2026년에는 미실시했던 경제통계 3종 재실시 및 경제데이터 프로파일링 개선·개발 등을 반영한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2026년 33억원 → 2027년 236억원), ③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등 공공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국가데이터통합및활용기반구축(정보화) 사업(2026년 82억원 → 2027년 165억원), ④ 5년주기의 표본개편 병행조사를 반영한 국가통계표본설계및지원 사업(2026년 8억원 → 2027년 54억원) 등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들 수 있다.

2027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통계작성 방식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AI 활용 신규지표 개발 사업 2건을 반영하고 동시 진행할 계획이나, 선행 사업의 개발과 활용 단계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성과가 후행 사업의 각 단계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정보보호의식 강화, 사회 구조적 변화로 통계조사의 부재·불응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강화, 온라인 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 응답 편의성을 개선하고, 응답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표본에 특화된 홍보전략 및 조사방법론 개선방안이 부족한바, 응답률이 낮은 특정 통계조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통계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보보안 관련 신뢰성을 높여 불응률 상승 시에도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계방법론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구조통계작성, 국가데이터 통합 및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등이 있다.

① 경제구조통계작성 사업은 경제총조사 실시로 미 실시한 전국사업체조사 등 경제통계 3종 재 실시 예산과 경제데이터 프로파일링 개선·개발 예산이 반영되었고, ② 국가데이터 통합 및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사업은 AI가 공식통계DB에 기반하여 환각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예산이 증액되었다. 또한 ③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사업은 5년주기의 국가통계 표본개편을 위한 병행조사 추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④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사업은 동형암호 기반의 데이터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액이 증액되었다.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경제구조통계작성	3,278	3,278	23,632	20,354	620.9
	국가데이터 통합 및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8,151	8,151	16,480	8,329	102.2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770	770	5,350	4,580	594.8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정보화)	4,153	4,153	5,418	1,265	30.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1

AI 활용하는 지표 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 검토 필요

가. 현 황

「AI 기반 국가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은 「국가데이터 통합 및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사업1)」의 내역사업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식통계 기반의 신뢰 가능한 AI 활용체계 및 공공 특화형 AI 분석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 제1회 추경에서는 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7년 예산안에서는 38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2026년 대비 30억 9,900만원 증액되었다.

[2027년도 AI 기반 국가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2027년도 AI 기반 국가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31	707	707	3,806	3,099	438.3
AI 활용 물가 상시 모니터링 지표 개발	-	-	-	250	250	순증
AI 활용 인구밀집도 지표 개발	-	-	-	412	41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2027년도 AI 기반 국가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내역사업 내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지표 개발사업으로 「AI 활용 물가 상시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AI 활용 인구밀집도 지표 개발」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기존 통계 작성방식에 AI를 접목하여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2032-311

나. 분석의견

국가데이터처는 2027년 예산안에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지표 개발사업 ‘AI 활용 물가 상시 모니터링 지표 개발’, ‘AI 활용 인구밀집도 지표 개발’ 2건을 반영하고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나 AI를 활용한 지표 개발 및 활용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하나의 AI 지표를 개발한 이후 이를 운용·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다음 AI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과거 유사한 개발 사례가 없으나 2027년 신규 사업으로 2건의 AI 활용 지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은 단순히 기존 통계자료에 AI 분석기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실제 활용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유용한 지표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학습데이터의 적정성, 변수의 선정, 모형의 정확성 및 안정성, 예측오차와 편향의 관리, 모형 재학습 주기, 결측치·이상치 처리, 결과의 해석 및 설명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모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성과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실제 활용 및 운용 과정에서 업무에 일정 기간 적용하면서 지표의 정확성·안정성·설명가능성 및 활용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모형과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제시한 ‘AI 활용 지표 개발’사업의 2026년 방법론 및 기초연구, 2027년 대상 품목 확대 및 모델·시스템 고도화 등 연차별 계획은 일정한 단계적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AI 활용 지표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바 자체적으로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스템 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은 두 사업 모두 2027년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AI 활용 지표 개발 사업별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AI 활용 물가 상시 모니터링 지표	AI 활용 인구밀집도 지표
2026년	주요 품목에 대한 지표 작성 및 시스템 개발(자체 검토)	자체 기초연구(국가통계연구원)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
2027년	모니터링 품목 확대 및 모델·시스템 고도화 추진(시스템 구축 및 연구용역)	심화연구 및 시스템 개발(시스템 구축 및 연구용역)
예산 사항	(‘26) 0 → (‘27) 250백만원 (+250백만원, 순증)	(‘26) 0 → (‘27) 412백만원 (+412백만원, 순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 지표 개발사업의 단계화는 개별 사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거 추진사례가 없는 신규사업임에도 사업 간에 선행사업의 실제 활용성과와 시행착오를 후행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사업 간 단계적 추진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AI 활용 지표 개발 등 과거 유사한 사업 추진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2건의 신규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①AI 지표의 실제 활용성과가 검증되기 전에 신규사업의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②개발된 AI 지표의 정책적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시스템 구축비를 집행하게 되어 향후 재설계 또는 기능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③ AI 지표 개발사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기준과 운영방식을 정립할 기회가 분산되어, 기관에 도움이 되는 공통기준을 충분히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AI 지표 개발 사업 동시 추진의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시행착오 반복	AI 지표의 실제 활용성과가 검증되기 전에 신규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경우 시행착오가 반복될 가능성
추가 비용 발생	개발된 AI 지표의 정책적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시스템 구축비를 집행할 경우, 향후 재설계 또는 기능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AI 지표 검증기준과 운영방식을 정립 기회 분산	AI 지표 개발사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기준과 운영방식을 정립할 기회가 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데이터처는 AI 활용 지표를 개발하는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유로 두 사업의 목적과 최종 산출물이 서로 다르고 데이터·모델·결과물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순차 추진할 경우 후행사업의 착수가 지연되어 업무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사업의 최종 산출물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별개로, AI 지표를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기술적·관리적 문제와 그 해결 경험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도 2026년 추진하는 내부 검토시 물가 모니터링 사업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기술적 이슈와 과제 수행 노하우를 인구밀집도 지표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두 사업이 결과물 측면에서는 독립적이더라도 AI 기반 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개선사항은 후속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AI 지표사업의 추진 시, 선행사업의 개발과 활용 단계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성과가 후행사업의 각 단계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7년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2건의 AI 활용 지표 개발 사업은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정과 추진방식을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¹⁾은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활용도 높은 국가기본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악화되는 통계조사 환경개선을 위한 응답자 유대강화, 선진 조사 기법 도입 등을 통해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경제통계작성, 인구주택총조사 등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7년 동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안은 1,420억 1,900만원으로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1,882억 9,100만원 대비 462억 7,200만원 감소하였다.

[2027년도 국가통계생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제통계작성	21,733	3,889	3,889	24,233	20,344	523.1
사회농어업통계작성	20,205	21,129	21,129	16,800	△4,329	△20.5
경제총조사	1,177	65,924	65,924	1,277	△64,647	△98.1
인구주택총조사	105,585	5,595	5,595	2,473	△3,122	△55.8
농림어업총조사	46,932	3,354	3,354	1,343	△2,011	△60.0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705	841	841	175	△666	△79.2
통계조사지원	83,532	87,559	87,559	95,718	8,159	9.3
합 계	279,869	188,291	188,291	142,019	△46,272	△24.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월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3000-3031 등

나. 분석의견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조사의 부재·불응률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계조사의 품질관리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사 부재·불응률이 높은 조사 표본에 대해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통계조사의 부재·불응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진행되는 사회조사 부재·불응률은 2021년 27.5%에서 2026년 32.3%로 4.8%p 상승하였으며,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2021년 8.6%에서 2026년 12.5%로 상승하였다. 분기조사인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불응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2021년 30.6%에서 2025년 45.9%로 상승하여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1년 10.9%에서 2025년 13.9%로 상승하였다. 특히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통합) 등의 경우 조사대상의 30% 이상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통계조사 부재·불응률 추이]

주기	통계명	조사표본수	'21	'22	'23	'24	'25	'26
매년	사회조사	27,552	27.5	29.3	30.5	30.5	30.8	32.3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1,289	9.7	11.7	11.5	11.0	7.7	8.1
매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7,327	8.6	11.2	9.6	10.8	10.8	12.5
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33,221	15.5	27.5	16.0	15.0	15.8	-
분기	가계동향조사(통합)	9,922¹⁾	30.6	34.8	42.1	44.4	45.1	45.9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34,720²⁾	10.9	12.1	12.7	13.4	13.5	13.9

주: 1) 1~6월까지의 평균이며, 대체표본까지 포함한 수치

2) 1~8월까지의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정보보호 의식 강화, 맞벌이·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원룸·고시텔 증가 등이 통계조사의 접근성을 낮추고 부재·불응률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사회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23.9%에서 2025년 36.6%로 상승하였으며, 맞벌이 가구 비율이 동기간 44.6%에서 48.2%²⁾로,

외국인 비율이 1.2%에서 4.1%로 상승하였다. 또한 주택이외 거처 비율³⁾도 동기간 2.1%에서 6.1%로 약 3배 상승하였다.

[사회구조 변화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2025
1인 가구 비율	23.9	27.2	31.7	36.6
맞벌이 가구 비율	44.6*	44.2	45	48.6
외국인 비율	1.2	2.7	3.3	4.1
공동주택 ¹⁾ 비율	71.0	74.5	77.8	80.0
주택이외 거처 ²⁾ 비율	2.1	3.8	5.6	6.1

주: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기숙·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일터 일부 공간, 조립식건물 등
 * 2011년 조사 결과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조사접근성이 낮은 특정 지역·계층·가구형태 등에 대한 조사 표본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고 통계조사의 응답률 및 접근성이 높은 표본 위주로 통계조사가 진행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수행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의 대표성 및 정확성이 중요하며, 통계조사에 있어 높은 불응률은 조사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조사결과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가계, 농어촌, 제조·서비스업 경기여건, 저출산, 1인 가구, 취약 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시 통계조사의 불응률 상승은 추가비용 발생, 관련 정책 개발 오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2024년 자료 기준
 3) 기숙·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일터 일부 공간, 조립식건물 등

[통계조사 부재·불응률 상승의 영향]

통계조사 부재·불응률 상승의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통계 조사 신뢰성 하락	부재·불응률 상승은 전체 모집단의 다양한 의견이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만들어(통계품질 하락),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하락
대표성 하락 및 편향 발생	특정 집단(예: 고소득층, 1인 가구, 맞벌이, 젊은 세대)에서 부재·불응률이 높을 경우 소수의 응답자가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실제 상황과 다른 왜곡된 통계 결과가 산출 가능



부정적 영향	
구분	주요 내용
정책 결정 오류	국가정책 수립, 예산 배정, 복지정책 및 고용대책 등 다양한 행정·정책 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식 통계의 신뢰성이 약화될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진단 및 정책 타깃팅 등에 오류 발생 가능성
행정적 비효율	예산 배분이나 정책 효과 분석 등에 오류 발생 가능성
추가비용 발생	무응답자를 임의 추정(대체)하거나, 조사 답례품 지급 증가, 조사 방식 고도화 등 추가 비용이 발생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주요 조사별로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조사답례품 등 응답 인센티브 강화, 온라인 조사,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 응답 편의성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응답문화 개선 캠페인, 조사대상에 대한 재방문, 조사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며 불응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작성방법 고도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관련 사업 및 예산 반영]

구분		상세 내용
통계조사 전반	사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답례품 지급) 통계 응답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답례품 지급 단가 인상 및 횟수 증가 등 지원 노력 지속 ※ 통계조사 답례품 : 22,344백만원('26년) → 20,077백만원('27년) - (조사방식의 다양화) 응답자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조사방식 (인터넷, 이메일, CAPI 등)을 도입하여 국민 응답 편의성 제고 ※ 스마트조사 : 647백만원('26년) → 609백만원('27년) - (응답문화 개선 캠페인) KTX, 아파트, 라디오뿐 아니라 택시, 대형마트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통계 조사응답 의무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응답문화 개선 : 534백만원('26년) → 684백만원('27년)
	사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응·부재 등의 사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표본대체, 무응답 가중값 조정 등 통계적 무응답 처리기법 활용
경제구조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온라인조사 적극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업 1사업체(多사업체 제외)를 대상으로 응답 부담이 큰 사업 실적 조사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특성항목 위주로 온라인 조사를 추진하여 사업체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
경제동향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활동동향 홍보자료 발간 ('26)6백만원 → ('27)6백만원 - 서비스업동향조사 홍보용 리플렛 ('26)13.5백만원 → ('27)13.5백만원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리플렛 ('26)2.5백만원 → ('27)2.5백만원
사회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홍보) 조사현장 홍보 협조 체계를 구축, 대국민 홍보채널 다원화, 조사별 인식 제고 노력 등 추진 : 296백만원 - (응답 편의성) 응답자 선호도에 따라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등), 외국어조사표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조사방식 적용 - (불응설득) 비협조 대상처에 대해 재방문 등 추가적인 설득을 통해 불응 최소화 노력, 불응사유, 유형, 대상의 특성 파악을 통한 불응 설득 등 - (조사담당자 역량강화) AI에 기반한 조사지침, 응답자 설득기법, 다양한 조사 사례를 포함한 영상을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조사원 역량 강화 - (행정자료 활용)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농어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담당자 역량강화) 조사지침, 조사 사례집, 응답자 설득기법 등에 기반 방문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조사원 역량 강화 - (행정 자료 활용)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한 행정 활용 확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러나 통계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반적인 응답률 제고 방안뿐 아니라 응답률이 낮은 조사 표본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특정 표본에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의 응답률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불응설득, 응답편의성 강화,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의 방안도 존재하지만 조사답례품 등 응답 인센티브 강화, 홍보강화 등 주로 일반적인 대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응답률이 낮은 조사대상이나 표본에 특화된 홍보 전략 및 조사방법론 개선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통계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한 홍보 및 응답 인센티브 강화뿐 아니라 응답률이 낮은 특정 통계조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통계조사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해킹, 피싱 등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계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정보보안과 관련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조사별 불응률 상승 시에도 통계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계방법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국세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세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650억 7,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59억 5,200만원($\Delta 14.8\%$) 감소하였다.

[2027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09,352	311,025	311,025	265,073	$\Delta 45,952$	$\Delta 14.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813억 4,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01억 8,300만원(7.4%) 증가하였다.

[2027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001,115	2,097,794	2,311,158	2,481,341	170,183	7.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한편, 국세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체 세출예산안 2조 4,813억원의 71.0%인 1조 7,620억원이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②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49억원 증액된 7,193억원으로 체납관리단 운영,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등 사업이 증액되었다.

2027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산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전제로 구축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의 심의 및 시행 일정에 맞추어 2027년도 구축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ISP 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규모 확대에 따라 실태확인 이후 유형분류 및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수행체계와 관계기관 연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징수 관련 법적·정보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 실시한 국세외수입 체납자 유형분류 결과에 대한 검증·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편 효과에 대한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존 신고분과 개편 이후 신규 신고분의 예상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2027년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으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에 필요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세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1개)	체납관리단 운영	214,765
합 계		214,765

자료: 국세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청사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있다.

①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관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국세통신망 유지·관리 등 국세행정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등 신규 내역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

②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사업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정평가 예상 물량 증가 소요 등이 반영되었다.

③ 청사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관서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요원 배치 인원 확대 소요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세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3개)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53,930	53,930	119,244	65,314	121.1
	상속·증여세 과세지원	6,714	6,714	10,214	3,500	52.1
	청사 안전관리 지원	3,390	3,390	4,840	1,450	42.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국세청

가. 현 황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¹⁾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세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2,853	3,070	3,070	3,070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세청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오피스텔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상업용 건물은 서울·광역시·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소재한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인 건물 등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3-301

나. 분석의견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산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²⁾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가·업무시설·공장·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 부과 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지방세 부과 시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는 등 기관별로 별도의 가격산정체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국세청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 과세기관의 별도 가격 고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³⁾

현재 국세청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계속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 기존 가격산정체계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평가체계 개편내용 및 현황]

구분	법 개정에 따른 가격공시체계	현행 운영 체계
산정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국세청 기준시가, 행안부·지자체 시가 표준액 등
산정 주체	국토교통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세청·행안부 등 과세기관별로 각각 산정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개별 과세법령
산정 방식	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체계 마련	국세·지방세 등 각 과세목적에 따른 별도 기준·산식 적용
가격 활용	공시가격을 국세·지방세 등의 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 가능	국세에는 기준시가, 지방세에는 시가 표준액 등 각각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성을 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한 업무이관을 요구한 이후,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과세 불형평성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조속한 업무이관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관련 주요 국회 지적]

구분	주요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기준시가 산정·고시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이관 완료 후에는 국세청장이 해당 업무를 잠정 수행하도록 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할 것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 등과 중복적으로 수행되어 행정 비효율성과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2025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조속한 이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업무 이관에 신중한 입장이며, 국회의 지적에 따른 업무이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내역]

연번	일자	협의내용
1	2024.05.	공시제도 도입시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2	2025.02.	국토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기 및 진행 현황 협의
3	2025.07.	공시가격 일원화 관련 진행 상황 확인 및 협의 요청
4	2025.09.	일원화 필요성 및 국회 지적사항 의견 전달
5	2026.04.	재정사업평가 결과(사업개선)에 따른 실무협의
6	2026.08.	업무이관을 위한 예산안 검토 요청 및 실무협의

자료: 국세청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가격산정의 기술적 어려움과 재정소요,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용도와 입지 등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크고 유사한 가격권역의 범위가 좁아, 표준부동산을 활용한 가격산정 방식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추계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국비 1,126억원과 지방비 211억원 등 총 1,337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 간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부담이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세청이 현재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 상업·업무용 집합부동산을 중심으로 가격공시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및 관계기관 간 가격산정방식의 조정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여 최소 3~5년 이상의 단계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관련 의견]

구분	주요 의견
가격산정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성이 크고 가격권역이 협소하여 가격산정에 어려움
재정소요	공시제도 도입에 국비 1,126억원, 지방비 211억원 등 총 1,337억원 소요 추정
과세 영향	기존 가격산정체계와의 차이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변동 및 과세 형평성 문제 우려
기관 협의	제도 도입 대상·조사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및 법령 정비 필요
단계적 도입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대상인 상업·업무용 집합부동산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 검토
추진 일정	연구·시범사업 등을 포함하여 최소 3~5년 이상의 단계적 준비기간 필요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사정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즉시 전면 시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6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국회에서도 관계기관 간 업무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현행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격산정의 기술적 어려움, 재정소요 및 과세영향 등은 향후 제도 도입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시범사업의 추진범위와 일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도입 대상을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대상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가격산정 자료 및 업무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① 가격공시제도의 우선 도입 대상 및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이관 범위, ② 가격산정방식의 조정과 세부담 영향 분석, ③ 기존 조사자료 및 인력·예산의 활용 가능성, ④ 연구·시범사업 및 관련 법령 정비 일정 등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계적 도입 과정에서 기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격산정 업무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사업¹⁾의 내역사업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사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하여 각각 체납징수하던 관리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56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정보화)	48,786	53,930	53,930	119,244	65,314	121.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	-	-	25,649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 조세 이외의 국가수입으로, 종전에는 약 300개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관서가 소관 국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를 각각 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징수절차와 관리방식, 관련 시스템이 상이하고 체납정보도 분산되어 있어 체납자의 재산·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체납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미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약 21조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36.1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기관 중심의 체납관리 방식만으로는 증가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세 징수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체납관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7133-500

[최근 5개년 국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조원)

연 도	징수결정액 ¹⁾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체납 + 납기미도래 ²⁾)
2021	248.6	226.3	1.3	21.0(14.1 + 6.9)
2022	245.5	221.5	1.2	22.8(14.5 + 8.3)
2023	254.7	229.6	1.1	24.0(15.9 + 8.1)
2024	284.3	257.8	1.4	25.1(16.2 + 8.9)
2025	301.9	263.4	2.4	36.1 ³⁾

주: 1) 징수결정액은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 + 전년도 미수납액

2) 납기미도래는 12월말 기준으로 고지는 되었지만, 납기가 도래하지 않고 수납도 되지 않은 금액

3) 2025년도 미수납액 구분은 2026년 9월말 기준 확정되지 않음

자료: 국세청

그동안 일부 국세외수입은 개별 법률에 따라 체납 이후의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있는 일부 국세외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국세외수입의 체납정보를 연계하고 체납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세외수입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에 분산된 체납징수 기능을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²⁾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경찰청·공정위·성평등부·산림청 등 37개 부처와 체납정보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실태를 확인하고 있다.³⁾

아울러 2026년 2월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⁴⁾이 발의되어 향후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청, 2026.1.12.

3)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2026.8.12.

4)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6.2.26.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나. 분석의견

첫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되, 법률안의 심의 및 시행 일정에 따라 2027년도 구축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정보 등을 활용하여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6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면서 기관별 체납정보의 통합관리, 관계기관 정보연계, 통합 조회·납부 및 통합징수 업무프로세스 등을 설계하고 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정보화전략계획(ISP) 개요]

구분	개요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추진시기) 2026년 8월 ISP 수립 - (소요예산) 4억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관리체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체납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DB 구축방안 마련 ② 관계기관 정보연계체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체계 마련 - dBrain에 기관별 정보제공 및 데이터 연계방식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연계 ③ 통합 조회·납부 기능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의 전 부처 국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일괄 조회·납부하는 통합관리 기능 마련 ④ 통합징수 업무프로세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준 체납징수·체납처분 업무설계 - 과세·금융정보 이용, 제2차·물적 납부의무, 체납처분 및 간접제재 등 관련 기능 검토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 중 통합징수 업무프로세스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동 법률안은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이용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2차·물적 납부의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징수권한이나 적용대상·절차 등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에서 구현하여야 할 기능과 업무프로세스도 조정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주요 기능과 법률안의 관계]

주요 기능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체납정보 통합·연계	안 제41~43조	부처별 체납정보 제공 및 국세정보통신망과의 연계·통합
통합 조회·납부	안 제42·44·46조	체납액 조회, 전자납부 및 통합 수납처리
과세·금융정보 활용	안 제13·14조	체납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납부의무 확대	안 제10~12조	제2차 납부의무 및 물적 납부의무 부과·관리
체납처분·간접제재	안 제16~21조, 제24~40조	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명단공개, 압류·매각 등

자료: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총 256억 4,900만원으로, 응용SW 개발비 140억 7,300만원, 통합DB 구축비 3억 7,100만원, 인프라 구축비 100억 500만원 및 기타 경비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시스템 개발 전체를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전제로 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안
응용 SW 개발	통합징수 업무 관련 응용 프로그램 개발	14,073
통합 DB 구축	국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 DB 구축	371
인프라 구축	H/W·S/W 등 시스템 기반 구축	10,005
기타	조달수수료 및 감리비 등	1,200
합계		25,649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관련 법률안의 심의 및 시행 일정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은 202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ISP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사업 예산 4억원을 전용하였는데,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ISP 수립을 위하여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2억 6,000만원, 임차료 2,000만원 및 관리용역비 1억원과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의 임차료 2,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ISP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2.1.)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공공요금 [210-02]	△260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일반연구비 [260-01]
전용 (2026.2.1.)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임차료 [210-07]	△20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일반연구비 [260-01]
전용 (2026.2.1.)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관리용역비 [210-15]	△100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일반연구비 [260-01]
전용 (2026.2.1.)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7133-501)	임차료 [210-07]	△20	국세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일반연구비 [260-01]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ISP를 기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국세청은 2025년에도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⁶⁾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엔티스 고도화 ISP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 예산 5억 2,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2025년과 2026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ISP를 기존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해 추진한 유사 사례가 연속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신규 정보화사업의 ISP 등 사전기획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해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소요예산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6) 코드: 일반회계 7133-501

가. 현 황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¹⁾은 체납자의 체납원인, 납부여력 및 생활여건 등을 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실태확인 결과와 재산·소득·금융자료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147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체납관리단 운영	-	-	-	214,765	순증	순증
국세 체납관리단	-	-	-	142,705	순증	순증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	72,060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압류재산공매 사업²⁾에 10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2,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7,0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체납관리단 전체 운영인원은 1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경우 3,000명을 1차로, 4,000명을 2차로 채용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였다.

2026년도 추경 반영 후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은 국세 체납관리단 734억 5,700만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499억 6,100만원 등 총 2,234억 1,8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26년에는 해당 예산이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232-304

2) 코드: 일반회계 2232-301

었으나, 2027년도에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총 2,14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본예산	2026 추경 ¹⁾	2027 예산안	추경 대비 증감
국세 체납관리단	10,054	73,457	142,705	69,248 (94.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149,961	72,060	△77,901 (△52.0)
합계	10,054	223,418	214,765	△8,653 (△3.9)

주: 1) 2026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청은 사업 도입 당시 체납자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여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고, 체납관리단 전담 조직도 신설하였다. 또한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형 체납자 등으로 분류하여 분납·사후관리, 추적조사, 납부의무소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로 다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개요]

사업개요	○ (운영목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자 유형별 분류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영위 어려움 • 질병·고령·장애 등 취약 요인 • 자진납부 의지 있으나 경제적 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유동성 부족 • 사업부진·실직 등 일시적 사유 • 향후 납부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은닉·명의 위장 의심 • 납부 능력 있음에도 회피 • 허위 진술 가능성
	복지기관 연계, 납부의무소멸 → 경제적 재기 지원	분납·납부 방법 등 안내	강제징수 등 엄정 대응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첫째, 국세청은 2027년도 체납관리단 운영규모 확대에 따라 실태확인 이후 유형분류 및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수행체계와 관계기관 연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26년 국세 체납관리단 3,0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000명을 운용하여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태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실태확인 실적은 각각 21만명과 61만 271명이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체납자의 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인원을 2026년 3,000명에서 2027년 7,000명으로 확대하여 실태확인 대상도 50만명에서 8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26년 추경예산 734억원에서 2027년도 1,42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및 2027년도 계획]

구분		26년 계획	26년 현황 ¹⁾	27년 계획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인원	3,000명	2,798명	7,000명
	실태확인	50만명	21만명	87만명
	예산·집행액 ²⁾	734억원	348억원	1,427억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인원	7,000명 ³⁾	2,903명	3,000명
	실태확인	424만명	610,271명	미확정
	예산·집행액 ²⁾	1,500억원	377억원	721억원

주: 1) 2026년 현황은 8월말 기준

2) 예산·집행액의 경우 26년 계획은 예산, 26년 현황은 8월말 기준 집행액, 27년 계획은 예산안

3) 운영인원 7,000명은 1차 3,000명 및 2차 4,000명 채용계획을 합산한 규모임

자료: 국세청

이처럼 당초 3년간 추진하려던 실태확인 업무를 2027년까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한 만큼, 실태확인 대상 증가에 상응하여 유형분류 및 후속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단계별 추진계획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납부능력 등을 분석하여 유형별 징수·지원조치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태확인은 주로 기간제 실태확인원이 수행하는 반면, 실태확인 결과에 대한 유형분류와 강제징수 등 후속조치는 기존 체납담당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납담당공무원은 실태확인 결과 외에도 체납자의 납부이력,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체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적 납부기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외부 재산정보를 추가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조회 및 체납추적조사 등의 후속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분류는 단순한 실태확인 결과의 입력이나 분류에 그치는 업무가 아니며,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단계별 수행 주체 및 주요 업무]

구분	수행 주체	주요 업무	규정
실태확인	기간제 실태확인원	전화·방문을 통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 확인	제12~13조
유형분류	체납담당공무원	납부이력, 재산·소득 변동, 체납규모 등을 검토하여 유형 구분	제14~16조
후속 조치	체납담당공무원 등	탄력적 강제징수, 재산정보 분석, 체납추적조사 및 압류·공매 등	제17조
복지 연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생계형 체납자 발굴, 복지지원 필요성 확인 및 관계기관 연계	제18~19조
납부의무소멸 확인	세무서장·담당공무원	신청인 실태조사, 생활여건·재산보유현황 등 법정요건 확인	제20~24조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실태확인과 유형분류 및 후속조치의 수행주체가 구분되어 있고, 유형분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산·소득정보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7년도 실태확인 규모 확대에 따라 유형분류 및 후속조치 업무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태확인 결과가 유형별 징수·지원조치로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체납담당공무원의 업무분담과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유형분류 및 후속조치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7년도 실태확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태확인 인력의 채용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기간과 업무 추진일정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태확인 대상의 지역별 규모와 업무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인력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까지 실태확인을 완료한다는 사업목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

채용 등 탄력적인 인력 운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실태확인을 통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더라도, 실제 복지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와 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업무와 연계된다.³⁾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복지 연계 신청은 3,753건으로, 이 중 지자체·복지부 연계로 분류된 건수는 701건이며, 1,950건은 처리종결, 1,102건은 지자체 처리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연계는 관계기관의 자격 검토와 지원 결정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태확인 규모 확대에 따라 복지 연계 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예상 업무수요를 사전에 공유하고, 처리현황을 점검하는 등 연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 연계 인원 현황]

(단위: 건)

복지연계 신청	처리건수		
	지자체·복지부 연계	처리종결 ¹⁾	지자체 처리중
3,753	701	1,950	1,102

주: 1) 처리종결은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지 않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함

1. 2026년도 9월 말 기준 실적

자료: 국세청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3)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8조 (복지연계 대상 선정)

① 방문실태확인원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나 수입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액을 사실상 납부하기 곤란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등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발견한 경우 복지연계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실태확인을 완료하더라도 2028년에는 납부의무소멸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실태확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재산·소득 및 생활여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28년까지 이어지는 납부의무소멸 관련 조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실태확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기존 자료를 후속 실태조사에 활용하되 신청 당시의 재산·소득 및 생활여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의 운영기간 및 인력 규모는 사무실 임차료와 PC·통신망·사무기기 등 관련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세청은 2026년에 확보한 시설·장비를 2027년에도 계속 활용하고 추가 사무실 임차는 2026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도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에는 사무실·시설 159억 6,900만원, PC·통신망·사무기기 88억 100만원 등 총 247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운영인원과 사용기간 등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27년도 체납관리단 운영규모 확대에 맞추어 유형분류·재산조사 및 후속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태확인 수요와 인력별 활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할채용 등 탄력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복지 연계 업무수요를 사전에 협의하고, 기존 시설·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체납관리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납부의무소멸 제도의 신청기간이 2028년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실태확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신청에 따른 후속조사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징수 관련 법적·정보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 실시한 국세외수입 체납자 유형분류 결과에 대한 검증·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사유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향후 맞춤형 징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국세외수입 체납자 61만 271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방문 실태확인은 5만 1,905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유형분류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국세청은 통합징수법 제정 전까지 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현황]

구분	26년 계획	26.8월 실적
실태확인원	3,000명 ¹⁾	2,903명
방문 실태확인원	1,800명	1,347명
전화 실태확인원	1,200명	1,556명
실태확인 완료자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원	610,271명
방문 실태확인 완료	-	51,905명
전화 실태확인 완료	-	610,271명 ²⁾

주: 1) 26년 계획은 26년 1차 채용인원 기준이며 10월 채용 예정인 4,000명은 제외함

2) 1차적으로 전화 실태확인은 전원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실태확인은 필요시 별도로 실시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⁵⁾은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을 실태확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및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태확인의 경우 체납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향후 법률 제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워 체납자의 소득·재산 및 납부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다.

5)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26.2.26.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및 납부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태확인 과정에서 확인한 체납자의 진술이나 현장정보에 상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만으로 생계곤란형, 일시적 납부곤란자 등 체납유형을 구분할 경우 유형분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자 유형분류 관련 정보 활용 내역]

구분	현행	법률안 제정 이후	관련 조항
과세정보 활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위한 일반적 활용근거 미비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과세 정보 이용 가능	안 제13조
금융거래정보 조회	국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일반적 조회권한 미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가능	안 제14조
실태확인	체납자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한 전화·방문 등을 통해 수행	자료제출 요구·질문, 납부의 사·납부계획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의 근거 마련	안 제15조
체납정보 제공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체납정보 확보	각 중앙관서가 체납사실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부과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공	안 제11조

자료: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형분류는 단순히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체납자별 징수 또는 지원방식을 달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류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소득 및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류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법률 제정 전에 실시한 국세외수입 체납자 유형분류 결과를 향후 통합징수 업무에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법률 제정 이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적 자료와 기존 실태확인 결과를 교차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형을 재분류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 제정 이전의 분류결과와 이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보완된 분류결과를 구분

하여 관리하는 등 현 단계의 분류결과가 실제 징수·지원 업무에 활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및 유형분류 결과가 관계기관의 후속 징수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체화하고, 실제 납부 이행 및 채권 회수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각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능력과 체납원인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를 향후 맞춤형 징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7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을 실시하더라도 실제 징수 및 회수업무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태확인 결과가 관계기관의 후속 징수조치로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한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고 있으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⁶⁾ 한편,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전에 운영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2015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누적 청구금액 31억 3,900만원 중 7억 600만원을 회수하여 누적 회수율이 2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양육비 지원제도에서 채무자의 납부능력 파악과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따라 향후 체납관리 및 회수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당해 청구금액	239	552	772	482	564	134
당해 회수금액	39	92	150	150	143	112
누적 회수율	9.3	12.7	15.4	18.5	19.8	22.5

주: 1.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사업이 종료됨

2. 누계는 2015년 이후 당해 말까지의 회수율을 의미하며, 2026년의 경우 8월말까지의 회수율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완료한 체납자 61만 271명 전원에 대해 유형분류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89.8%가 납부약속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9.8%에는 전화상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향후 추가 상담 등을 통해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을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약속은 체납자의 실제 납부능력이나 납부 이행 여부와 구분되며, 기타 유형에는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형분류 완료 실적만으로 체납자별 납부 여건이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형분류 결과가 실제 납부 이행과 관계기관의 후속 징수조치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금이나 임금채권 대지급금과 같이 개별 기관이 별도의 회수절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징수업무와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결과가 연계되지 않으면 실태확인 인력을 대규모로 운영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및 유형분류 현황]

구분	실태확인 완료인원	유형분류 완료인원	유형별 분류 현황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610,271	610,271	납부약속 89.8% 생계 곤란형 0.2% 고의적 기피 0.2% 기타 9.8% ¹⁾

주: 1) 기타는 부재중, 번호상이 등 기존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인원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관계기관별 기존 징수절차와 체납관리단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태확인 및 유형분류 결과의 정보제공 범위와 후속조치 연계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납부약속의 실제 이행 여부와 관계기관의 유형별 징수조치 및 회수실적을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를 단순한 실태확인·유형분류 실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 회수성과까지 포함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사업¹⁾은 성실신고 유도과 투명한 경제질서 정착을 위해 조세탈루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세원 발굴·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당초 계획 및 수정계획 대비 419억 7,500만원 증액된 58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사업²⁾은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에 대응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당초 계획 및 수정계획 대비 21억원 증액된 2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세 공익 신고 포상금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22,122	16,619	16,619	58,594	41,975	252.6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769	737	737	2,837	2,100	284.9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 사실을 신고하여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의 조사활동지원 사업³⁾에 편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등이 확인·납부되는 경우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010-361

2)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010-413

3) 코드: 일반회계 2131-30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의 조사활동지원 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 관련 포상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6년 9월 발의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⁴⁾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되, 개별 포상금의 지급 대상·요건 및 지급금액 등은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2026.9.1.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4-1.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수요를 고려한 계획액 검토 필요

가. 현 황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사업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¹⁾에 따라 조세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세원 발굴 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률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²⁾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7년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예산(A)	2027 계획안(B)	전년 대비 증감(B-A)
탈세제보 포상금	20,871	15,531	54,094	38,56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251	1,088	4,400	3,312
홍보비	-	-	100	순증
합계	22,122	16,619	58,594	41,975

주: 2025 결산 및 2026 예산은 국세청 일반회계 기준, 2027년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운용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탈세제보 실적을 보면, 2021~2025년 징수건수는 감소한 반면 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지급건수가 5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같은 기간 연간 20~38건이 지급되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4,590만원이었다.

[탈세제보 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연도	신고 건수	징수 건수 (A=a+b)	징수금액 (B)	포상금				
					미지급 건수 (a)	지급 건수 (b)	지급액 (c)	포상금 지급률 (b/(a+b))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c/B)
탈세 제보	'21	20,798	4,253	1,022,298	3,861	392	14,040	9.2	1.4
	'22	17,777	3,516	1,046,613	3,144	372	14,952	10.6	1.4
	'23	19,763	3,308	745,563	2,873	435	17,553	13.1	2.4
	'24	18,928	3,086	532,246	2,776	310	13,839	10.0	2.6
	'25	24,646	2,691	1,036,213	2,175	516	20,871	19.2	2.0
은닉 재산	'21	885	49	9,082	22	27	1,423	55.1	15.7
	'22	479	57	9,624	22	35	1,477	61.4	15.3
	'23	1,364	46	12,030	8	38	1,872	82.6	15.6
	'24	1,855	41	13,025	21	20	948	48.8	7.3
	'25	1,337	62	10,191	30	32	1,251	51.6	12.3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편 효과에 대한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존 신고분과 개편 이후 신규 신고분의 예상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2027년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최소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포상금 지급한도

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제보·신고
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최소 지급기준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지급률	20%	3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분 지급률	15%	20%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분 지급률	10%	10%
30억원 초과분 지급률	5%	1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40억원	폐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30억원	폐지
개편안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제보·신고분부터	

주: 지급률은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의 구간별로 적용하는 비율

자료: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개편과 최근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385억 6,300만원 증가한 54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상 지급분은 2025년 지급건수 516건에 같은 해 처리건수 증가율
28.5%를 적용하여 지급건수 663건을 추산하고, 최근 3개년 평균 포상금 발생액에
2024년 대비 2025년 추정세액 증가율 94.7%를 적용하여 359억 6,100만원을 산
정하였다. 여기에 차년도 이월분 155건과 고액 포상금 32건을 추가하여 총 850건
의 지급을 예상하였다.

[2027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예산 산정 근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지급예산 건수	지급예산 금액	산정 근거
통상 지급분	663	35,961	- 지급건수: 25년 지급건수에 처리건수 증가율 28.5% 적용 - 지급액: 최근 3개년 평균 포상금 발생 액에 추정세액 증가율 94.7% 적용
차년도 이월분	155	8,995	월평균 미지급 건수 31건 × 5개월 및 평균 신청액을 고려
고액 포상금	32	9,138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 완료, 2027년 중 지급 예상
합계	850	54,09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통상 지급분의 산정에 적용된 최근 실적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2021년 1조 223억원, 2022년 1조 466억원에서 2023년 7,455억원, 2024년 5,322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1조 36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연도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증가율 94.7%는 추징세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24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므로, 이를 최근 3개년 평균 포상금 발생액에 적용할 경우 특정 연도의 변동이 2027년도 소요액 추계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추징세액과 포상금 지급액 간의 과거 관계 및 최근 실적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통상 지급소요액의 산정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징세액	10,223	10,466	7,455	5,322	10,362
전년 대비 증감액	978	243	△3,011	△2,133	5,040
전년 대비 증감률	10.6	2.4	△28.8	△28.6	94.7

자료: 기획예산처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탈세제보의 처리 증가가 포상금 지급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처리 시점과 실제 포상금 지급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가 처리된 시점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관련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지급요건이 충족된 이후 지급된다.³⁾ 따라서 2025년 처리건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법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 증가율 28.5%를 2027년 지급예상 건수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과거 처리건이 실제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데 소요된 기간 등을 함께 검토하여 2027년 중 지급이 예상되는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획액 중 고액 포상금 32건·약 91억원은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이 완료되어 2027년 중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인 반면, 차년도 이월분 155건·약 90억원은 월평균 미지급 건수 등에 기초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미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소요와 향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소요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의 통상 지급분에 대하여 추정세액 및 포상금 지급실적의 연도별 변동과 제보·처리 이후 실제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2027년도 지급예상 건수와 금액을 구체화하고, 차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도 2027년 중 지급요건 충족이 예상되는 규모를 확인하여 계획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4-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예상 건수의 산정근거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²⁾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동일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연간 5,000만원이다.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1억원 증가한 28억 3,700만원이다. 이 중 포상금은 지급예상 건수 2,737건에 건당 지급액 100만원을 적용한 27억 3,700만원이며, 신고제도 홍보 및 실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6년 예산액	27년 계획안	증감액	증감률
포상금	737	2,737	2,000	271.4
일반수용비	-	100	100	순증
합계	737	2,837	2,100	284.9

자료: 기획예산처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⑱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최근 차명계좌 관련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신고 접수건수는 2022년 1만 3,988건에서 2025년 1만 73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 1만 3,919건에서 1만 1,682건으로 감소하였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21년 1,434건에서 2024년 704건까지 감소한 후 2025년 769건으로 증가하였다.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신고 건수	징수 건수 (A=a+b)	징수금액 (B)	포상금				
				미지급 건수 (a)	지급 건수 (b)	지급액 (c)	포상금 지급률 (b/(a+b))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c/B)
2021	10,743	4,456	341,352	3,022	1,434	1,434	32.2	0.4
2022	13,988	4,163	348,523	2,849	1,314	1,314	31.6	0.4
2023	12,961	3,519	263,624	2,420	1,099	1,099	31.2	0.4
2024	12,769	2,794	246,156	2,090	704	704	25.2	0.3
2025	10,739	2,698	263,228	1,929	769	769	28.5	0.3

자료: 국세청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예상 건수에 반영한 홍보 강화 및 업무 개선 효과의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고, 실제 지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를 토대로 2027년 소요액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2027년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를 2,737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한 737건보다 2,000건 증가한 규모이며, 2025년 실제 지급건수인 769건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지급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의 1,434건과 비교하더라도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급건수 증가의 근거로 ① 홍보 강화에 따른 신고 접수 증가, ② 신고자료의 과세활용 범위 확대, ③ 포상금 조기 지급 등 내부적인 업무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 신고 접수가 증가할 경우 포상금 지급건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자료의 과세활용 범위 확대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신고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급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활성화 및 업무 개선 효과를 2027년도 포상금 소요액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세청이 제시한 2027년도 지급예상 건수 2,737건은 최근 실제 지급실적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인 만큼, 신고 증가 및 업무 개선에 따라 지급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별개로 그 증가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실제 지급건수가 704~1,434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지급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2,737건을 지급예상 건수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및 업무 개선에 따라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급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고자료의 과세활용 범위 확대 등 내부 업무처리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과세를 회피하거나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세활용 기준이나 내부 처리절차 자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 업무처리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예산 소요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내부 처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최근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 홍보 계획 및 해당 홍보에 따른 예상 신고 증가 규모, 업무 개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 조기 지급에 따라 지급시기가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 등 비민감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예상 건수의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상금 조기 지급의 경우 새로운 지급수요가 발생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지급될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라는 점에서 홍보 강화나 신고자료의 과세활용 확대에 따른 추가 지급수요와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내부 업무처리 방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근 지급실적을 기초로 한 통상적인 지급수요와 홍보 강화 및 업무 개선에 따른 추가 지급수요, 포상금 조기 지급에 따른 지급시기 조정분 등을 구분하여 2027년도 지급예상 건수 2,737건의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소요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관세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관세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568억 2,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0억 8,700만원(7.7%) 증가하였다.

[2027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8,576	52,737	52,737	56,824	4,087	7.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7,284억 4,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85억 800만원(5.6%) 증가하였다.

[2027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51,234	689,932	689,932	728,440	38,508	5.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관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안전, AI 등 관세청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5.6%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2026년 6,899억원 → 2027년 7,284억원), ② 수출입통관 프로그램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여행자 X-ray 통합판독센터 구축, 해외 K-브랜드 지재권 보호 강화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고(2026년 398억원 → 2027년 471억원), ③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전용 플랫폼 구축 완료,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일부 장비 도입소요 감소 등에 따라 감액되었으며(2026년 1,108억원 → 2027년 1,065억원), ④ 국경 감시단속체계 재설계 사업과 AI 융합 관세행정 지능화(정보화) 사업이 신설되고,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R&D) 사업이 완료되어 주요 사업비에 속하는 세부사업 수가 32개에서 33개로 증가하였다.

2027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규 수사·검사장비를 확대 도입하기 전에 시범운용을 통해 장비의 성능과 현장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후속 도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재산처와 협의하여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식별교육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가품 대조키트 제작·배포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밀수 신고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한 초기 단계인 점과 실제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포상금 소요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고, 제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선행공정의 일정이 늦춰졌음에도 후속공정과 전체 완료 일정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변경 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안대응 기술개발의 개별 후보과제별 연구내용과 개발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제당 지원규모의 산출근거를 구체화하고, 향후 과제기획 과정에서 과제별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11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국경 감시단속체계 재설계 사업은 마약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 차단을 위해 모든 반입경로에 전면적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AI 융합 관세행정 지능화(정보화) 사업은 관세행정에 AI를 융합한 업무혁신으로 마약, 총기 등 불법물품을 선제 차단하고, AI 활용·확대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세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국경 감시단속체계 재설계	5,235
	AI 융합 관세행정 지능화(정보화)	6,532
합 계		11,767

자료: 관세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특송화물 통관지원,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 등이 있다.

①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44억원 중 2년차 사업비 94억원이 반영되었고, ②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정밀분석 장비 도입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 사업은 현안대응 과제와 실용화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신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관세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특송화물 통관지원	12,622	12,622	17,046	4,424	35.0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2,211	2,211	3,926	1,715	77.6
	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	3,267	3,267	4,909	1,642	5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관세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시범도입 장비의 성과관리 및 확대 도입 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밀수단속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수사장비 도입은 밀수단속 업무에 필요한 노후 수사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밀수단속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밀수단속	5,185	5,078	5,078	4,347	△731	△14.4
수사장비 도입	214	214	214	839	625	292.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신규 수사·검사장비를 확대 도입하기 전에 시범운용을 통해 장비의 성능과 현장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후속 도입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마약을 은닉한 컨테이너에 GPS·에어태그 등의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GPS 신호탐지기 1대를 시범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331-300

도입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부산·인천공항·인천·평택·울산 등의 마약특별
검사팀, 컨테이너검색기 운용부서 및 검사부서에 20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GPS 신호탐지기 도입 관련 내역]

구분	내용
도입 필요성	① 마약 의심 컨테이너 정밀검색에 전용 장비로 활용 ② 면밀한 단속이 어려운 산하세관 대상 X-ray·개장검사 및 GPS 탐지 장비 보강 필요
예산 산출 내역	GPS 신호탐지기 20대 X 14백만원 = 280백만원 ※ 부산, 인천공항, 인천, 평택, 울산 등 총 20대 배치 계획
도입 장비	<div> <div> <p>○ 모델명 : Yorkie-pro wireless instruction detector</p> <p>○ 제조사 : Berkeley Varitronics System(美)</p> <p>○ 가 격 : 14백만원</p> </div> <div>   </div> </div>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시범도입된 장비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544건의 검사에 활
용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GPS 등의 신호가 탐지되거나, 이를 통해 추가검사·
수사로 연계된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시범운용 결과 컨테이너를 개장
하지 않고도 GPS 등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고 최근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GPS 신호탐지기 시범운용 결과]

(단위: 건)

구분	2025. 5. ~ 12.	2026. 1. ~ 8.	합계
장비 사용건수	1,171	1,373	2,544
신호 탐지건수	-	-	-
신호탐지 후 추가검사 건수	-	-	-
수사·조사 연계 건수	-	-	-
불법물품 확인 건수	-	-	-

자료: 관세청

마약 단속장비는 새로운 밀수수법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적발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세청은 장비성능, 현장사용자 의견 및 밀수수법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확대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신규장비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성능 검증 기준이나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2025년 열화상카메라 15대 도입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성능검증 과정에서 활용상 한계가 확인되어 도입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한 사례가 있다. 이는 예산편성 이전에 장비의 성능과 실제 단속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이후 도입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 예산이 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세청은 GPS 신호탐지기를 포함한 신규 수사·검사장비 도입 시 탐지 성능, 현장 활용성 및 기존 검사절차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확대도입 여부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장비의 본격적인 확대도입에 앞서 실제 단속환경에서의 성능과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함으로써 장비 도입 이후 활용상 한계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해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 효율적 추진 필요

가. 현 황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해외 K-브랜드 지재권 보호 사업은 주요 5개국 세관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교육 및 정·가품 대조키트를 제공하여 해외 국경단계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식별·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으로 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해외 K-브랜드 지재권 보호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2,309	2,636	2,636	2,876	240	9.1
해외 K-브랜드 지재권 보호	-	-	-	410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관세청

동 사업은 중국·홍콩·베트남·튀르키예·이집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세관 직원에게 K-브랜드 정·가품 식별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조키트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수용비 3억 2,500만원, 임차료 2,500만원 및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331-301

[해외 K-브랜드 지재권 보호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만원, %)

비목	내용	산출내역	예산액	비중
일반수용비 (210-01)	식별 교재 발간	5회(5개국)×500	2,500	6.1
	정·가품 대조 키트 제작	5회(5개국)×4세트×1,500	30,000	73.2
임차료 (210-07)	교육장소 대관	5회(5개국)×1일×500	2,500	6.1
국외업무여비 (220-02)	현지 교육 참석	4명×5회(5개국)×300	6,000	14.6
합계			41,000	100.0

주: 5개국은 중국·홍콩·베트남·튀르키예·이집트임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지식재산처와 협의하여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식별교육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가품 대조키트 제작·배포의 필요성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지 세관직원의 정·가품 식별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청은 통관검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세관당국과의 협력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세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조상품 식별교육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의 신규사업이 기존 정부사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해외 세관의 지재권 등록, 침해물품 제조·유통경로 조사 및 단속절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세관 등 현지 지재권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식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신규사업과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존 식별교육은 해외 현지의 세관 등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제품정보와 정·가품 식별방법을 제공하여 현지 단속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교육대상 및 내용이 일부 유사하다.

[관세청 신규사업과 해외지식재산센터 식별교육 비교]

구분	관세청 신규사업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주요 목적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해외 K-브랜드 지재권 침해 대응
교육 대상	해외 세관공무원	세관 등 현지 지재권 집행기관 공무원
교육 내용	K-브랜드 정·가품 식별방법	기업·제품정보 및 정·가품 식별방법
추진 방식	식별·단속 교육 및 대조키트 제공	기업별 식별방법 설명, 정·가품 전시 등
추진 체계	관세청이 해외 세관을 대상으로 교육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교육
27년 예산안	4억 1,000만원	51억 3,600만원 ¹⁾

주: 1)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 전체 예산으로, 식별교육 외 지재권 상담, 출원·등록 비용 지원, 법률 서비스, 침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자료: 관세청 및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위조상품 식별교육은 최근 축소되는 기능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처의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는 수출기업의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지재권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2024년 6회에서 2025년 8회로 확대하고, 기존 중국·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외에 필리핀과 홍콩을 추가하도록 계획하였다. 관세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 대상국 중 중국·홍콩·베트남이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식별교육 대상지역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신규사업 신설에 앞서 기존 사업과의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한국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유관 법률 집행 부처·기관에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침해대응 인식 제고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강화

○ (추진개요)

- 협력대상: 현지 정부 부처·기관 및 IP 전문가, 소비자 관련 단체 등
- 주요내용: 현지 진출 한국기업·업종 현황 안내, 정·가품 식별 설명 및 전시, 현지 지재권 관련 이슈·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등

주: 동 사업은 2025년까지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로 운영됨

자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한 최근 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기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획예산처의 2026년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과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간 일부 기능의 중복을 지적하고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은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이처럼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신규사업 역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해외 세관과의 직접적인 단속협력 및 정·가품 대조키트의 검사현장 상시 비치 등을 기존 지식재산처 사업과의 차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수행방식의 차이는 인정되나,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도 현지 세관 등을 대상으로 식별교육과 제품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관세청의 단속협력 기능과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교육·지원 기능 간 역할분담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사업 예산 4억 1,000만원 중 정·가품 대조키트 제작비가 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지 세관의 활용 수요와 제작단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신규사업 요구 시 목적·내용 및 지원대상 등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의 사전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동 사업의 예산요구 과정에서 별도의 유사·중복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양 사업은 수행주체와 단속 연계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나 교육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첩된다는 점에서, 신규사업 편성에 앞서 관련 부처와 역할분담 및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청은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교육대상·내용 및 대상국가 등을 고려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세관과의 단속협력 및 정·가품 대조키트 보급 등 관세청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세관의 수요와 단속 여건을 고려하여 정·가품 대조키트가 실제 검사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급체계 개편 초기 운영실적을 고려한 밀수 신고포상금 적정소요 산정 필요

가. 현 황

밀수 신고포상금 사업¹⁾은 「관세법」 제269조 및 제324조²⁾에 따라 밀수 등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부여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으로 17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밀수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밀수 신고포상금	-	-	-	17,485	순증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동 포상금은 2026년까지 관세청 밀수단속 사업³⁾에 포함하여 편성·집행하였으나, 2027년부터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운용계획안에는 밀수 신고포상금 사업에 총 17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173억 8,500만원, 포상금 제도 홍보비는 1억원이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010-476

2)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법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코드: 일반회계 1331-300

밀수 신고포상금 예산은 2021~2026년 연간 5억 600만원~8억 2,400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예산현액의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다. 한편,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74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예산 대비 약 21.2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밀수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¹⁾	2027
예산액	660	660	506	506	506	824	17,485
예산현액	660	666	938	710	670	824	-
집행액	447	664	938	710	666	678	-

주: 1) 2026년의 경우 예산액은 본예산, 집행액의 경우 7월 말 기준 집행액을 의미함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관세청은 2027년도 예상 지급건수와 유형별 평균 지급액을 기초로 기본 지급액 123억 5,300만원을 산정하고, 중대사건 및 내부고발에 대한 가중지급액 50억 3,2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73억 8,500만원의 소요액을 산정하였다.

[2027년도 밀수 신고포상금 예상 지급액 산출내역]

지급 구분	지급기준 유형	예상 건수	건당 지급액	예상 지급액
기본 지급	사건 금액(마약 제외)	109건	7,741만원	8,463백만원
	국고수입액	30건	5,500만원	1,650백만원
	마약 및 안보 위해 물품	519건	360만원	1,867백만원
	기타	593건	63만원	373백만원
가중 지급 (중대 사건)	사건 금액(마약 제외)	33건	7,741만원	2,539백만원
	국고수입액	9건	5,500만원	495백만원
	마약 및 안보 위해 물품	156건	360만원	560백만원
가중 지급 (내부 고발)	사건 금액(마약 제외)	3건	7,741만원 × 4	1,016백만원
	국고수입액	1건	5,500만원 × 4	198백만원
	마약 및 안보 위해 물품	16건	360만원 × 4	224백만원

주: 1. 기본 지급 예상건수 1,251건은 2023~2025년 평균 지급건수에 제도개편에 따른 증가분 2배를 반영

2. 가중지급은 '기타'를 제외한 집행건의 30%를 중대사건, 3%를 내부고발로 가정하여 산정함

3. 내부고발은 최대 5배 지급에 따라 기본 지급액 외 추가 지급분 4배를 산정함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밀수 신고포상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한 초기 단계인 점과 실제 포상금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포상금 소요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고, 제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026년 9월 21일부터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개정·시행하여 밀수 신고포상금 지급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⁴⁾ 주요 내용은 ① 일반 밀수 및 마약류 등의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② 내부신고에 대한 지급액을 기존 최대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 ③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방식에서 적발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하여 지급하는 누진형 방식으로 전환, ④ 종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던 소액사건까지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밀수 신고포상금 지급체계 개편 내역]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포상금 상한	일반 밀수 등 최대 1억 5,000만원, 마약류 최대 3억원	지급상한 폐지
내부신고 가산	기존 지급액의 최대 2배	최대 3배로 확대
지급 방식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	적발금액에 일정 비율을 누적하여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 도입
소액 사건	일정 규모 이하 사건은 지급대상 제외	소액사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개정된 지급기준은 2026년 9월 21일 이후 ‘포상금 지급분’이 아니라 같은 날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밀수 신고포상금은 신고 이후 조사·수사, 포상금 지급요건 확인 및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만큼, 2026년 9월 21일 이후 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포상금 지급은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2027년에 지급되는 포상금 중에는 개편 이전 신고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지급된 포상금 724건의 신고 접수일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 월 말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270일, 중앙값은 181일로 나타났다. 2026

4)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대대적 개편」, 관세청, 2026.9.21.

년 8월 말 기준으로도 평균 198일, 중앙값 11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지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9월 21일 이후 신고된 사건 중 일부는 2027년 이후에 지급될 수 있으며, 반대로 2027년에 지급되는 포상금에는 개편 이전 신고분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개편 전후 신고분별 예상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구분하여 2027년도 실제 재정소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포상금 지급 소요기간]

(단위: 건, 일)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8.
지급건수	855	709	743	724	401
평균 소요기간	190	208	251	270	198
중앙값	156	108	176	181	115
최장 소요기간	1,930	1,083	1,258	1,601	1,369

주: 해당 연도에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건을 기준으로, 각 건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자료: 관세청

또한 관세청은 종전의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은 당해연도 예산 부족에 대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장래의 포상금 소요를 2027년도에 일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다소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2027년도에는 개편된 지급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실제 지급이 예상되는 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후 실제 신고·지급실적을 토대로 추가 소요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신규조문대비표]

과거	개정안
제28조(포상금 결정 및 지급) ④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8조(포상금 결정 및 지급) ④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u>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u>

자료: 관세청

그리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 편성지침」)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의 개정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중대사건의 경우 지급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추가지급하고, 내부신고는 지급기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2027년도 산출내역은 중대사건에 대한 가중지급액을 기본 지급액과 동일한 건당 지급액으로 산정하고, 내부신고의 경우 기본 지급액 외 추가 4배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지급기준에 부합하도록 산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종전 지급기준에 따른 2022~2026년 8월 말까지의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총 3,432건 중 지급상한액이 적용된 사례는 12건, 내부신고 가산이 적용된 사례는 26건에 불과하였다. 상한액 폐지와 가산기준 확대가 장래 포상금 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종전 적용실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적용건수와 건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밀수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내부신고 가산 적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8.
포상금 지급건수	855	709	743	724	401
지급상한액 적용 건수	1	4	2	2	3
상한액 적용건 지급액	50	226	81	54	395
내부신고 가산 적용 건수	7	10	5	2	2
내부신고 가산분 지급액	40	90	53	5	1

자료: 관세청

한편, 예산편성지침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밀수 신고포상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관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고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지급상한도 폐지한 만큼, 현행 지급체계가 동 지침에서 요구하는 지급한도의 명확성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포상금 제도 사례 비교]

구분	소관 부처	법적 근거	지급률·지급한도 규정
밀수 신고포상금	관세청	「관세법」 제324조	관세청 훈령
탈세제보 포상금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공익신고 포상금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	시행령
불공정 조달 신고포상금	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령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	농식품부	「농지법」 제52조	시행령 및 별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관세청은 개정된 지급기준을 토대로 예상 지급건수와 건당 지급액의 산출근거를 재검토하고, 신고 이후 포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 및 개편 전후 신고분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실제 집행가능한 적정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개편 초기의 실제 신고·지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포상금 예산 규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의 일정 변경에 따른 공정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¹⁾은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특송물류센터의 임차·운영, 통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추경 대비 44억 2,400만원 증액된 17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특송화물 통관지원	6,443	12,622	12,622	17,046	4,424	35.0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	5,026	5,026	9,374	4,348	86.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관세청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시설 배치와 연계하여 국제우편물의 통관·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4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6~2027년이다. 2026년도에는 50억 2,600만원, 2027년도에는 전년 대비 43억 4,800만원 증가한 9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나. 분석의견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선행공정의 일정이 늦춰졌음에도 후속공정과 전체 완료 일정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변경 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은 설계, 주요장비 제작, 기존 장비 철거, 장비 설치, 검수 및 시운전·안정화 등의 공정을 거쳐 2027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에 따르면 제안서 작성·계약 일정은 당초 2026년 1~8월에서 1~10월로 변경되었다. 관세청은 도입 설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확인절차와 보안성 검토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 착수 예정월은 2026년 9월에서 10월로 늦춰졌으나 완료 예정월은 12월로 유지되었으며, 장비 철거는 종료 예정월이 2027년 3월에서 4월로 변경되었다. 반면 주요장비 제작과 설치, 검수 및 시운전·안정화 일정은 유지되었다.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의 당초·변경 일정]

공정	당초 일정	변경 일정
제안서 작성·계약	2026.1. ~ 8.	2026. 1. ~ 10.
설계	2026. 9. ~ 12.	2026. 10. ~ 12.
주요장비 제작	2026. 10. ~ 2027.3.	동일
장비 철거 (우정사업본부)	2027. 2. ~ 3.	2027. 2. ~ 4.
장비 설치	2027. 5. ~ 8.	동일
검사실·판독실 구축	2027. 5. ~ 8.	동일
검수	2027. 8. ~ 9.	동일
시운전·안정화	2027. 9 ~ 12.	동일

자료: 관세청

관세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기술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²⁾ 설계 등 후속공정도 미착수 상태이며, 공정별 납품·완료기한은 계약 완료 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변경 계획상 계약과 설계·제작 착수가 모두 2026년 10월

2) 이에 따라 2026년 예산 50억 2,600만원은 9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상태임

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후속공정에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설계기간은 줄어든 반면 주요장비 제작 일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설계기간 단축 방안이나 설계 완료 전 제작 가능한 장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설계와 제작을 병행하여 당초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는 장비 철거의 종료 예정월이 2027년 4월로 늦춰졌음에도 장비 설치는 5월에 착수할 계획이므로, 철거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 설치공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과거 관세청이 추진한 자동분류설비 구축사업에서도 계약 체결 이후 구축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공항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기 도입사업은 2015년 2월 계약 체결 후 2016년 9월 완료되어 약 1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기 도입사업은 2020년 12월 계약 체결 후 2023년 12월 완료되어 약 36개월이 소요되었다.

[유사 관세청 구축사업 추진 사례]

구분	계약일	사업완료일	소요기간
공항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 구축사업	2015.2.	2016.9.	약 19개월 소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 구축사업	2020.12.	2023.12.	약 36개월 소요

자료: 관세청

과거 사업과 현재 국제우편센터 구축사업의 소요기간을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장비 제작·설치·시운전 등 후속공정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 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설계기간 단축과 설계·제작의 병행 추진을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철거공정과 연계하여 설치·검수·시운전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상 공정별 완료기한과 대금 지급조건을 토대로 2027년도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추가 지연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사업¹⁾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관련 기술을 관세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추경 대비 16억 4,200만원 증액된 4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	2,135	3,267	3,267	4,909	1,642	5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관세청

2027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30억 1,900만원과 함께, 관세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국경 안전 현안대응기술개발 18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관세청의 사업기획에 따르면 신규 현안대응기술개발은 신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현안대응 트랙과 기존 연구개발 성과 등을 실용화하는 실용화 트랙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현안대응 트랙은 즉각적인 긴급대응보다는 1년 이상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단기 현안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안대응 과제는 2.5년 과제 2개와 1.5년 과제 2개를 각각 과제당 총 10억원 및 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실용화 과제는 2.5년 과제 2개를 과제당 총 1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442-531

[2027년도 스마트세관 기술개발(R&D)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구분	산출내역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계속) 1개x2,400백만원×12/12×51%=1,220백만원 (계속) 1개x1,300백만원×12/12×51%=661백만원 (계속) 2개x960백만원×12/12×51%=976백만원 (계속) 1개x320백만원×12/12×51%=162백만원
관세국경안전 현안대응 기술개발	가. 현안대응 (신규) 2개(2.5년)×400백만원×6/12×100%=400백만원 (신규) 2개(1.5년)×600백만원×8/12×100%=800백만원 나. 실용화 (신규) 2개(2.5년)×400백만원×8/12×100%=546백만원 다. 사업단 (신규) 1개×157백만원×11/12×100%=144백만원

주: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의 49%를 부담하나 현안대응 기술개발은 관세청이 100%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임

자료: 관세청

관세청이 제출한 2027년도 현안대응·실용화 후보과제는 총 6개로, 이 중 5개는 2025년도 사전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이고 대인용 THz 검색장비는 커스텀즈랩 1.0의 기존 연구성과를 후속 개발하기 위한 과제이다.

[2027년도 현안대응·실용화 후보과제]

순위	후보과제명	비고
1	여행자 우범화물 추적을 위한 비가시성 전자표지 개발 및 추적	'25년 사전기획
2	공항 입국 단계 밀수·마약류 탐지를 위한 CCTV 기반 우범자 패턴분석 및 신속전파 기술개발	'25년 사전기획
3	은닉물 탐지 대인용 THz 검색 장비 개발	커스텀즈랩 1.0 후속개발
4	컨테이너 우범화물 추적 감시 효율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전자봉인(e-Seal) 기술개발	'25년 사전기획
5	여행자 우범화물 추적을 위한 전자표지 개발 및 추적 시스템 고도화	'25년 사전기획
6	세관과 보세창고 간 연계 CCTV 영상활용 이상행동 적발 기술	'25년 사전기획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관세청은 현안대응 기술개발의 개별 후보과제별 연구내용과 개발범위 등을 고려하여 과제당 지원규모의 산출근거를 구체화하고, 향후 과제기획 과정에서 과제별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의 경우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연구비를 서로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2027년도 기준으로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은 총연구비 84억원, 동시다중 마약 신속 검사키트는 32.5억원, X-Ray 영상데이터 활용 표준화 기술개발 및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은 각각 33.6억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반면 신규 「관세국경안전 현안대응 기술개발」은 현안대응 과제를 연구기간에 따라 과제당 총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정하고, 실용화 과제 역시 과제당 총 10억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관세청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비 산정방식 비교]

구분	세부과제·유형	과제당 연구비 기준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총 84억원(4년)
	동시다중 마약 신속 검사키트	총 32.5억원(3년)
	X-Ray 영상데이터 표준화	총 33.6억원(4년)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총 33.6억원(4년)
관세국경안전 현안대응 기술개발	현안대응(2.5년)	총 10억원
	현안대응(1.5년)	총 9억원
	실용화(2.5년)	총 10억원

자료: 관세청

현안대응 기술개발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이나 신규 기술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원과제가 확정되기 전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과제유형과 운영방식이 유사한 경우 일정한 지원규모를 적용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2027년도 지원 후보과제의 경우에는 내부 수요조사와 사전기획 등을 거쳐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 실제 관세청이 제출한 2027년도 6개 후보과제는 모두 사전기획 또는 기존 연구성과의 후속개발 계획 등을 통해 연구기간과 예상 소요예산이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별 소요규모도 10억원에서 36억 8,600만원까지 서로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

[2027년도 현안대응·실용화 후보과제별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구 기간	소요 예산	비고
여행자 우범화물 추적을 위한 비가시성 전자표지 개발 및 추적	3년	3,686	'25년 사전기획
공항 입국 단계 밀수·마약류 탐지를 위한 CCTV 기반 우범자 패턴분석 및 신속전파 기술개발	3년	3,000	'25년 사전기획
은닉물 탐지 대인용 THz 검색 장비 개발	3년	3,200	커스텀랩 1.0 후속개발
컨테이너 우범화물 추적 감시 효율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전자봉인(e-Seal) 기술개발	2년	1,000	'25년 사전기획
여행자 우범화물 추적을 위한 전자표지 개발 및 추적 시스템 고도화	3년	3,686	'25년 사전기획
세관과 보세창고 간 연계 CCTV 영상활용 이상행동 적발 기술	2년	1,600	'25년 사전기획

자료: 관세청

사전기획에서 산정한 소요예산을 실제 지원규모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후보과제별 연구내용과 예상 소요예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과제당 9억원 또는 10억원의 동일한 지원규모를 적용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개별 과제의 개발범위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현장실증 규모 등에 따라 소요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지원규모로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과제공고 이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개발범위와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제별 소요예산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향후 과제기획

과정에서의 검토계획만으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적용한 지원규모의 산출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제기획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당초 지원규모와 연구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2027년도 후보과제의 사전기획 결과와 예상 소요예산 등을 활용하여 과제당 지원규모의 산출근거를 구체화하고, 향후 과제기획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연구내용, 개발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연구수요에 맞게 과제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1개 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186억 5,5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0억 1,500만원(5.3%)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383,351	397,640	397,640	418,655	21,015	5.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723억 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49억 9,700만원(25.2%)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240,264	296,135	297,304	372,301	74,997	25.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개 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6,268억 5,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01억 9,900만원(△20.4%) 감소하였다.

[2027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773,016	788,225	787,056	626,857	△160,199	△2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6,268억 5,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01억 9,900만원(△20.4%) 감소하였다.

[2027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특별회계	727,378	788,225	787,056	626,857	△160,199	△2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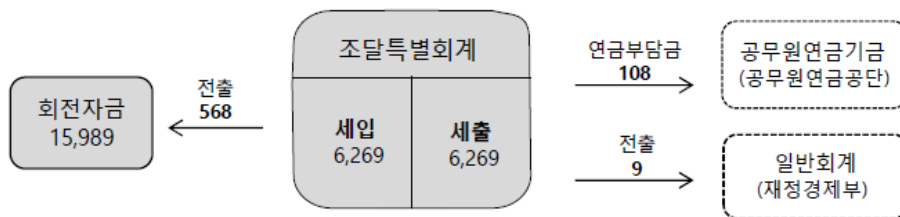
다.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재정경제부 일반회계로 9억 3,500만원, 회전자금으로 568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8억원 전출이 발생한다.

[2027년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조달청

2027년도 조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의 해외실증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 (2026년 200억원 → 2027년 100억원), ② 공공조달의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199억원 → 2027년 394억원), ③ 범정부 차원의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을 실증과 연계하는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130억원), ④ 조달물자 품질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달 인프라 구축 공사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2026년 4억원 → 2027년 21억원), ⑤ 원자재의 안정적인 보관과 효율적인 비축사업을 위한 경남비축창고 재건축 공사비 예산이 반영되었다(2026년 31억원 → 2027년 105억원).

2027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입찰자격 사실조사 관련 외부심사 의뢰실적과 향후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최근 계약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 심사 외부용역의 물량 및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과정에서 가격검토를 거쳐 결정된 계약가격과 주요 계약조건을 후속구매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장터의 가격정보 제공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KOIC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기존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및 수주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Scale-up형 R&D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기존 혁신제품의 실제 사용·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수요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체적인 수요기관의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타소비촉 관련 예산이 실제 계약·비촉물량 및 재고순환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품목별 계약·집행실적과 2027년도 비촉방식 개편계획을 반영해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의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57억 6,700만원 규모이다.

조달특별회계 사업 중 ‘혁신조달 지원 및 관리 사업’은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및 혁신조달 플랫폼인 혁신장터 운영을 통한 공공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조달특별회계(1개)	혁신조달 지원 및 관리	5,767

자료: 조달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조달정보화(정보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조달인프라 구축,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①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지능형 전략비축시스템 구축 등 신규 조달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은 정부기술실증 확산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사업은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확대에 예산안이 증액되었다. ④ 조달인프라 구축과 ⑤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7년 공사비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증액되었다.

[조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1)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 특별 회계 (5개)	조달정보화(정보화)	19,859	19,859	39,377	19,518	98.3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82,706	82,706	113,267	30,561	37.0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359	4,528	7,414	2,886	63.7
	조달인프라 구축	406	406	2,145	1,739	428.3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3,072	3,072	10,456	7,384	24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가. 현 황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²⁾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조사하여 폐이퍼컴퍼니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공공공사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8,700만원이 증액된 3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입찰자격 사실조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2,923	3,359	4,528	7,414	2,886	63.7
입찰자격 사실조사	-	-	1,169	3,556	2,387	204.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적격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한 후 후순위 업체에 대해 다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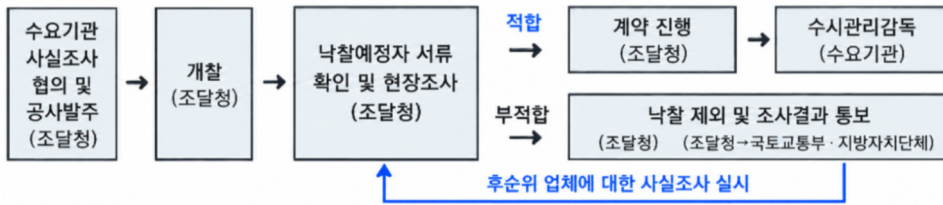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6-345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절차도]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대하여 페이퍼컴퍼니 조기 퇴출과 제도효과 유지를 위해 2027년에 사업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인력을 21명·6개월에서 32명·12개월로 확대하고 자본금 심사 용역을 47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예산 및 주요 산출내역]

구분	2026년 추경	2027년 예산안
입찰자격 사실조사 예산	11억 6,900만원	35억 5,600만원
사실조사 인력	21명×6개월	32명×12개월
자본금 심사 예산편성 건수(a)	470건	1,500건
자본금 심사 예산편성 단가(b)	100만원	100만원
자본금 심사 용역비(a×b)	4억 7,000만원	15억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실제 외부심사 의뢰실적과 향후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최근 계약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 심사 외부용역의 물량 및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27년도 자본금 심사 물량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중앙조달발주 적격심사 공사가 연평균 약 2,300건인 점을 기초로 차순위 업체 조사 및 타 기관 조사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연간 사실조사 대상을 약 2,600건으로 추정하였다.

[사실조사 예상 건수 산출 내역]

구분	산출 내역				
최근 3개년 적격심사 공사 건수	○ 최근 3년간 중앙조달발주 적격심사 공사 건수 : 2,300건				
	(단위: 건)				
	구 분		중앙조달		
		평 균	'23	'24	'25
	적격 심사	국가계약법	1,051	1,238	1,075
	지방계약법	1,253	1,272	1,304	1,184
	소계	2,304	2,510	2,379	2,025
차순위 조사	○ 타기관 평균 단속률 : + 26%				
	구 분	평 균	경기도	서울	충남도
	단속률 (단속/조사)	26.3%	33.1% (112건/338건)	21.4% (49건/228건)	24.4% (11건/45건)
타기관 조사 중복	○ 타기관 조사 중복(국토부·지방정부 실태조사 적격비율) : - 11%				
	2024년 국토부·지방정부 실태조사 결과 적격업체수(9,367개)에 2024년 국토부 등록된 종합·전문업체수(83,737개)로 산정 = (9,367÷83,737=11.1%)				
산출 내역	2,300×[1 + (26% - 11%)] = 2,600여건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는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중 자본금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등을 통해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 과정에서는 자본금 조사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조달청의 내부 검토를 통해 자본금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외부 전문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026년 8월 말까지 사실조사 대상 340건 중 자본금 조사 면제 대상은 74건이고, 나머지 자본금 확인 대상 266건 가운데 154건은 내부확인을 통해 종결되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12건으로 자본금 확인 대상의 약 42.1% 수준이다. 외부심사가 완료된 87건 중 82건은 적격, 5건은 부적격으로 확인되었다.

[자본금 확인 및 외부심사 실적]

(단위: 건)

구분	사실조사	확인 대상 ¹⁾	내부확인 종결	외부 심사의뢰 ²⁾	완료
건수	340	266	154	112	87

주: 1) 확인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조사 결과 적격이었던 업체 등 자본금 확인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업체 수

2) 112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의뢰 90건과 추경 이전 의뢰 22건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물론 2026년의 외부심사 의뢰율을 2027년도 예상 사실조사 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외부심사 물량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의 1,500건은 사실조사 예상 건수에 자본금 조사 면제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자본금 확인 대상 중 상당수가 내부확인을 통해 종결되는 실제 업무처리 구조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27년 조사대상이 확대되는 업종에서 외부심사 필요 비율이 기존 건설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업종 확대 가능성만을 근거로 내부확인을 통한 종결 물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외부심사 물량을 실제 수요보다 크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27년도 자본금 심사 외부용역의 예산편성 단가는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건당 100만원이다. 조달청은 시장가격 조사 결과 건당 100만원 ~ 110만원 수준의 견적이 제시된 점, 그리고 2026년도 용역의 기초금액 역시 건당 약 102만원이었다는 점을 단가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체결한 3개 회계법인의 계약단가는 건당 약 86만 1천~86만 4천원으로, 평균 약 86만 2천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7년도 예산편성 단가인 100만원보다 약 13.8% 낮은 수준이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실제 계약실적이 없어 시장견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시점에는 실제 계약실적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가 산정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3개 회계법인의 실제 계약단가가 모두 건당 86만원 수준으로 유사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계약실적과 향후 가격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당 100만원의 편성단가가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자본금 용역계약 회계법인 계약단가]

(단위: 건, 원)

구분	계약물량	계약단가	실제 지급단가
법인 A	150	861,007	861,007
법인 B	150	861,148	861,148
법인 C	150	863,742	863,742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2026년도 실제 외부심사 의뢰 및 내부확인 종결 실적, 2027년도 조사대상 업종 확대에 따른 외부심사 수요와 함께 최근 실제 계약단가 및 낙찰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 심사 외부용역의 물량 및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사업¹⁾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2)에 따라 제안된 제품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기술혁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청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5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3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49,391	82,706	82,706	113,267	30,561	37.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은 유형 I의 경우 각 부처가 제품을 발굴·평가하고, 유형 II는 조달청이 공급자·수요자 제안 등을 통해 제품을 모집·평가한 후, 조달적합성 검토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³⁾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이후 조달청 시범구매 또는 각 기관의 자체구매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하게 된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7-433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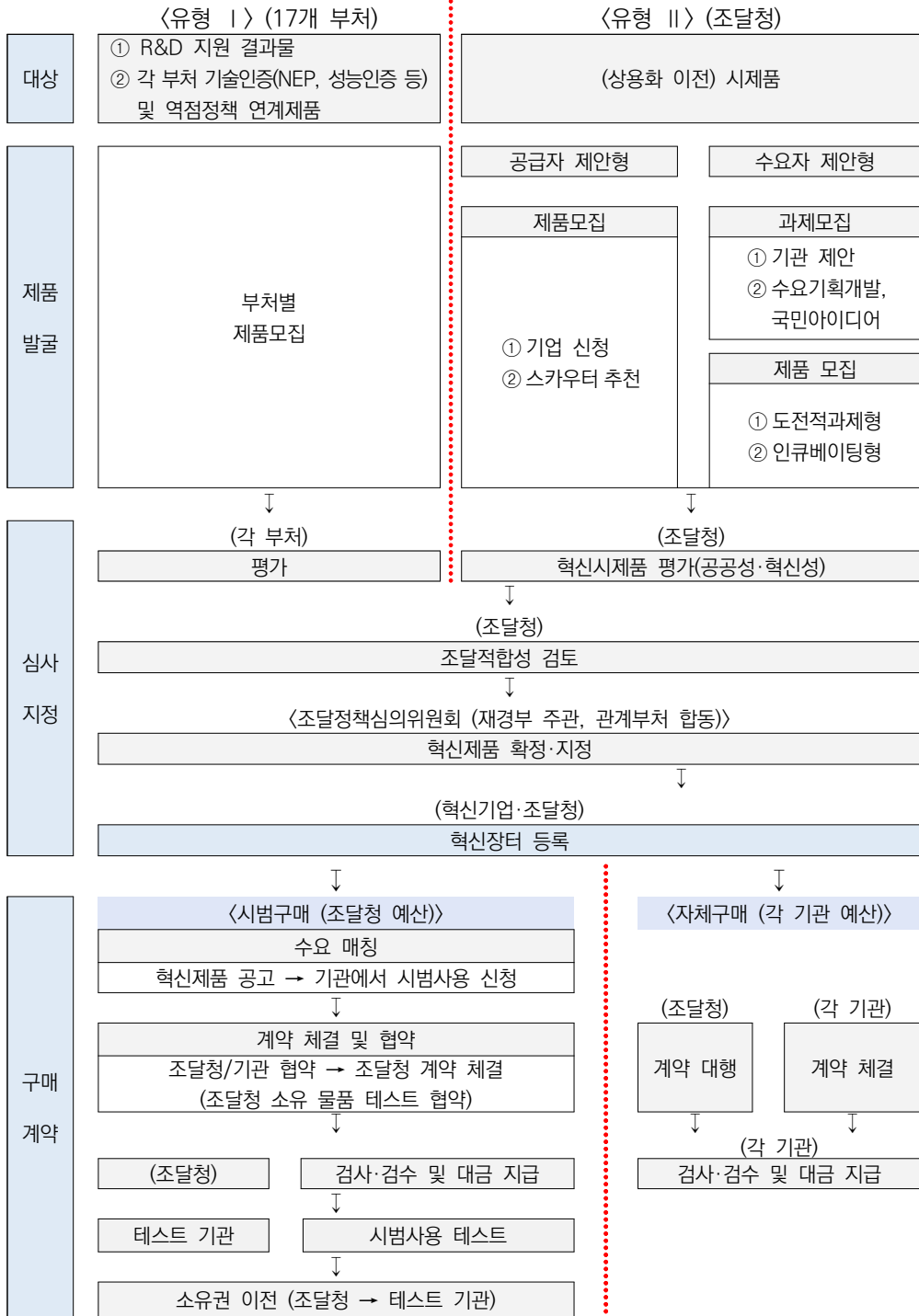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혁신제품 유형

- **유형 I(국가우수연구개발 제품)**: 부처 R&D 결과물, 자체기술인증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유형 II(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혁신조달 지정 및 시범구매 흐름도]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6년까지 혁신제품 구매 사업을 국내실증 및 해외실증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2027년도에는 AX-SPRINT 제품 및 범정부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분야 제품의 실증·구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12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다.

[2027년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① 공공혁신조달사업(국내실증) : (‘26) 62,400백만원 → (‘27) 90,000백만원(+27,600백만원)	
- 국내실증 내실화	
- (산출) 국내실증(300백만원×300개제품)	
* 제품당 평균금액 × 구매 예상 개수	
②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 (‘26) 20,000백만원 → (‘27) 10,000백만원(△10,000백만원)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	
- (산출) 해외실증(234백만원×44개제품)	
* 제품당 평균금액 × 구매 예상 개수	
③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사업 : (‘27) 12,961백만원(신규, +12,961백만원)	
- AX-SPRINT 제품 34개, 범정부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제품 10개 실증연계	
- (산출)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제품(300백만원×44개제품)	
* 제품당 평균금액 × 구매 예상 개수	
④ 품질검사 시험장비 구입 : (‘26) 306백만원 → (‘27) 306백만원 (증감없음)	
- 노후장비 3종 12대 교체 및 신규 장비 2대 추가 예산 요구	
- (산출) 노후장비 12대, 신규장비 2대 × 21.9백만원(제품당 평균금액)	

자료: 조달청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사업은 특정 정부사업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실증사업과 차이가 있으나, 혁신제품 지정 이후 수요기관을 매칭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원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존 국내실증사업과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사업 비교]

구분	공공혁신조달사업(국내실증)	정부기술실증 성과확산사업
지원대상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AX-SPRINT 등 정부 기술실증 성과물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구매 방식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에 시범사용 기회 제공
수요기관 연계	기업의 기본사용계획서 제출 및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신청을 통한 매칭	
27년도 예산안	900억원	129억 6,100만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과정에서 가격검토를 거쳐 결정된 계약가격과 주요 계약조건을 후속구매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장터의 가격정보 제공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공공구매 및 시범사용 수요를 연계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이다. 혁신제품 등록기업은 제품의 규격·기업정보와 함께 거래 희망가격을 등록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구매를 검토할 수 있다.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⁴⁾에 따르면 등록기업은 제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할 때 희망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업체공표가격 등의 가격자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희망가격은 기업이 제시한 거래 희망가격으로, 조달청의 계약단가나 가격조사를 거쳐 통보한 가격은 아니다. 이에 조달청은 시범구매 시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대하여 원가계산 등 별도의 가격검토를 거쳐 최종 계약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최근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에서는 혁신장터 등록 희망가격과 최종 계약가격 간 차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2025년 등록 희망가격보다 최종 계약가격이 5% 이상 낮게 결정된 계약은 각각 205건, 193건, 239건으로, 각 연도 전체 계약의 83.7%, 81.8%, 80.7%를 차지하였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 가격조정 현황]

(단위: 건)

가격조정률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조정 없음	8	3	2	5	11	30
0 ~ 3% 미만	19	11	13	13	14	43
3% 이상 ~ 5% 미만	33	25	25	25	32	42
5% 이상 ~ 10% 미만	62	86	96	109	127	114
10% 이상	44	41	109	84	112	91

자료: 조달청

4)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4조(희망가격 등록 및 조정)

- ① 혁신제품 전용물 등록기업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혁신제품의 희망가격과 실제 계약가격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기업이 희망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혁신제품은 비교 가능한 유사제품이 부족할 수 있고, 실제 계약가격도 구매수량, 설치·유지보수 범위 및 계약시점 등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속구매 기관이 적정 구매가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업이 제시한 희망가격뿐만 아니라 기존 시범구매 등을 통해 형성된 실제 계약가격과 그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실제 계약가격은 후속구매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니지만, 조달청이 예산을 투입한 시범구매 과정에서 가격검토를 거쳐 결정된 정보라는 점에서 동일·유사 규격 제품의 가격 수준을 판단하고 후속구매 기관의 예산소요 산정 및 계약가격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후속구매 기관이 혁신장터에서 제품별 희망가격과 함께 기존 계약단가, 구매수량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규격 및 유사한 계약조건에서도 희망가격과 실제 계약가격 간 상당한 차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점검하고, 등록기업이 희망가격과 관련 가격자료를 적정하게 현행화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¹⁾의 내역사업인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²⁾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역량 강화 및 레퍼런스 확보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4,252	5,195	5,195	5,910	715	13.8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	-	-	2,000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동 사업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적합한 기업·품목을 발굴하고, 전문교육과 국제기구 현장 수요분석, 입찰공고 매칭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수주까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망기업·전략품목 분석, 국제기구 전문교육, 조달협의체 운영, 국제기구 사업현장 및 물류기지 방문, 입찰공고 매칭 및 제안서 작성·보완, 국제기구 조달포럼·설명회 및 파트너십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기존에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을 통하여 해외조달시장 조사·설명회, 바이어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매칭,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기업별 맞춤형 종합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7년도에는 동 사업에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에 11억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집중지원에 10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기존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과의 비교]

구분	기존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지원 대상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개별 사업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국제기구 조달시장 벤더등록 기업 및 국제기구 진출 준비도가 높은 유망기업
대상 시장	해외 공공조달시장 전반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주요 지원	기업별 수요와 해외진출 준비도에 따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제기구 입찰 역량강화, 국제기구 현장연계, 입찰지원서비스
27년 예산안	30.4억원	20억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KOIC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전문성과 기존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및 수주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2027년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에 UN·M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벤더등록기업 및 진출 준비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역량 강화, 국제기구 현장연계, 공고분석·제안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300건의 입찰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도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구성	주요 산출내역	예산안
일반 용역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8명, 보조원 4명	766
	여비	국내여비 120회, 국외여비 3회, 연사 초청 여비 2회	202
	사업운영경비	전문가 자문, 교육, 현장방문, 국제운송, 세미나·설명회 등	576
	기타 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436
국외업무여비		국제기구 조달 세미나 참석 및 현장방문	20
합계			2,000

자료: 조달청

한편,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지원은 이미 관계기관의 기존 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KOICA는 Global GearUp 사업을 통해 UN·MDB 등을 포함한 글로벌 ODA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 맞춤형 컨설팅, 해외 네트워킹 및 입찰·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도 기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매칭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조달시장 관련 기업지원 사업 비교]

구분	KOICA Global GearUp	조달청 기존 해외조달 지원	조달청 신규 국제기구 지원
목표시장	MDB·UN·개도국·공여국 정부 등 글로벌 ODA 시장	해외 공공조달시장 전반	UN·M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지원대상 발굴·선정	중점지원기업 선정 및 역량진단	유망기업 발굴·집중지원	현장수요 기반 기업·품목 발굴
컨설팅·교육	전담·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	기업별 맞춤형 종합지원	국제기구 전문교육
입찰 지원	공고분석,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고 매칭, 제안서 작성·보완 등
네트워킹	해외 네트워킹, 박람회·상담회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	국제기구 발주처·현장 연계

자료: KOICA 및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물론 조달청의 신규사업은 국제기구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업·품목을 발굴하고, 현장방문과 제품 현지화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 다만 기업 역량강화, 입찰정보 제공, 제안서 작성 및 해외 네트워킹 등 주요 지원기능이 유사한 만큼, 관계기관이 이러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관별 전문성과 기존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에는 조달절차와 입찰방식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현지 사업정보,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수요에 적합한 제품 발굴 등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조달청은 국제조달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품목 발굴과 입찰지원에 집중하되, KOICA의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및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현장 수요조사, 기업 매칭 및 입찰지원 등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특화하여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능을 구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규사업의 지원규모를 뒷받침하는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기존 기업지원 실적 및 해외시장 정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실적을 보면 사업기수별 참여기업은 7~10개사, 벤더등록은 1~4건, 확인 가능한 입찰참여는 2~9건 수준이었으며, 2026~2027년 사업기수의 2026년 8월 말 기준 수주실적은 1건, 6만 5,742달러이다.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실적]

(단위: 개, 건, 달러)

구분	'22~'23	'23~'24	'24~'25	'25~'26	'26~'27 ¹⁾
참여기업 수	10	10	7	7	7
벤더 등록	4	3	2	1	3
입찰 참여	4	9	8	2	-
수주	-	-	-	-	1
수주액	-	-	-	-	65,742

주: 1) 2026년 8월말 기준 실적임

1. 각 연도는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의 2개년 사업기간을 의미

자료: 조달청

물론 기존 사업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특화된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실적만으로 신규사업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달청이 실시한 국제기구 조달시장 관련 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기업지원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사업기수별 7~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과 달리 2027년도에는 80개 기업과 300건의 입찰대응을 지원할 계획인 만큼, 설명회 참석이나 상담수요가 실제 입찰지원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업의 진출 준비도와 국제기구의 발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별 지원이력과 벤더등록, 입찰참여 및 수주실적 등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업지원 정보와 현지 발주수요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단순한 교육·상담 및 입찰지원 건수뿐 아니라 실제 입찰참여와 수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점검하여 이를 후속 지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KOICA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지원사업 연계를 구체화하고, 실제 기업의 지원수요와 국제기구의 발주수요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기업의 입찰·수주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규사업이 국내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Scale-up형 R&D 과제 선정 시 현장 개선수요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

가. 현 황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사업¹⁾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제품 개발 및 고도화, R&D 기획부터 시범구매까지 전주기로 진행하는 R&D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2,968	8,000	8,000	10,150	2,150	26.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① 공공혁신수요를 기반으로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시범구매연계형 기술개발과 ② 기존 혁신제품을 고도화하는 Scale-up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유형]

구분	시범구매연계형	Scale-up형
사업목적	공공수요를 반영한 혁신제품 개발	기존 혁신제품 기술고도화·판로확대
과제발굴	국민·공공기관 수요 발굴 → R&D 과제 기획	기업이 기존 혁신제품의 고도화 과제 제안
지원대상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신규 기술개발 기업	유형 I·II 혁신제품 보유 기업
지원기간·규모	2년, 연 5억원	1년, 연 3억원
27년 예산안	57.5억원	39.5억원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8

조달청은 Scale-up형을 기존 혁신제품의 기술적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유형Ⅱ 혁신제품에서 타 부처가 지정하는 유형Ⅰ 혁신제품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도부터 신규 과제가 12개로 전년 대비 10개 증가하게 되었고,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14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Scale-up R&D 예산 편성 내역]

구분	2025	2026	2027
종료과제	1개	2개	12개
신규과제	2개	12개	14개
과제당 지급단가	3억원		
예산	5.5억원	26억원	39.5억원

주: 2027 예산의 경우 예산안 수치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Scale-up형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는 공공수요의 시급성·파급효과, 기존 혁신제품의 고도화 및 신규 판로 확보 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의 기술 필요성·타당성,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 수요기관의 구매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혁신제품에 추가적인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기술적 고도화 필요성과 공공현장의 구체적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Scale-up 과제 선정 평가 항목]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공공수요의 시급성·파급효과, 혁신제품 고도화 및 신규 판로확보 가능성
추진전략 및 체계		수행체계의 적정성, 연구책임자·수행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 및 운영계획의 합리성
사업화 전략		수요기관의 기술 필요성·타당성, 개발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기술적 완성도·현장적용 가능성, 혁신제품 지정·시장진출 및 활용 가능성
조달연계 우수성	공공성 및 파급효과	정책 부합성, 공공문제 해결 및 조달시장 확산 가능성
	공공조달 연계 역량	조달연계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조달시장 관련 경험·역량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Scale-up형 R&D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기존 혁신제품의 실제 사용·실증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수요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체적인 수요기관의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의 Scale-up형은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기술적·기능적 고도화를 지원하여 공공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은 2026년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유형Ⅱ 혁신제품에서 타 부처가 지정하는 유형Ⅰ 혁신제품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과제는 2025년 2개에서 2026년 12개로 증가하였고,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14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26년부터 Scale-up형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시범구매 실적을 지원요건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유형Ⅰ 또는 유형Ⅱ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실적이 없더라도 Scale-up형 R&D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도 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다.

[2026년 Scale-up R&D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요건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제품 요건	유형Ⅰ 또는 유형Ⅱ 혁신제품
지정 요건	해당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유효할 것
시범구매 요건	별도 요건 없음
지원규모	과제당 3억원 이내, 1년 내외
협약 기간	2026.5.1. ~ 2027.4.30.

자료: 2026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Scale-up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조달청

시범구매 실적을 일률적인 신청요건으로 두지 않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혁신제품의 사용·실증은 조달청의 시범구매 외에도 개별 공공기관의

구매·실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현장사용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기술개선 요구 등을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cale-up형 R&D가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시범구매 대상기관과 매칭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에 어떠한 기술적·기능적 개선이 필요한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실제 공공현장에서 제품을 사용·실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가 확인되었는지 또는 수요기관이 어떠한 구체적인 기능·성능 개선을 요구하였는지, 이러한 개선수요가 연구개발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6년도 Scale-up형 신규 선정과제 12개 중 6개는 Scale-up 협약 전에 시범구매 대상기관과 매칭되었고, 5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용·실증한 실적이 있으며, 1개는 공공기관 사용·실증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달청은 12개 과제 중 11개 과제에서 시범사용 피드백을 R&D 내용 설정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6년 Scale-up 선정과제의 시범구매·실증 현황]

(단위: 개)

구분	유형 I	유형 II	합계
선정과제 수	8	4	12
Scale-up 협약 전 시범구매 매칭 과제	3	3	6
기타 공공기관 사용·실증 과제	4	1	5
공공기관 사용·실증 실적 없음	1	-	1
시범사용 피드백 반영 과제	7	4	11

자료: 조달청

그런데 시범구매 대상기관과의 매칭은 해당 기관에서 실제 제품을 사용하여 성능이나 기능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2026년도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미량 파우더 발생기 개발’ 과제는 Scale-up 협약 개시일인 5월 1일로부터 약 10일 전인 4월 21일에 시범구매가 매칭되었으며, ‘공공급식

식자재 방사능 신속 검사장비 개발' 과제는 Scale-up 협약이 시작된 이후인 6월 15일해야 시범구매가 매칭되었다. 또한 'TinyML 기반 사면 붕괴 전조 예측시스템 개발' 과제는 시범구매 및 기타 공공기관 사용·실증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Scale-up 선정과제 중 시범구매·실증 관련 주요 사례]

과제명	시범구매 매칭	기타 공공기관 사용·실증	주요 특징
미량 파우더 발생기 개발	'26.4.21.	-	Scale-up 협약 약 10일 전 매칭
공공급식 식자재 방사능 신속 검사장비 개발	'26.6.15.	-	Scale-up 협약 개시 이후 매칭
TinyML 기반 사면 붕괴 전조 예측시스템 개발	-	-	시범구매·기타 실증 실적 없음

자료: 조달청

Scale-up형 R&D가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공공현장에서 확인된 개선수요를 연구개발을 통해 해소하여 제품을 고도화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범구매 대상기관과의 매칭 여부만으로 추가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26년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신규과제가 전년 2개에서 12개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일부 과제는 실제 사용·실증을 통한 개선수요가 충분히 구체화되기 전에 선정·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여 현장 개선수요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Scale-up형 신규과제를 14개로 확대하여 39억 5,000 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신규과제 선정 시 실제 사용·실증 결과와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기술적·기능적 개선요구, 해당 개선사항과 연구개발 목표 간의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R&D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¹⁾의 내역사업인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사업은 비축물자 보관 및 비축기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5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5,007	15,625	15,625	11,657	△3,968	△25.4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지원	1,341	3,483	3,483	5,180	1,697	48.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타소비축은 정부가 구매한 비축물자를 해당 물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업체의 창고 등에 보관하고, 비축사업자가 생산과정에서 비축물자를 사용한 후 새로운 물품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비축방식이다. 조달청은 장기 보관 시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주기적인 재고순환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²⁾을 중심으로 타소비축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타소비축 물자의 보관 및 재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품목별 보관 목표 물량을 기준으로 재고순환비와 보관료를 편성하였다. 재고순환비는 품목별 계약물량 중 상시 대여가 가능한 물량 등을 제외한 물량에 입·출고 단가와 재고순환 횟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보관료는 품목별 보관 면적과 1㎡당 일일 보관단가, 보관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5-334

2) 조달청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 비공개 중임

이 중 타소비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순환비와 보관료는 각각 17,500톤, 6,000톤, 5,000톤, 7,000톤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재고순환비는 총 13억 3,552만원이며, 보관료는 각각 약 6억 3,201만원, 8,905만원, 1억 2,195만원, 1억 1,951만원 등 총 약 9억 6,252만원이다.

한편 조달청은 2027년도에는 전체 비촉목표 중 부족분 6,500톤을 정부 직접비촉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창고 임차료 7억 3,900만원 및 재고순환비 3억 5,900만원 등 총 10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비촉물자 보관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톤, 백만원)

비촉방식	품목	예산산정물량	재고순환비	보관료·임차료	합계
타소비촉	품목 A	17,500	931	632	1,563
	품목 B	6,000	80	89	169
	품목 C	5,000	66	122	188
	품목 D	7,000	259	119	378
	소계	35,500	1,336	963	2,298
직접비촉	품목 A	6,500	359	739	1,098

주: 1. 경제안보품목의 품목명은 보안상 비공개 대상

2. 예산산정물량은 202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상 적용한 물량

3. 타소비촉 보관료는 비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관료이며, 직접비촉의 경우 민간창고 임차료임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타소비촉 관련 예산이 실제 계약·비촉물량 및 재고순환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품목별 계약·집행실적과 2027년도 비촉방식 개편계획을 반영해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의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타소비촉 운영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한 물량을 실제 타소비촉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재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타소비촉 재고순환비용은 예산현액 11억 901만원 중 5억 4,781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9.4%였으며, 품목별로 실제 비촉량 미달, 재고순환 미실시 및 비촉사업자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2025년 타소비축 재고순환비용 품목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품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유
품목 A	486	377	109	실제 비축량이 계획물량에 미달
품목 B	80	-	80	사업기간 종료 후 2026년 지급
품목 C	95	-	95	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재고순환 미 실시
품목 D	277	-	277	사업자 미참여로 계약 미 체결
합계	938	377	561	

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재고순환비용의 품목별 집행실적이며, 전체 예산현액 및 집행액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조달청

2026년에도 일부 품목의 계약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품목 A는 예산 산정물량 17,500톤 중 9,300톤의 타소비축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품목 D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현재 미계약 중인 품목 중 하나는 겨울철 수요에 맞추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타소비축 계약·추진 현황]

(단위: 톤)

품목	26년 목표물량	계약물량	계약 업체수	추진 현황
품목 A	17,500	9,300	3개사	타소비축 계약 체결
품목 B	6,000	-	-	계절 수요에 맞추어 계약 추진
품목 C	5,000	5,065	1개사	타소비축 계약 체결
품목 D	7,000	-	-	26년 하반기 계약 추진 예정

주: 품목 B는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매년 계절 수요에 맞추어 비축·방출이 이루어짐

자료: 조달청

우선, 특정 품목의 경우 2027년도 비축방식 개편계획이 타소비축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조달청은 2027년도 전체 비축목표 17,500톤 중 약 11,000톤은 타소비축하고, 타소비축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6,500톤은 정부가 직접비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비축 6,500톤에 대한 민간참고 임차료와 재고순환비 총 10억 9,8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한편, 조달청은 2027년도부터 타소비촉 계약물량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던 무상대여를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7년도 타소비촉 관련 예산은 기존 계약조건에 따른 비촉물량과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편성되어 있어, 무상대여 폐지 및 일부 물량의 직접비촉 전환에 따른 예산소요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무상대여 폐지에 따라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의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일부 물량의 직접비촉 전환으로 타소비촉 물량이 축소되는 등 예산소요의 증감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예산 산출근거만으로는 제도개편 이후 실제 예산소요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달청은 변경된 비촉물량과 계약조건 등을 반영하여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의 예산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타소비촉 관련 예산안 산정내역]

(단위: 톤, 백만원)

품목	구분	계약수량	산정기준	편성액
품목 A	재고순환비	17,500	12,250톤×9,500원×입·출고 2회×연 4회	931
	보관료		12,250톤×0.55㎡×257원×365일	632
품목 B	재고순환비	6,000	4,200톤×9,500원×입·출고 2회×연 1회	80
	보관료		4,200톤×0.55㎡×257원×150일	89
품목 C ¹⁾	재고순환비	5,000	5,000톤×6,600원×입·출고 2회×연 1회	66
	보관료		5,000톤×0.26㎡×257원×365일	122
품목 D	재고순환비	7,000	4,900톤×6,600원×입·출고 2회×연 4회	259
	보관료		4,900톤×0.26㎡×257원×365일	119

주: 1) 일반 품목들은 타소비촉 계약조건에 따라 평상시 계약물량의 30% 이내에서 상시 대여가 가능하므로, 계약수량 70%를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 산정대상으로 적용하나 해당 품목은 전 수량을 대상으로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를 산정함

자료: 조달청

다음으로, 일부 품목은 반복적인 계약 미체결 실적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품목 D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두 차례 비촉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모두 무응찰되었고, 2026년 8월 말 현재까지도 타소비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조달청은 중국의 수출 제한 등에 따른 물량 확보 및 재고순환의 어려움과 연중 일정 물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타소비촉 방식에 대한 업계 부담 등을 주요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7,000톤을 기준으로 연 4회의 재고순환비와 연중 보관료 등 약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최근 계약실적을 고려하여 7,000톤 전체가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타소비축될 것을 전제로 소요액을 산정하기보다는, 2026년 중 계약체결 여부와 실제 계약물량·계약시기를 반영하여 재고순환 횟수와 보관기간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2027년도 타소비축 예산에 대하여 품목별 실제 타소비축 가능물량과 계약·집행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이를 초과하여 산정된 재고순환비 및 보관료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단가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구체화하여 예산규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